아시아·대양주



3

중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일본	인도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카자흐스탄	호주
라오스	캄보디아	홍콩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몽골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투르크메니스탄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서문

INTRO

아시아·대양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국들과 양자 FTA를 발효했으며,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시키는 등 아시아·대양주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아시아·대양주 편에서는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25개국에 대해 다룬다.

중국은 2024년 경제성장률 5%를 기록하며 연간 목표를 실현했다. 202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084억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의 명목 GDP 규모는 2020년(101조3567억 위안)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선 후, 2022년 120조 위안(120조4724억 위안)을 돌파하고, 2년 만에 130조 위안을 뛰어 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성장률도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년 전인 2015년 7%대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대로, 리오프닝 이후에는 5%대로 내려앉았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소비·투자 심리 위축, 미중 경쟁 및 서방국가의 대중국 견제 심화 등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있으며 미국 트럼프 2.0시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 기업제재 등으로 미중 양국관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다.

일본은 2012년~2018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경기확장기를 거친 이후 2019년 소비세율 인상,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수 부진과 자동차 산업의 수출 감소 여파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상관행 및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전히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주요 규제 분야는 수산물, 농산물, 지식재산권 등이다.

뉴질랜드는 총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0%에 불과한 만큼 우리나라와 상호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및 승용차, 전자기기 등 공산품을 뉴질랜드에 수출, 뉴질랜드는 낙농품 및 목재 등을 주로 1차 산업품을 수출하면서 한국-뉴질랜드 FTA는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농·축산물 수입 통관절차, HACCP 기반 식품안전 인증, 투자 진출 제한 등 규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부유한 자원과 높은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성공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관세 등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가입전인 2001년도에는 MFN 평균 관세율이 16.47%였으나,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2022년 기준 9.6%로

낮아졌다. 품목별로는 주류 및 담배류 (50.1%), 석유 (35.1%), 커피·차 (26.8%), 운송기기(24.1%) 등에 대해 수입관세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다만 2019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20년 EU와의 FTA, 2022년에는 RCEP이 발효되면서 관세장벽 제거가 가속화 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유일의 경제선진국이자 거점국가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해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다. 수입규제 역시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인도는 주요 산업의 국내 제조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자동차, 고무, 농작물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화학, 플라스틱, 통신장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반면 모바일 기기 및 부품, 핵심 광물, 태양 에너지, 의약품 등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했다.

인도네시아는 무역 및 천연자원 측면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인프라 확충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에는 적극적으로, 2019년까지 5%대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21년부터 투자·무역·노동 관련 옴니버스 법을 공포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최근에는 5%대 근접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 중이다.

필리핀은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관 과정에서 만연한 부정부패 및 자의적 과세 등도 주요 무역장벽 중 하나이다. 한국과 필리핀 간 FTA는 2024년 12월 31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아세안 FTA, RCEP과 함께 한국은 전체 품목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이르게 되었다.

2024년 12월



Part. III

아시아 · 대양주

www.motie.go.kr

CONTENTS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 · 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 · 중동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중 국	003
일 본	169
뉴질랜드	194
대 만	216
라오스	235
말레이시아	254
몽 골	297
베트남	313
스리랑카	360
싱가포르	374
인 도	392
인도네시아	424
카자흐스탄	498
캄보디아	535
키르기스스탄	559
타지키스탄	571
태 국	582
투르크메니스탄	599
파키스탄	634
파푸아뉴기니	654
필리핀	674
호 주	703
홍 콩	720
미얀마	752
우즈베키스탄	781





Part III

아시아 · 대양주

중 국
일 본
뉴질랜드
대 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 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 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 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 주
홍 콩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중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중국 경제현황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년 전인 2015년 7%대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대로, 리오프닝 이후에는 5%대로 내려앉았다.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5%를 기록하며, 정부의 연간 목표는 실현하였다. 202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084억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의 명목 GDP 규모는 2020년(101조3567억 위안)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선 후, 2022년 120조 위안(120조4724억 위안)을 돌파하고, 2년 만에 130조 위안을 뛰어 넘었다. 주요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4년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투자 심리 위축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외수 회복에 따른 수출·생산 호조, 정부의 부양책이 경기하강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3년째 계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2024년 중국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8억1450만 ㎡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 2023년의 6.5%에서 2024년 9.2%로 큰 폭 확대됐으나, 부동산 투자 감소에 따라 중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3%대에서 답보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사회 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은 48조789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기저효과 종료와 더불어 외식 소비 증가율이 5.3%로 가라앉고, 중국 전체 소매판매에서 1/4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소비 성장률은 한 자릿수

(7.2%)로 둔화했다. 상품/외식/온라인 소비 등 모든 구체적 지표가 코로나 이전의 절반에 그쳤다. 침체된 소비심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크게 하락했다. 2024년 소비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44%를 기록했다.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통제를 강화했던 2022년의 39.4%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며, 2023년 82.5%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산업생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중국 경기회복 흐름을 확대시켰다. 2024년 중국 산업생산 부가가치 증가율은 5.8%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1.2%p 높은 수치이다. 제조업, 특히 장비제조(+7.7%), 하이테크 제조(+8.9%) 등 제조 부문이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하는 구조이다. 품목별로는 신에너지차(+38.7%), 집적회로(+22.2%), 발전설비(+16%), 산업용 로봇(+14.2%) 등 녹색·첨단 기계전자 제품 생산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수출 호조는 중국 경기회복세를 견인하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4년 순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30.3%로 집계됐다. 2015년 중국경제 삼두마차(소비, 투자,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이다. 2024년 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조577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진작 및 내수확대, 산업고도화 등을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2024년부터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 지원정책(이구환신, 以舊換新)을 시행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기준을 확정하고, 기업 설비교체 대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설비투자와 소비를 촉진했다.

2025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24년도와 같은 수준인 '5% 내외'로 설정했다. 물가상승률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3% 미만인 '2% 내외'로 하향 조정하여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2025년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안팎으로 확대하고 적자예산을 5.66조 위안, 지방정부 전문

채권 신규 발행 한도를 4.4조 위안으로 늘리고, 1.3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 5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등 경기부양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3천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사업에 투입하는 등 소비진작책 지속 추진,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중대형 공정 건설 가속, 국가급 발전 전략·민생 관련 투자 확대 등 내수확대를 강조하면서 기술혁신, 민영경제 발전 촉진, 대외개방 확대 등을 2025년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국경제 주요지표

	지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대내경제	경제성장률	%	2.3	8.6	3.1	5.4	5.0
	GDP	억 위안	1.034.867	1.173.823	1,234,029	1,294,271	1,349,084
	1인당 GDP	US$	10,409	12,618	12,663	12,614	13,455
	정부 부채	GDP대비%	45.6	46.8	50.4	56.1	60.5
	소매판매 증가율	%	△3.9	12.5	△0.1	7.2	3.5
	실업률	%	5.6	5.1	5.6	5.2	5.1
대외경제	수출실적	백만US$	2,593,043	3,368,005	3,604,507	3,422,176	3,580,263
	수입실적	백만US$	2,060,256	2,678,836	2,715,538	2,563,586	2,587,150
	무역수지	백만US$	537,788	6,89,169	858,969	858,590	993,114
	외국인투자금액	억US$	1,493	1,810	1,891	1,633	1,000
	총 외채	억US$	24,008	27,466	24,528	24,475	24,198
	외환보유고	억US$	31,143	32,502	31,277	32,380	32,024
	이자율	%	3.85	3.80	3.65	3.45	3.10
	환율	US$	6.9	6.45	6.7	7.0	7.2

주 1) 2015년부터 중국은 외채통계방식을 변경하여 '전면적 외채' (全口徑外債)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2) 이자율은 1년 만기 대출금리 기준임.
3) 환율은 인민은행이 공시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중간가 기준임.
자료: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CEIC(글로벌데이터베이스), 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중국해관 등

한·중 경제관계 현황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 및 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8년까지 64억 달러에서 2,686억 달러로 약 42배가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 명에서 2015년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사드 배치 갈등 등으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2016년 806.8만 명에서 2018년 479만 명으로 40.6% 감소했다. 2019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2020년 코로나 등으로 교역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21년 역대 최대 교역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총 교역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다. 그러나 2022년 중국 경제성장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4.4%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3년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중심으로 19.9% 감소했으며, 대중국 수출비중은 19.7%를 기록하며 19년 만에 20%를 하회했다.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던 대중국 수출이 2024년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총 수출의 19.5%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도 중국산 정밀화학원료 수입이 폭감하고 전자기기 수입이 부진하며 대중국 수입은 2.1% 소폭 감소했으며 우리나라 총 수입의 22.1%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대중국 무역수지는 6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교역구조를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자본재 수출 비중이 64.5%를 차지했으며, 원자재와 소비재 수출은 각각 30.5%, 5%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을 보면 자본재 수입이 55% 비중을 차지했으며,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이 각각 25.9%, 19.1% 비중을 차지했다.

1988년~2024년 누적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95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8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4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으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86.5%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투자지역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 및 반도체, 전기전자 생산기지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장쑤, 산시(陕西), 랴오닝 지역에 대한 투자액이 각각 전체 대중국 투자액의 32%, 13%, 12% 비중을 차지했다.

1962년~2024년 누적 기준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15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전년 대비 266.1% 증가한 57.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4.6억 달러)과 서비스업(12.7억 달러)에 대한 투자액이 각각 전년 대비 243%, 356.9% 증가하며 총 투자액의 77%, 22% 비중을 차지했다. 품목별로 주로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화학제품, R&D·과학기술, 정보통신, 반도체,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한 중 양국은 2015년 6월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으로 발효시킴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중 FTA는 거의 10년간의 기간을 거친 연구와 협상 끝에 맺어진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8년에 걸친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1단계 협상(2012년 5월~2013년 9월), 2단계 협상(2013년 10월~2014년 11월)을 거쳐 2014년 11월 10일 APEC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년 6월 1일에 정식 서명되었다.

한·중 FTA은 양국의 기존 교역 및 투자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새롭게 "그랜드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부품소재 수출에서 완제품으로 수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에 더욱 가까워지고, 금융, 환경,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용을 낮춰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혜관세로 미국·EU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역·투자협력 외에도 한·중 FTA는 미래 한중 경제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이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국기업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한국산 철강, 기계류 및 고급섬유, 가전,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관세철폐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자본·인력이동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선진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지재권·인력·검역·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플랫폼도 구축되었다.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19년 7월 17~19일까지 3일 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로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도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7차(5월 26~29일), 제8차(7월 20~23일)), 제9차(10월 26~30일)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여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가속화됐다. 그러나 2007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투자 위축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 투자우대 정책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중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화상)회의'(2022년 7월 13일)를 열고 한국과 중국 간 서비스·투자 부문 시장 개방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FTA에 서비스·투자 분야가 포함돼 있으나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한국은 배송·건설·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非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시장개방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금융·투자 등 3개 분야에 걸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018년 3월 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린 이후 2020년 10월 26~30일 열린 제9차 협상까지 아홉 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보호 강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 2024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양측은 2024년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FTA 공동위를 장관급으로 열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2025년은 한중 FTA 10주년이며 3월 양국 외교 수장은 양국의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한중 경제협력도 심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3월 한중일 3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멈춰있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2년 2월 1일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발효하면서 한중 교역과 경제협력은 'RCEP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금까지 형성된 지역 FTA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참여국이 다양한 만큼, 참여국 모두 그 경제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RCEP에서 한중 양국은 기체결 FTA(한-중 FTA) 철폐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관심 품목에 대해 소폭의 양허 개선을 도출했다. 중국이 한-중 FTA에서 철폐되지 않은 철강제품, 기계류 등 41개 품목의 대한 수입관세율을 추가로 철폐하면서 한중 양국의 상호 관세 철폐 수준은 기존의 90.6%에서 91.1%(품목수 기준)로 소폭 확대되었다. 또 일부 한-중 FTA 양허 제외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 한국산 건강식품인 인삼·홍삼을

예로 들면, 한-중 FTA 양허 제외 품목으로 올 1월 31일까지는 MFN 세율 20%를 적용받지만 2월 1일부터는 RCEP 세율 13.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RCEP에서 협정 참여국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체결 FTA보다 원산지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특히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40% 기준을 채택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 진입,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략적 의의가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시에 약속했던 관세인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7.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에서 2005년 10%, 2024년 현재 7.3%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품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세율은 HS 8단위 기준 2014년 760개, 2015년 749개로 축소되었으나, 2016년 787개, 2017년 822개, 2018년에는 948개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5년에는 935개로 다시 축소되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5년 관세조정방안에서 중국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소비품과 의료기기, 중국정부가 수입을 지원해왔던 첨단설비와 핵심부품,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물품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잠정세율방식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7년 WCO (세계관세기구)의 〈상품명칭 및 HS협정〉의 상품분류목록의 수정에 따라 중국 수출입세칙을 광범위하게 조정하여 주로 농업, 화공, 기계전기, 방직, 목재 등 여러 종의 상품에 적용하였다. 중국내 수요에 따라 기타 세칙세목도 적절히 조정하였다. 조정 후 2025년 중국 세칙의 세목 수는 8,960개로 증가하였고, 세목 구조는 국제무역발전의 실질적 수요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1)]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실시와 관련하여 2019년 28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이 중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에 대해 FTA에 따른 관세인하를 하였다. 또한 상품범위와 세율수준이 변화 없는 싱가포르, ASEAN, 칠레와의 FTA 및 APTA도 있다. 더불어 홍콩, 마카오의 무관세 상품범위를 확대하고 대만과의 ECFA에 따른 상품범위와 세율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1월 15일부터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한 이후, 2022년1월1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한 10개국과 RCEP을 발효했고, 그 후 한국은 2022년2월1일에 RCEP이 발효되는 등 2025년 1월 현재 모든 RCEP회원국 15개국과 RCEP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실시한 일부 정보기술상품(ITA상품)의 최혜국세율 최초 인하는 2018년 상반기에도 계속 실시하며, 2018년 7월 1일부터는 제3차 인하를 실시하여 총 280여 상품에 적용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484개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세율인하 상품은 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의료기자재, 계측기기 등이다. 또한 2018년에도 APEC 환경상품 관세양허에 따라

1) 중국의 품목분류항목 수 현황: 2013년 8,238개, 2014년 8,277개, 2015년 8,285개, 2016년 8,294개, 2017년 8,547개.

수입 잠정세율을 계속 실시하며, 최빈국가 영관세우대를 지속 적용하였다.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12	43.2		
1993.12	35.9	-	
1996. 4	23.0	16.8	2,898
1997.10	17.1	35.9	3,371
1999. 1	16.7	26.0	4,900
2000. 1	16.4	2.4	4,874
2001. 1	15.3	1.7	-
2002. 1	12.0	6.6	-
2003. 1	11.0	21.5	3,462
2004. 1	10.4	8.3	5,332
2005. 1	9.9	5.4	3,000
2006. 1	9.8	4.8	2,414
2007. 1	9.8	0	900
2008. 1	9.8	0	143
2009. 1	9.8	0	47
2010. 1	9.8	0	45
2011. 1	9.8	0	16
2012. 1	9.8	0	6
2013. 1	9.8	0	8
2014. 1	9.8	0	
2015. 1	9.8	0	
2021. 1	7.4	0	
2024. 1	7.3		

자료: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

한편 중국 정부는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기능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 볼 때 MFN보다 낮은 잠정세율에 해당되는 품목(HS코드)이더라도 중국세관에서 해당 품목분류에 예외사유를 들어 잠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 3월 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에 대해 협정

세율을 적용한 이후 ▷757개 품목(2003년) ▷902개 품목(2004년)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2005년 11월부로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9월 1일부로 3차 관세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하율은 27%에 달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4%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875개 품목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적용하였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차 개정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조정하여 2018년 관세세칙부호 기준으로 2,229개 품목은 인하하고, 9개 품목은 인상했으며, 17개 품목은 세율산출방식을 변경하였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어 현재까지 4,287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가 있었고, 발효 이후 매년 관세가 인하되면서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전체 품목수의 92.2%(한국수입기준)와 90.7%(중국수입기준)에 대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시행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세목 수는 2001년 7,111개에서 2023년 8,948개까지 증가했다.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 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다.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단위당 세금액×수입품 수량'이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이다. 관세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수출세를 징수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 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세율과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비교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2016년 4월부터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

品清单)에 포함된 품목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행 중인 2022년판 리스트는 식품, 의류, 가전, 화장품, 기저귀, 주류, 가정용 식기세척기 등 1441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해외 수입세 감면 한도액을 1회 5000위안, 1인당 연간 2만 6000위안으로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수입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한다.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해외직구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수입규제

(1)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23년판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파괴물질, 화공설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로 148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목록 내 품목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또는 상무부가 지정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進口許可證)을 취득해야만 통관할 수 있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상무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2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 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할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기계·전자수입관리방법(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실시세칙(機電産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2)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22년에는 412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임시수출입화물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12호)」에 근거하여 전시용 (임시)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1998년 11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舊국가질검총국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5)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리, 심천(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 입항지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입항지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6)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199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7) 중국의 폐플라스틱 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중국 생태환경부(상무부, 발전개혁위, 해관총서 합동)는 수입을 금지할 고체 폐기물목록을 발표(2018년 4월 19일)하였다. 〈수입폐기물 관리목록 조정 내용 공고〉를 통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목록은 폐선박 등 16종이며,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목록은 목재팰릿 등 16종이다.

(8)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도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식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건강식품, 견과류, 냉동만두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9) 구리·알루미늄 재활용 가능 원료 수입규제 완화

중국 생태환경부는 '구리·구리합금·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 재활용 원료 수입관리 규범화 공고'를 발표하고 2024년 11월 15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재활용 가능 원료의 수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재활용 가능한 구리선, 혼합동료, 구리가루(동미), 황동·청동·백동·고동의 덩어리 재료와 분말재료는 더 이상 고체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 당국은 2021년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산업 수요에 따라 당국이 규정한 '재활용 가능한 구리·알루미늄 원료'는 수입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자국 산업 발전 수요에 따라 구리·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의 수입 허가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10) 석탄 수입관세 회복

중국은 202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산 석탄에 무관세를 시행해 왔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관세를 회복하기로 했다. 중국 수출입 세칙에 따라 수입산 석탄에 대해 최혜국 세율 3%~6%(무연탄·코크스탄·갈탄 3%, 조개탄 5%, 기타 석탄 6%)를 적용한다. 협정세율에 따라 호주,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산 석탄은 여전히 무관세를 적용한다.

(11) 수은 첨가 제품 8종 품목 수입 금지

중국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소형 형광등,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등, 스트레인플레이트, 용융 압력 센서·용융 압력 전달기·용융 압력 신호 수신기, 수은 진공점프, 타이어 밸런스와 휠 밸런스, 사진플름과 인화지, 위성과 우주선의 추진제 등 수은 첨가 품목의 생산 및 수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은 2024년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3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철강 2건(STS 열연, 방향성 전기강판), 화학 8건(페놀, 스티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폴리아세탈, 아크릴섬유, 아세톤,

PPS, EPDM), 전자 1건(광섬유), 태양관 1건(폴리실리콘), 플라스틱 고무 1건(니트릴고무) 등 총 13건이다.

중국 상무부는 2024년 5월 8일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2024년 3월 20일부터 5년간 연장, 한국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2024년 6월 23일부터 5년간 연장,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11월 9일부터 5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세제상의 제한

(1) 중국의 세제

(가) 개요

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법적책임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자기업만의 독점적 세제 혜택은 대부분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2007년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법인세율 25%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教育费附加税) 대상을 외자기업으로도 확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

중국의 세목

구분	내용	관련 세금
유통세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입 또는 재화의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증치세), 소비세, 관세 등
소득세류	생산, 경영자가 취득하는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재산세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부동산세(房産税), 취득세(契税), 차량선박세(车船税), 차량취득세(车辆购置税) 등
행위세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印花税), 도시유지보호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税),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税), 선박톤세(船舶吨税)등
자원세류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	자원세(资源税), 환경보호세(环境保护税), 도시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 연초세(烟叶税) 등

(나)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자: 중국 내의 기업 및 수입을 획득한 기타 조직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구분

- 거주자 기업: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
- 비거주자 기업: 외국(지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도 중국 내에 없지만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소득 범위

- 거주자기업: 중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 비거주자가업: 중국 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기구·장소가

획득한 중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과 중국 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 한편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여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 원천소득에 대해 10% 감면세율로 제한적 과세함.

○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 재화판매소득, 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증소득(受贈所得), 기타소득 등을 포괄

○ 세율

- 기본세율: 25%
- 또한, 영세기업(소미기업=소규모저이익기업)의 연간소득세 과세표준 중 300만 위안 이하에 대해 25% 감면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적용기한 : 2022~27년)
-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신기술기업: 15%
- 비거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율: 10%
- 비거주기업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 10%

  *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지급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 즉 수익적 소유자의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에는 5%

(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급여, 보너스, 개인사업 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별 및 과세범위

- 세법상 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국 내에서 한 과세연도 내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 영구 거주자: 거주자 중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한 과세연도 내 183일 이상 거주 한 연도가 연속하여 6년 이상인 경우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를 묻지 않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 부담

• 비영구 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한 과세연도 내 183일 이상 거주한 연도가 1년 이상 6년 미만인 개인으로,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이 과세되지만 국외원천소득 중 비거주기업·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제외

- 비거주자: 한 과세연도 내 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인 개인으로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부담

○ 과세방법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을 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종류 별로 구한 세액을 합하여 과세

- 소득종류: 종합소득(급여소득, 노무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경영소득, 이자·주식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우발적소득(偶然所得) 등

- 종합소득: 기본공제 (월 5,000위안), 특정항목공제(법정사회보험료 및 주택기금), 특정항목 부가공제(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석·박과정), 중병의료지출, 노인부양지출, 주택임차료 또는 주택대출이자 중 하나 등) 및 기타공제를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계 누진세율(3~45%) 적용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소득(사업소득):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5단계 5~35%의 누진세율

- 이자·주식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산양도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20% 세율 적용

*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부터 일부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납부방식으로 변경되어, 종합과세소득에 대하여 익년 3월~6월 기간 정산신고를 진행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기업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는 중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과 중국 지점이 지급한 모든 급료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되도록 한·중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구 분	체류 기간	중국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비거주자	183일 미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주자	1년~6년 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6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라) 부가가치세(增值稅)

중국은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도 한국처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재화의 공급 및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혼재로 부가가치세 공제사슬이 끊어져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세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고, 2016년 5월 1일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면전환을 실시하였다.
2024년 12월 증치세 잠행조례를 증치세법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과세대상

- 중국 내 과세재화 판매 또는 수출/수입, 과세용역 제공,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

○ 세율

- 6%, 9%, 13%로 상이
-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 국외에 제공하고 국외에서 소비되는 용역: 영세율 또는 면세
- 소규모 납세자 또는 부동산 임대는 3% 또는 5%의 징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2024년 증치세법 제정으로 소규모 납세자의 징수율은 3%로 통일(26.1.1. 시행)

-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 미만 또는 분기 매출액이 30만 위안 미만인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 면제(적용기한 : 2023~27년)
- 3%의 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납세자의 과세매출에 1% 징수율 적용(적용기한 : 2023~27년)

  *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영개증)의 영향으로 일부 업종에 한하여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차액으로 징수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增值税专用发票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타 부가가치세영수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으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이 실행됨에 따라 여객운송비에 대한 전자일반부가가치세영수증 등 일부 일반부가가치세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한다. 중국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 수수에 대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 문제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계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면세했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원관리 입장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게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중국「기업소득세법」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 (한·중 조세조약 제5조)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립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사 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기업소득세법」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을 편법적으로 해외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사 중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 과세당국은 20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7년 11월 최초로 AP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도 다수의 AP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수출입 상품 검사 및 외자기업 혜택

(1) 수출입 상품 검사(Import / export commodity inspection)

수출입 상품 검사는 국가가 설립한 검사기관 또는 정부에 등록된 독립 기관이 수출입 상품의 품질, 규격, 위생, 안전, 수량 등을 검사하고 평가하며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이다. 수출입 상품 검사는 신청접수-샘플링-검사-증명서 발급 4가지 주요 단계가 있다

검사 내용은 수출 상품의 품질검사와 포장검사, 수입 상품의 품질검사와 손상검사, 수출 동물제품의 검역, 수출입 식품 위생 검역, 수출입 상품의 중량 감정, 운송도구 검사 및 기타 국가나 상품 사용자가 요구하는 검사, 검역이 포함된다.

수출입 상품 검사는 국가 상품 검사 부문(해관총서)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목록〉을 작성, 조정하고 발표하여 시행한다. 해당 〈목록〉은 해관총서 공고 2022년 제79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에 의해 최신 조정되었다.

〈목록〉에 포함된 수입 상품은 반드시 해관검사를 통과해야만 판매, 사용이 가능하고, 수출 상품은 검사를 통과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2) 외국인 투자기업 혜택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장려목록〉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총액내에서 수입되는 자가용 장비 및 계약에 따라 상기 장비와 함께 수입되는 기술 및 부속품 및 부품에 대해 수입시 관세를 면제(〈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비과세 수입 상품목록〉과 〈수입 비과세 주요 기술장비와 제품목록〉내 제품은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수입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참고로 〈외국인투자 장려목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판이 시행되고 있다.

- 2023년 1월 1일 이전 승인, 허가 또는 제출한 프로젝트가 '장려목록(2022년판)' 범위에 속하는 경우,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프로젝트 확인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토대로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검토 및 확인 절차 신청 가능

-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를 위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 허가 또는 제출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장려목록(2020년판)' 범위에 속할 경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프로젝트 확인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토대로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검토 및 확인 절차 신청 가능.

- '장려목록(2020년판)'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장려목록(2022년판)' 범위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수입 자가용 장비 및 계약에 따라 상기 장비와 함께 수입된 기술, 부속품 및 부품에 대해 수입세 우대정책을 향유 가능하지만, 수입장비 관세를 이미 과세한 경우는 환급 불가.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로 수입하는 장비 및 물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투자금액(중국측 투자 포함) 내에서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부품 및 기타 건설(현장) 자재, 기계 설치 및 보강에 필요한 자재, 자가용 합리적인 수량의 교통수단, 생산차량, 사무용품(장비)(이하 '장비 및 물품'이라 함)을 가리킨다.

2024년12월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공개 의견수렴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를 내고 2025년1월20일까지 공개 의견을 접수했다.

의견수렴초안 항목은 1700여개로 2022년 버전에 비해 200개 이상 증가했다. 현재 접수된 의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2025년 버전의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 연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5년 버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 신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분야에 항목을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 중서부 지역과 동북 지역으로 더 많이 향하도록 장려한다.

2025년2월, 국무원 판공청은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 방안〉 공지를 전달하였는데 자율 개방 확대, 투자 촉진, 개방 플랫폼 기능 강화, 서비스 보장 개선 4개 주요 항목의 총 20개 방안이 포함된다.

강제인증제도 실시

(1)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제도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는 34개 국가 지정 인증기관과 294개 실험실이 있다.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 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시료접수 → ④시료검사→ ⑤공장심사 → ⑥합격여부 판정 ⑦인증서 승인 ⑧인증서 발급 심사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2~3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인감위)은 강제성제품 인증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역대 강제성제품 인증목록 조정 상황에 따라 강제성제품의 인증 실시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바탕 하에서, 목록 내 일부 품목을 통합·최적화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설명 및 정의표 발표에 관한 공고〉(2023년 제36호),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상업용 가스 연소기기 등 제품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2024년 제9호),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2024년 제26호),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가스기기 연결 호스 등 제품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에 관한 공고〉(2024년 제28호) 등이 잇달아 발표됨에 따라 CCC인증 대상 목록은 16개 유형 104종 품목으로 확장되었다.

중국 CCC 인증 대상품목 종합(16개 유형, 총 104종 품목, 2024.7월 갱신)

1. 전기선 케이블(3종)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5종)	3. 저압 전기제품(2종)	4. 소형 전자모터(1종)
5. 전동 기구(3종)	6. 전기 용접기(4종)	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20종)	8.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13종)
9. 조명전기(2종, 전압 36V이하의 조명기기 제외)	10. 차량 및 안전부품(15종)	11. 농기제품(2종)	12. 소방제품(3종)
13. 건축재료제품(4종)	14. 아동용품(3종)	15. 방폭전기(18종)	16. 가정용 가스레인지(6종)

참고: CCC인증 목록의 "가정용 가스 기기" 유형은 "가스 연소 기기"로 변경

중국 정부는 2003년 5월 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6년 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6월부터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 확대 개편하여, CCC 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CFDA에서 허가심사토록 하였으며 2018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CFDA의 동 업무는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로 이관되었다. 또한 오토바이 헬멧(2017년 10월), 전기장판(2018년 8월 1일 시행), 유아용 매트(2018년 12월 1일 시행), 2019년 10월에는 방폭전기기기와 가정용 가스레인지(2020년 10월 1일

시행)를 CCC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2021년 7월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기존 강제 인증 실시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목록 내의 일부 제품 종류를 통합 및 최적화하여 17개 분야 103개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2023년 9월 발표한 〈CCC인증목록〉의 CCC 인증대상 품목은 16개 분야 96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2024년 4월에는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제품에 대해 강제인증 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스쿠터 헬멧,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7개 품목을 강제인증(CCC)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가스 기구 연결용 호스를 CCC인증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발표한 〈CCC인증 실시 규칙 취합〉의 CCC 인증대상은 16개 유형 104종 품목으로 변경되었다.

8개 품목의 CCC인증관리 시행시기

연번	품목	CCC 인증 관리시행
1	스쿠터 헬멧	2025.5.1.
2	방폭 조명기기 및 제어장치	
3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2025.7.1.
4	난연 전선·케이블	
5	전자 좌변기	
6	가연성 가스 탐지 경보제품	
7	수성(水性) 내벽 도료	
8	가스 기구 연결용 호스	2025.10.1.

한편, 한·중 FTA 발효 1주년(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로 CCC 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졌고, 2017년 8월에는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LED조명기기에 대한 CCC인증서가 발급되었다.

(2) China RoHS

중국 RoHS인증은 "국가 추천성 RoHS 인증(国推RoHS)"이라고도 하며 전자정보제품 오염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율인증으로 정식명칭은 〈전자정보 제품 오염 관리 자발적 인증(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自愿性认证)〉이다.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10가지 유해물질인 페닐부틸 프탈레이트(DBP),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법'(China RoHS)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China RoHS 2)을 시행했다. 2016년 7월부터는 적용대상이 백색가전을 포함한 전체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품목은 중국 당국에서 마련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산업정보부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평가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1.1일부터 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 컴퓨터(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4년 6월 발표된 China RoHS II 개정안(GB/T 26572-2011)에서 4종의 프탈레이트 물질(DEHP, BBP, DBP, DIBP)이 추가되었으며, 그 허용치(by weight)는 0.1%를 초과 불가하다고 규정되었다.

China RoHS 신규 기준 GB/T 39560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20년 12월 14일 공시되였으며, 실시후 현행 RoHS

패키지 검사 기준을 대체한다.

항목	중국 RoSH 2
적용 범위	1.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 혹은 수입된 전기 전자 제품2.중국 RoHS 2.0은 1500볼트 DC 및 1000볼트 AC 미만의 전기 전자 제품을 포함(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백색 가전 등 제품 범위 확대)
제한 물질	1. 6대 유해 물질: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2. 카드뮴 한도가 100ppm(1ppm=1×106)인 것을 제외하고 기타 유해 물질의 한도는 1000ppm
표기	1.중국 RoSH 상표 2.환경 보호 사용 기간을 표기 3.위험 물질 내용과 명칭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기재
적합성 평가	1.목록 내 기재된 제품에 적용 2.〈전기 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리목록〉은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목록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종류, 사용 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 사용, 사용 제한 기간을 포함함 3.목록에 나열된 상품의 RoSH 준수는 중국 강제 인증 제도의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 실험실에서 강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

2024년 6월 발표된 China RoHS II 개정안(GB/T 26572-2011)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NMPA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또한 NMPA의 「의료기기 제품등록 관리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등록 제품 표준은 국가 표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및 내용의 수준이 GB 혹은 YY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중국 국무원은 2020년 12월 21일에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를 발표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했다.

중국은 2021년 8월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备案) 관리 방법'을 발표하면서, 이 중 '제1류 의료기기'를 수입시 비안관리를 실시하며, 비안인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비안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수입 제2류, 제3류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허가 받은 후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한다. 수입의료기기 등록 및 수입의료기기 비안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비안인 등록지 또는 생산지가 소재한 국가(지역) 주관부서가 해당 의료기기의 시장판매 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등록비안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8월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备案) 관리 방법'을 발표하면서, 이 중 '제1등급 의료기기'를 수입시 비안관리를 실시하며, 비안인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비안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수입 제2등급, 제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허가 받은 후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하며, 의료기기 등록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수입의료기기 등록 및 수입의료기기 비안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비안인 등록지 또는 생산지가 소재한 국가(지역) 주관부서가 해당 의료기기의 시장판매 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등록비안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기 허가는 자료준비에서부터 허가증 취득까지 1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통상 6~9개월, II, III 등급 의료기기 24개월~36개월,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약 12~18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4) CSEL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전감찰국(SESA)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2018년3월, 국무원의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직책,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직책,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책 등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을 형성,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설비안전감찰국에서 관련 행정허가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특수 설비'는

생명안전과 관련되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 실린더 포함), 압력배관, 엘리베이터, 하역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시설과 시설 내 전용 모터바이클 등을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하며, 인증서(허가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이다.

특수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시장 내 판매 및 유통하거나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 〈중국인민공화국특수설비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및 관련 제도에 따라 특수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2021년 12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 설비 행정 허가 유관 사항에 관한 시장감독총국의 고시'(2019년 3호) 중 '특수 설비 생산 단위 허가 목록', '특수 설비 작업 인원 자격 분류 및 목록', '특종 설비 점검 인원 자격 인정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조정하는 동시에 '특수 설비 점검, 검측 기관 승인 항목'을 새로 제정하여 함께 발표하였으며 위 목록과 항목들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5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설비 안전 감독검사방법〉(特种设备安全监督检查办法)을 발표하여 특수설비에 대한 감독관리 내용, 문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은 중국이 무선전송 장비에 대해 시행하는 강제인증이다. 중국은 1999년 6월 1일부터 정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MIIT)의 강제 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모든 무선 부품 제품은 반드시 무선전송 장비 형식승인인증서(SRRC 인증)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과 생산 무선전송 장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무선전송 장비 또는 중국 영토 내에서 생산(시험 생산 포함)되는 무선전송 장비는 모두 반드시 국가 무선 관리기구의 그 발사 특성에 대한 형식승인을 획득하고 '무선전송 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출고 장비의 표지판에 형식승인 코드(CMIIT ID)를 표시해야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국가 무선관리국(MIIT 소속)은 무선 장비 형식승인의 법정 승인기관으로서 그 산하의 국가 무선

감시센터(SRMC) 및 공인 실험실이 공동으로 기술 검측 사업을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2019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점차 엄격해져, 무선제품, wifi 등 제품은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려면 SRRC인증증서가 필요하다.

2024년 4월, 공업정보화부는 '900MHz 주파수 대역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장비에 대한 무선 관리 규정(900MHz 频段射频识别（RFID）设备无线电管理规定)'(공업정보화부 무선관리국 [2024] 76호)을 발표했으며,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규정은 920~925MHz 주파수 대역 RFID 무선전송 장비에 적용되며, 이 장비의 연구·제작, 생산, 수입, 판매 및 사용 등은 관련 기술 요구에 부합하고 형식승인(SRRC)을 신청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설치 및 사용은 지상 공중이동통신 단말 관리 기준을 따르며 별도의 무선국 면허는 필요 없다. 동시에 규정은 해당 장비 사용 시 다른 합법적인 무선국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철도 궤도 중심선으로부터 33미터 이내에 설치할 경우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규정 시행일부터는 840~845MHz 주파수 대역 RFID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중단하며, 기존 관련 규정은 폐지된다. 이미 해당 주파수 대역 형식승인 인증서를 취득한 무선 주파수 식별(RFID) 무선전송 장비는 폐기될 때까지 계속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4월, 공업정보화부는 '초광대역(UWB) 장비 무선전신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超宽带（UWB）设备无线电管理暂行规定)'(공업정보화부 무선관리국 [2024] 77호)을 발표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초광대역 무선전송 장비의 연구개발, 생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적용되며, 이는 발사 신호 대역폭(-10dB 대역폭)이 500MHz 이상인 무선전송 장비를 의미하며, 사용 주파수는 7163~8812MHz로 규정한다. 해당 장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SRRC)을 신청해야 한다. 설치 및 사용은 지상 공중이동통신 단말 관리 기준을 따르며 별도의 무선국 면허는 필요 없다. 사용 시 다른 합법적인 무선국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전파천문대 주변 1km 이내 및 항공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무선전신 관리기관은 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새 규정 시행 후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승인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았다. 이미 인증을 받은 장비는 폐기될 때까지 계속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국가 무선사무실은 2025년 1월 발표한 '국가 무선사무실 150MHz와 400MHz 주파수 대역 무전기 주파수 사용 관리 및 장비 기술 요구 관련 사항 통지(国家无线电办公室关于150MHz和400MHz频段对讲机频率使用管理和设备技术要求有关事宜的通知)'(국가 무선사무실 [2025] 1호)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통지는 총 22조로 구성되어 무전기의 응용 장면과 사용 대상에 따라 전용, 공용, 대중 및 및 해상용 무전기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양한 유형의 무전기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계획하고, 관리 기준을 규범화하며, 생산기업은 공용 및 대중 무전기 본체에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 주파수 조정 대역을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각 유형 무전기의 기술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2026년 3월 1일부터 각급 무선전신 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본 통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무전기 주파수 사용 허가 및 무전기국 설치·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이미 허가를 받은 무전기국의 경우 장비가 폐기될 때까지 사용이 허용됨을 명확히 했다. (2026년 3월 1일부터 국가 무선전신 관리기관은 이 통지와 부합하지 않는 무전기 무선전송 장비 형식승인(SRRC)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 3월 '공업정보화부 40~50GHz 주파수 대역 주파수 사용 관련 두 건의 규범적 문서 폐지 통지(工业和信息化部关于废止40-50吉赫兹（GHz）频段频率使用有关的两部规范性文件的通知)'(공업정보화부 무선관리국 [2025] 66호)를 발표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업정보화부 40~50GHz 주파수 대역 고정업무 중 점대점 무선 접속 시스템 주파수 사용 관련 사항 통지(工业和信息化部关于发布 40 - 50 吉赫兹（GHz）频段固定业务中点对点无线接入系统频率使用事宜的通知)'(공업정보화부 무선관리국 [2013] 500호)와 '공업정보화부 40~50GHz 주파수 대역 이동업무 중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 주파수 사용 관련 사항 통지(工业和信息化部关于发布 40 - 50 吉赫兹（GHz）频段移动业务中宽带无线接入系统频率使用事宜的通知)' (공업정보화부 무선관리국 [2013] 502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통지 시행일부터 각급 무선전신 관리기관은 관련 장비의 형식승인(SRRC) 및 새로운 주파수 사용 허가를 더 이상 접수·심사하지 않으며,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사용 중인 무선국은 폐기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은 중국 공업정보부(MIIT)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2001년 6월 25일에 총 28개 NAL 대상 품목이 발표된 바 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기관은 MIIT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2022년 9월, 국무원은 〈전자 전기산업관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国办发〔2022〕31호)〉에서 통신설비망 진입허가제도 개혁.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고 기존 NAL 대상 품목 중 전신 단말 장치,네트워크 간 상호 연결을 포함하는 장치분야의 11개 품목을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위성 인터넷 설비, 기능가상화설비 2개 품목을 대상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2년 9월 기준 NAL 대상 품목은 19개이다.

2023년 1월 공업정보화부는 “전신설비의 인터넷접속허가제도에 관한 개혁 조치에 관한 통고(关于电信设备进网许可制度若干改革举措的通告)”(공업정보화부 신관함 (2023) 14호) 를 발포했다. 해당 통고는 인터넷 접속 허가 설비 목록을 동태적으로 조정하고, 인터넷 접속 검측 항목을 간소화하고 최적화하며, 인터넷 접속 심사비준 기한을 약속하고, 시용 비준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제품 계족 관리를 실시하는 등 5가지 개혁 조치를 실행한다. 인터넷 접속 표지의 전자화 추진, 전자기 호환 (EMC) 검사 결과 상호 인정 등 기타 두 가지 개혁 조치는 적극적으로 준비되고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다.

2023년 6월, 공업정보화부는 ‘공업정보화부 신형 인터넷 접속 허가 라벨의 사용 및 보급에 관한 공고(工业和信息化部关于启用和推广新型进网许可标志的通告)’ (공업정보화부 신관 [2023] 79호)를 발포했다. 공고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신형 인터넷 접속 허가 라벨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신구(新旧) 라벨의 과도 단계이며, 생산기업은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신형 라벨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더 이상 원 종이 라벨을 심사 발급하지 않으며, 이미 심사 발급한 종이 라벨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유효하다. 신형 인터넷 접속 허가 라벨은 허가 표지, 장비 모델, 디지털 코드 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기업은 전자 디스플레이, 실물 인쇄, 라벨 접착 등의 방식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또한 라벨의 신청 경로, 사용 요구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7) 소방제품인증(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2002년 5월 중국은 최초로 화재 경보설비 등 3종 소방제품을 최초로 국가강제성제품인증 목록으로 편성하였다. 2009년 5월 새롭게 수정된 「소방법(中華人民共和國消防法)」을 처음으로 국가법률 범위에 강제성 제품인증의 핵심인 소방제품 시장 진입제도를 규정하였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강제성인증을 진행해야만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인증이다. 소방제품은 반드시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금지, 판매 또는 사용 불합격 소방제품 및 국가가 공개 금지한 소방제품은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없다. 소방제품의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는 법에 의거하여 실행하며, 법정자격을 갖춘 인증기구가 제시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인증합격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연구되어 아직 미제정된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소방제품은 국무원 응급 관리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소방안전요구의 기술평가심사를 거친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7월 중국시장감독총국과 응급관리부서에서 발표한 〈일부 소방 제품의 강제성인증 취소에 대한 공고 〈[2019]36호 (取消强制性产品认证的消防产品清单)〉에 따라 13가지 종류의 제품이 인증목록에서 제외되었고, 2020년판 CCC 강제인증 목록기준 소방제품은 총 3종류, 2023년판 CCC강제인증목록에도 소방제품 3종류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목록에 포함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CCC강제인증을 취득해야만 출하, 판매,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 소방제품 인증은 세관 신고·검역·검사 등 3개의 부분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세관신고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소방 제품 강제 인증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역 부분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의해 수입 소방제품을 상대로 위생 검역을 시행하는데 특별히 수입 제품/화물의 목재 포장은 중점적으로 식물성 검역을 시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검사 및 감독 측면에서 세관 및 기타 관련 부서 직원은 〈수입 소방 제품 검사 규정〉에 의거 안전 요구, 제품 성능, 제품 구조, 환경 보호 속성에 대해 적합성 검증 모식이나 표본 채취 검사 등 방식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중국 재정부가 2023년 10월 23일 〈국가종합소방구조대 수입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23]17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종합소방구조대가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소방구조장비를 수입할 경우, 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소방구조장비 수입면세목록〉에는 소방구조용 헬기, 좁은 길 전용 소방차, 삼림지역용 소방차, 수하 무선통신기 등 장비 포함 총 51개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2024년 8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CNCA 일부 소방 제품 강제성 제품인증 시행규칙 발표 및 휴대용 소화기 강제성 제품인증 기준 표준 변경 관련 공고(国家认监委关于发布部分消防产品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及变更手提式灭火器强制性产品认证依据标准的公告)'([2024] 제18호)를 발표했다.

첫째, 소방 제품의 강제성 제품인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제성 제품인증 시행규칙 소화기(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 灭火器)'(CNCA-C18-02: 2024), '강제성 제품인증 시행규칙 피난 탈출 제품(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 避难逃生产品)'(CNCA-C18-03: 2024)을 개정하여 발표한 날부터 시행하며, 구판 규칙은 동시에 폐지되고 구판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전환은 자연 과도방식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은 세칙을 제정하고 등록한 후 신규 개정판 규칙에 따라 인증 및 증명서 발급을 시행할 수 있다.

둘째, 휴대용 소화기 국가표준 개정 결과에 따라 강제성 제품인증 기준 표준을 GB4351.1, GB4351.2에서 GB 4351로 변경했다.

2025년 2월, 시장감독관리 총국과 국가 소방구조국은 '시장감독관리 총국과 국가 소방구조국 소방 안전표지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 해지 공고(市场监管总局 国家消防救援局关于对消防安全标志不再实施强制性产品认证管理的公告)' (시장감독관리 총국과 국가 소방구조국 공고 [2025] 제10호)를 발표했다.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에 포함된 소방 안전표지(피난 탈출 제품 범주에 속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지정 인증기관은 이미 발급한 강제성 제품 인증서를 말소하여야 한다.

2025년 3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CNCA 소방 비상 조명 및 유도 표지 제품의 강제성 인증 시행 요구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国家认监委关于调整消防应急照明和疏散指示产品强制性认证实施要求的公告)'([2025] 제11호)를 발표했다. 신규 국가표준 GB 17945-2024 '소방 비상 조명 및 유도 표지 시스템(消防应急照明和疏散指示系统)'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첫째, 국가표준 개정에 따라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설명 및 구분표(2023년 개정)(强制性产品认证目录描述与界定表(2023年修订))' 및 '강제성 제품인증 시행규칙 피난 탈출 제품(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 避难逃生产品)' (CNCA-C18-03: 2024) 첨부 문서 '피난 탈출 제품 강제성 제품인증 단위 구분 및 인증 기준 표준(避难逃生产品强制性产品认证单元划分及认证依据标准)'중 '소방 비상 조명 및 유도 표지 제품' 항목의 '비상 조명 분배 전기장치'를 삭제한다.

둘째, 각 지정 인증기관은 '강제성 제품인증 기준 표준 개정 시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공고(关于强制性产品认证依据用标准修订时有关要求的公告)'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2년 제4호)요구 사항에 따라 신규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소방 비상 조명 및 유도 표지 시스템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을 시행해야 한다.

(8) 에너지효율라벨

중국은 2005년 3월 에너지효율라벨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에너지효율 라벨 제도는 이미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까지 17차 제품목록이 발표되었으며, 타워형 및 랙형 서버, 냉수(열펌프) 장치 등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단말기용 에너지 제품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에너지절약, 절약기술향상, 에너지 사용제품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고효율 에너지절약제품의 보급 추진을 위해 2004년판 '에너지 효율 표시관리 방법'을 개정하여 〈에너지 효율 표시 관리방법〉(2016년)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시장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의 제품 실행 목록(15차)〉 및 관련 실시 규칙을 재개정하였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25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시장감독총국은 관련 법규(에너지 효율 표시 관리방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의 제품 실행 목록(17차)' 및 관련 실시규칙을 제정 및 개정했다.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는 2016년 개정판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5월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와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은 2016년 개정판 「에너지효율 라벨 관리 방법」 에 기반해 「3상 비동기식 모터, 전력 변압기, 환풍기, 평면 TV, 셋톱박스 에너지 효율 라벨 시행 규정」 (개정)을 발표했는데 해당 원칙들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22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총국은 「멀티형 에어컨(열펌프) 유닛의 에너지효율 표시에 관한 시행규칙」

(수정본) 과 「선풍기 에너지효율 표시 시행규칙」(수정본)을 발표했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칙들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23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와 시장감독총국은 〈에너지 효율 표시 관리방법〉(2016년)에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효율 표시제품 목록(제16차)〉(의견수렴안)을 발표, 1개월(2023년 8월 21일~2023년 9월 21일)의 의견수렴기간이 주어졌으며, 2024년부터 5가지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표시 관리를 실시 예정이다. 5가지 대상제품: 교류접촉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용접기, 일반 조명용 LED평판 램프, 상용 전자레인지 등 3가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디스플레이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모두 5년이다.

2025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시장감독총국은 공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의 제품 실행 목록(17차)' 및 관련 실시규칙(中华人民共和国实行能源效率标识的产品目录（第十七批）及实施规则)([2025] 45호)을 발표했다. 타워형 및 랙형 서버, 냉수(열펌프) 장치 등 12가지 제품의 에너지효율 표시 요구사항을 제정 및 개정했다. 규칙은 제품의 적용 범위, 시행 시기, 표지 디자인과 규격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타워형 및 랙형 서버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11개 제품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전에 출하되거나 수입된 제품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신규 에너지효율 표시를 연기 적용하며, 동시에 일부 구(旧)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임의인증

(1)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자율인증

CQC 라벨인증은 중국품질인증센터에서 수행하는 자발적 제품 인증 업무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인증을 받는다. CQC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관련 품질, 안전, 성능, EMC, 유해물질 제한량(RoHS) 등 요구에 부합됨을 표시하며 인증범위에는 기계설비, 전력설비, 전기, 전자제품, 방직품, 건축자재 등 500여 가지 제품이 포함된다.

CQC인증은 소비자의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을 받으면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CCC 강제 인증 대상품목인 경우, CQC 인증을 획득하면 CCC인증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2)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은 「중국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中國人民共和國制品 質量法)」, 「중국인민공화국인증인가규정(中國人民共和國認證認可規定)」 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승인에 의해 성립됐다. CSP는 중국안전방범제품협회의 한 단체이며,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한 인증업무에 의거해서 안전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공공안전제품의 인증작업을 하고 있다. CSP는 CNAS-CC21 (ISO/IEC 65)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3) 국가 추천성 자율 인증(国推自愿认证)

국가 추천성 자율 인증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CNCA로 약칭) 또는 CNCA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인증 제도이다. 각 인증 제도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독립적인 인증관리 방법을 제정하며, 통일된 인증기관을 설립하여 관리한다. 인증기관은 CNCA에서 발표한 통일된 인증 규칙에 근거하여 인증을 시행하며, 추천성 인증에는 시스템 인증, 제품 인증, 서비스 인증 등 세 가지 주요 인증 범주가 포함된다.

현재 국가 추천성 인증 목록에 분류된 인증제도는 유기농 제품 인증(ORGANIC),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China GAP), 녹색제품 인증(China Green Product Certification), 국가 정보 보안 제품 인증,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인증, 스포츠 경기장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주요 추천성 인증	주요 인증기관
제품 인증	
유기농 제품 인증 有机产品认证	중국 품질인증센터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 良好农业规范认证	중국 품질인증센터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녹색제품 인증 绿色产品认证	중국 품질인증센터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정보 보안 제품 인증 信息安全产品认证	중국 사이버 보안 심사 인증 및 시장감독 빅데이터 센터 ChinaCybersecurityReview,CertificationandMarket RegulationBigDatacenter
RoHS 인증	중국 품질인증센터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상업용 비밀번호 제품 인증	국가암호국 State Cryptography Administration
시스템 인증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인증 能源管理体系认证	중국 품질인증센터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 인증 知识产权管理体系认证	국가지식재산국 ChinaNationalIntellectualPropertyAdministration
측정 관리시스템 인증 测量管理体系认证	중국 품질인증센터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서비스 인증	
스포츠 경기장 서비스 인증 体育场所服务认证	국가체육총국 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of China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리 여건

중국은 산업화, 도시화 진전과 함께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2008년 3월)하고,「환경보호법」을 25년 만에 개정(2014.4),「대기오염방지법」개정(2015.8),「수질오염방지법」개정

(2017.8), 「토양오염방지법」제정(2018.8),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개정(2020.4), 「장강보호법」제정(2020.12),「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 공포(2021.1), 「소음오염방지법」 제정(2021.12),「황하보호법」제정(2022.10), 「칭짱고원 생태보호법」 제정(2023.4) 등 법규 정비를 통해 생태환경 보호 및 환경질 개선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339개 지급 이상 도시 대기질 우량일수 평균 비율은 87.2%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으며, 중도 이상 오염일수 비율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평균 0.9%로 '14·5'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PM_{2.5}$ 평균농도는 29.3㎍/㎥로 전년 대비 2.7% 감소, PM_{10} 농도는 49㎍/㎥로 전년에 비해 7.5% 감소하였다. 베이징의 경우 $PM_{2.5}$ 농도는 30.5㎍/㎥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으며, 중도 이상 오염일수는 단 2일에 불과하고 우량일수는 290일로 '베이징 블루'가 상시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수질의 경우 전국 3,641개 모니터링 대상 국가 관리단면 중 우량수질(Ⅰ~Ⅲ급) 단면 비율은 90.4%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 Ⅴ급 미만 단면 비율은 0.6%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다. 210개 수질 모니터링 호수(저수지) 중 우량수질(Ⅰ~Ⅲ급)인 곳은 77.1%, Ⅴ급 미만인 곳은 4.3%로 나타났다.

'2023 중국 생태환경상황 공보'에 따르면 국가 지하수 수질 조사지점(1,888개) 중 수질 Ⅰ~Ⅳ급 지점은 77.8%, Ⅴ급 지점은 22.2%였으며, 집중식 식수원 모니터링 결과, 연중 기준 도달 비율은 지급 이상 도시가 평균 96.5%, 현급 도시는 평균 94.8%, 농촌(千톤万명 식수원) 평균은 84.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23년 하계(夏季) Ⅰ급 해수 수질기준에 도달한 해역 면적은 관할 해역 면적의 97.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연안해역 중 우량수질(Ⅰ·Ⅱ급) 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85.0%, Ⅳ급 미만 해역 면적은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7.9% 수준이었다. 지급 이상 도시의 소음환경 모니터링 결과, 주간 평균 등가소음도는 53.9 데시벨, 도로교통 주간 등가소음도는 평균 66.2 데시벨로 조사되었다.

2023년 전국 생태품질지수(EQI)는 59.6 수준으로 육상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육상 국토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육상 생태계 유형의 90%, 국가 중점보호야생동식물 개체군의 74%를 보호하고 있다.

환경관리 법제 및 정책 추진현황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 12월 「환경보호법」제정 및 2014년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법령체계 완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 매체별 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호법」, 「산림법」, 「습지보호법」 등 생태자원관리법률, 유역 수자원·수생태·수환경 관리를 통합 규정한 「장강보호법」, 「황하보호법」, 특정 지역 대상 특별법 성격의 「칭짱고원 생태보호법」등이 있으며, 국무원이 제정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생태환경부가 제정하는 각종 환경기준 등이 있다.

중국에서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로 평가되는 「환경보호법」개정법률은 201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정,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 일수에 따른 처벌 등을 담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하는 등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이고 있다.[2]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환경오염배출부과금제도를 대체하는 「환경보호세법」시행, 2021년 3월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 2022년 6월 「소음오염방지법」 제정·시행, 2024년 5월 「용수절약조례」제정·시행 등 기업이 체감하는 환경규제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2)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향으로 추진중이다.

2015년 개정·시행된 「환경보호법」 주요 내용

요지	주요 내용
기본국책으로 환경보호 명시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정돈, 대중참여,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규정
환경목표책임제 실시	각 지방정부에 환경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 실시하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해당 지급시 정부와 인민대표에 환경수준과 환경보호 목표완성 현황을 보고·공개
환경오염 처벌 강화 및 위반기업 공개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기준도 1회성 부과에서 벌금결정액에 위반일을 곱하여 산정. 기업의 위반기록을 사회에 공개 하는 등 처벌 대폭 강화
사회감독기능 강화	민간환경단체(5년이상 환경활동 참여)는 공해물질 배출 기업, 환경파괴,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 소송제기가 가능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는바, 특히「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기본방책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주창하고, 제18차 당대회(2012년 11월)에서 기존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에 생태문명건설을 추가한 "五位一體"를 중국 특색사회주의 기초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아름다운 중국 건설」 개념을 명시하였다.

특히, 환경질 개선을 위해 201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생태환경보호 전면 강화 및 오염방지 공견전을 단호히 수행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푸른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의 3대 보위전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오염방지 공견전 심층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생태환경 지속 개선, 중오염 날씨와 도시 흑취수체 제거, 토양오염 위험 효과적 통제를 목표로 대기·물·토양 3대 보위전을 심층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북부지역 청정 난방, 철강·시멘트 등 초저배출 개조, 휘발성유기화합물 심층 관리, 경유화물차 오염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등 중점지역의 대기오염 공동 방지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맑은 물 보위전에서는 대하천과 호수의 수자원, 수환경, 수생태 관리를 통합 추진하며, 하천·해양 유입 오염 배출구 정비·개선 조치를

중점 실시하고, 산업단지 수질오염 정비, 대중의 관심이 높은 흑취수체 정비 및 식수원 안전 제고를 심층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토양을 위해서는 예방 우선, 위험 관리, 수토(水土) 공동 관리를 견지하고, 농업용지와 기업용지의 오염분포 및 환경위험 조사, 토양오염 모니터링 지점 확대, 경지 토양오염원 조사와 정비, 토양오염방지 선행구역과 지하수오염방지 시범구역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2030년 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60년 전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를 발표한 이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최된 UN 기후목표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단위 국내총생산(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약 25%까지 확대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 총 시설용량을 12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1년 4월에 개최된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 2030년 및 2060년 목표를 재확인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탄소정점·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신발전이념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구현에 관한 의견', '2030년 이전 탄소정점 실행계획' 등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산업, 도농건설, 교통운수, 농업·농촌지역 등 분야와 석탄, 석유·가스,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등 주요 산업의 탄소정점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및 과학기술 지원 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15·5' 기간 탄소 배출강도와 배출총량의 이중 통제 실시를 목표로 제시한 '탄소배출 이중통제 제도체계 구축 가속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규·제도 개선, 탄소배출 목표 평가 및 심사제도 확립,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관리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한 이후, 동 제도는 지속 보완되어 2003년 9월에는 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었다.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를 포함한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은 선평가·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원칙과 적용 범위, 절차,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는 각종 계획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원천 예방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토대로 「계획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며,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를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규범화를 위해 생태영향, 지표수, 대기, 해양생태환경 등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기술지침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철강·코크스, 현대석탄화학, 석유화학, 화력발전 4개 업종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문서 승인 원칙'을 발표, 입지 선정, 청정생산 기술 적용, 오염방지, 탄소 저감, 환경위험 예방, 지역 오염저감, 환경모니터링 등 측면에서 4개 업종의 신규 및 개·증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국토 공간 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 실시 통지'를 발표, 성·시급 국토공간 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내용에는 환경목표와 평가지표, 환경영향 분석·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의 예방·완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2) 청정생산제도

2003년 1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정생산심사방법」을 2004년 8월에 제정하고 이어 세부 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절차규정」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 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 배출총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12년 7월에는 「청정생산 촉진법」 개정·시행으로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실시하는 기업 범위 확대 등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2021년 10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등 10개 부처 공동으로 《"14·5" 전국 청정생산 추진방안》을 발표, 2025년까지, 청정생산 추진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공업 분야의 청정생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물 이용효율을 2020년 대비 대폭 향상시키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화물, 휘발성 유기물질(VOCs)의 배출 총량을 2020년 대비 각각 8%, 8%, 10%, 10%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가환경보호총국(현 생태환경부)은 기업의 친환경 관리를 촉진하고자 2003년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도입, 환경지표, 관리지표 및 제품지표를 심사하고 우수기업에 '국가환경친화기업'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3)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중국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부터 회수처리와 재생이용까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백색가전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2016년 7월 시행),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국가환경보호총국(현 생태환경부)은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강화 사업에 관한 의견」(환발 [2012]

제157호)을 반포하여 2015년까지 전자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기반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2020년 4월 전면 개정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에서는 전기전자, 납축전지, 자동차용 배터리 등 제품에 대해서 확대생산자 책임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을 확정(2006년 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비율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9년 1월 중국은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은 순환경제 계획제도, 자원낭비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제도, 순환경제 평가제도와 심사제도, 생산자 책임연장제도, 에너지 다소비 및 수자원 다소비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전문관리 감독제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장려조치, 순환경제발전 기금, 세수특혜 등)를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환경기준에는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 외에 각 지방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현지 진출기업은 해당 지역의 대기·수질오염 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등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체, 기관 등은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등록해야 하며 관련 오염방지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정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오염배출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업체는 배출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최종 배출지 등이 기재된 허가증(영향이 적은 경우 배출등록)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에 근거하여 대기·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소음 등 과세 대상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있다.

생태환경부는 2024년 12월 '오염배출허가제 전면 시행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산업 소음과 산업 고체폐기물에 대한 오염배출허가 관리 전면 시행, 2027년까지 주요 오염물질 배출 허가관리 실시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오염배출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오염원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생태환경부는 상위 법인 「행정처벌법」개정(2021년) 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6월 「생태환경 행정처벌 조치」를 개정·공표한바, 생산경영 활동 제한, 일정 기간 행정허가 신청 불가, 종업 제한·금지 등을 처벌 유형에 추가하고 시정명령에 속하던 '기한 내 철거 명령'을 행정처벌에 포함하였다. 또한 조사 및 증거수집, 법제 검토 등 처벌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벌 경감 또는 미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환경법령 준수 여부, 환경관리시설 비정상 운영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초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을 부과하고, 환경법령 위반기업과 전형적인 사례 공표, 통관 또는 세제상 불이익과 연계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환경법률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지방정부 유관 부서에 대한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도 철저해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환경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환경관련 중장기 추진정책

(1) 14.5 계획 정책목표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

중국 정부는 2035년 장기목표로 "녹색생산·생활방식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14차 5개년" 기간 경제사회발전 주요목표의 하나로 "생태문명건설의 새로운 진보 실현"을 포함하였다. 그 구체적 목표로 국토공간 개발·보호 구도를 최적화하고, 생산·생활방식의 녹색전환 성과가 현저히 나타나게 하며, 에너지·

자원배치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이용효율을 대폭 제고하는 것과 함께,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을 각각 13.5%, 18% 감축하고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산림복개율을 24.1%까지 제고하고,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생태안전장벽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을 명확히 개선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14차 5개년" 기간 경제사회발전 주요지표(생태환경 분야)

지표	2020년	2025년	연평균/누계
14.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 감소(%)	-	-	[13.5]
15.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	-	[18]
16. 지급 이상 도시 공기질 우량일수비율(%)	87	87.5	-
17. 지표수 Ⅲ류 이상 수체 비율(%)	83.4	85	-
18. 산림복개율(%)	23.2*	24.1	-

출처 : [ ]안은 5년 누계 수치이며, *는 2019년 수치

(2) 아름다운 중국 건설 전면 추진

중국 정부는 제18차 당대회(2012.11) 이후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자 이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아름다운 중국 건설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2027년까지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뚜렷한 성과 도출, 2035년까지 아름다운 중국 기본적 달성, 금세기 중엽 전면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 생산과 생활방식 구축, 오염 배출총량 감소, 중점영역 탈탄소화, 생태환경 개선, 국토공간의 개발과 보호 구조 최적화, 생태안전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14·5' 기간 생태환경 개선 심층 추진, ''15·5' 기간 생태환경 개선 공고화 및 확장을 거쳐 '16·5' 기간에는 생태환경을 근본적·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2027년까지 신규 자동차 중 신에너지차 비율 45% 달성, 노후 내연기관차 제거, 2035년까지 에너지 및 수자원 이용 효율 국제 선진 수준 도달,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2027년 28㎍/㎥, 2035년 25㎍/㎥ 이하로 저감, 2027년까지 전국 지표수와 연안해역 우량수질 비율을 각각 90%, 83%

수준 달성, 2035년까지 무폐 도시 건설 전면 적용, 신오염물질 환경위험 효과적 통제 등을 구체적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3) 경제사회발전 녹색 전환 가속화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 이념을 토대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 탄소정점·탄소중립 실현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제사회의 녹색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7월에 개최된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문에서도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중점을 두고 경제사회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 가속화를 개혁 목표이자 중요한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경제사회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저탄소'와 '순환'을 녹색 전환의 핵심 개념으로 강조하면서 국토 공간구조, 산업구조, 에너지, 교통운수 및 도농건설 5대 영역 녹색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절약 전략, 과학기술 혁신, 재정·조세·가격 정책 개선, 표준체계 구축 등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에너지 소비 통제를 탄소배출 통제로 전환

중국 정부는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에너지 소비 통제에서 탄소배출 통제로의 전환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해 왔으며 2024년 7월 개최된 3중전회 결정문에서도 탄소배출 이중통제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수립을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2024년 8월에 발표된 '탄소배출 이중통제 제도체계 구축 가속화 계획'은 탄소배출 통제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와 제도적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2025년까지 탄소배출 이중통제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고 '15·5' 기간에는 배출강도 통제를 위주로, 배출통량 통제가 보완하는 이중통제 실시, 탄소정점 도달 후에는 배출총량 통제를 주로하고 배출강도 통제가 보완하는 이중통제를 실시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경제사회발전계획에 탄소배출 지표 반영, 지방의 탄소

정점·탄소중립 종합 평가 및 심사제도 확립, 성·시 차원의 탄소배출 예산 관리제도 구축, 중점 업종과 분야 탄소배출 경보 관리메커니즘 구축,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체계 확립 가속화 등을 제시하였다.

환경산업 투자 여건

(1) 환경보호산업 현황

대기·물·폐기물 등 각 분야별 규제 강화 및 중국 국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환경보호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환경보호산업 영업이익은 약 2.22조 위안으로 2021년 대비 약 1.9%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0.9%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국내총생산(GDP)과 환경보호산업의 영업이익 비율은 1.8%로 2021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최근 5년(2018-2022)간 환경보호산업 영업이익의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8.5% 수준을 보였다.

2021년 기준 환경보호산업 기업의 68.2%가 지난 10년 이내 신규 설립되었으며 그 중 35.3%가 최근 5년 이내 설립되었다. 10년 이상된 기업 중에서는 물관리 기업이 42.4%로 가장 많으며, 10년 이내 기업의 경우 환경모니터링분야 41.6%, 물관리 20.9%, 고체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기업이 17.2%를 차지하고 있다. A주(상하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주식) 상장 환경기업 수도 2012년 86개에서 2022년 190개로 증가하는 등 환경보호 상장기업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 통계에 포함된 환경보호 기업 중 소규모·영세기업이 73.3%, 대기업 3.1%, 중기업은 23.6%로 환경보호기업은 여전히 소규모 영세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3.1%에 불과한 대기업이 업계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산업단지는 주로 장강삼각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동성, 강소성, 하남성에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다. 환경보호산업 사슬에 포함되는 기업은 산동성,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등 동남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하북성, 산서성, 요녕성을 중심으로 하는 환발해 지역에도 비교적 많이 분포[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 투융자는 베이징,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5-2022년 기간 환경보호산업 투융자 건수는 베이징이 총 124건으로 가장 많으며 강소성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2) 기술수준 발전 현황

2021년 환경보호산업 중점기업 조사에 포함된 10,502개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은 영업이익의 2.9%이며, 환경모니터링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영업이익의 6.0%로 가장 높았으며 고체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영업이익의 2.0%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환경보호산업 발전전망 및 투자예측 분석 보고(전첨산업연구원), 2022』 등에 따르면 수질오염관리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국제 수준과 유사하나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뒤따르는 수준이며 생활하수처리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공정, 기술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대형 하수처리장 관련 표준이 빠르게 개선되고 고효율 질소, 인 제거기술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화 운영관리시스템도 점차 보급되고 있다. 일반산업폐수처리 기술은 정형화되어 있으며 난분해성 폐수 처리 및 고도처리를 위한 고급 산화, 촉매, 막여과, 전기화학 등 기술의 적용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 기술과 장비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일부 기술은 국제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 및 백필터 집진기술은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했으며 배기가스 탈황, 탈질은 비교적 완전한 기술 및 장비시스템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력발전소와 약 6억 8천만 톤의 조강생산능력 초저배출 개조를 추진하는 등 철강업종 전 공정의 초저배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기술의 경우 촉매, 특수활성탄, 활성탄 섬유 등 기능성 재료 생산에서 국제 수준과 격차가 있으며 오염관리시설의 악취 관리, 도로 및 건설현장 등의 먼지 제어 등 일부 비산배출 관리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중국 환경보호산업 발전 전망 및 투자예측 분석 보고(전첨산업연구원, 2022)

2021년 5월 '14·5 계획 도시 생활폐기물 분류 및 처리시설 발전계획'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송·무해화 처리시설의 단점 개선과 소규모 소각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1년 국무원은 '녹색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을 추진하며 매립처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원은 2024년 3월 '폐기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2030년까지 표준화된 순환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폐기물 정밀관리와 효율적 회수, 폐기물 자원화와 재사용 제고, 동력배터리 생산자회수 목표책임제 강화, 폐플라스틱 등 저가 물질 순환이용 등 주요 폐기물 순환이용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저탄소 정책, 무폐도시 건설 등을 통해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체계 구축에 진전이 있으나 자원화 기술과 장비는 국제 선진 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 위험폐기물 처리는 종합이용, 소각, 매립, 시멘트 고로 협동시스템 구축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토양과 지하수 복원은 비교적 출발이 늦은 분야로 토양 열 정화, 경화안정화, 현장 화학적 산화, 토양 침출 등 공정은 안정적인 적용 단계이나 오염관리 기술과 장비의 성능, 품질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정밀 장비 의존도가 높은 환경모니터링 분야의 경우 대기, 수질 및 오염원 모니터링을 주체로 하는 국가 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기술과 장비의 원격화, 스마트화 또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핵심 소재, 부품, 운영체제 등 핵심 기술에 진전이 있으나 하드웨어 센서 등 일부 핵심 부품의 경우 고정밀 기기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환경보호산업 발전방향

현재 중국은 I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환경산업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의 "고품질발전(高质量发展)"[4]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과학기술부 등과 공동으로 2022년 11월 8일 '14·5 생태환경분야 과학기술 혁신 특별계획'을 통해 생태환경 모니터링, 생태 보호·복원, 다중매체 환경오염관리, 고체폐기물 감량·자원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첨단 신기술·신소재·신장비 개발 등 생태환경분야 과학기술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중국 환경보호산업에서 첨단기술 개발과 적용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는 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등의 지도와 지원 하에 2022년 '생태환경보호산업의 고품질 발전 가속화 및 오염방지 심층 공견전과 쌍탄 지원을 위한 행동 강요(2021-2030)'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생태환경보호산업 영업이익 연간 복합성장률 1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역 생태환경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50개 대기업, 종합서비스 능력을 갖춘 100개 전문기업,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적인(專精特新)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2030년까지 환경오염 방지·관리, 생태 보호·복원, 자원 순환이용, 탄소정점 달성, 경제사회 녹색전환 요구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생태환경보호산업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시장감독총국은 2025년 3월 '환경보호장비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2027년까지 선진 장비의 시장 점유율 제고 및 비교적 완비된 환경보호장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환경보호장비 제조업을 전통적 오염관리에서 녹색 저탄소 및 순환 발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범주는 최종 말단 처리에서 전 공정 오염 및 탄소 공동 저감, 청정생산 등 녹색 저탄소 순환경제시스템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 배출관리 등 탄소정점·탄소중립 분야 환경서비스, 녹색 저탄소 제품, 자원 종합 이용 등과 관련한 기술과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오염방지·관리 분야는 단점 보완, 품질 및 효율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장의 초점은 관리분야 세분화, 농촌 오염관리, 생태관리 등으로 이동

4)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새로운 표현으로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高速增长) 단계에서 고품질발전 단계로 옮겨감을 명시

되는 추세다. '14·5' 기간 하수관망 건설 및 개선, 휘발성유기화합물 종합관리 등을 집중 추진하고, 흑취수체 정비, 하수 및 폐기물 처리를 지급 이상 도시에서 현급 시 및 농촌지역으로 확대하고 농촌 생태환경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태환경모니터링, 데이터 연결 및 상호작용, 정보수집·분석·처리 등 스마트 환경보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신·인터넷 등 업계의 대기업이 환경보호산업에 진출, 스마트 수도, 스마트 발전소 등 환경보호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과 유역 협동 관리와 종합적인 관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장강 및 황하 유역관리, 청위지역 생태안전시스템 구축, 산업단지·구역의 오염방지·관리 등 지역 또는 유역 통합관리와 시스템 관리, 오염 및 탄소 동시 저감, 다양한 오염요소 통합관리 등 시스템 연계·통합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 제3자 서비스, '스마트+' 등 모델이 지속 추진되는 등 종합서비스와 정밀·전문적0인 서비스 제공이 환경보호산업 기업의 발전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중국의 자동차 시장현황

2024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해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 및 '양신정책(兩新政策: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이구환신 정책)'의 도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고품질 발전이 견고하게 추진되었으며, 연간 생산과 판매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이 되었다. 2024 중국의 전체 자동차의 생산량은 3128.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증가, 판매량은 3143.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면서 생산, 판매량은 16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했다. 2024년 정책지원, 충족한 공급, 가격인하 및 인프라 개선 등

여러요인의 작용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판매량은 최초로 1,000만대를 돌파했으며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1288.8만대로 전년 대비 34.4%성장, 판매량은 1286.6만대로 전년 대비 35.5% 성장했다.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내수)·수출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2월
생산 대수(만대)	2608.2	2702.1	3016.1	3128.2	455.3
증가율(%)	3.4%	3.4%	11.6%	3.7%	16.2%
판매 대수(만대)	2426	2375.3	2518.4	2557.7	364.1
증가율(%)	-0.2%	-2.1%	6%	1.6%	13.6%
수출 대수(만대)	201.5	311.1	491	585.9	91.1
증가율(%)	101.1%	54.4%	57.9%	19.3%	10.9%

자료 : 자동차 공업협회

(2) 중국의 자동차 수입규제

중국정부는 자동차 수입시 CCC인증 및 자동수입허가증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의 강제성인증 관리규정〉에 근거, 2003년 5월 1일부터 〈강제인증 제품목록〉내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 취득, 부착해야만 출하,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자동차 제품은 〈제1차 강제성인증 제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수입시 반드시 CCC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상무부와 해관총서의 〈전기 및 기계제품 수입관리방법〉, 〈전기 및 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에 근거, 자동차는 중국 수입시 반드시 상부부의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정부는 완성차 수입에 대해 수입 가능한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이미 29개의 수입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연해 및 강변 수로 항구가 16개, 육상항구가 4개, 철도 항구가 7개, 공항항구가 2개이다. 수입항구들은 상하이항, 톈진 신항(新港), 광저우 황푸항(黃埔港), 다롄 신항(新港), 네이멍구 만저우리(滿洲里), 선전 황강항(黃崗港), 신장 아라수출항(阿拉山口), 광시 친저우(钦州) 보세항, 신장 장훠얼궈스(疆霍尔果斯) 항구, 푸저우 장인항(江阴港) 지역,

장쟈항 보세항구, 베이징 국제공항, 칭다오 첸완(前湾) 보세항구, 저장성 닝보 메이샨(梅山) 보세항구, 충칭 철도항구, 정저우 철도항구, 광저우 난샤(南沙) 항구, 하이커우 항구, 후난성 위에양청링지(岳阳城陵矶) 항구, 청두 철도 항구, 선전 따찬완하이윈(大铲湾海运)항구, 시안 철도 항구, 탕산항구, 지린성 수이펀허(绥芬河) 철도항구, 안후이성 안칭(安庆) 항구, 푸젠성 샤먼하이창(厦门海沧) 보세항구, 후베이 우한(武汉) 철도 항구, 닝샤 인촨허둥(银川河东) 국제공항, 장시성 깐저우(赣州) 철도 컨테이너 장소 항구 등 이다.

(3) 환경오염에 따른 배출기준 강화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상무부(商务部) 등 5개 부처는 2023년 5월 〈경형 자동차 국가 제6단계 배출기준 시행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实施汽车国六排放标准有关事宜的公告)〉를 발표, 생산, 판매, 수입되는 경차 및 중형 디젤차에 대해 2023년 7월 1일부터 국6-B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지난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신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중심으로 재고량이 크게 늘었다는 현실을 감안해 RDE(실주행 오염물지 배출) 보고서에 기재된 테스트 결과가 '측정'만으로 표기된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을 적용한다.

2025년 2월 24일 생태환경부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자동차 배출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유럽과 미국의 선진 법규를 기준으로 경차(轻型车)와 중형차(重型车)의 국7 배출 기준을 연구하여 제정할 것이며, 유럽과 미국에 비해 약 2년 늦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7배출기준(EU2024/1257)은 2024년 5월 28일 발효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경차(轻型车)/중형차(重型车)에 따라 구분된다. 경차의 신모델 및 제동 시스템은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며, 2027년 11월부터 신규 등록된 모든 경차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형차의 경우 신모델은 2028년 5월부터 시행되며, 2029년 5월부터 신규 등록된 모든 중형차에 시행될 예정이다.

철강

(1) 수출관세 부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취소

중국 생태환경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재생철강원료 수입관련 사항을 규범화 할 것에 대한 공고〉에서는 5개 HS CODE에 해당하는 철강재생원료 제품은 고체폐기물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단, 반드시 〈재생철강원료〉(GB/T39733-2020) 국가표준에 부합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철강재생원료에는 HS CODE 7204.1000.10(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210010(스테인레스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290010(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410010(선삭, 세이빙, 칩, 밀링웨이스트, 톱밥, 파일링, 트리밍, 스템핑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490030(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재생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리튬이온배터리용 재생흑분말(黑粉) 원료 및 재생철강원료의 수입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생태환경부는 2025년 3월 4일 〈리튬이온배터리용 재생흑분말원료, 재생철원료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규범에 관한 고시(의견 수렴안)〉를 발표하여 2025년 3월 20일 까지 의견 청수를 진행했으며, 최종 공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4년 11월 2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재생 철강 원료'(GB/T39733-2024) 국가표준을 승인, 발표하여 2025년 6일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표준은 재생철강 원료의 세부종류를 늘리고, 혼합재 분류 기술 요구사항을 개선하며, 일괄 운송 규칙을 개선하고, 혼합물의 정의와 철강 실물량 등의 지표를 명확히 하고, 성분과 치수 규정 등의 요구사항을 최적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 규칙에 더욱 부합하며, 더 많은 고품질 재생 철강 원료의 수입을 위한 중요한 표준 기술 지원 및 촉진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철강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고,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 최다 산업 중 하나인 철강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중국 국내 철강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2021년 2차례에 거쳐 철강제품의 수입관세인하, 수출관세인상 수출세 환급 폐지 등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일부 철강제품관세 조정에 대한 공고〉와 재정부, 세무총국의〈일부철강제품의 수출 세금 환급 취소에 관한 공고〉에 근거, 2021년 5월 1일부터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에 대해 0%의 점정세율을 적용하고, 크롬철 등 5개 품목의 수출관세율 5%P씩 인상했으며,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13%→0%)을 폐지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14.5 발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철강업계는 향후 저탄소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탄소피크(碳达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경기 회복과 더불어 중국 철강 소비가 증가하고 철강제품 수출이 회복하면서 철강 생산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탄소 감축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다.

2021년 7월, 중국은 지난 5월 〈공고〉에 이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철강제품 수출관세 추가 조정에 대한 공고〉와 재정부, 세무총국의 〈철강제품수출세 환급 취소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여 크롬철, 고순도 선철 등 3개 품목에 대해 5.1일 1차 조정을 기반으로 5%p, 20%p 추가 인상하여 최종 20%, 40%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냉간압연 철강코일, 비합금강 코일 등 23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을 취소했다.(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

2024년 중국 관세 조정 방안은 고부가가치 강종의 세번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굴절(屈服)강도, 인장 강도 및 절단 후 연신율을 세 번의 세부분류 기준으로 하여, 주로 고강도 중후판(高强度中厚板), 고연성 냉간 압연판(高延展性冷轧板), 고강도의 아연도금판(高强度镀锌板) 등 품목에 대해 세부세번을 추가했을 뿐, 세율은 2021년 조정후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 정책

2016년 10월 28일 발표된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2020)」의 기본원칙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량기업 유입 및 우량기업 해외진출'의 정책적 방향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1일 발표된 국무원의 「철강산업 과잉생산능력 해소 및 위기 극복을 통한 발전」 정책에서도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과 대외개방을 강화하여 철강사 경영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 추진에 있어서 중국 철강산업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적극으로 합작사업에 참여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자원보완, 시장참여 등을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중국 우량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철강사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투자수준을 강화하며 무역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개방에서 해외우량기업이 국내 철강사의 지분참여, 지배주주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중국철강기업의 인수합병 배치조정 등 구조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철강산업의 과학기술 및 관리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내수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수출시장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중국산 강재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강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해외에서 제기된 중국산 제품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각각 102건, 116억 달러이며, 그 중 강재 관련 통상마찰 건수는 19건이다. 2016년 한해 총 27개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했으며, 그 중 21개 국가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중국산 철강제품은 중국 통상마찰의 최대 화두이다.

2016년 5월 미국 무역위원회의 중국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377조 위반혐의 조사 개시에 이어 미국 상무부도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265.79%의 반담핑(AD)관세율과 최대 241.07%의 상계관세율(CVD)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산 강재의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 2016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만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공, 인도, 호주 등 국가에서 중국의 철강 및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는 중국산 아연도금강(HS CODE 7210.4910) 제품의 반덤핑 사건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리고 반덤핑 관세 35.9%를 부과하는 6개월 임시 조치 시행을 결정했으며, 2023년 10월 12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5월 튀르키예의 관련 부서는 5월 1일부터 판재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터키 수입관세는 비합금 핫롤이 9%에서 15%로, 합금 핫롤이 6%에서 13%로, 중후판이 9%, 10%, 15%에서 15%, 20%로, 콜드롤이 10%에서 17%로 인상됐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터키는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4개 국가의 열연강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튀르키예의 제조사 Colakoglu, Erdemir, Isdemir, Habas, Tosyal의 이익을 대변하는 철강협회의 이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2023년 7월 베트남 공업무역부는 베트남 기업의 신청에 따라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산 프리스트레스 스틸 연선(HS CODE 7312.10.91, 7312.10.99)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1704/QD-BCT공고).

EU는 2023년 10월 1일부터 CBAM 전환을 시작한다. EU는 수입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및 수소의 6대 산업 상품에 '탄소 관세' 부과 예정으로 많은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제품은 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25년 2월 10일,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철강 무역 보호조치이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5년 3월 8일부터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각각 19.38%, 26.94%, 27.83%의 3개 등급의 반덤핑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기업에는 Baosteel(宝钢), Ansteel(鞍钢), Shougang Group(首钢), Shagang Group(沙钢), HBIS Group(河钢), Bensteel(本钢), Xinyu Iron & Steel Group(新余钢铁), Baogang(包钢), CISCO(重钢), Liuzhou Iron & Steel Group(柳钢), Jingye Group(敬业), Hebei Anfeng Iron & Steel(河北安丰), Zongheng Iron & Steel Group(纵横钢铁), Yanshan Iron & Steel(燕山钢铁), Rizhao Steel(日照钢铁) 등 수십개 철강기업과 무역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25일 중국산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 판재(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에 대해 4개월간(2025.3.25.~7.24) 21.62%의 임시 반덤핑세를 부과로 결정했다. 주요기업은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STX Japan Corporation,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등 4개사와 기타 생산기업이 포함되며, 반덤핑 관세 적용 품목은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등 제품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산 후판(두께 6mm 이상 철판)에 대해 반덤핑 27.91%~38.0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BaoSteel 및 관련기업과 수출업체는 27.91%,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및 관련 기업은 29.62%, XiangTan IRON & Steel Group Co.,Ltd,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등 기업과 관련 기업은 38.02%, 기타 공급업체는 31.69%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섬유 · 직물

(1) 산업 및 통상정책

중국 섬유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산업으로 오랫동안 제조경쟁력을 보유한 기둥 산업 중 하나이다. 중국은 섬유 생산 규모도 글로벌 1위이며 관련 산업사슬도 완전하게 구축했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1990년대 천연섬유와 의류, 1990년대 중반 이후 화섬직물, 2000년대부터 편직물과 화학섬유, 그리고 2010년대부터 산업용 섬유를 육성함으로써 업스트림(화학섬유/섬유사)-미들스트림(직물/염색가공)-다운스트림(의류/기타 섬유제품)에 이르는 전 섬유스트림 구축과 함께 세계 섬유 생산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화학섬유 산업 2022년 방역정책, 지정학적인 요소, 에너지 위기 등의 영향으로 수요량은 5984.1만톤으로 전년 대비 1.73% 감소했다.

중국방직공업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섬유 및 의류 수출 총액은 30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2025년 3월 7일, 세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섬유 및류의 누적 수출은 42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섬유 수출은 21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했고, 의류 수출은 21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9% 감소되었다.

(2) 수입규제

중국은 2015년 7월 14일 한국, 일본, 튀르키예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2016년 4월 1일 예비판정을 거쳐 2016년 7월 14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 시행 1년 4개월 만에 현지 로컬 기업들의 추가 제소로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한 덤핑 재조사 결과 2018년 11월 7일 덤핑 마진율을 기존 4.1~16.1%에서 8.6~21.7%로 4~5% 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2021년 7월 14일부터 일본, 한국, 튀르키예산 아크릴 섬유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조사를 통해 2022년 7월 14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하되,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산소섬유 원사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행기간은 5년(2027년까지)이다.

화학품

(1) 수입통제

중국 생태환경부은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기존화학물질 (IECSC) 2013」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2020년 4월 29일 생태환경부가 개정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를 공시(생태환경부령 제12호)). 본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시에 2010년 1월 19일에 원환경보호부가 공시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환경보호부령 제7호는 폐지) 중국 정부가 환경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감독을 중점 강조하고 있다. 관제중점은 지속성, 생물축적성, 환경과 건강위험성이 크거나 환경에 장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태환경과 대중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화학물질을 명확히 관리감독한다.

신화학물질 생산·수입 전에 신화확물질 환경관리 일반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0T(10T포함) 이상), 또는 간이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 ~10T(1T포함)을 취득하거나, 환경관리 등록(신규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이하, 신화학물질 단량체나 반응체의 함유량은 2%를 초과하지 않은 고분자 또한 저우려 고분자)을 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신화학물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동일 종류 화학물질을 다른 외국인이나 그 대리인이 중국에 등록했더라도 여전히 화학물질을 처음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4년 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년 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 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본)에는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58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신본)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및 관련 수정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제무역에서 특정 위험 화학품과 농약 사전 동의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신판 '목록'은 제한대상 화학물질을 기존 162개 화학품에서 10개로 변경하였으며, 새로 수정된 2020년판은 PFOS, 테트라메틸납 등 8개 항목으로수정했다. 새로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생태환경부 관리센터에 유독성 화학물의 수출입 신청이 필요 없게 된다. 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공고문 첨부파일에 요구되는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으면 된다.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국가안감총국 제53호)은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2012년 7월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고시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년 3월 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2015판)」(2015년 5월 1일 시행): 유독성화학목록: 기타 〈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화학품은 위험화학품목록(2015판)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이행하여 위험화학품 수입을 위해 등록해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 관리 방법》을 이행하여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험화학품목록(2015판)」 시행후 위험화학품 리스트(2002판)와 극독화학품 리스트(2002판)를 동시에 폐지했다. 본 목록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의 GHS 정의와 결합해 화학품 분류와 라벨링 규범 등 국가기준에 따라 화학품 28개 분류 중 95개 위험물 분류 가운데 위험성이 큰 81개 항목을 위험화학품 확정원칙으로 선정해 물리위험성 45개, 건강위해성 30개, 환경위해성 6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2023년, 생태환경부, 상무부 및 세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유독 화학물질 엄격 제한 목록〉은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수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등 국제협약과 중국의 2023년판 〈주요 관리 신오염물질 목록〉, 〈화학물질 최초 수입 및 유독 화학물질 수출입 환경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다. 목록에서 새롭게 추가 된 유독 물질로는 디브롬화이황화탄소(bromodichloromethane, CHBr2Cl)와 전불화옥탄산(PFOA, perfluorooctanoic acid)이다. 목록에는 화학 물질명칭, CAS 번호, 세관코드, 관리 범주 및 허용 용도가 포함되며, 〈유독 화학물질 수입 환경 관리 통관 통지서〉의 처리 설명에는 등록 조건, 신청 자료, 수리 기관, 유효 기간, 등록 기한, 결과 공개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즉 중국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는 독성 화학 물질의 생산, 수출입 및 기타 활동에 모두 적용된다. 목록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유효하며, 2019년에 발표된 〈중국 유독 화학물질 엄격 제한 목록〉(2020년판)은 폐지된다.

위와 같이 어떤 법규의 의무를 이행하든지 위험 화학품은 화물로서 운송 과정

역시 IATA와 IMDG와 같은 국제 운송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세관에서 화학품 화물의 안전, 포장 등 각 방면에 대해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중국에 통관 후 중국 내 모든 공급 사슬에서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 포장, 표시, 운송, 창고 저장 및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이 규칙에 맞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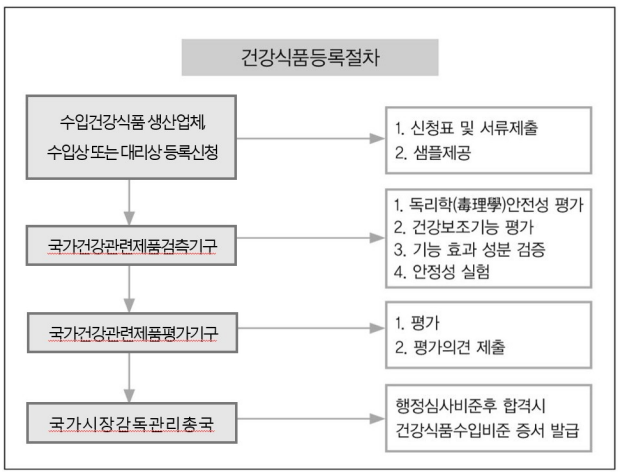
(2)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양소보충제를 보건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 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록 함량에 제한(1일 섭취량 3g 이하)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5년근 이하 인삼만 해당)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5년근 이하 인삼이 포함된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였다. 다만, 6년근 이상 인삼 또는 5년근 이하 인삼이 포함되었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식품 등록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검증기구가 발급한 검증보고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업무위탁서(대리업체 수속진행시)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2) 한·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중국에 수출하려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금의 경우 아질산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예를 들어 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막걸리는 2012년 8월 위생부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삭제하여 2013년 2월부터는 생막걸리의 수입이 가능해졌으며, 김치의 경우도 관련 식품기준(대장균군 기준)을 개정하여 2015년 12월부터 수입이 가능해 졌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항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출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2007년 특별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문식품수출증명서(수출국 정부 발행)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 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 정비하고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시험

항목도 확대 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된 식품군의 경우, 사전에 중국검역당국에 수출국 현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해관총서(GACC)의 공고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GACC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수입식품표시관리법(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울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2004년 7월에는 2005년 10월부터 새로운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중국 내 수입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签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證書)'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는 4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5년 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

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签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品標签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년 12월 GACC가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于對進口食品標签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AQSIQ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세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중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는 인쇄표시물을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반송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약품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11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업이 조정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NMP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판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수준 제고는 영세제약기업의 시장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NMP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NMP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의약품의 등급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약품 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 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의약품도 이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품과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사요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의 약품기준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이다.

NMP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 中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약전(공정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NMPA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도가 기업에 대한 NMPA의 요구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NMPA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2015년 6월 발표된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중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최초등록비용이 두배가량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3등급 의료기기의 최초등록비가 중국제품의 경우 약 15만 위안인데 반해 수입제품은 약 30만 위안에 달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

2020년 6월 29일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신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30년간 시행되어 왔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2021년부터 폐지되었다. 신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산업발전의 속에 비해 법적 규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였다. 화장품 원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화장품 판매 책임 주체 명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범위	-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이라고 명시함 - 일반 비누는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비누(예: 미백비누 등)는 화장품에 포함되므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임 - 치약은 일반화장품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하지만 화장품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치약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함
분류	-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종전의 '특수화장품'과 '비(非)특수화장품'으로 분류했던 방식을 변경하여 특수화장품은 허가관리, 일반화장품은 등록관리로 전환함 - (구)조례에 의하면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기존의 육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바디슬리밍, 제취,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개로 분류하였는데, 新조례는 염색, 파마, 기미제거,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 등 5가지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조정함
新원료	- 조례는 新화장품원료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는데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제거, 미백 기능이 있는 신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조례 하에서 (신)조례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사용해 왔던 新화장품원료에 대해서는 (신)조례 시행 후 3년의 관찰기간을 두어 3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비로소 그 해당 원료는 정식으로 당국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됨
안전 생산 및 품질 관리	-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 인원,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함 - 화장품 생산기업은 정부 감독관리 당국에서 제정한 생산품질 관리규범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제품안전평가를 진행하는 전문인원을 배치하고 생산기업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점검·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보존기간은 최소 2년임
라벨 및 광고	-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되어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했음 - 의학적 효능을 명시·암시하는 내용, 과대·허위 선전·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금지 내용 등은 표기가 금지됨 - 조례는 화장품 광고 및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연구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구분	주요 내용
수입 화장품	- 수입화장품 중 특수화장품은 중앙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일반화장품은 각 지방 부처에서 비안신고를 하도록 하여 구분하고 특수화장품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 수입화장품은 '화장품허가·등록인'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법인을 지정해 제품의 인증·등록, 제품 판매, 불량반응 측정 및 리콜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 화장품허가·등록인은 수입제품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운영, 리콜 등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 관리	-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는 화장품 입점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해야 하며 법위반 행위 발견 즉시 약품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하고 판매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등 관리책임을 부과함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 무허가 생산, 화장품 금지·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법 소득의 3~5배 벌금 부과, 생산과 영업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경과 규정	-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등록한 육모·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그 과도기 내에는 생산·수입·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음

희토류

(1) 개관

중국의 자원세 부과 기준은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발업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종전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자원세 부과기준을 변경하였다. 2016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전광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 · 숲 · 초원 · 갯벌 등 자연자원에

대해서도 자원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세 종가세 적용은 자원의 판매 기준가격에 따른 광산별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희토류는 현대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 전략 자원으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희토류 산업의 진입 기준, 산업 통합, 환경 보호 등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 조치를 발표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 보장하고 있다. 2024년 6월 국무원은 〈희토관리조례〉를 발표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발표는 중국당과 국가가 희토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며,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의를 보여준다. 〈조례〉는 주로 관리시스템, 프로젝트 승인, 총량 제한, 종합 활용, 환경 보호, 판매유통, 제품추적, 수출입 관리, 비축 관리, 법적 책임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를 뒀다.

중국 상무부는 2025년 4월 4일 중희토류 관련 제품 수출통제를 실시관련 조치를 발표했으며, 발표 당일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7가지 중희토류 제품(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관련 33개 세부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민,군 겸용 품목으로 규정하고, 수출시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심사,허가 취득을 의무화 했다.

(2) 희토 생산 총량 정책 운영

덩샤오핑(鄧小平) 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稀土)가 있다”며 휴대용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성장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엄격한 생산과 수출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37%, 세계 생산량의 63%를 점유하고 있다. 한때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까지 생산하였으나 최근 호주, 미국 등에서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낮아졌다.

중국은 2007년부터 국토자원부에서 공신부로 희토류 생산관리 부서를 전환

하여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도입된 수출쿼터와 수출관세는 2014년까지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희토류 수출쿼터는 2005년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 2010년 30,250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 2013년 31,001톤, 2014년 30,610톤까지 축소되었고, 중-일 센가쿠열도(釣魚島) 분쟁 이후 촉발된 대 일본 희토류 수출금지는 불과 3개월 사이에 희토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 수출 제한정책은 미국, 일본, EU등 대외 수요국가의 불공정 무역 시비를 촉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희토 광산 개발과 재가동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수출 통제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하였고, 2014년 3월 6일 WTO는 중국에게 "협정 위반"을 판정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희토 수출정책 폐지를 선언하고, 아울러 2015년 5월 1일부로 기존 15% 수준인 희토의 수출관세도 폐지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국제사회의 불공정무역 논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희토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마련하고, 대기업 중심의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인 통합과 재편을 준비하여 2014년 4월 1일 「全国大型稀土集团组建"1+5 方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 희토생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바오토(包头)지역은 국유기업인 바오강(包鋼)이 주축이 되어 북방희토집단을 구축하고, 그 외 5개 지정기업은 우쾅(中国五矿), 중뤼(中国铝業), 중국남방(中国南方), 광둥희토(广东稀土), 샤먼우에(厦门钨業)이며, 이들 6개 희토기업은 중국 희토생산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국유 대기업은 지역별 산재된 영세 또는 민영 희토광산과 희토 분리·정제 기업을 지분참여 방식으로 합병하며,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며, 2016년 말 기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무원의 검사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희토 생산총량 비준량은 14만톤(경희토 12만 850톤, 중희토 1만 9,150톤)이며, 이들 6개 집단에 100% 배정되었다. 이들 6개 대형집단은 전체

23개 광산 중에 22개, 전체 분리·정제기업 59개중 54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희토 가격 약세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부진하며, 우쾅(五矿)희토 등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불법 채광 및 생산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 등의 불법생산에 힘입어 생산재고량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 탄소중립 전환 및 산업고도화에 따른 희토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공신부와 자연자원부는 기존의 연2회 발표하던 관행과 달리 2023년에는 3차례 희토류 채굴 및 쿼터를 발표했다. 2023년 1,2,3차 합친 희토류 채굴과 제련 쿼터는 25만 5000톤과 24만 3580톤으로 2022년 대비 각각 21.4%와 20.6% 증가했다.

2024년 제1, 2차 합친 희토류 채굴 쿼터는 27만 톤으로 2023년 대비 12.5%증가, 제련 쿼터는 25만4000톤으로 2023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중국 정부의 생산 총량 지표는 확대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 2024년 경희토 쿼터는 25만850톤으로 2023년 대비 특히 최근 들어 경희토 중심으로 채쿨 쿼터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보호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중희토류 생산은 통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1차		2차		3차	
	채굴	제련	채굴	제련	채굴	제련
2022년	100800	97200	109200	104800	/	/
2023년	120000	115000	120000	115000	15000	13850
2024년	135000	127000	135000	127000	/	/

*경희토(단위:톤)(연도, 비중): 190850(2022, 90.9%)→235850(2023, 92.5%)→250850(2024, 92.9%)
*중희토는 2021년부터 1만9150톤 유지

(3) 외국인 투자 제한 동향

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광, 선광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으며, 「희토산업 1+5」 정책에 따라 6개 대형집단을 제외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탐사권 및 채광권 신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내수 또는 해외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2024년판 중국의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희토류, 방사성 광물,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활동에 대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

중국 정부조달 현황

중국에서 정부조달이란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事业单位)와 단체조직(团体组织)이 국가 재정자금(财政资金)을 사용하여 법에 의해 제정된 집중조달 목록에 포함되거나 특정금액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공사, 용역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정부조달 개요

(가) 정부조달 당사자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자는 정부조달 관련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여러 주체를 의미하며, 조달자, 조달대행기구 및 공급상이 이에 해당한다. 조달자(采购人)는 법에 따라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조직을 가리킨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중국 정부조달의 조달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조달법〉 등 법률은 국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중조달기구(采购代理机构)는 조달대행기구로서 비영리사업법인에 해당하며 조달자의 위임에 따라 조달 업무를 처리한다. 공급상(供应商)은 조달자에게 물품,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2명 이상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정부조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다. 공급상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구비

- 양호한 상업신용과 건전한 재무회계제도 구비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비와 전문기술능력 구비
- 법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장자금을 납부한 양호한 기록 유지
- 정부조달활동 참가 전 3년간 경영활동 중 중대한 불법 기록이 없을 것
-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충족

(나) 정부조달 조직방식

집중조달(集中采购)과 분산조달(分散采购)이라는 조직방식과 결합하여 조달을 실행한다. 집중조달이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항목을 집중조달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거나 부서집중조달을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중조달에는 정부집중조달과 부서집중조달이 있다. 정부집중조달의 주체는 각급 정부이고, 부서집중조달의 주체는 각급 정부 산하 국(局), 위원회(委员会) 등 부서이며, 정부집중조달 목록은 정부의 통일적인 기술, 서비스 표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 목록을 제정하며, 부서집중조달은 각 부서의 내부적인 특별 요구에 따라 해당 부서의 상황에 부합되는 통일적인 조달이 가능한 제품, 서비스 목록을 제정한다. 분산조달이란 조달자가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며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되지 않은 항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조달대행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중조달의 범위는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가 집중조달목록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중앙 예산에 포함되는 정부조달항목의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확정 및 공시하고, 지방 예산에 포함되는 정부조달항목의 집중조달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기관이 확정 및 공시한다. 분산조달은 집중조달기구가 조달하는 항목 및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항목 이외 등을 대상으로 각 부서가 〈정부조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조달대행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조달방법

정부조달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개입찰, 초청입찰, 경쟁성담판, 가격조회, 수의계약, 경쟁성교섭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이 중 공개입찰은 정부조달의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개입찰이란 조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정부조달대행기구가 입찰공고방식으로 불특정 공급상을 초청하여 응찰(投标)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 중 가장 적절한 공급상을 선정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은 정부조달제도 중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이다.

초청입찰은 선택성 경쟁입찰(选择性招标)이라고도 하는데, 조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정부조달대행기구가 응찰요청서의 방식으로 3개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공급상에게 응찰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경쟁성담판은 조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정부조달대행기구가 이미 제정된 심사기준 또는 거래원칙에 따라 여러 공급상과 조달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담판을 진행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공급상을 확정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가격조회는 선택구매라고도 하는데, 조달자가 가격문의팀을 구성한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에게 조달물품 가격조회 통지서를 발송하고,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공급상이 일차적으로 고정가격(변경불가)을 제시한 후 가격조회팀이 이와 같이 가격을 제시한 공급상 중에서 최종 거래공급상을 확정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수의계약은 직접조달이라고도 하는데, 조달 대상인 물품 또는 용역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이를 공급하는 공급상이 단 한 곳 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조달자가 직접 해당 공급상으로부터 조달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쟁성교섭이란 조달자나 정부조달대행기구가 경쟁성교섭팀을 구성하면, 경쟁성교섭팀이 어떤 공급상, 물품, 공사 또는 용역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급상에게 교섭문서를 제시하고, 공급상은 이러한 교섭문서상의 요구에 따라 응답문서 및 견적을 제출하며, 경쟁성교섭팀은 응답문서 및 견적을 평가한 후 후보공급상 리스트에서 최종 거래공급상을 확정하는 일련의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각 조달 방식별 특징

중국		한국	
공개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일반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 진행
	• 공개경쟁원칙을 우선		• 일반경쟁원칙을 우선
초청 입찰	• 해당사업에 적격인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지명 경쟁	• 해당사업에 적격인 업체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경우 • 공개입찰방식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조달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입찰에 대한 비용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단일 구매 조달	• 조달자가 직접 공급상을 선정 및 조달을 관리하는 방식	수의 계약	•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유일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경우 •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원래 조달사업의 일치성이나 관련 서비스 요구를 보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원래 공급자로부터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비밀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인 경우 • 생산·소비자가 1인인 물품 등인 경우
경쟁성 담판	• 직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초청해 담판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조달하는 방식
	• 입찰 공개 후 입찰에 참가한 공급자가 없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한 공급자가 없어 새로운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 하여 상세한 규격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 입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지 않은 경우 •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		• 입찰 참여 방식보다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방식임
가격 조회	• 3개 이상의 공급상이 제공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으로 조달하는 관리방식	다수공급자 계약	•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선 체결하고 계약된 여러 물품 중 수요기관이 구매할 할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요청하는 방식
	• 조달상품 규격, 표준이 통일적이고 상품 공급원이 충족하며 가격 변화가 작은 정부조달 사업인 경우		
협의 공급, 지정 구매	• 공개입찰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를 우선 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방식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

(2) 정부조달 법령체계

중국 정부조달 법령 체계는 중국 법률 체계 및 효력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법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법률이다. 〈정부조달법〉은 총 9장 8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i) 정부조달 당사자, (ii) 정부조달 방식, (iii) 정부조달 절차, (iv) 정부조달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법〉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판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들도 정부조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법률이다.

(나) 행정법규

중국 국무원에서 〈정부조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실시조례〉(이하 〈정부조달법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실시조례〉는 〈정부조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에 대한 해석과 보충으로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요하고 자주 인용되는 행정법규이다.

(다) 부문규장

재정부 등 국무원 산하 부서에서 제정한 〈정부구매용역 관리방법〉, 〈정부조달 정보 배포관리방법〉, 〈정부조달질의 및 이의제기방법〉,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관리방법〉,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관리방법〉, 〈정부조달정보 공고관리방법〉, 〈정부조달대행기구 자격인정방법〉 등 부문 규장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문 규장이다.

(3) 정부조달 규모 및 특징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중국 정부조달 규모는 3조 3,929.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이는 정부 재정지출의 약10% 수준이다.

최근 5년 중국 정부조달시장 규모

(금액단위: 억 위안)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규모	33,067	36,971	36,399	34,993	33,930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물품, 공사 및 서비스의 정부 조달규모는 각각 7,738.1억 위안, 14,486.8억 위안 및 11,704.8억 위안으로 전국 정부조달 규모의 22.8%, 42.7%, 34.5%를 차지하였다.

조직 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집중조달, 기관집중조달, 분산조달의 규모는 각각 8,038.3억 위안, 1,522.4억 위안 및 24,369억 위안으로 전국 정부조달 규모의 23.7%, 4.5%, 71.8%를 차지하였다.

조달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공개입찰(公开招标), 초청입찰(邀请招标), 경쟁성 담판(竞争性谈判), 경쟁성교섭(竞争性磋商), 가격조회(询价), 수의계약(单一来源采购), 기본협약 조달규모는 각각 전국 정부조달 규모의 76.3%, 0.6%, 1.8%, 12.3%, 0.6%, 3.1%, 1.5%를 차지하였다.

정부 조달 정책의 기능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녹색 발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및 절수제품의 의무 조달 및 우선 조달 규모는 357.2억 위안에 달해 유사 제품 조달 규모의 83.9%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국 정부 조달이 중소기업에 부여한 계약 금액은 25,239.8억 위안으로 전국 정부 조달 규모의 74.4%를 차지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변화

중국 정부조달시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3조 3,929.6억 위안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 거대한 시장으로, 관련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부조달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新基建; 신인프라건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 〈외상투자법실시조례〉 등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확인하였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정부조달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각 지역별, 기관별, 업체별 정부조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참여 방식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중국 정부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15일 중앙심화개혁위원회는 〈정부조달제도 개혁방안〉(이하 개혁방안)을 통과시켰다. 개혁방안은 (i) 조달자 주체의 책임 강화, (ii) 정부조달거래제도의 완벽화, (iii) 정부조달의 경제사회발전 추진 역할 발휘, (iv) 각 정부조달주체가 정부조달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의 보장, (v) "인터넷+정부조달"을 통하여 정부조달의 감독관리 능력, 운영 효율 및 서비스 수준 제고, (vi) 정부조달의 전문화 수준 제고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방안을 기반으로 여러 개혁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중국 정부조달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i) 2020년 3월 중국 재정부는 〈정부조달공고와 공시 정보 양식 규범(2020년 버전)〉을 공시하여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 공시 양식을 통일하였고, (ii) 2019년 7월 26일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 및 2020년 1월 15일 〈중앙국가기구 정부조달 전자매장관리잠행방법〉을 발표하여 정부조달 관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공급상의 정부조달활동 참여의 편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는 정부조달에 있어서 중국 로컬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외상투자법〉, 〈외상투자법실시조례〉는 조달, 상장 등 분야에서의 외상투자기업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확히 수립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新基建; 신인프라건설)에 대한 중국 내 정부조달 시장의 성장세는 코로나로 인해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을 추진하면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바, 다음 각 분야에 대한 정부조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i) 5G,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위성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ii)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신기술 인프라, (iii) 데이터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 등 정보인프라시설, (iv)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응용하여 전통적인 인프라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에 더하여 스마트 교통 인프라,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등을 통·융합하는 인프라시설, (v)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는 공익적 속성의 인프라.

상기한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 관련 분야 이외에도 중국 내 의료, 환경, 안전 분야의 발전과 수요, 즉, (i) 중국 공공 의료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의료보험의 대상, 약품 등 범위 확대로 인한 의료 업계 발전, (ii) 중국 친환경 정책에 따른 친환경 시설, 설비, 교통 수단 관련 분야의 발전 및 (iii) 안전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안전 시설, 설비 관련 분야의 발전에 따라 이들 관련 분야에 있어서 중국 정부조달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조달시장 개방

2020년 11월 현재 중국 조달시장은 미개방이나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으로 7차 양허안을 WTO의 정부조달 위원회에 제출(2019년 10월)한 바 있다. 7차 양허안은 6차 양허안보다 개방기관 및 대상, 금액 확대, 적용 시기를 단축한 내용이다. 기 가입국의 개방 확대 요구를 수용한 모습이나 인프라 관련 국유기업 일부만 포함한데 그쳐 협상에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가입에 유럽은 적극적이나 미국은 처음과 달리 소극적 입장이며 중국의 GPA 가입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6월 체결될 한중 FTA의 정부조달 분야는 일반적인 협력 및 정보 교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조) built-in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GPA 가입 추진경과

단위 : SDR(10만SDR≒1.6억KRW)

양허안	개방기관	개방대상	개방금액	유예
제1차 (2007.12)	중앙기관 50개 공공기관 14개	물품(3종) 용역(2종) 공사(1종)	▸중앙: 물품 50만, 용역 400만, 공사 2억 ▸공공기관: 물품 90만, 공사 3억	15년
제2차 (2010.7)	중앙기관 61개 공공기관 14개	물품(전체) 용역(9종) 공사(다수)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1억(5년차 5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2억(5년차 1억)	5년
제3차 (2011.11)	중앙기관 61개 지방정부 5개 공공기관 14개	물품(전체) 용역(11종) 공사(같음)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8천만(5년차 1500만) ▸지방: 물품용역 75만(5년차 40만), 공사 1.5억(5년차 3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2억(5년차 1억)	5년
제4차 (2012.11)	중앙기관 60개 지방정부 8개 공공기관 14개	물품(전체) 용역(같음) 공사(같음)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5천만(5년차 1500만) ▸지방: 물품용역 75만(5년차 40만), 공사 1억(5년차 3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2억(5년차 1억)	5년
제5차 (2014.1)	중앙기관 63개 지방정부 14개 공공기관 8개	물품(전체) 용역(15종) 공사(같음)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5천만(5년차 1500만) ▸지방: 물품용역 75만(5년차 40만), 공사 6천만(5년차 2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8천만(5년차 4천만)	3년
제6차 (2014.12)	중앙기관 63개 지방정부 19개 공공기관 22개	물품(전체) 용역(20종) 공사(전체)	▸중앙: 물품용역 20만(3년차 13만), 공사 1천만(3년차 500만) ▸지방: 물품용역 50만(3년차 35.5만), 공사 2500만(3년차 15백만) ▸공공: 물품용역 60만(3년차 40만), 공사 2500만(3년차 15백만)	3년

양허안	개방기관	개방대상	개방금액	유예
제7차 (2019.10)	중앙기관 64개 지방정부 26개 공공기관 66개	물품(전체) 용역(35종) 공사(전체)	▸중앙: 물품용역 20만(2년차 13만), 공사 750만(2년차 500만) ▸지방: 물품용역 50만(2년차 20만), 공사 750만(2년차 5백만) ▸공공: 물품용역 60만(2년차 40만), 공사 1000만(2년차 5백만)	2년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전쟁의 시대 도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식재산권 진흥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세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 G2로 부상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의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향후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세기의 특허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중국 통신장비·핸드폰 기업인 화웨이가 10여개의 특허권에 대해 삼성전자를 선전에서 기소하여 시작된 중국내 양기업간의 특허분쟁은 2019년 2월 양기업의 합의로 종료되었으나, 앞으로 중국 안에서 중국기업과 우리기업 간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영역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등으로 한중간의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기업 모두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법률 개정 동향

(1)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중국은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2008~20년)」를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통해 중국은 2020년까지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를 건설하고, △차세대 IT,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공학설비, 첨단 선박, △선진 철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대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2014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관리효율향상,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확대, 지식재산권 인력양성·정보제공·법제도 개혁 등 5개 분야에 걸쳐 2020년까지 중국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의 10대 기술은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산업으로 발전되어, 이들 분야 중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국은 2018년에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하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는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국은 2021년에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2021~35년)」 제정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2035년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국무원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재산국의 소속을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국무원 직속 기구로 변경하여 기관의 위상과 업무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은 중국형 현대화 및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기반으로 간주되며, 지역별 강성(强省), 강시(强市) 사업이 확대되고, 특허 · 상표활용과 산업화 연계 정책도 강화되었다.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중국의 2011년 발명특허 출원량(52.6만 건)이 처음으로 미국(50.4만 건)을 추월하여 특허출원 분야에서 G1으로 부상하였으며, 2017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였다. 2018년 발명특허 출원(154.2만 건)은 2017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하강 등에 따라 2019년 발명특허 출원(140.1만 건)은 2018년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2021년 발명특허 출원(158.6만 건)은 2020년 대비 5.9% 증가하여 7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발명전리출원은 1,677,701건(국내 발명전리 1,522,292건, 해외 발명전리 155,409건), 실용신안전리출원은 3,063,928건(국내 실용신안전리 3,057,150건, 해외 발명전리 6,778건), 디자인출원은 82,0361건(국내 디자인 80,4007건, 해외 디자인 16,354건), 상표출원은 7,188,336건(국내 상표6,988,704건, 해외 상표 199,632건)이다.

2023년 기준으로 등록유지되고 있는 유효발명전리는 4,990,633건(국내 발명전리 4,088,695건, 해외 발명전리 901938건), 유효실용신안전리는 12,128,677건(국내 실용신안전리 12,075,757건, 해외 실용신안전리 52,920건), 유효디자인은 3,233,684건(국내 디자인 3,115,376건, 해외 디자인 118,308건이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지식재산권 출원은 2023년 기준으로 발명전리는 20,016건, 실용신안전리는 1,334건, 디자인은 1,850건, 상표 14,316건이다.

(3)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제·개정 내용 및 특징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가운데 지속적인 외국 투자유치, 기술획득, 기술자립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2019년 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상표법」에 대해, 2019년 4월 4차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상표법 개정) 중국은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23일 4차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을 거절·이의신청·무효의 사유에 포함시키고,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 상한을 1~3배에서 1~5배로 확대시켰으며, 악의적 상표출원 및 악의적 소송과 관련된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이다. 4차 개정 이후 현재 상표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2023년 1월 상표법 개정안 의견수렴본 공개),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 상표출원시 사용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개정) 중국은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특허실시와 활용 촉진, 특허권 수여 제도 개선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의 성실신용원칙 및 특허권 남용 금지 원칙이 신설되었고,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의약품의 시장 판매를 위한 시험 기간 등에 대한 특허기간 보상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특허실시와 활용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 규정을 개선하고,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강화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개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허권 수여제도 개선을 위해,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디자인권의 6개월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 실용신안의 우선권 서류 제출기간을 16개월로 연장하였다.

2024년에는 「특허법 시행세칙」 및 「특허심사기준」이 개정시행되어, 심사기준 명확화 및 디지털·AI 기술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되었다.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는2024년 초 수정 초안이 공개되어 의견 수렴 중이며, 창작성 요건 명확화, 무단복제 행위 규율 강화, 디지털 전송 경로의 보호 포함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 각급 법원의 지식재산권 소송 동향 및 특징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국 법원의 각종 지재권 1심 사건 접수는 2013년 10.1만건에서 2020년 46.7만건으로 연평균 24.5%씩 증가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보다 연평균 12.8% 높은 증가율을 보여 지재권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이 28만 3,414건(2017년 20만 1,039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1심 사건은 1만 3,545건(2017년 8,820건)으로 전년 대비 53.6%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1심 사건은 4,319건(2017년 3,621건)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법원이 1심, 2심과 재심청구 등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48만 1,793건을 신규 접수하였고, 47만 5,853건을 종결하였으며, 2018년 대비 각각 44.16%와 48.87%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한 모조품 침해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으며, 2018년에는 행정기관의 모조품 침해조사 건수가 21.5만 건(2017년 20.0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 등 3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데 이어, 2020년 해남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술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법적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외국인은 법원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여, 외국인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어려운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관련 분쟁이 전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대중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중국은 2020년 10월 2035년 경제와 과학기술 종합국력 신장, 혁신국가 선두그룹 진입 등의 목표를 포함한 「14차 5개년(2021~25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발전과 안보 통합, 현대화 경제 체계 구축,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국제 쌍순환 상호촉진을 통한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생명건강, 뇌과학, 생물육종, 항공우주, 지하 및 심해 탐색 분야 기술을 미래 중점 기술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가운데 2019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2020년 4월 「2020~2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미중 1단계 경제무역합의」에 서명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특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저작권법」을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 하였다. 이번「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제도를 2008년 도입하였다. 2023년 기준 중국 전체 특허·상표 담보 대출 금액은 약 8539.9억 위안으로 2022년 대비 75.4% 증가하였다. 그 중1000만 위안 이하의 보편적 전리·상표 담보 대출은 약2.6만 개 기업에 혜택을 주었다. 금융감독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제1차20개 지식재산 담보 금융 및 보험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였다. 데이터 지식재산 담보 금융 업무는 국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건설 제2차 최우수 실천 사례에 선정되었다. 세계지식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지식산권 금융 국가 보고서를 편찬·발표하였다.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시행(2008년 8월 1일) 후, 6개 외국기업의 LCD패널 가격담합행위(2013년 1월, 607억 원), 茅台/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2월, 780억 원), 분유업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8월, 1,217억 원),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의 가격담합(2014년 8월, 2,053억 원), 폭스바겐, 벤츠, 크라이슬러, 닛산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4년 9월~2015년 9월, 총 1,500억 원), 퀄컴(Qualcomm)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2015년 2월, 1조 650억 원), 스위스 포장회사 테트라팩의 시장지배적지위 낭용행위(2016년 11월 1,100억원)에 대해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노키아(Nokia) 휴대폰사업인수건(2014년 4월), 휴렛페커드의 삼성전자 프린터부문 인수건 (2017년 10월), 가스회사인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합병건 (2018년 9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스플래시 등 사업부 인수(2021년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지분 인수(2022년 12월) 등에 대해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업간의 인수·합병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2008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중국 경쟁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외국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였다.[5] 또한 반경쟁적 행위 조사 및 기업결합 심사 진행에 있어 관련 절차의 불투명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반독점법」 제정 이후 그간의 경제 상황 변화, 축적된 반독점법 집행 경험, 국제적 논의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반독점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독점협의 금지규정〉,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배제하는 행위 제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경쟁법 집행 체제를 더욱 견고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 경쟁법 개관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부정당경쟁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경쟁법을 관장하는 기구는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非의결기구로서 국가발개위, 상무부, 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며,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간 집행업무의 협조 ·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종전에는 국가발개위(가격관련 법위반행위 담당), 상무부(기업결합 심사

5) 경쟁분야의 주요 매체인 www.globalcompetitionreview.com, app.parr-global.com 등의 분석기사 참고. 다만 2021년 들어 중국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 메이투완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각각 3조 1천억원, 6,353억원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음.

담당), 공상총국(가격과 관련없는 법 위반행위 담당) 3개의 기관이 경쟁법의 집행을 분장하고 있었으나, 201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경쟁법 집행기능을 일원화하였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 성 · 시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직접 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은 관할 성급 시장감독관리국에 위임 처리한다.

독점협의(카르텔)와 부당한 가격행위

중국에서는 독점협의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경영자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때에는 처벌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경쟁자 간 수평적 독점협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가격법」이 적용되는 '부당한 가격행위'에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가격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행위 등이 있다.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선한 상품 판매, 재고상품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 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교란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허위광고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경품판촉행위,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한 경쟁자의 신용 및 명예 손상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의 정상영업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가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2017년 11월에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바,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열거되었던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행위, 입찰담합, 공기업 및 법률상 독점기업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정부기관 등의 행정권력남용행위 등은 반독점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가 신설되었다. 2019년 4월 23일에는 반부정당경쟁법 중 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상업비밀의 범위·비밀침해 주체·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악의적 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반부정당경쟁법」개정 초안이 상정되어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 양태를 포섭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중국은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20억 위안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4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기업결합 간이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5%미만,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자 집중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어 2024년 기준 623건이고 전체 경영자 집중 사건의 약 90%인 566건을 간이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간이안건의 건당 평균 심사기간은 17.5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건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4년경부터 사전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여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기업인수·합병 추진시 중국 반독점법에 따른 사전신고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처벌 등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기업결합 실시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쟁제한효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집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2017년 11월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20만 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300만 위안까지 확대하는 등 법위반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현재 의견수렴중인「반부정당경쟁법」개정안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간의 법적책임을 균등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장벽

해운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한다는 방침 하에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조출료(早出料, dispatch money;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1년 9월 20일)」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국제해운조례」를 제정, 시행(2002년 1월 1일)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국내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한 것은 해운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의 운임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2005년 12월 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을 허용하였고, 旣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대리업 5백만 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 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 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2013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하여 외상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만이 선박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비를 부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 국적 해운사 합병으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지 항만투자를 통해 물류거점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국영 해운회사 COSCO와 중국해운 그룹 2개사가 합병한 중국원양해운집단(중국 COSCO 해운)이 2016년 2월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중국원양해운집단이 보유한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총 1,114여척으로, 네덜란드의 AP 몰러-머스크 사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중국 국영 항만운영업체인 초상국 그룹(China Merchants Group)은 향후 5년 내 동남아, 아프리카, 발트해 및 러시아 지역에 10개 이상의 해외 항만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성별로 항만의 건설 및 운영, 선박의 운항 등 관련업체를 하나의 항만집단으로 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후 중국 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었다.

중국 교통운수부, 상무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26일부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및 6개의 보충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한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상 네커티브 리스트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 조치 중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업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에서 항공분야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 항공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배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단일 외국 투자자 및 그 계열사의 투자 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고,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 항공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중국 국적의 시민이어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일반 항공 회사는 합자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 기타 일반 항공 회사는 중국 측이 지배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민간 공항의 건설 및 운영은 중국 측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은 공항 관제탑(타워)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항공 운송 관련 분야인 항공유 조달, 항공기 정비, 화물 창고, 지상 서비스, 기내식 등 네거티브리스트에 없는 분야는 외국인 단독 또는 지배적 지분이 허용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중국은 아시아 44개국, 아프리카 27개국, 유럽 36개국, 아메리카 23개국, 오세아니아 10개국 등 총 150개국과 항공운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4년말 기준 중국의 민용공항은 262개, 보유항공기 4,365대이다. 2025년 하계 운항기준 운항횟수는 국내선 여객편은 주간 95,207회, 화물편은 주간 2,397회, 국제선 여객편은 주간 17,512편, 화물편은 주간 5,434편 운항예정이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대만은 각각 주간 1,454편, 668편, 764편

운항예정이다. 그리고 2024년 중국 항공매출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국제공항, 동방항공, 남방항공의 매출액은 각각 1,667억 위안, 1,321억 위안, 1,742억 위안이며 순익은 각각 -2.4억 위안, -42.3억 위안, -17.0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체항공사의 매출액은 6,750~7,0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2024년 중국의 국제 여객 운송량은 2019년 대비 95.5%로 회복되었고, 화물수요는 22.1% 증가하였다.

운송·물류

먼저, 국제 해운 분야에서 ①국제 선박 운송은 중외 합자 또는 협력 기업 형태만 허용하고, 외국인 출자 비율 49% 이하 (중국 측이 최소 51% 지분 보유)이며, 이사장 및 총경리는 중국 측 인사를 임명한다. ② 국제 선박 대리업 (자유무역시험구 시범 적용) 은 외국인 지분 51%까지 허용(일반 지역보다 완화)하고, 공공 국제 선박 대리업무가 가능하다. ③국제 해운 화물 창고업무(자유무역시험구 포함) 및 컨테이너 하역/야적장 업무 (자유무역시험구) 는 외국인 단독 출자가 허용 된다.

국제 화물 중개 (포워딩) 업무는 중외 합자/협력 기업에서 외국인 출자 비율 75% 이하 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측 최소 25% 지분 보유)

도로 운송 분야 중 여객은 중외 합자/협력 기업만 허용하되 외국인 비율 상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화물 운송 및 하역, 창고 등은 중외 합자/합작 형태로 가능하며, 외국인 비율은 75%까지 허용된다. (특수 분야:冷链물류, 복합운송 등은 추가 완화 가능)

철도 화물 운송은 외국인에게 허용하되, 중국 측의 지배적 지위 유지 의무가 있으며(프로젝트 유형별 구체적 비율 심사 후 결정), 항공 운송 분야 중 항공화물 운송은 외국인 출자 비율 25% 이하(중국 국적 항공사를 통한 운영 필요), 항공화물 터미널 운영은 중외 합자 기업만 허용하되,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여야 한다.

물류 창고 및 지원 서비스 중 일반창고 운영은 외국인 단독 출자가 허용되나, 특수 창고(예: 냉장 창고)는 지역별 정책에 따라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

법률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시(2001년 11월)의 양허안과 「외국 변호사사무소 중국대표기구 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에 따라 외국 로펌은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중국 주재 외국 로펌 대표처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중국법률사무[6]를 포함하지 않는 다음의 활동이다.

①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을 제공

② 의뢰인 혹은 중국로펌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업무를 처리

③ 외국의뢰인을 대표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중국법률에 관한 사무를 위임

④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장기간의 위임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

⑤ 중국법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외국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개인은 자문회사 또는 기타명의로 중국 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로펌 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가 고용한 보조인원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 로펌(중국 대표처)는 중국 법률사무소에 투자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변호사와 손익을 분담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연합

6) 중국은 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국법률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①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 ②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증명을 제공, ③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④중재과정에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 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 ⑤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에서 수권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 등록, 변경, 신청, 비안수속 및 기타 절차를 수행.

사무실을 만들거나 인원을 중국법률사무소에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지분적 권익을 향유할 수 없다. 다만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어 완화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법률서비스분야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특칙

-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은 직접 중국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되어 중국 국내의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중국 국내 변호사의 업무 수행 권리를 향유하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대만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방식으로 대만 관련 혼인, 상속 등의 소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외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면서 자격 취득국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과 변호사 직업윤리·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중국에 외국 로펌의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하며,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한다.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차가 완료된다. 등기를 마찬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해 연도 감사, ▸대표처 설립 후 소속 파견인원, 현지인원에 대한 등록, 처리, ▸인원 변동에 따른 사항 등록/취소, ▸연도감사와 별도로 사법국에 통계자료 제출, ▸사법국 지정 시스템 상의 자료 등록(별도 ID/PWD 보유) 등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제, 신사업 진출에 제한 등을 두고 있다.

2018년 4월 중국 정부는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선물,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규제를 3년 내에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단일 지분 20%, 합계 지분 25%)을 2018년말 완전 폐지하여 외국계 은행이 중국 내에서 자회사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증권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49%)도 2018년말까지 51%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50%)도 2018년말 51%로 확대되었다.2019년에는 중국 정부가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조치를 발표하여 증권회사, 선물회사 및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 폐지 조치 시기를 2021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이 2020년에 완전 폐지되어 외국 금융기관들이 증권 및 선물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도 2021년 3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현재의 금융감독관리총국)는 외국자본의 100% 소유 허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다만 상한폐지 이후에도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지분취득이나 영업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허가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5년 5월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는 총 32개사이다. 은행이 10개사(현지법인 5개, 지점 9개, 사무소 2개), 보험회사가 8개사(생명보험 2사, 손해보험 6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가 11개사, 그리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개사로 현지법인 및 사무소 등의 형태로 운영중이다.

은행의 경우 2024년 중국 경기둔화, 한국계 기업의 대출 수요 감소, 금리하락 등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감소하였다. 금융투자사의 경우 중국 자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승인조건 강화, IPO 규제 강화 등 중국 내 외국 금융투자사의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일부 자산운용사는 사업을 철수하였다. 반면에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였고, 주식시장 회복과 저금리 추세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 자본과의 합작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한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 은행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계은행의 중국내 법인 설립 및 중국 개인대상 리테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점포확장 및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이었으나,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여전히 매우 낮고 중국계 대형 국유은행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1993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007년 법인설립을 개시하여 점포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규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계 은행 점포는 2006년말 26개에서 2024년말 현재 96개(영업점 95개, 사무소 1개)로 증가했으며, 초기 북경, 상해, 심천, 청도 등 한국인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점포망도 중경, 서안, 성도, 하얼빈 등 서부내륙, 동북부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계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범위도 중국현지인 개인금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 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 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가) WTO 가입 후 은행업 현황

WTO 가입 후 2006년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통해 외국계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은행 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이며, 단일주주 외자은행, 중국과 외국의 합자은행이 각 분지행에 제공한 운영자금의 총합은 총행 자본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예금, 단기·중기·장기대출, 어음인수와 어음할인, 정부채권 대리발행·대리상환·인수, 정부채권·금융채권 매매·주식 이외의 기타 외환유가증권 매매, 신용장업무 및 담보제공, 국내외 결산·자기명의 또는 타인명의의 외국통화 매매, 대리수납·대리보험업무·동업자간 자금차입, 대여금고 제공·신용조사 및 자문업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허가한 기타업무 범위 내 일부 또는 전부 외환업무와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단일주주 외자은행, 중국과 외국의 합자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위안화와 외화 환전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나) 제약 조건

중국내 한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총자산 기준)은 0.1%에 미달하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5% 준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Coverage Ratio ≥ 150% 등 엄격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 증대가 쉽지 않고, 또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각종 신사업 진출시 중국계 대형은행과 동일한 진입규제와 감독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증권업

2018년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한도가 51%로 확대되고

2020년에 동 규제가 폐지되었다. 다만, 지분취득을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자 지분 한도 폐지에 따라 2021년 8월 제이피모건(JP Morgan), 2021년 10월 골드만삭스가 외국인 완전 소유를 승인 받았으나, 이후에는 외국인 완전소유 증권사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도 QFII제도 도입(2002년 11월), RQFII제도 시행(2011년 12월), 후강통 시행(2014년 11월), 선강통 시행(2016년 12월), QFII·RQFII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2020년 5월), QFII· RQFII 신청자격 완화 및 투자범위 확대(2020년 9월), 외국인의 중국내 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매매 시스템(후강통, 선강통)을 통한 ETF상품 거래 합의(2022년 5월) 및 ETF 거래조건 완화(2024년 4월), 중국내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2022년 6월), 중국기업 해외상장 허가제의 신고제 변경(2023년 2월), 본토-홍콩간 이자율스왑시장(후환통) 시행(2023년 5월),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제한 전면 철폐(2024년 9월), 외국인 개인의 전략적 투자 허용, 외국 기관투자자의 자산요건 1억$→5,000만$ 완화, 외국투자자의 중국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지분비율 10%→5% 완화 및 보호예수(lock-up) 기간 3년→1년 축소(2024년 12월) 등 개방을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다.

(3) 보험업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년 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이후, 2019년부터 중국정부는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입장벽을 더욱 낮추었다. 그간 손해보험회사 현지법인은 100% 외상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반면, 생명보험회사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허용되고 외국인 지분취득률에 상한('04년5월 50%→'19년12월 51%)을 두었으나,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동 상한을 폐지하였다. 그간 외국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영위기간 30년 이상,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본사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었으나 2019년10월「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개정을 통해 본사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외한 제한 요건들을 전격 폐지하였다.

그 밖에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2년「보험자산관리공사관리임시규정」을 개정하여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중국내 보험회사 지분율 합계가 최소 75% 이상(외국투자자 보유비중 25% 이하)이 되도록 하였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 설립 신청전 연말 자산총액이 50억 달러 이상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할 것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관련 감독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와 설립신청에 대한 동의
-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을 충족할 것

○ 해외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지분투자에 참여할 경우
- 재무현황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최근 3년간 연속 이익을 달성했을 것
- 최근 1년 연말 자산총액이 20억 달러 이상
- 국제신용평가기구 최근 3년간 장기신용등급이 A 이상
- 최근 3년내 중대한 법률·법규 위반 기록이 없을 것
- 소재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전신조례」,「외상투자통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년 12월 11일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후 2008년 9월 10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于修改「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的決定)」에 따라 개정돼 2009년 2월 5일 공포 되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었다.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 · 장거리 · 국제 유선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 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 · 장거리 · 국제 유선

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 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문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關于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 「전신조례」, 「외상투자통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년 12월 11일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후 2008년 9월 10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于修改「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的決定)」에 따라 개정돼 2009년 2월 5일 공포 되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었다.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 · 장거리 · 국제 유선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 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문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關于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2022년, 중국은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통신산업 진입 조건을 완화하였다. 이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중국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1,884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 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하였다.

2024년 4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부가통신 업무의 대외개방 시범 사업 확대에 관한 통지(國務院關于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를 발표하여, 특정 시범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을 완화하였다.

시범지역은 베이징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등으로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인터넷 접속 서비스(ISP),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정보 공개 플랫폼 및 전송 서비스, 정보 보호 및 처리 서비스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50% 제한이 철폐되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2,343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에서 부가통신 사업 승인을 받았다.

2024년 9월, 중국은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을 31개에서 29개로 축소하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사실상 전면 철폐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전자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업종에서도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2025년판)에서 중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서부 지역과 동북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분야는 China Mobile(中國移動)과 China Unicom (中國聯通)이 경쟁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China Telecom (中國電信)에서 China netcom(中國網通)이 분리되어 이른바 4강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장 및 유선전화 사업 정체로 무선 분야 제1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배적 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통신시장 구조개편 요구가 대두되었다. 중국 정부는 유무선 사업자를 통합하여, 2008년 5월 23일 기존의

4대사업자와 China Tietong(中國鐵通)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는(5合3)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 2009년 1월 7일 3장의 3G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결과적으로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 사업자). 즉 차이나모바일과 China Tietong이 합해진 신China Mobile은 TD-SCDMA를, China Unicom으로부터 CDMA부문을 인수한 China Telecom은 신China Telecom이 되어 CDMA2000을, China Unicom(GSM부문)과 China netcom이 합병한 신China Unicom은 WCDMA를 각각 기반으로 제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체제가 출범하였다.

2025년 현재 여전히 주요 국유 통신사인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 3개 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3사를 중심으로 5G를 완전 상용화 했으며, 5G-Advanced(5G-A)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말 기준 4.19백만개의 5G기지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4.5백만개 이상으로 기지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CHINA MOBILE은 2025년 바르셀로나 MWC에서 'AI+NETWORK' 전략을 공개하였다. 이 전략은 AI를 네트워크 운영에 통합하여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5G-A 기반의 '통신-감지'컴퓨팅-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이 솔루션은 통신, 감지, 컴퓨팅, AI를 통합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소비자 경험 향상,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CHINA Mobile은 ZTE와 함께 Ambient IoT 솔루션을 도입하여 전력 소비가 없는 IoT연결을 실현하고 있다. 이 기술은 스마트 제조, 캠퍼스, 전시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 자산 추적과 지능형 관리에 활용된다. China Mobile은 25년 말까지 34만개의 5G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여 총 280만개의 기지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G-A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China Unicom은 25년 말까지 5G-A 서비스를 300개 이상 도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응용 프로그램인 Xinghuo와 AI 기반 혁신을 위한 Baichuan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5년 컴퓨팅 파워 투자를

전년대비 28%까지 증가시켜, AI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모델 훈련, 추론, 클러스터 스케쥴링 기능을 통합하여 지능형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China Telecom은 AI와 5G-A 기술을 통합하여, 네트워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홈, 클라우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 11월 8일 「통신망 상호접속 분쟁 처리방법(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국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전용통신망 사업자 간에 인터넷 기술방안, 상호접속 관련 네트워크 기능 및 통신시설 제공, 상호접속 시한, 통신서비스 제공, 망간 통신품질, 상호접속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전신(전화·통신)조례」(2000년 9월 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電信法)」의 입법화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신조례」의 한계성

- 1997년까지, 중국의 통신산업은 '행정과 경영 미분리(政企合一)' 상태로, 주로 '홍두문건(红头文件)※'에 의거한 행정관리 실시
  ※ 중국공산당의 각급 기관이나 국무원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규범성(规范性) 문건의 속칭. 문서의 윗부분에 붉은 글씨로 제목과 발행기관이 표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아래쪽이나 끝에 붉은 도장을 찍는 일종의 공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률은 아니지만 하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 문서
- 1998년부터 통신산업 개혁 추진, '행정과 경영 분리(政企分离)' 및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 현 공업정보화부) 출범. 그후 잇따라 우정과 통신 분리,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추진
-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었으며, 규제 필요상 우선 「전신조례」 제정 및 2000년 9월부터 시행
- 그러나 「전신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한계성 노출. 「전신법」 제정 가속화 필요
  - 인터넷 활성화, 관리에 대한 내용 거의 전무. 사물인터넷 등 최신 이슈에 관한 내용 부재
  -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내용 부재 또는 미흡
  - 보편서비스 기금 설립, 공중통신망·전용 통신망·방송 전송망 구축시 국무원 산하 정보산업 주무부처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 규정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2025년까지도 「전신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으며, 「전신(전화·통신) 조례」를 여전히 통신산업의 기본 법률로 적용하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신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신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국가광전총국 등 유관부서와 합의를 거쳐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조항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신법은 단시간 내에 제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신법」 제정 관련 일지

-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업 개시
- 1993년 「전신법」 초안 작업 제8차 전인대 입법계획에 삽입
-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종 입법항목으로 삽입
- 2000.9월 정보산업부 "소전신법"이라 지칭된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발표, 동 조례는 행정법규로 기타 법률과 상충시 기타 법률이 우선되어 시장을 규범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2001.4월 「전신법」초안영도소조, 공작소조, 전문가지문위원회를 구성, 정보산업부 왕쉬뚱 장관이 초안소조 조장 담당
- 2003년 「전신법」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삽입
- 2004.6월 정보산업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전신법」(심사초안) 통과, 국무원에 제출
- 2005.12.28일 전인대상무위원장 「전인대상무위원회2006년입법계획」 발표
- 2007.3.9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이 예비 입법항목으로 삽입
- 국무원 2010년 입법계획,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 포함
- 이후 시장에서는 「전신법」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통신관련 법체계의 대표적인 미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2021.11.1.시행))」은「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2017.6.1.시행))」과 「사이버안전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2022.2.15. 시행)」과 유사한 법규이며, 개인정보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활동을 규범화하며 개인정보의 합리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규이다.

중국은 「데이터안전법」과 「사이버안전심사방법」을 발표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과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의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등에 대해 안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 중 대량의 개인정보,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핵심 정보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은 이러한 법률에 따른 안전심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안전법」과 「사이버안전심사방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안전법」 관련 규정

제24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해 국가 안전 심사를 실시한다.

「사이버안전심사방법」 관련 규정

제2조, 제7조,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 안전 심사를 실시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가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이버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 상장을 할 경우, 사이버안전심사 사무실에 사이버안전심사를 신고해야 한다.

사이버안전심사업무메커니즘 구성 부서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네트워크 제품·서비스 및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해, 사이버안전심사판공실이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활동을 규범화하며 개인정보의 합리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규이다.

2021년 8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을 표결통과 했고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경외 제공 규칙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기록했다.

첫째, 개인정보 과경 제공 규칙에 대하여 기록한바 4가지 조건중 1건 이상 충족시 경외 제공가능 하다.

(1) 제40조 규정에 따라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이 조직한 안전평가 신고및 통과.

(2)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인증을 진행.

(3)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이 제정한 표준계약에 따라 경외접수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

둘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에게 경외접수측의 명칭 또는 성명, 연락방식, 처리목적, 처리방식, 개인정보 종류 및 개인이 경외접수측의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절차 등 사항을 개인의 단독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셋째, 관건정보 기초시설 운영자와 개인정보처리가 국가인터넷정보부문에서 규정한 수량에 도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집하고 산생한 개인정보를 경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확실히 경외에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문에서 조직한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은 안전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다섯째,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은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 또는 평등호혜원칙에 따라 경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제공할데 관한 외국사법 또는 집법기구의 청구가 필요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외국사법 또는 집법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경외의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개인정보권익을 침해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 공공리익을 해치는 개인정보처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은 이를 개인정보제공청서를 제한/금지하고 공고하며 개인정보제공을 제한/금지 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일곱째,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 개인정보보호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덟째, 민감 정보 기초시설 운영자와 개인정보처리가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의 규정수량에 도달한 처리자를 명확히 하고 확실히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이 조직한 안전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기타 다국간 개인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구의 인증 등 경로를 규정하였다.(초안 제38조, 제40조)

아홉째, 국경 간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고지-동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초안 제39조)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 2023.6.1. 시행

- 안전평가 신고(申报)

*〈데이터출경안전평가지침(제1판)〉 2022.8.31. 시행, 〈데이터출경안전평가방법〉 2022.9.1. 시행

(1) 중요 데이터(국가 안보, 경제 운영, 사회 안정, 공공 위생 및 안전 등을 해할 수 있는 데이터) 경외 이전

(2)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자가 경외 제공하는 경우

(3) 전년도 1월 1일 이후 경외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 개인정보가 누적하여 각각 10만명 또는 1만명 이상인 경우

표준 계약 비안(备案)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규정(의견수렴안)〉 2022.7.29.의견수렴 종료,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 (이하 '〈방법〉')2023.2.24.공포, 2023.6.1. 시행 예정, 단 시행 후 6개월 보완 기간

(1)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아닌 경우

(2) 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 전년 1월 1일 이후 경외에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 개인정보가 누적하여 각각 10만 명 또는 1만명 미만인 경우

전문 기관 인증(认证)

*〈개인정보보호인증 실시에 관한 공고〉 및 첨부〈개인정보보호인증실시규칙〉 2022.11.4.시행, 〈네트워크안전표준실무지침-개인정보경외처리활동안전 인증 규범V2.0〉 2022.12.16. 시행

- 온라인 데이터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등 처리 활동 전반에 대한 인증

APP 비안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비안 관리 방법"은 이미 2005년 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제12차 부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현재 발포하여 2005년 3월 20일부터 시행 하였다. 해당 관리 방법중 '중국 경내에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모두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ICP 비안은 한 번만 신청 하는 게 아니라 각 ISP 별 비안 접속(接入备案)이 필요하고 미 런칭한 신규 APP는 2023. 09. 01부터 APP 비안 신청 필요하며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APP는 2024. 03. 31 까지 APP 비안 신청 필요하다.

'공신부 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비안 업무 관련 통지' 규정한 APP의 정의는 스마트 단말기 상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다운로드나 인스톨이 필요한 일반 APP, 위챗 미니 프로그램, Quick APP이고 중국 경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APP 보유 업체는 모두 APP 비안 신청 필요하다.

APP 비안에 대한 구체적 프로세스 다음과 같으며, 프로세스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클라우드 계정 개설 및 도메인 준비(실명 인증 포함)

클라우드 계정 개설 및 도메인 준비: 도메인은 반드시 실명 인증이 완료되어 어야 하며, 개인 계정이 아닌 법인 명의일 경우 회사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② 서버 준비(엘라스틱 IP 포함)

중국 내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엘라스틱 IP 사용 시 공신부 등록이 완료된 IP인지 확인 필요하다.

③ 사전 심사 진행(뉴스, 출판, 교육, 의료 등)

뉴스, 출판, 교육, 의료 등 민감 분야의 경우 별도 인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처 정책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④ 법인 소재지 담당부서 정책 확인

지역별로 제출 요구 문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부처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⑤ 비안 자료 준비(문서 양식 다운로드)

문서 양식은 최신 공신부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기업 인감 및 대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서류 제출

원본 서류 스캔본 외에도 실제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하다.

⑦ 문자 인증 및 심사

심사 단계에서 비안 신청인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번호는 중국 내 통신사로 개통된 번호여야 한다.

⑧ 비안 번호 발급 완료

발급 후 반드시 앱 내 및 홈페이지 하단에 비안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시 벌금 등 행정처분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투자 장벽

주요 투자현황 및 투자전망

2024년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총 59,080개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나, 실제 사용 외자금액은 1,162억 달러로 28.8%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일대일로' 연선 국가(일부 자유항을 통한 중국 투자 포함)의 신규 직접 투자 기업 수는 17,172개로 23.8% 증가했지만, 직접 투자액은 1,147억 위안으로 6.2% 감소하였다. 한편, 연간 하이테크 산업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2,86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2,212억 1,000만 위안, 서비스업은 5,845억 6,000만 위안에 달했다. 이 중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외자 사용액은 962억 9,000만 위안으로, 전국 총 외자 사용액의 11.7%를 차지하였다. 의료기기 및 정밀 측정기기 제조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의 외자 유치액은 각각 98.7%, 40.8%, 21.9% 증가하며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2024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시장은 저조한 흐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글로벌 경제가 점차 안정을 찾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함에 따라 투자 비용이 낮아졌고,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지속된 FDI 부진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총 53,766개로 전년 대비 39.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대일로' 연선 국가(일부 자유항을 통한 중국 투자 포함)의 신규 직접 투자 기업 수는 13,649개로 82.7% 급증하였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직접 투자액은 1,22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하였다. 연간 하이테크 산업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4,233억 위안으로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제3차 산업의 비중은 90.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정보 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금융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들 7개 업종의 신규 설립 기업 수는 전체의 86.8%를 차지했으며, 실제 외자 사용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89.5%를 기록하였다.

2021년 10월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14차5개년 외자(외국인 투자) 이용 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1-2025년 기간 외자기업의 산업 구조와 지역 배치에 있어, 첨단제조 분야 확대, 첨단 기술, 전통 제조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 현대서비스 등 분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화학·장비 제조 등 제조 분야의 외자기업이 연구개발·설계·마케팅·정비 등 분야로 확장되도록 유도하고, 여건이 되는 외자 제조업 기업이 일체형 서비스 총괄 업체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며 외자 기업이 하이클래스, 스마트화로 전환하도록 꾀한다. 또 외국인투자의 지역별 배치에 있어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외국인 투자 권장 범위를 확대하여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산업 부대 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산업의 인수 이전 능력을 제고하여 현지 자원에 부합되고 선도 역할이 강한 중점 외자 프로젝트를 시범 도입하고 글로벌 중점 가공 제조 기지를 육성하여 외자 이용의 새로운 성장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자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탠진, 허베이)협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발전, 웨강오우따완취(粤港澳大湾区 광둥, 홍콩, 마카오)건설, 장삼각 일체화 발전,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의 발전, 청위(成渝 청두 충칭) 지역의 雙城 경제권 건설 등 지역 중대 전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육·해·내외

연동, 동서 쌍방향 상호 지원의 개방 구조를 구축한다.

중국의 14차5개년 외자 이용 계획 주요 내용 요약

주제	내용
외국인 투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감소	전국, FTA 시험구, 자유무역구 지역 내 외국인투자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특별관리 조치를 축소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외국인투자주체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산업분야 내 외국인 지주나 독자 경영 허용.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 최적화	특별관리조치 내용을 세분화해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명성 제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일치 원칙에 따라 '비금즉입(非禁卽入)' 시행.
중점 영역 진입장벽 완화	전기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 관련 업무 개방 순차적 추진. 외국인 투자 법률, 운수 등 업종에 대한 업무 범위와 투자자 자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
은행·증권·보험·펀드·선물 등 금융 분야 개방	자본시장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심화시키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조건 완화.
시장접근 제한 지속 축소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창고업, 우편업,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및 문화, 스포츠와 오락업 등의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감축, 시장 진입장벽 제거.
외국인 투자기업 글로벌, 지역본부, 연구개발 센터 설립 지원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연구개발 센터 설립 지원 – 중국의 국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구매센터, 결제센터 등 각종 기능성 기구의 설립 장려, 글로벌 첨단요소 자원 클러스터 형성.
산학계 협력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 간 교류 확대–산업발전과 기업 경영에 적합한 인재 육성.
중서부, 동부지역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 확대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산업맞춤형 체계 건설 추진. 산업 이전 역량 향상, 현지 자원 활용 및 시범 선도적인 역할이 강한 중점 외자 프로젝트 도입 장려로, 전세계 중요 가공 제조 기지 육성 및 외자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실현.
권역 클러스터 개발 협력 강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협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발전, 웨강오우따완취(粤港澳大湾区 광둥, 홍콩, 마카오)건설, 장삼각 일체화 발전,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의 발전, 청위(成渝 청두 충칭) 지역의 雙城 경제권 건설 등 지역 중대 전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유도	집적회로, 디지털경제, 신소재,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연구개발, 현대물류 등 산업내 외국인 투자 직접발전 유도.

중국 정부는 주로 5G핵심부품, 산업로봇,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그리고 컨설팅, 세무, 검측검역인증 등 서비스업 영역에 외상 투자를 유치하있다. 지역적으로는 중부, 서부 지역으로의 외상산업 이전을 추진하여

노동집약형, 선진기술산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 파트너를 찾거나 독자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기존 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M&A 방식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내 대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경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자 중국 내 제조시설을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9년 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적으로 확대함.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하여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서비스 분야에도 투자 장려를 실시함.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한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프로젝트가 대부분 장려항목에 반영된다.

특히,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개발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연도	금액	건수
2017	1,363.2	35,662
2018	1,383.1	60,560
2019	1,412.2	40,910
2020	1,493.4	38,578
2021	1,809.6	47,647
2022	1,891.3	38,497
2023	1,632.5	53,766

자료: 2024中国外商投资统计公报

2023년 산업별 외자 활용 현황

(단위: 억 달러)

분류	신설기업수	비중	실제외자이용 금액	비중(%)
총 합계	53,766	100.0%	1,632.5	100.0%
도소매업	18,010	33.5%	98.9	6.1%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0,673	19.9%	263.8	16.2%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9,519	17.7%	293.8	18.0%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업	3,764	7.0%	164.3	10.1%
제조업	3,624	6.7%	455.3	27.9%
문화, 체육, 엔터테인먼트	2,223	4.1%	4.4	0.3%
주숙과 요식업	1,211	2.3%	3.9	0.2%
교통운수,창고저장업,체신업	867	1.6%	21.4	1.3%
주민 서비스, 수리와 기타 서비스업	726	1.4%	4.9	0.3%
건축업	685	1.3%	23.7	1.5%
부동산업	684	1.3%	117.3	7.2%
전력, 열에너지, 가스, 물 생산과 공급업	568	1.1%	45.4	2.8%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418	0.8%	7.2	0.4%
금융업	387	0.7%	67.6	4.1%
위생과 사회 사업	143	0.3%	3.0	0.2%
수력, 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	123	0.2%	5.3	0.3%
교육	109	0.2%	0.6	0.0%
채굴업	32	0.1%	51.4	3.2%

자료: 2024中国外商投资统计公报

주요 투자정책

중국은 1995년부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자본 도입 가이드를 제시해왔다. 1995년 처음 공포된 이래 2022년까지 총 12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정됐다.

(1) 2017년 제 7차 개정

2017년 6월 29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가이드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 수정판)을 공식 발표했으며, 2017년판 '목록'의 6대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네거티브리스트(負面淸單)' 최초 도입,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대폭 축소하였다. '장려 산업'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 목록과 '금지' 목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이번에는 장려와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한 것이다.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가 93개에서 63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금지류는 기존의 36개에서 28개로 줄였다.
2) 혁신산업(스마트, 하이테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장려류 항목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 등 혁신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판 '목록' 중 '장려류' 목록은 348개. 2015년판에서 7개를 삭제, 6개를 신규 추가했으며, 35개 항목을 수정하였다.
3) 완성차 업체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유지하되, 순수 전기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0년부터 완성차 분야의 '중국 측 다수[50%(포함) 이상] 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쟁이 일었지만, 이번 수정판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위해 '중국 내에서 2개 이상 순수 전기차 업체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었다. 특히 1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2개 이상의 합자 순수전기차생산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를 폐지, 순수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오토바이의 생산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4)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신용조사', '도로 여객 운송', '외국선박화물정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에 대한 개방 확대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체적이다. 일부 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던 업종, 예컨대 '신용조사' 등도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5) 내외자기업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 간소화 등 중국 정부의 내외자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기조를 반영하였다. 중국 상무부 쑨지원(孫繼文) 대변인은 2017년 6월 29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방법'을 수정해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행정 수속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테마파크,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정치정당 특수학교,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도박과 색정업 등 내자기업에도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은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목록에서도 삭제되었다.

6)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 완화를 확대하였으며, '네거티브' 이외의 외자 인수합병은 기존의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번 '목록'은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 수속을 보다 간소화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이를 2017년 '목록'의 최대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 관련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등록과 달리, '심사'는 서류제출 후 여러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으면 되며, 향후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등록(備案)관리방법'이 수정 발표될 예정이다.

2019년 6월,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2019년판)〉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하여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서비스 분야에도 투자 장려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한 중국의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프로젝트가 대부분

외국인 투자 장려 항목에 반영되었다.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개발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2020년 12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0년판)〉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과 22개 성에만 적용되는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업, 제조업, 교통, 에너지, 공공 인프라 건설과 교육, 문화, 의료 등 13개 산업을 포괄한다.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 1,108건에 비해 127건이 추가되어 외국인투자 범위를 넓혔으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중서부 지역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늘렸다. 신규 투자 분야에는 인공지능(AI), 집적회로 등 고급 제조분야와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등 민생 분야도 장려 목록에 포함되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는 선진 제조업으로의 외자유치를 더욱 장려하고 중요 산업사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데 집중된 점이 특징이다. AI, 집적회로 등 첨단 제조분야에서 집적회로 봉입 및 테스트 장비 제조, 레이저 프로젝터, 초고화질 TV, 호흡기, ECMO, AI 보조 의료장비 등의 항목이 추가, 수정되었다. 신소재 분야와 친환경 분야를 아울러 연구개발 디자인, 비즈니스 서비스,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더욱 권장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투자 장려목록〉의 조건에 부합되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 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서부지역의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15% 법인세도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집약 용지의 경우 토지가 우선 공급되며, 공업용지 분양 최저가의 70% 수준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2) 2019년 제8차 개정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9 6월 30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판'(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으며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2019년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0개 항목이 명시돼 2018년판 네거티브리스트의 48개 항목 대비 8개 항목이 감소됐으며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13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지분제한 항목은 16개, 금지항목은 24개 이다.

2019년판 규제완화 항목

연번	구분	2018년판(규제 분야)	2019년판	변경사항
1	채광업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합자·합작으로 제한)	-	삭제
2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투자 금지)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체굴 및 선광 (투자 금지)	축소
		희토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방사선 광산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3	제조업	선지 및 묵정(墨錠)의 생산(투자 금지)	-	삭제
4	인프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 (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5	교통운송	국내선박대리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6	정보전송 서비스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서비스 등 부가통신업무(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7	공공환경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투자 금지)	-	삭제
8	문화	영화관 건설 및 경영(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9		공연중개기구(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업종별로 살펴보면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공공환경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개방이 확대되었다.

1) 채광업 : 합자·합작으로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 외국인 투자 금지항목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이 확대

2) 제조업 : 중국 전통상품인 '선지 및 묵정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3) 인프라 :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에 대한 지분제한 취소

4) 교통운송·정보 서비스 : '국내선박대리,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등 부가통신업무에 대한 '중국 측 지분통제' 요구 삭제

5) 공공산업 :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을 외국인투자 금지 항목에서 제외

6) 문화 : 중국 측 지분통제로 규정했던 영화관 건설 및 경영, 공연 중개기구 개방

(3)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

- 6월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는 "외상투자 시장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판)"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7월 23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는 동시에 폐지됐다.

- 올해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기존의 2019년도와 비교 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비교적 큰 개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40조에서 33조로 감소하였고 2개 항목을 부분적으로 추가 개방하였다.

2020년판 폐지 및 완화 규제

분야	내용
농업	[완화] 소맥(小麦) 신품종과 종자 생산의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 34% 이상 다만, 옥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유지
제조업	[폐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금지 [완화] 상용차의 제조 관련 중국 측 지분비율 (50%이하→100% 외자 허용)
인프라	[폐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이 과반 지분 확보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교통운수	항공교통관제 관련 투자 금지
금융업	[폐지] 증권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 [폐지] 선물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 [폐지]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

1) 농업: 밀 신품종의 종자선별과 종자생산(小麦新品种选育和种子)에서 중국기업의 최소 지분율을 현재의 51% 이상에서 34%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현재의 최대 49%에서 66%까지 허용하였다. (단, 옥수수에 대해서는 중국의 최소 지분율을 현재의 50%이상으로 유지)

2) 제조업: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 지분율 제한을 취소했으며 외상투자기업이 방사성 광산물제련 가공과 핵연료생산((放射性矿产冶炼,加工,核燃料生产)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했다.

- 상용차 관련 외국인투자 지분을 제한(최대 50%)을 폐지하여 100% 외국인 단독 투자를 허용
- 기존에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이 금지되었으나 허용

3) 인프라: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 배수관의 건설과 경영은 반드시 중국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하였다.

4) 교통운수: 외국인의 공중교통관제(空中交通管制)와 관련한 투자금지 규정을 취소했으며 동시에 민간(民用)공항에 관한 항목도 조정됐다.

5) 금융: 증권회사, 증권투자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회사의 외자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기업에 평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등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과 보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4)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판)

2021년 12월 27일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는「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1년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은 동시에 폐지됐다. 중국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 외상특별관리조치 중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을 93개에서 31개로 줄였고 금융,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개방 조치를 내놓아 외국인 투자에 더욱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 2021년 개정판은 총 12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2020년에 비해 제조업 중 2개 항목이 감소했는데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동일 외상은 국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을 삭제했다. 이외 기타 영역은 2020년 개정판과 동일하다.

2021년판 폐지 및 완화된 규제내용

분야	내용
제조업	[폐지] 전용차, 신에너지자동차, 상용차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은 중국 측 지분비율 50%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 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 2개 및 그 이하의 동종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 기업을 설립 가능 [폐지] 위성TV, 라디오의 지면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은 지분 요구사항 및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이외의 영역은 내외자 동일 관리 원칙을 적용한다.

2) 외국인 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3) 외상 투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1년판)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주무부처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내의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나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나 기업등기 등록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며, 고정자산투자항목의 인준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인준사항을 처리하지 않는다. 지분권 요건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합명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5) 국무원 유관 주무부처의 심사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정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

6)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금지 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주식발행 및 상장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국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7) 중국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나열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영역과 행정심사, 자격요건, 국가안전 등에 관한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내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및 후속협약,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중국의 법률, 법률에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경제지역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자에 대한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10)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담당하고 해석한다. 3항과 6항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2021판 특징 및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

1. 농, 림, 목축, 어업	
1)	밀 신종품의 선택 육성과 종자생산은 중국 측 지분비율 34%이상. 옥수수 신종품의 선택 육성과 종자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
2)	투자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유전자 포함)
3)	투자금지: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변형 품종의 선택 ,육성 및 유전자 변형 종자의 생산
4)	투자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2. 채광업	
5)	투자금지: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3.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7)	투자금지: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제조기술의 응용 및 중약제약의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
4. 전력, 화력, 가스 및 수력생산 및 공급업	
8)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통제
5. 도소매업	
9)	투자금지: 연초, 궐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제품의 도매와 소매
6. 교통운수, 창고보관 및 우편업	
10)	국내 수상운수회사 중국 측 다수 지분 통제
11)	공공 항공운수 회사는 중국 측에서 지분을 통제하여야 하며, 동일 외국인투자자 및 관련기업 투자비율은 2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인 이여야 한다. 농업, 림업, 어업용 일반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하며, 기타 일반 항공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12)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 외국인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3)	투자금지: 우편회사, 서신의 중국 내 택배 업무
7.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업	
14)	통신 회사: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한하고 부가통신업무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15)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출판서비스, 네트워크 시청각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서비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가입 시 약속한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8.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 (중국 법률 환경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내 로펌의 파트너가 되는 것 금지
17)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방송, 청취율, 시청율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18)	투자금지: 사회조사
9.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19)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 및 응용
20)	투자 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구
21)	투자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계 측량.회화, 지형도, 세계행정구역지도, 전국행정구역지도, 성급 및 이하 행정구역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리얼 3차원 지도와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편집, 지역의 지질 지도 보충, 광산 지질, 지구물리, 지구화학, 수리지질, 환경지질, 지질재해, 원격탐지지질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음)
10. 교육	
22)	취학 전 학교, 일반 고등학교와 대학(고등교육기구) 는 중외합작에 한하되 중국측이 주도(교장 또는 주요 행정 관리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인, 이사회,동사회 및 연합관리위원회는 중국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안됨)
23)	투자금지 :의무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
11. 위생과 사회업무	
24)	의료기구 (합자 한함)
12. 문화, 체육, 오락업	
25)	투자 금지: 뉴스기구 (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업무

27)	투자 금지:각 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방송채널(주파수), 라디오TV방송 송출망(발사국,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TV 영상 신청 업무 및 위성 TV.방송 지면 수신시설 설치 서비스
28)	투자금지: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업무 포함)회사
29)	투자금지: 영화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사 및 영화 도입 업무
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국유문화재박물관 문화오락
31)	투자금지: 문예공연단체

(5)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4년 판)

2024년 9월 6일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는「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4년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 판)〉은 동시에 폐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외상특별관리조치 중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을 93개에서 29개로 줄였고 제조업 분야의 투자 제한 조치는 전면 철폐되었다. 이외 기타 영역은 2021년 개정판과 동일하다.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의 주요 내용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옥수수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4. 투자 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채광업	5.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제조업	투자 제한 철폐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6.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도·소매업	7.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8. 국내 수상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9. 공공 항공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10. 일반 항공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용 일반 항공 회사는 합자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항공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1.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12.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통신 업무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측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3.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4.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5. 시장조사는 합지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 방송, 청취율,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6. 투자 금지: 사회 조사
과학연구 및 시술 서비스업	17.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18. 투자 금지: 인문사회 과학 연구기관 19.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제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 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전자지도 편집, 제작/ 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교육	20. 취학전 교육 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이어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 21. 투자 금지: 의무 교육기관, 종교 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 업무	22. 의료 기관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오락업	23.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24.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5.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 (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 기지, 중계 기지, 방송 위성,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26.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7.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28.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 29.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

(6) 2022년 외국인투자산업장려목록(2022년판) 시행

2022년 10월 26일 중국 정부는 2022년판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판 목록은 기존대로 전국에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이하 '전국 목록')과 해당 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항목 수는 총 1,474개 항목으로 현재 시행 중인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를 239개 늘렸다.

(전국 목록)2022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늘어났다. 중국 정부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 제조업, 핵심 기술·부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판에서 22개 항목을 삭제하고 61개 항목을 신규 추가했다.

전국 장려목록 항목 신구 비교

연번	산업	삭제 항목	추가 항목
1	농·임·목축·어업	-	농업현대화 추세에 맞춰 ▲농촌지역 생태계 개선, ▲농산품 콜드체인 물류 시설, ▲스마트팜, ▲농촌 전자상거래 및 신형 서비스, ▲레저농업과 농촌지역 관광업 등 내용을 추가해 농촌지역의 외자 유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연번	산업	삭제 항목	추가 항목
2	채광업	-	-
3	제조업	중국 제조업 수준 향상,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경금속 자재 연구 개발 1000톤 이상 단압성형기 제조, 로봇 개발·제조, 폐타이어 종합 이용장치 제조, 셰일가스 장비 제조 등 항목은 전국 목록에서 삭제됐다.	고성능 소재, 기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Al-Ti-B 결정립 미세화제, 정밀 전자 금형, 고순도(전자급) 폴리실리콘 소재 개발 등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생산, 임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소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 쓰레기 매립장 불침투 방지막 개발, 생산 공업 절수 공정, 기술 개발 등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탄소저감, 친환경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2022년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자기계 제조업(컴퓨터, 통신설비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항목을 7개 늘린 점이다. 동박적층판(CCL) 전용 전자급 유리섬유포, 핵심 소프트웨어, 웨이퍼, 스마트 실버용품, 유기 고분자 소재, 고순도 전자화학품, 신기능 유리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전국 범위에서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4	에너지 공급	물부족 지역의 대형 발전소 건설·경영, 청정석탄 발전시스템 건설·경영 등 2개 항목을 삭제.	신형 에너지저장 장비, 에너지 상호보완 전원 건설 등 2개 항목을 신규 추가.
5	공공 인프라.윤송	-	-
6	도소매		수입 자동차 도소매, 문화혁신상품 도소매
7	ICT	-	-
8	임대 및 비즈니스		인력자원 서비스,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육아서비스, 관광 컨벤션, 언어서비스(통번역 등)
9	과학기술		친환경·에너지절약·절수를 위한 첨단시스템 통합기술 및 서비스,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응용, 전문 디자인

연번	산업	삭제 항목	추가 항목
10	공공시설.환경산업	-	-
11	교육		예술 교육, 직업 교육
12	위생 사회업무		자폐증 아동 재활기구, 노인 주거 시설 개조 등, 양로서비스 관련 교육기관
13	문화.체육.오락업		자폐증 아동 재활기구, 노인 주거 시설 개조 등, 양로서비스 관련 교육기관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중서부 목록) 22개 중서부지역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중서부 목록은 2020년판 755개에서 955개로 항목 수를 200개 대폭 늘렸다.

중서부 장려목록 항목 신구 비교

연번	지역	'20년판	'22년판	삭제	추가
1	산시	37	43	포장용품 인쇄 직업훈련	현무암 섬유, 비금속광, 유색금속 정밀 가공, 에너지저장장치, 지열에너지 개발, 관광
2	네이멍구	36	37	-	청정 석탄 개발
3	랴오닝	26	34	직업훈련	디지털 가금·가축 양식, 맥주, 화합물 반도체 소재, 선박관리, 도로 화물시설, 온천리조트, 대학
4	지린	38	43	테마파크	디지털 가금·가축 양식, 맥주, 생분해 플라스틱, 자동차 와이어링 하니스. 예술공연 중개
5	헤이룽장	42	50	-	고급 육우, 비금속 광물 신소재, 제설설비, 공작기계, 디지털 경제, 요양
6	안후이	37	43	직업훈련	스마트기기, 폐지 재활용, 여행사, 기초소재, 신에너지 분야 신소재
7	장시	34	40	-	화훼, 공예품, 가방·의류 생산, 배터리, VR/AR 관련 교육
8	허난	37	39	알루미늄 합금 소재 귀금속 가공 직업훈련	실리콘 소재, 스마트 농기구,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연번	지역	'20년판	'22년판	삭제	추가
9	후베이	34	48	직업 훈련	구두·운동화 제조, 바이오 의약, 시계생산, 디스플레이, 리튬자원 가공, 신형 유통업, 방역용품, 친환경 제품, 디지털 의료기기
10	후난	36	46	일회용 식기	가방·완구·가발 생산, 알루미늄재 경금속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용 고순도금속 소재, 3D 유리 및 세라믹용 감광잉크,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 생산
11	광시	38	50	직업 훈련	천연 광천수, 맥주 제조, 신발·모자·완구·가방 생산, 배터리 소재 생산, 전시기획, 국제선박대리, 해외관광, 경기장
12	하이난	50	72	인력자원 서비스, 직업훈련, 문예공연단체	의료기기, 해양석유 탐사, 기계·스마트워치 제조, 무역 에이전트, 신에너지차 및 부품 판매, 산업단지 관리, 국제학교, 의료보건 서비스, 관광리조트
13	충칭	34	45	직업훈련	맥주, 가구, 방직품·의류, 완구,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자동차 수입, 핀테크, 친환경 건물
14	쓰촨	40	63	목재가공, 평판디스플레이·소재 제조, 도로 운송	맥주, 구두·운동화 제조, 완구·가방 제조, 골판지 설비, 가구, 의료기기·의약품, 티타늄 합금 정밀 가공, 바나듐 액체 배터리, 항공사, 전자제품용 소재, 관광
15	구이저우	34	44	티타늄 제련	블루베리, 이차전지 양·음극재, 반도체 조명 소재, 마이크로 모터, 의료관광
16	윈난	29	47	-	레저산업, 고원 포도, 맥주, 스포츠용품, 의류, 완구 스포츠용품, 약품, 녹색 농업, 통신 장비, 국제물류, 에너지 저장기술, 문화공연장 건설, 의료관광
17	티베트	20	26	-	환경보호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온천
18	산시	37	41	직업훈련	바이오, 첨단 공작기계, 고압 송·변전 및 제어설비, 전시기획

연번	지역	'20년판	'22년판	삭제	추가
19	간쑤	24	34	감자, 잡곡 가공 직업훈련	해외자원을 활용한 목재가공, 방역용품, 티타늄 합금 가공, 첨단 유색금속 소재, 리튬이온 배터리, 집적회로, 공작기계, 고중저압 송배전 설비, 프랜차이즈
20	칭하이	29	30	-	수공업품
21	닝샤	28	33	스마트 로봇설비 직업훈련	방직품·의류, 배터리 소재, 국제물류, 디스플레이 소재
22	신장	35	47	곡물 가공	현대 목축업, 레저농업, 방직의류 관련 부재, 신발·모자·완구·가방 생산, 의료기기, 의약품, 신소재, 스마트 농업기계, 친환경 설비, 화공원료, 빙설 관광
합계		755	955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01년 4월 2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외합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14년 2월 19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2023년 12월 29일 수정판 , 2024년7월1일부터 실시)
-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실시조례」(2019년 12월 26일 발표, 2020년

1월1일부터 실시)
- 「외국인 투자정보보고 방법」(2020년 1월)
- 「외국인 투자기업 컴플레인 사업방법」(2020년 10월)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시행세칙」(2021년 3월 10일 수정)
- 「외국인 투자 전기통신기업 관리규정」(2022년 5월 1일 개정)

(1)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지, 외국에서 구입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폐지되었다.

(2)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의 임시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다만 2020년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투자총액 대비 자본금 비율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제정되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지켜봐야 한다.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만 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이하	7/10	
300~1,000	1/2	210
1,000~3,000	2/5	500
3,000이상	1/5	1.200

(3)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의 경우 중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법률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그 권리, 이익을 감소하거나 의무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진입과 시장 퇴출 관련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수출비율 등은 기업이 자체 상황에 맞게 책정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

중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금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때에는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무기계약(무고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노동계약 종료가 제한된다. 중국 내 다른 기업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종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연대하여 종전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기존 근로관계의 정리, 서면 근로계약서의 체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대표처/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법에 의해 인력공급기관인 외국기업복무총공사(FESCO)에 의뢰하여 채용해야 한다. 또한 현지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 등을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표처/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권장이 진행되고 있다. 법적으로 기업은 노동자들이 공회 설립을 요구하거나 총공회, 상급공회에서 공회 설립 관련 지원을 할 경우 방해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기업은 공회가 설립되어 있을 시 임금총액의 2%를 공회비로 납부해야 하며, 이 중 일부(60%)를 지역공회에서 기업 공회의 활동비로 지원한다. (단, 일부 지역은 강제로 공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도 공회 경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노동계약법 공포·시행

중국은 「노동계약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입사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미체결기간 임금의 2배 배상금 지급 등)하였으며, 시용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한근로계약(무고정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하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을 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고정계약기간 만료 후 직원이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불요). 아울러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규장, 한국의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도록 하여 회사의 독단적인 사규 개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바꾸었다.

2012년에는 노무파견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파견업체 설립조건을 자본금 2백만 위안 이상으로 엄격히 하고 있다. 노무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노무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임시성, 대체성, 보충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중국 정부의 노동 관련 보호 강화 및 중국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에 따라 노동 관련 분쟁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중국 노동분쟁 발생 추이(출처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단위 : 만 건, 만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7]
분쟁건수	82.9	78.5	89.4	107	109.5	125.2	147.3
분쟁근로자	111.2	97.9	111	127.4	128.3	140.5	163.6

* 노동감찰 및 적발 실적
- 감찰기업 : (2021년) 116.3만개 → (2022년) 70.2만 개(46.1만건 증가)
- 미체결 노동계약 시정건수 : (2021년)45.4만 건 → (2022년) 37.2만 건(8.2만건 감소)
- 임금체불 청산액 : (2021년) 45.4억 위안 → (2022년) 95.4억 위안

(1)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현재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이외 기존에 생육보험(출산보험)이 별도 있었지만 현재는 의료보험에 통합되어 관리함)등

7) 2022年人力资源和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 (mohrss.gov.cn)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tjgb/202306/t20230620_501761.html

4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외국인 직원 가입 불필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40% 이상에 달하여 기업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별로 조례(시행령에 해당)형태로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격상한 「사회보험법」을 제정 시행(2011년 7월)중이며, 동 법률의 제정·공포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도 동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 16일부터 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등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연금(養老)보험 가입이 일정기간(파견근로자는 최대 10년, 현지채용근로자는 최대 5년)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가입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주재원 등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면제신청 후 5년간 보험가입이 면제되는데, 면제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면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세무당국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생육보험을 의료보험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완료하였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9년 5월부터는 기본양로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16%로 인하하였고, 공상보험과 실업보험(2%→1%) 보험료 완화(2024년말까지 연장 시행)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장애인취업조례(残疾人就业條例)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재직근로자의 1.5%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지방정부가 정함)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부담금(残疾人就业保障金)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징수 및 부담금 경감조치를 2022년말까지 시행하였으나 이를 연장하여 2027년 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즉 종업원수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0% 감경, 장애인 고용

비율이 1% 이상~성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이하의 경우 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2)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임금인상 수준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공기업 등의 임금인상 기준으로 발표하던 임금기준선은 2016년 최초로 10% 이하로 낮아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7~9%를 기록하였다. 최근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2021년에 이르러 중국내 대다수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성·시 내에서도 다시 세부 구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2016년 동 규정을 개정하여 2년 내지 3년에 1회 이상 조정하도록 조정 주기를 다소 길게 조정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5 계획 기간 중(2011~20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상에서 매년 고시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 발표한 13.5 규획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계량적 목표가 삭제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다. 실제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의 평균 인상율(최고 최저임금 기준)은 2011년 25.2%에서 2016년 10.3%, 2017년 8.7%, 2018년 8.4%, 2019년 9.3%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을 갱신·고시한 지역은 16개에 이르렀으나, 2019년은 8개 지역만이 최저임금을 인상 발표하였다. 2020년의 경우 복건성, 청해성, 광시자치구 등 3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나,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등 나머지 지역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다소 완화되고, 최전선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높이려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인상폭도 커졌다. 2023년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최저임금 조정을 마쳤으며 상해는

21년에 이어 23년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월 2,690위안, 시간당 24위안으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나타내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지역에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보험, 병가수당 등도 함께 인상되게 된다.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농민공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중국에서 정부가 직접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은 많지 않다.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 발전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역시 중국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 당국은 이러한 딜레마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유도하면서도 인상 수준은 점차 낮춰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통계국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별 평균임금 통계를 볼 때, 중국 취업인원의 평균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과거 10% 이상 임금인상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임금인상율이 8% 이상에 이르는 등 중국의 임금인상 폭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참고: 지역별 월 최저임금 기준(2025.1월 기준)

(단위: RMB)

성,시(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8]	비전일제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실시 일자
1.북경시	2420	26.4	2023.10.1
2.천진시	2320	24.4	2024.1.1
3.하북성	2200/2000/1800	22/20/18	2023.1.1.
4.산서성	2150/2050/1950	23.2/22.1/20.9	2025.1.1
5.내몽고자치구	2270/2200/2140	22.4/21.7/21.1	2025.1.1
6.길림성	2120/1920/1780	21/19.5/18	2024.10.1
7.요녕성	2100/1900/1700	21/19/17	2024.7.1
8.흑룡강성	2080/1850/1750	19/17/16.5	2024.7.1
9.상해시	2690	24	2023.7.1
10.강소성	2490/2260/2010	24/22/20	2024.1.1.

성,시(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8]	비전일제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실시 일자
11.절강성	2490/2260/2010	24/22/20	2024.1.1.
12.안휘성	2060/1930/1870/1780	21/20/19/18	2023.4.1.
13.복건성	2030/1960/1810/1660	21/20.5/19/17.5	2022.4.1.
14.강서성	2000/1870/1740	20/18.7/17.4	2024.4.1
15.산동성	2200/2010/1820	22/20/18	2023.10.1.
16.하남성	2100/2000/1800	20.6/19.6/17.6	2024.1.1.
17.호북성	2210/1950/1800	22/19.5/18	2024.4.1
18.호남성	2100/1900/1700	21/19/17	2024.10.1
19.광동성	2300/1900/1720/1620	22.2/18.1/17/16.1	2021.12.1.
20.심천시	2360	22.2	2022.1.1.
21.광시자치구	1990/1840/1690	20.1/18.6/17	2024.1.1.
22.해남성	2010/1850	17.9/16.3	2024.1.1.
23.충경시	2330/2200	23/22	2025.1.1
24.사천성	2330/2200	23/22	2025.1.1
25.귀주성	1890/1760/1660	19.6/18.3/17.2	2023.4.1.
26.운남성	2070/1920/1770	20/19/18	2024.10.1
27.서장자치구	2100	20	2023.10.1.
28.섬서성	2160/2050/1950	21/20/19	2023.7.1.
29.감숙성	2020/1960/1910/1850	21/20.5/20/19.5	2023.7.1.
30.청해성	1880	18	2023.4.1.
31.닝샤자치구	2050/1900	20/18	2024.4.1
32.신강자치구	2070/1890/1750	20.7/18.9/17.5	2025.1.1

출처: 각 성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안전생산 및 직업병 관련 제도

중국은 2015년 8월 12일 '8.12' 천진항 폭발사고 발생 이후 산업안전(安全生産) 관련 입법과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기업의 주요 책임자(생산기업의 동사장, 총경리 등), 안전생산 관리 인원 개인도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속하고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및 기업의 관계자는 이러한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 외에도 안전생산 블랙리스트(안전생산영역연합징계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안전관리 감독 강화, 생산허가 취득 제한, 세금

8) 성·시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역별 경제·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4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고시

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안전사고 사망인원 허위보고에 대한 내부 고발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신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2018년 11월 9일 중국 안전생산, 화재, 자연재해 등 일체 재난 구조 및 관리감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응급관리부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직업병 업무는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로, 특종설비(보일러, 승강기 등) 관련 감독, 관리 등의 업무는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2020년 3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중 주요 입법계획에 안전생산사고 발생 이전에 중대한 위법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안전생산 분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생산법』, 『형법』, 『위험화학품 안전법(제정)』 등이 포함되었음을 발표하였다. 2020년 10월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화학품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범정부 안전생산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2020년 4월 21일 안전생산, 위험화학품 등 9개 분야, 향후 3년 간 안전생산 분야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 6월 10일에는 『안전생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1)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2) 공익소송제도 추가, 3)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2020년12월26일 11차로 개정된 『형법』 은 중대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사유가 확대되고,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사고 등을 초래할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연결되어 있고 기업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직결된 안전생산 및 직업병 분야는 기업이 중국 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중국 진출 기업 및 그 기업의 경영진, 관리자, 책임자는 이 분야 제도를 중시하고,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 중국의 안전생산(산업안전)사고 유형별 기업 책임

구분	특별중대사고 (特別重大事故)	중대사고 (重大事故)	비교적 큰 사고 (较大事故)	일반사고 (一般事故)
인명손실(명)	사망 : 30명 이상 중상 : 100명 이상	사망 : 10-30명 중상 : 50-100명	사망 : 3-10명 중상 : 10-50명	사망 : 3명 이하 중상 : 10-50명
경제적손실(위안)	1억 이상	5,000만-1억	1,000만-5,000만	1,000만 이하
과징금(위안)	200-500만	50-200만	20-50만	10-20만

참고: 중국의 안전생산(산업안전)사고 발생시 개인 책임

사고유형	처벌유형
행정책임	15 일 이하의 구류, 과태료 부과
형사책임	-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 사고로 인해 1 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3 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로 인해 100 만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초래된 경우 • 기타 중대한 결과 또는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 • 사고로 인해 3 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10 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한편, 해당 사고에 대하여 주요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사고로 인해 500 만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초래된 한편, 해당사고에 대하여 주요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기타 특별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사고경위가 특별히 악랄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규정

현행 중국「회사법」에 따르면 기업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먼저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내에 청산팀을 구성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청산팀은 3명이상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회계사, 회사의 청산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팀의 구성원과 책임자 명단을 공상부서에

등록(备案)해야 한다. 또한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10일내에 통지가 가능한 모든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60일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청산팀은 최고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은 청산방안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한다. 또한 관할 세무부서와 세관에서 미납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납부하고 관련 세무증서와 세관증서 반납 후 등기말소를 진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청산업무를 완료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최고의결기구의 확인을 받은 후 심의비준기관에 제출하고 공상등기를 말소한다. 공상등기가 말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어 청산이 종료된다.

한편, 2015년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행 후, 미개업 기업(경영실적 무)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 등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 간이청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 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한다. 시장 관리감독부에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2/3가량 절약되는 셈이다.

* 2015년 상반기, 중국 舊국가공상총국은 상하이시 푸동신구, 장쑤성 옌청(鹽城)시, 저장성 닝보(寧波)시, 광둥성 선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미개업 기업(경영실적无)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을 실시했다.
* 같은 해 9월,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추진 시행에 관한 공고」(工商企注字(2015) 142號)를 통해 시범 지역을 톈진, 네이멍구, 저장성 등 7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2018년 말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범시행에 관한 공고」(国市监注[2018]237号)를 통해 시행지역을 베이징시, 톈진시, 항저우시, 광저우시 난사구, 선전시 등 2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등기말소에 비하면 간소화된 등기말소는 절차와 제출 서류 면에서 크게 간편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전, 합병, 분리 등과 관련한 구조 조정에서 더 큰 여력이 생겼다.

기타 제한 조치

(1) 금융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 중국과 외국기업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상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가)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시 외환관리국 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반 서류를 요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나)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자금차입 규제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2017년 개정 「역외금융리스크한도 관리정책」을 통해 역외에서의 외화차입을 관리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 법인은 역외금융리스크 한도[1급자본×레버리지비율(0.8~2)×조정계수(1.25)]내에서 1년이내의 단기 외화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규정의 제한을 받는 거래에는 역외차입 외 비거주자예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역외에서의 1년초과 장기차입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장기 외채한도내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한도는 직전년도 차입규모와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산정하여 부여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소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사용 연한이 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 경우 2007년 3월 제정된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 제149조에 의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법」 제213조 제1항은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체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20년 임대기간 규정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出讓)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 유상출양방식: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최초로 양도받는 것으로 협의 취득 또는 입찰·경매·공시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이미 출양 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 설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 조사나 자사 상품의 홍보 등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소(办事处) 혹은 대표처(代表处)라 부르며, 우리 기업에는 연락 사무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 사무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단,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본사파견 간부(현지직원 채용 가능, 단 직접 채용 불가)의 직명은 수석대표와 대표이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중국 현지의 시장 조사, 중국 사업 파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법인 설립 전 자사 상품의 홍보,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제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 및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 민용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연락 사무소의 임의적인 등기사항 변경 행위와 허위증명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해지고, 특히 지방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2010년 1월 4일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총국에 편입)과 공안부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13년 7월과 2018년 9월에 두 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일부 관할부서의 명칭에 대한 변경만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에 큰 변화는 없다.

(1) 연락 사무소 등기 심사 강화

각 지방 시장관리감독총국(舊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락 사무소 등기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증명서(최소 2년 이상),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기업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현행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속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각 지역 시장관리감독총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발급한 연락 사무소의 등기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한다.

(2) 연락 사무소 대표인원 관리 강화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연락 사무소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 대표 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 관할 지역 공상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표 인원수가 절대로 4명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대표 인원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현지 시장관리 감독총국이 직접 연락 사무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

(3) 연락 사무소 위법행위 관리강화

1)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기만의 수단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을 시 연락사무소에 대해 2만~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자에게 1천~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등기증을 말소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관련 부서에 연간보고서 제출 시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할 경우 2만~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등기증을 말소할 수 있다.
3) 연락사무소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원칙상 영리행위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진행할 시 관련 부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고, 5만~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할 시 등기증을 말소할 수 있다.

(4) 기타 주의사항

연락 사무소는 일반 상주 사무소(영업행위 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 사무소(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같이 과세 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 연락 사무소(정부기관, 면세 형태) 등 3개의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연락 사무소는 위 3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상 명시된 연락 사무소 업무 범위에 맞게 시장 조사 등 비영리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 연락 사무소가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법인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심할 경우 연락 사무소 등기 말소 및 과세처분이 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주재원도 중국의 거주자라는 것이 분명할 경우 세무국에 가서 개인소득세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등기 시에는 여권의 제시가 요구되며 비자의 종류, 출입국 기록, 주재원의 대표증, 외국인 거류증명서(공안국 발행) 등을 심사 받게 된다. 사무소 주재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무기관은 본사에서 발급한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규정, 해외부임규정, 본국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처도 폐쇄시에는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처를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국내 법인 설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 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관계가 급격히 발전하였다. 양국의 경제 관계는 과거 일방적 의존 관계였으나, 점차 이에서 벗어나 현재는 대등한 협력 관계로 성장하였다. 이제 양국은 서로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찾아나가고 있다. 국교정상화 시기와 비교했을 때 양국의 교역규모는 최고 약 500배, 인적 교류는 약 1,000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023년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이후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어 최근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인적교류 등 경제 관계 주요지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1년 사상 최대 규모인 1,08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714.3억 달러,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 76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한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9~2020년에는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대일 적자액은 최근 10년간 200억불 선을 유지 중이며 2023년에는 186.6억불을 기록하였다.

2024년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전년 대비 375.6% 증가한 61.2억불로 전세계 직접투자액의 17.7%를 차지하여 57.9억불의 중국을 넘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일본인 방한객도 양국 관계개선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 수치를 회복하고 있다. 2021년 1.5만명까지 떨어졌던 수치는 2022년 30만명을 지나 2024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양국간 전체 인적교류 역시 2018년 연간 1,048만명 방문으로 크게 확대된 이후 2019년 코로나 발생으로 2021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코로나 종식과 함께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11월 기준 이미 1,092만명을 돌파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제6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며, 한·중·일 FTA 협상은 2019년까지 제16차 공식협상이 개최되었다. 2022년 2월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향후 양국 경제 교류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한일 양국은 모두 IPEF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IPEF 필라 2(공급망) 체계를 활용하여 양국간 공급망 공조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경제 개관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2001년 말까지 장기불황을 경험하였다. 1980년대 4.6%에 달했던 연평균 성장률이 버블 붕귀 이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 0.9%대로 하락하였다.

2001년 장기불황 속에서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성역없는 개혁'을 표방하며 경제구조 개혁, 재정건전화 등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장기 불황 탈출에 성공하며, 전후 일본 역사상 최장기간인 약 6년간 경기확대 국면을 시현하였다. 2007년 말 세계적으로 타격을 미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및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기 확대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2008년 마이너스 성장 기록 이후 세계경제 회복 및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경기둔화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부품·소재 공급망이 단절되는 등 극심한 생산 부진과 이에 기인한 자동차 등의 수출 부진이 겹쳐 경기 하락세가 시현되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빠른 공급망 회복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개인

소비 회복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내각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금융 완화 및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물가상승세 확대 및 금융시장 호전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시현되었다.

2012년 11월 이후의 경기확장기가 2018년 10월에 종료된 후[9] 경기하강 국면기인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19년 -0.9%, 2020년 -4.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2022년 2분기에는 코로나 직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입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미-일간 금리차에서 비롯된 엔저 가속화와 맞물려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3.6%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하락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10] 세금과 사회보장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실질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소비 증가를 저해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내수 부진으로 0.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는 일본 주요 자동차업체의 부품 품질인증 부정 등에 따른 수출 감소의 여파로 더 낮은 0.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2025년 1~3월 사용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인 전기·가스요금 부담 경감 대책 등 정부의 에너지 부담 완화책이 물가하락에 기여할 전망인 반면,

9) 71개월간 경기가 확장하여 戰後 '이자나미 경기'(73개월: 2002년1월~2008년2월)에 이어 2번째로 긴 확장기를 시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보다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결과로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低溫호황'(동 기간 중 평균 0.8% 성장)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10) 잠재성장률은 2012년 0.73%에서 2019년 0.13%까지 하락하였다(일본 내각부 추정).

식료품 등의 가격인상 지속으로 2%대의 완만한 상승폭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 등의 대외요인과 2025년 춘투 동향, 물가 전망 등 대내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2024년 12월 미국 FRB의 '매파'적 금리인하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보류 등에 따라 엔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

2024년 10월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탈각, 물가상승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의 실현, 임금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의 실현 등 이전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을 계승할 전망이다. 특히,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 시급 1,500엔 달성 시점을 기시다 내각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 내로 목표로 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을 시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지방창생 담당대신 역임 경험에 기반하여 관련 업계·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금 확대, 지방 인구 감소 대처를 위한 정책 등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산업 국내 회귀를 통한 공급망 유지, 스타트업 친화적인 세제 구축,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2월 공개한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이시바 내각은 디지털 전환(DX)·녹색 전환(GX)에 따른 일본 내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과 더불어 원자력 등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리는 재정정책 재건을 중시하며,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정책 정상화 노선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시키는 '103만 엔의 벽' 개선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쟁점 사항에 있어서 야당과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이시바 내각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시장의 특징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구조를 보유한 시장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비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이용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가전, 가구 등 내구재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화장품, 의류 등의 비내구재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온라인 유통이 일본 내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기도 하는 등 오프라인 소비의 강세 속에서 온라인 소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한국 식품을 비롯해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한류 콘텐츠, 한국식 인테리어까지 큰 인기를 끌며 제4차 한류붐이 일고 있다. 현재의 한류붐은 전 연령과 성별로 확대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한국식 메이크업 및 패션이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의 드라마는 일본의 40~50대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다. 도쿄 내 신오쿠보 등 각 도시의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웹툰 등의 인기에 따라 한국 패션이나 의류, 화장품 등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한국 음식을 찾는 일본 소비자층도 젊은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한국 식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대기업들도 이러한 추세를 발 빠르게 반영해 순두부찌개, 육개장, 김밥 등을 즉석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일본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비중이 크고, 규모별로는 중소·영세기업이 많다. 일본 내 유통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장기 거래를 통해 지역 유통업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기업 도매상에서 소(중간) 도매상이 연결되어 있는 등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특유의 다단계 구조로 인해 중간상인은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일본 비즈니스에서 중간상인들은 거래조건이나 품질조건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통구조를 잘 이해하고, 도매상과도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일본에서는 거래의 시작 및 유지를 위하여 거래 조건과 개인의 신용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거래에서 신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 기간이나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거래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상거래 관습은 일본 시장에 있어 강력한 유대를 발휘하고 있으며 일본 신규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처음에 기업들과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나, 일단 기업 간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마치 관행과 같이 장기적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기업은 시세에 따른 최저가격에 의한 일시적 거래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고 있다.

2024년 방일 관광객은 전년 대비 47.1% 증가한 약 3,687만 명으로, 과거 최대였던 2019년의 3,188만 명과 비교하더라도 500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엔저로 인해 방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침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틈을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의 관광객들이 채워나가고 있다.

일본의 초정밀 고기능 부품소재기업은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형 모터, 실리콘 웨이퍼, 화합물 반도체, CCD 소자, 세라믹 필터, 청색 LED, 광통신용 렌즈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경제규모(명목 GDP)면에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며, 그 중 제조업은 GDP의 약 20%를 차지하며 일본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일본의 핵심 산업이다. 과거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일본은 제조 강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시장진출 여건

그간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본시장 초기진출 및 정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기업들이 부품 및 중간재 조달시 주로 자국업체를 이용해 왔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을 가진데다가, 정부 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특유의 유통구조, 엄격한 규제, 표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한·일 기업들의 사업방식 차이도 우리기업들의 대일 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시장은 일단 정착 후에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일본기업들은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서도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 다수는 경기 호·불황의 영향 및 영업실적의 기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일본 시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일부 중간재의 경우 일본시장 내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보다는 집단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약속시간 준수 등 일본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와 매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비관세 장벽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상관행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동 비관세 장벽을 수시로 파악, 일측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

일본산업규격(JIS)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는 일본의 산업표준화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임의의 국가 규격이다. 다만, 각 개별 법령에서 기술기준 등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JIS 인증 대상 품목은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 데이터, 서비스 등이다.

일본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이 해당 JIS 기준을 만족한 합격품인 경우 JI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등록인증기관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JISC)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해외기관도 등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한국표준협회(KSA)도 등록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품목이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일본 국내외), 수입업자 (일본 국내), 판매업자(일본 국내), 수출업자(해외)이다. 각 품목별 인증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등록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JIS 인증 소요기간은 품목 및 실제 심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소요기간은 신청 접수로부터 최소 60일에서 최대 140일이다.

수산물 수입쿼터 (김IQ 포함)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 IQ 설정 품목 현황(총 17개)

- ○ 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10개):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 ○ 글로벌 쿼터(6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 ○ 對한국 쿼터(1개) : 다시마 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및 「수입무역관리령」 제3조 등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매년 1회 IQ 대상품목별 물량 등을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의 경우 현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 수요자 할당, ② 상사 할당, ③ 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분량이 미소진되거나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며,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도 한국산 김 수입쿼터

구 분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 매)
마른김	상사할당	545
	수요자할당	625
	계	1,170

구 분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 매)
무당조미김	상사할당	425
	수요자할당	355
	계	780
김 조제품	상사할당	290
	수요자할당	310
	계	600

활어차 일본내 운행 문제

양국간 활어 수출입 교역이 활발하나, 일본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도로운송차량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본 활어운반 특수차량과 달리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의 도로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차량은 활어를 일본 항만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 비용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내 등록절차 면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측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일수출 활어운반 차량 물류비용 비교

활어차량 11.5톤 기준, 활넙치 3톤 선적(2021년 기준)

항 목		출발지	목적지	선임 및 육상운송임	활넙치 kg당 물류비	비 고
국제선임		부산	오사카	3,500,000원	1,166원/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 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엔 (6,500,000원)	2,167원/kg	일본차량 임대료
	한국 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엔 (3,250,000원)	1,083원/kg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비기사일당 등

일본항운협의회 사전협의 제도

일본은 일본 항운협회 – 전국항만노동조합 연합회 – 전일본 항만운수 노동조합동맹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라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항만 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노동자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미한 안건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전월 20일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건(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다.

협의방식 및 절차

<table>
<tr><th colspan="5">2자 협의
(선사–일본항운협회)</th><th colspan="5">2자 협의
(일본항운협회–노조)</th></tr>
<tr><td rowspan="2">선사</td><td>⇨</td><td>선주항만협의회</td><td>⇨</td><td rowspan="2">일본
항운
협회</td><td>⇨</td><td>(중요안건)
중앙노사의"사전협의에 관한 협의회"</td><td>⇨</td><td rowspan="2">중앙
·
지구

노사
사전협의</td></tr>
<tr><td>⇦</td><td>외국선주협회</td><td>⇦</td><td>⇦</td><td>(경미안건)
각 지구 노사와
사전협의</td><td>⇦</td></tr>
</table>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하게 긴 사전협의 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에게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선사들은 운항선박 변경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통상 '터미널 입항 7일 전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등에 대해 '입항 전월 20일까지 항운협회(민간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시간은 짧은데 비해 사전협의 신청기간이 너무 길어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선농산물 수출관련 PLS 적용대상 문제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성분수는 2024년 12월 현재 760개 성분이다.

- (2005년) 283개 → (2006년) 799개 → (2018년 9월) 783개→ (2024년 12월) 760개

이에 따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농약성분 등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0.01ppm)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7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현재 반영을 검토 중인 농약성분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농약 등 한국의 수출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의 추가설정 요청과 함께 일본의 PLS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 잔류기준 설정에 한국의견이 반영된 품목(2022년 10월 기준)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0.01)	1→0.3	2005년 반영고시
Zoxamide	피망	미설정(0.01)	0.3	〃
Dithianon	피망	미설정(0.01)	2(←0.3)	〃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Prochloraz	피망	미설정(0.01)	1	〃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0.01)	2	〃
Flutolanil	딸기	미설정(0.01)	5→0.5→3	〃
Indoxacarb	오이	미설정(0.01)	0.5→0.2	〃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0.01)	1→0.7	〃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0.01)	0.1	〃
Bitertanol	가지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0.01)	0.3→0.7	〃
Cyazofamid	인삼	미설정(0.01)	10	2007년 반영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0.01)	5	2008년 반영
Flutolanil	인삼	미설정(0.01)	1	2009년 반영
Fenamidone	고추	미설정(0.01)	3	2009년 반영
Novaluron	고추	미설정(0.01)	0.7	2010년 반영
Acequinocyl	고추	(1→삭제)	1.0	2010년 반영
Tolylfluanid	인삼	미설정(0.01)	0.05	2010년 반영
Tolylfluanid	고추	미설정(0.01)	1	2010년 반영
Acetamiprid(2009)	고추	(2 → 1)	2	2010년 반영
Propamocarb	고추	(2→삭제)	2	2010년 반영
Lufenuron	오이	미설정(0.01)	0.3	2010년 반영
Flusilazole	고추	미설정(0.01)	0.3	2010년 반영
Bifenthrin	들깻잎	0.1	2	2010년 반영
Dithianon	고추	미설정(0.01)	2(←0.3)	2011년 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3	2012년 반영
pyrimethanil	복숭아	3 →삭제	10	2013년 반영
pyrimethanil	감	5 →삭제	2	2013년 반영
pyrimethanil	대추	10 →삭제	0.5	2013년 반영
Spirodiclofen	감	2 →삭제	1	2013년 반영
Spirodiclofen	대추	5 →1	5	2013년 반영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년 반영
Abamectin	고추	0.03	0.2	2013년 반영
Dithianon	피망	0.3	2	2013년 반영
Dithianon	고추	0.3	2	2013년 반영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Dithianon	인삼	0.5→삭제	0.5→0.2	2013년 반영
Pyridaben	가지	1.0→삭제	1	2013년 반영
Pyridaben	고추	2.0→삭제	2	2013년 반영
Difenoconazole	피망	미설정(0.01)	2	2014년 반영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0.01)	0.7	2014년 반영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년 반영
Cyprodinil	인삼	0.5	0.5→2	2014년 반영
Thifluzamide	인삼	미설정(0.01)	1	2014년 반영
Fluazinam	고추	미설정(0.01)	0.3	2015반영(180th)
Etofenprox	고추	5→삭제	2	2015.3.26. 고시
Teflubenzuron	고추	0.5→삭제	0.2	2016.3.17. 고시
Difenoconazole	고추	미설정(0.01)	1	2016.4.4. 고시
Tebufenpyrad	들깻잎	0.5	3	2019년 반영
48건	12작물			

주: 고려인삼과 깻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류, Other vegetables」로 분류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명령검사 제도

일본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중 명령검사(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2024년 12월 기준 방울토마토, 토마토, 청고추, 홍고추 4개 이며, 참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검사(30%)가 실시되고 있다. ID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과 협의된 농약성분의 경우에는 명령검사는 면제받고 있다.

※ 對일 수출 채소류 ID 등록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 품목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면제하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對일 수출품의 통관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일본정부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명령검사 현황(2024년12월 기준)

검사태세	품 목	검출성분	기준치(ppm)
검사명령 100% (전수검사)	방울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청고추	플루퀸코나졸*	0.01
		테부펜피라드	0.01
	홍고추	프로피코나졸	0.01
모니터링검사 강화(30%)	참외	클로르페나필*	0.01

*검출성분은 ID동록업체는 명령검사 면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국제기준(국제식품보호협약 제2조)에 의하면 검역병해충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되는 병해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19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45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 우리측에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53종 중 45종은 일본측이 인정한 반면, 8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

비검역병해충 미지정종(8종) 현황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병 (4종)	Colletotrichum lagernarium	탄저병	Anthracnose
	Erysiphe cichoracearum	흰가루병	Powdery mildew
	Phytophthora capsic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Phytophthora infestans	역병	Blight of potato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해충 (6종)	Bemisia tabac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Pinnaspis aspidistrae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Pratylenchus penetrans	딸기뿌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정부 조달 분야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 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의 사업자를 위해 정부조달 규정, 조달범위, 입찰방식 등 일본의 정부조달 시장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내각부(정부조달고충처리대책실)는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물품 및 서비스(건설서비스 포함)의 정부조달에 있어 사업자의 구체적인 불만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도 운용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준해 별도 고충처리제도를 제정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조달청이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집중조달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동단체 등 각 수요 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부조달 규모(물품·서비스)는 2021년 기준 2조 6,780억엔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총 조달건수는 1만 6,586건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다.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 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18,429 (-8.3)	22,648 (+22.9)	24,466 (+8.0)	26,213 (+7.1)	27,417 (+4.6)	26,780 (-2.3)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4,573 (-4.2)	14,170 (-0.3)	15,356 (+4.4)	15,710 (+2.3)	15,947 (+1.5)	16,586 (+4.0)

자료: 내각관방 홈페이지, 2022년판 정부조달에 관한 시책과 실적
(https://cas.go.jp/jp/seisaku/chotatsu/04tyotasu/index.html)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사용언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물품·서비스) 비율이 2021년 기준 금액대비 3.9%, 건수대비

4.8%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적별 비율은 2021년 기준 미국 365건(580.3억엔), EU 301건(350.2억엔), 기타 134건(102.9억엔)으로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산조달방식 하에서 중앙정부기관 조달은 국토교통성이 건설공사 및 건설컨설턴트 업무 등을, 그리고 총무성이 물품 및 용역 관련 업무를 각각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자격 신청은 물론, 조달정보 확인,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일본의 지식재산권 환경 개괄

(1) 출원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 건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 건수)는 전체적으로는 큰폭의 증감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의 파워나 활력에 대한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특허출원건수는 코로나 펜더믹의 영향 등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0 만건 이하로 감소되었으나, 2023년에는 300,113건으로 30 만건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다. PCT 국제출원건수는 2019년 5만 건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갈수록 존재 가치가 엷어지고 있는 실용신안출원건수는 2023년에 전년(4,513건) 대비 약 11% 증가(4,949건)하였다. 한편, 의장등록출원건수 및 상표등록출원건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심사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는 빠른 속도, 높은 사용자 만족도, 그리고 높은 특허 등록률로 요약할 수 있다.

ⅰ) 출원 심사 속도

일본은 2014년에 향후 10년간의 목표로서, 2023년도 말까지 특허의 권리화까지의 기간과 1차 심사통지(First Action)까지의 기간을 각각 평균 14개월 이내, 평균 10개월 이내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속도가, 선행 기술에 대한 간략한 대비만을 행하는 유럽 특허청의 서치 리포트(European Search Report)를 제외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에 특허의 1차 심사통지까지의 결과가 평균 9.3개월을 나타낸 이후로, 2020년 10.2개월, 2021년 10.1개월로 일정 기간에는 10개월을 초과하였으나, 2023년에 특허 9.5개월, 디자인 5.9개월, 상표 5.8개월로 당초의 10년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심사속도는 여전히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특허청) 중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본 특허청은 2023년 이후에도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은 10개월 이내, 권리 등록(최종 처분)까지의 기간은 14개월 이내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ii) 각 분야별 출원 심사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2024년 9월, 일본 특허청의 심사품질 및 IP5 등 주요 특허청과의 심사품질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국내출원 특허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평가(전체 평가)에서는, 「보통」이상의 평가비율은 97.4%(전년도 96.6%)、상위평가비율(「만족」·「비교적 만족」의 평가비율)은 60.9%(전년도 61.1%)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출원의 「판단의 균질성」, 「진보성 판단의 균질성」의 항목이 전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상표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평가(전체 평가)에서는, 「보통」이상의 평가 비율은 94.0%(전년도 93.5%)、상위평가비율 (「만족」·「비교적 만족」의 평가비율)은 52.5%(전년도 52.0%)로 나타났다. 「식별성의 판단」,「심사결과의

균질성」,「심사관 간의 판단의 균질성」의 항목은 상표심사 전반의 품질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상대적인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 이상의 평가 비율은 97.0%(전년도 96.2%), 상위평가비율(「만족」·「비교적 만족」의 평가비율)은 65.8%(전년도 61.3%)로 나타났고. 또한, 중점적으로 대처한, 「판단의 균질성」, 「거절사정의 기재」, 「전문지식수준」에서, 상위평가비율은 각각 52.1%(전년도 47.7%), 53.3%(전년도 52.4%), 55.8%(전년도 51.5%)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판단의 균질성」, 「거절사정의 기재」, 「전문지식수준」항목을 특별히 주력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다른 특허청과의 만족도 비교에서도, 일본 사용자들은 특허, 디자인, 상표의 각 분야 모든 평가항목에서 외국 특허청에 비해 일본 특허청의 심사 품질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ⅲ) 특허 출원의 등록률(특허 결정률)

또한, 2022년도 일본의 특허 출원에 대한 등록률(특허 결정률)은 75.9%로, IP5(동년도 기준 한국 74.3%, 미국 69.1%, 유럽 59.9%, 중국 51.1%) 중에서도 톱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의 유저(출원인)들에게 일본에 특허 출원을 많이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특허 출원을 하면 빠른 속도로 등록이 잘 이루어지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심사 품질이 높으므로 등록 후 무효가 잘 되지 않으며, 또한 권리 행사 시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강한 특허를 얻을 수 있는 심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3) 심판·소송

앞에서 일본 심사의 특허 등록률(특허결정률)과 높은 심사 품질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특허 등록 이후에도 무효 심판에서 무효 인용률이 10%대로 유지되는 등 높은 권리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무효율(%)	21	18	26	21	16	17	27	16	13

또한 특허 등록률과 직접 관계되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경우에도 2023년의 특허심판청구의 성립률은 78%로 202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사 전치는 물론이고 심사 전치 후의 심판 단계에서 역시 상당한 비율로 특허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2024년 6월에 발표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4」에서는 지재(IP) 전략의 중점 시책으로서, △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 △ 고도 지재인재의 전략적 육성 및 활약, △ 새로운 쿨 재팬 전략 ·콘텐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서 일본 내의 이노베이션 투자 촉진, 지재·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의한 가치창조, 기술 유출의 방지, 표준의 전략적 활용의 추진, 산학협력에 의한 사회 실현의 촉진 등, 지적재산의 창조·보호 ·활용 정책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생성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폭넓은 분야에서 생성 AI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일본 특허청은 AI 관련 발명의 국제적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3년에 확충·공표한 AI 관련 발명의 심사사례를 포함한 일본의 심사를 다른 국가에 정보를 발신해나가기로 하였다.

일본 특허청은 생성 AI나 가상공간 등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따른 지적재산의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법과 의장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였다. 현행 일본 특허법과 의장법은, 생성 AI에 의한 대량의 창작 행위나 발명을 상정한 규제가 없으며, 향후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 없는 사업자나 개인이 생성 AI를 악용하는 경우에 그 권리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허법이나 의장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각 지역의 지식재산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에 일본 특허청, INPIT, 일본 변리사회 및 일본 상공회의소 4개 기관이 연계하여 「지재경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24년 4월부터는 아오모리현, 이시

카와현, 고베시 3개 지역을 지재 중점 지원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재경영 지원 모델 지역 창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는 중소기업청이 더해져서 새롭게 5개 기관이 연계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특허청은 2024년 11월, 클라우드나 AI 등의 기술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국내외의 디지털 활용 측면의 경쟁은 격화되고, 디지털이 가져오는 서비스 수준도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고도·스마트한 디지털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특허청 디지털 전략 202X」 발표하였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법률의 최근 개정 내용

2023년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동 법률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장법에서는,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공개된 의장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공개한 날」, 「어느 하나의 공개행위」에 대해서 증명함으로써, 가장 먼저 공개한 날 이후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 공개행위 각각에 대해 인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증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4월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메타버스 상에서 제공하는 행위와 같이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었다. 한정제공 데이터의 보호 범위가 확충되어, 영업비밀과 한정제공 데이터와의 구별, 비밀 관리성을 가지는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명확해지게 되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손해액의 추정 규정 및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추정 규정도 확충되었다.

2024년 4월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지명도를 갖지 않는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출원인과 해당 타인의 성명 간에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인이 부정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해당 타인에 대한 승낙을 얻지 않고도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보형의 콘센트

제도가 도입되어, 상품 등과의 사이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한편, 특허법과는 별개로, 2022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추진법의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가 2024년 5월에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특허출원서에, 공개되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발명을 보전지정을 하여, 해당 발명의 공개 및 실시 등을 제한하는 한편, 특허출원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단속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실적은 2023년 총 3만 1,666건, 105만 6,245점으로 적발실적이 3년 만에 다시 3만 건을 초과하였다. 이는 금액으로는 171억 엔(추계)에 상당하며, 하루 평균 86건, 2,893점이 적발된 셈이 된다. 발송 국가별 적발은 중국에서 온 화물이 전체의 79.8%(2만 5,271건)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베트남(8.5%, 2,690건)과 한국(2.4%, 751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적재산권별 적발은 위조 브랜드品(가짜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건수기준 95.5%(3만 488건), 수량기준 47.4%(50만 824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가짜 캐릭터 상품 등의 저작권 침해물품이 863건, 가열식 담배용 카트리지 등의 의장권 침해물품이 44만 2,073점을 기록하였다.

품목별 적발건수는 의류가 10,401건(구성비 28.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갑, 핸드백 등의 가방류 9,028건(동 24.5%), 신발류 4,488건(동 12.1%), 휴대전화 및 부속품 3,373건(동 9.2%)을 기록하였다.

일본 출원 준비 시의 주의 사항

(1) 명세서 번역

일본을 포함하여 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명세서의 번역이다. 해당국에 출원하기 위한 특허 명세서의 번역은 오리지날 한국어 명세서 작성과 동급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해당국에서는 그 해당국 언어로 작성된 서면에 따라 그 발명을 파악하고서 선행 문헌과 대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출원용 명세서의 번역은 큰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당해 해외 출원의 성패를 좌우 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므로, 단순히 번역 비용이 더 저렴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품질을 중시하되 비용 대비 품질을 꼼꼼히 따져 볼 것을 권한다.

특허 명세서의 번역이 잘못되면, 권리화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며, 또한 어떻게 권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때에 필요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유지 비용만 들어가는 빈 껍데기 특허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신규성 리스크 관리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의외로 안이하게 타인이나 또는 외부에 노출시키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규성이 상실, 즉,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타인이 실제로 그 내용을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써 특허법적으로는 공개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 철저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회나 전시회에 서둘러 발표, 출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서둘러서 그 전에 출원을 마치는 방법을 제1 선택지로서 검토할 것을 권한다. 만약에 그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우선 한국 또는 미국에 가출원(출원서류로서 논문 등과 같이 특허 명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출원)을 하여 제1국 출원일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절차를 보완하는 방법을 권한다.

만약에 이러한 가출원 역시 여러 형편상 여의치 않다면, 공지가 되고서 1년 이내에, 권리화의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해외 출원을 마치고, 각 나라의 법제에 맞게끔 증명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지이다. 여기에서 공지 후 1년 이내에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나라의 해외 출원을 마치자고 한 것은, 공지 후 1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이미 공개 된 발명(또는 디자인)을 구제받아 권리화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지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층 더 주의해야 할 점은,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공히 갖추고 있더라도 각 나라마다 구체적인 규정이나 운용이 다를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트러블이 발생 할 수 있기에, 앞서 가급적이면 공지에 앞서 선출원(가출원 포함)하는 것을 권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논문이 웹(web)에서 선 공개된 발명에 대해 한국의 출원인이 웹 공개된 자료를 하드 카피(pdf)로 보내 주면서 일본에 공지 예외 주장 출원을 의뢰하였다. 이 때 논문이 공개된 웹의 URL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일본의 심사 규정에 의하면 웹 공개의 경우 해당 웹의 URL을 공지 예외 주장 증명 서류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의 제목 등을 인터넷 검색하여 나온 동 논문이 게재된 URL을 공지 예외 주장 증명 서류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색하여 제출한 URL은 불행하게도 출원인이 의도했던 URL이 아니라, 당초 의도했던 URL에 논문이 게재된 후, 같은 날 비슷한 종류의 논문 게재 웹사이트에 한번 더 게시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국 같았으면 한번 정도 거절이유가 나올 수는 있지만 잘 설명하면 거절결정까지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 특허청에서는 같은 날 같은 논문이기는 하지만 제1 공개가 아닌 제2공개를 제 출했으므로 제1공개에 의해 신규성 상실됨을 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공지 예외 주장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불안 요소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출원을 먼저 서두르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금지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Tariff Concession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약 10%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섬유, 신발, 가공식품, 기계류, 철, 플라스틱 제품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진행 중이다. 제조업자로부터 무관세 적용 신청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대안 상품이 국내에 적절하게 존재한다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무관세 제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관세 관련 상세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찾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WTO 회원국으로서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모든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 이하 수준이다. 현재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태국, 칠레, 아세안 국가,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브루나이 등이다. 2015년 12월 20일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으며,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전품 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의 제6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 교역은 상호 호혜적으로 우리나라는 석유 및 승용차, 전자기기 등 공산품을 뉴질랜드에 수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낙농품 및 목재 등을 주로 1차산업품을 수출하고 있어 한국-뉴질랜드 FTA는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28.6억 미불이며 수입은 17.4억 미불이다.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대상국의 부가가치가 해당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이 아닌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 수혜도 소멸됐다. 또한, 뉴질랜드는 관세 총독령 (Tariff Order 2005)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개발국가 및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최저개발국관세)을 부여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 기후변화 규정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추가 부담금(the Climate Change (Synthetic Greenhouse Gas Levies) Regulations 2013)'을 통해 냉장 및 냉동고, 냉난방 장치,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2013년부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 부담금 부과는 매년 재검토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4년 추가 부담금도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다.

※ 부담금 상세 부과액은 뉴질랜드 법령 조회 사이트인 New Zealand Legislation을 통해 확인 가능 (http://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13/0046/latest/whole.html)

통관절차상의 장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 철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 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채소 및 과일 수입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차 산업부(www.mpi.govt.nz)를, 통관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뉴질랜드의 반덤핑조사업무는 기업혁신고용부(MBIE) 산하의 무역구제단(Trade Remedies Group)에서 담당하며, 무역구제단은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덤핑조사는 무역구제단에 조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동 신청서에는 반덤핑협정 5.2조와 뉴질랜드 반덤핑법10(2)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의 국내산업·덤핑수입물품의 수입자 및 수출자·정상가격과 수출가격·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한다. 무역구제단은 동 신청서가 조사개시에 합당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개시 결정을 관보(New Zealand Gazette)에 공표하고 신청자, 수출국 대리인과 신청에 명시된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상업·소비자장관은 조사 조사개시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해야하고 최종

판정의 근거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종료는 조사개시후 15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조사종결 사유로는 덤핑이나 산업피해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국내산업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최소수입물량인 경우에도 반덤핑협정 및 뉴질랜드 반덤핑법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다.

반덤핑 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후에 상업·소비자장관이 부과하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 적용되고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s)와 덤핑방지관세의 소급적용(협정 10조)도 적용하고 있다. 우회덤핑(Circumvention Dumping) 방지제도는 제한적인 경우 즉, 당해 물품이 원래의 물품과 동종물품인 경우와 공급국 원산지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를 필요로 한다. 참고로 호주와는 1990년 7월부터 경제협력의정서(Closer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Agreement) 체결로 양국간에 무관세와 반덤핑조치가 면제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2013년 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사례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2018년 9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철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기업혁신고용부의 잘못된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결하여 동 건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7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뉴질랜드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 또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기업혁신고용부는

2021년 6월 한국 및 대만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혁신고용부는 2022년 3월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확정하였으나, 당시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감안해 관세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부로 동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준 및 인증을 요구하며,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업혁신고용부(MBIE) 산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뉴질랜드 표준 담당 부서(Standards New Zealand)(https://www.standards.govt.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1992년부터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라는 환경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축자재, 사무기기, 재활용 제품 등 다양한 품목군에 대한 환경 인증을 제공하며, 뉴질랜드 정부의 녹색구매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 제도는 소비자와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라벨링제도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 라벨링 통하여 소비자에게 △품종, △영양소, △알레르기 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ANZFSC)을 준수해야 하며, 라벨링은 해당 코드에 맞는 규칙을 지켜야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벨링은 Food Act 2014에 의거하고 있으며, Food(Safety) Regulation 2002와 New Zealand Food Standards 200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2024년 2월부터 뉴질랜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강화하여, 명확하고 평이한 영어로 작성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포장된 모든 식품에 적용된다. 뉴질랜드의 생산자, 상인, 장소를 포함해 뉴질랜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한 외국 물품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거짓 혹은 허위상표가 부착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선적변경(Reflagging Policy)

외국용선(FCVs, foreign charter vessels)이 뉴질랜드 해역(EEZ등)에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을 의무화하는 「수산법(Fisheries Act)」 개정이 2014년 7월 31일 완료되어 2016년 5월 이후 부터 외국용선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어선 국적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시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후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계법률,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

두 곳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물건이 생산되거나 공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해,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식품인증

모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차산업부(MPI)와 관할 시의회에서 담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Food Act 2014」에 따라 ①FCP(Food Control Plans)와 ②NP(National Programmes)로 식품산업을 위험별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FCP는 일정규모 이상의 요식업 및 식품제조업체에 적용하며, NP는 식품 유통 및 운송업체, 일부 식품 및 주류 제조업체에 적용되는데 해당 업체는 MPI에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Animal Products Act 1999」에 따른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Wine Act 2013」에 따른 WSMP 인증은 와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인증에는 HACCP가 적용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인증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인증을 별도의 인증 없이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수도시설 제품인증

뉴질랜드의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인증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ACMA)(www.acma.gov.au)는 전기통신, 무선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년 2월 말 부터 폐지되었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규제청(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공급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라디오송신기계와 관련하여서는 뉴질랜드 자체의 인증제도인 R-NZ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자재인증

뉴질랜드 주택의 대부분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며,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www. branz.co.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CodeMark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축자재와 시스템이 뉴질랜드 건축법(Building Act)과 건축 규정(Building Code)을 준수함을 보증하는 자발적 제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해당 인증을 획득하면 건축 동의서 발급 시 적합성을 인정받아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2024년 뉴질랜드 정부는 저렴한(affordable) 주택 공급 및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 및 건설 분야에서 대규모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해외 건축자재 수입규제 완화 △소형 주택(Granny Flats) 승인 제도 면제 △내진보강 의무 기한 연장 △소규모 건축물 부과금 면제 △건축 승인 변경 절차 간소화 △패스트트랙 승인 대상 건축안 맞춤화 허용 등이 포함한다.

환경인증(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4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통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목재 제품의 수입 시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원목(MDF 혹은 합판 제외)으로 제작된 테이블, 의자, 소파, 우든팔렛, 우든박스 등의 경우, 옹이나 나무껍질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유충의 알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국에서 사전검역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매틸브로마이드 화학약품이 첨가된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통관과 관련한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결정사항은 타협의 대상의 아니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품은 언제든지 뉴질랜드 세관과 뉴질랜드 MPI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랜덤으로 지정될 수 있다.

품목별 장벽

뉴질랜드는 △비디오테이프, 영화, 기록물, CD-ROM 및 출판물 형태의 유해 콘텐츠, △칼(손칼, 무기), △대마초 및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이용을 위한 장비, △범죄 도구 등을 수입 금지한다.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세부 항목은 뉴질랜드 관세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허가가 필요한 수입 품목으로는 △코끼리 상아 또는 거북이를 포함하고 있는 액세서리 물품, △고래·돌고래·두루미·꿩·거북이·코뿔소·호랑이 등 재료를 포함하는 의약품, △고래 등 해양 포유류 뼈로 만든 조각품, △고양이 가죽, △벌레잡이 식물 등이 있다.

뉴질랜드는 수입 품목의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금지 품목을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뉴질랜드 자연환경 보호와 공중보건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상세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또는 MPI(1차산업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2015년 8월 12일부로 WTO 정부조달협정 4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 싱가포르 등과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치는 정부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T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입찰서비스 절차를 개선하여 정부입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8월 국내 중견 건설업체가 뉴질랜드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인 KiwiBuild 사업 수주를 받은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뉴질랜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1984년 가입)으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1928년 베른협약, 1952년 세계 저작권 협약(UCC), 1994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가입하는 등 지재권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 중이다. 뉴질랜드의 2023년 지식재산권 지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ex)는 69.28점을 기록하였으며 129개 조사 대상국 중 20위를 기록하여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지식재산을 새롭거나 독창적인 혁신과 정신 창작물(creations of mind)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 문학, 연극, 음악 및 예술 작품, 녹음물, 영화, 방송, △공연예술가의 공연,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품, △의장(산업상의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명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관은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의장권(designs), 품종보호권(PVR; Plant Variety Rights), 지리적 표시권(geographic indications), 저작권(copyrights) 등으로 나뉘며, 각 법률에 의해 보고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2002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2013년 특허법(Patents Act 2013), 1953년 의장법(Design Act 1953), 1987년 품종보호법(Plant Variety Right Act 1987), 1994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94), 1986년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1994년 배치설계법(Layout Design Act 1994), 1961년 형사법(Crime Act 1961), 1993년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1993), 2006년 와인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 등록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 'Wine and Spirits' Registration Act 2006)이 있으며, 주요 법령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뉴질랜드 정부는 디지털 및 전자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94) 검토를 거쳐 스트리밍,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경우 1994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정법으로는 인터넷의 발전을 반영한 2008년 신기술 저작권 개정법(Copyright 'New Technologies' Amendment Act 2008)이 있다.

특허법

뉴질랜드에서 특허는 최초출원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발명으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권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뉴질랜드에는 실용신안 관련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뉴 정부는 특허법 개정안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16」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의 특허 전문 변호사 공동 등록 체제를 마련하고 양국 내 특허 서비스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 논의되었던 단일 특허 등록 체제는 뉴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미포함 하였다.

상표법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 절대적, 상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마누카 꿀 명칭 협회(Mānuka Honey Appellation Society)'에 지방발전기금 570만 뉴불(약 44억원)을 제공하는 등 마누카꿀 업계를 지원해왔으나, '마누카 꿀 명칭 협회(Mānuka Honey Appellation Society)'가 2015년 뉴질랜드 특허청(IPONZ)에 신청한 자국 내 상표등록 출원 신청은 상표 식별력(distinctiveness)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최종 무산되었다.

비록 국내 상표등록은 무산되었으나, 마누카꿀 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뉴질랜드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중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유사 제품에 '마누카꿀'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디자인권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마다 2회 갱신하여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이외 지재권법령 개정안(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Bill)을 통해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기술적(technical)' 개정을 일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

뉴질랜드는 Vodafone, Spark(Skinny), 2degrees 등 세 개의 이동통신 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가 99% 이상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하였으나, 2011년부터 동 규정은 폐지되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인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 규정」을 따르고 있다. 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해외투자법(Oversea Investmenet Act)의 적용을 받고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기업이 통신(telecommuni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고용혁신부(MBI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 및 페이지는 기업고용혁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뉴질랜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Chorus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유지

정부에 의한 의약품 공급

뉴질랜드 주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PHARMAC)에 의해 구매 및 공급된다. PHARMAC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약품을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뉴질랜드에서 복제약(generic)은 원약(original brand of the medicine)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는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청이 복제약의 안전성을 평가 및 승인하고 PHARMAC은 의료기기 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복제약 생산에 기금을 지원하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원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복제약이 시중에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PHARMAC은 제약회사와 특정 의약품의 사용량

상한선(capped expenditure)에 대한 합의를 맺고 사용량 상한을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7 Special 301 Report)」는 PHARMAC의 정책 및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가격책정 및 상환제도에 관한 투명성,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의약품 개발을 위한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환경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CPTPP 협상시에도 의약 관리청의 의약품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약품 규제 권한과 의약품 구입시 가격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민 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총 지분의 25% 이상 취득
- 주식매입 금액이 1억 뉴불 초과

- 회사 발행 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불 초과
- 투자 규모가 1억 뉴불 초과하는 자산 및 사업체 투자

토지 투자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 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 초과
-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 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 초과

※ 승인이 필요한 민감토지자산 상세목록은 뉴질랜드 법령 조회 사이트(New Zealand Legislation)를 통해 확인 가능(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5/0082/22.0/DLM358552.html#DLM358553)

한편 2018년 해외투자법(Oversea Investment Act)이 개정되어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거주용 부동산 구매시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이 산림조림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의 매입·임대를 위해서는 △현재 산림 조림중인 토지, △산림으로 이용될 토지, △연간 1천 헥타르 이상의 벌목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승인 절차가 개시되며, 토지를 활용한 사업 목적에 따라 △특수산림 검사(speical forestry test), △표준이익 검사(standard benefits test), △수정이익 검사(modified benefits test), △유효 동의(standing consent) 등 4개 절차 중 1개를 선택하여 해외투자실에 승인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해외투자법 개정법안 원문(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8/0025/latest/DLM7512906.html

한편, 뉴질랜드 현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해외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동 법안 개정을 통해

현재 심사 대상의 범위는 유지하되, 심사 과정의 신속화와 정부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해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투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승인 법안(Fast-track Approvals Bill) 도입하여 뉴질랜드 내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이 단기매매 차익이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용이해지도록 2015년 10월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시 납세자등록번호(IRD number) 제공 의무화
-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본국의 납세자등록번호와 신분증 제시 및 뉴질랜드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
- 매입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거용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① 실거주 주택 매도, ②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③ 연인관계의 종료에 따른 주택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2018년 출범한 Tax Working Group이 중간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대 필요성 등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2019년 4월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포기되었다. 'Bright-line Test'는 구매한 주택을 5년 내 매각해 발생한 양도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뉴 정부는 2021년 3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를 통해 2021년 3월 26일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일부 세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의 양도소득세(de facto capital gains tax)'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는 2024년 7월 1일 취득 기준으로 브라이트라인 적용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0-$15,600	10.5%
$15,601-$53,500	17.5%
$53,501-$78,100	30%
$78,101-$180,000	33%
$180,000+	39%

영화산업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 또는 공식 공동 제작(official co-production)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만 뉴질랜드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책을 통해 콘텐츠 및 스토리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 영화	2,500,000뉴불
단편 프로그램(비다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800,000뉴불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250,000뉴불
장편 시리즈(비타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500,000뉴불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방송시간당 250,000뉴불 이상
단편 & 장편 애니메이션	250,000뉴불 - 방송시간당 400,000뉴불 이상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2017년 기준 투자비용이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투자비용의 18%(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달러 초과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사촬영의 경우 'Live Action Grant'를 통해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작품이 뉴질랜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5%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기준보조금
장편극 영화	15,000,000뉴불	총 제작비용의 20%
TV 프로그램 및 기타	4,000,000뉴불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500,000뉴불	

※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토지 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 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건설허가 및 시행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자원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2018년 9월 14일, 자원활용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관리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2020년 6월에는 승인 절차 개선,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 도모,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자원관리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려는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혁은 기존의 '영향 중심' 시스템에서 '효과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 체계의 일부 주요 원칙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변경 사항은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시행되기까지 최대 10년 정도의 긴 전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어획쿼터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선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쿼터 라이선스는 「어업법(Fisheries Act 1996)」 Part 5에 따라 장관이 발행하며, 외국인 쿼터는 전체 상업적 쿼터의 양을 넘지 못한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관리를 위해 어획 쿼터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다. 2024년 3월, 수산부는 주요 상업 어종에 대한 연간 허용 어획량(TACC)을 재평가하고,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 감소가 우려되는 호키(hoki)의 쿼터를 5% 줄이는 한편, 자원량이 증가한 전갱이(jack mackerel)의 쿼터를 3% 늘렸다. 이는 자원량 평가 결과에 따라 어종별로 연간 허용 어획량을 조정하고 어획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뉴질랜드의 자원관리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상업적 쿼터의 상세 내용은 뉴질랜드 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업적 쿼터 세부사항은 뉴질랜드 수산부 홈페이지(www.fisheries.govt.nz)참고

기타 장벽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금지

1953에 재정된 기존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왔으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내용을 포함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혁신과 경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는 2013년 8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법안(Patent Bill)」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허법 개정법안 통과 당시에도 소프트웨어 특허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견해들이 있어왔으며, 2016년에는 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 특허 접근법을 따라 기여분(contribution)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제품과 결합되면 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세탁기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탁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켜 에너지 효율과 세탁능력이 개선된 경우 특허대상임.

※ 새로운 법률문서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하였으나 컴퓨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경우 특허대상이 아님.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 주변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뉴질랜드 제조업·유통업협회(Hanga-Aru-Rau)가 2023년 실시한 인력 부족 현황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요 산업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앞으로 제조·엔지니어링·유통 전반에 도입될 자동화 및 로보틱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질랜드 고용·제조업협회(Employer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2023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고숙련 기술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며, 응답자의 47%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스카우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Z)은 엔지니어, IT 전문가, 전기공 등을 전문인력 부족 직군(Skill Shortage List)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건설 및 의학 전문가 등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 사증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직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디지털무역 장벽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Privacy Act)

2020년 12월 1일부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1993)이 폐지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의 개입·위험관리를 장려하며, 개인정보보호 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2020)이 시행된다.

The Privacy Act 2020은 국외기관과의 정보공유협정을 제한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권한으로 개인정보보호국간(privacy enforcement authority)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The Privacy Act 2020 8부 193조(Part 8 Section 193)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정보가 제3국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어 뉴질랜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경우 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한다. 따라서 뉴질랜드 내 기관은 해외로 개인 정보 전송 시 뉴질랜드 보호법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호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해외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 시 동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영화·비디오·출판물 분류법(Films, Videos, and Publications Classification Act)

뉴질랜드 정부는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퇴치에 중점을 두고 게시 중단 통지를 발행하고 인터넷 필터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여 뉴질랜드 국민을 일상적인 소셜 미디어 피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에 의해 뉴질랜드 정부 산화기관으로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OFLC)가 설립되어 게임 등급 분류를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 만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단위 기준 8,000여 품목 중 4,491개 품목이다. 2024년 현재 평균 명목 관세율은 6.31%, 농산물과 공산품의 평균 명목 관세율은 각각 15.03%와 4.14%로 2018년부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평균 명목 관세율(단위 :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산물	14.65	14.66	14.66	14.91	15.12	15.12	15.06	15.06	15.06	15.06	15.03
공산품	4.23	4.23	4.23	4.21	4.18	4.16	4.14	4.14	4.13	4.13	4.14
전체	6.35	6.35	6.35	6.36	6.39	6.37	6.34	6.34	6.34	6.34	6.31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경제부 에너지국(經濟部能源局)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은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세(關稅稅率機動調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년	14	446
2001년	8	222
2002년	2	13
2003년	2	30
2004년	1	11
2005년	1	11
2006년	1	2
2007년	1	7
2008년	4	17
2009년	7	40
2010년	5	42
2011년	5	16
2012년	2	5
2013년	0	0
2014년	1	4
2015년	4	11
2016년	2	8
2017년	0	0
2018년	0	0
2019년	0	0
2020년	5	13
2021년	3	19
2022년	6	23
2023년	4	23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기준 총 2,509개의 농·공산품(농산품 1,077개 품목, 공산품 1,432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금지되고 있다.

(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16종의 농식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농산품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바, 3종 품목(바나나, 녹용, 동양배)을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할당량 (2025년)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비례할당 (20%)	
녹용	5,000kg	50kg		
동양배	9,800	20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250	잔량에 따라 할당량 책정	
땅콩(땅콩기름 포함)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코코넛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檳榔)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 2011년부터는 △수입량 제한 해제, △동일 세율(17.5%) 적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2024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화경제연구원은 대만이 2021년 9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 가입 신청을 함에 따라 세율이 향후 10% 이상 17.5% 이하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2023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04	2006	2008	2010	2011-2024
할당량	미국	18,593	26,774	38,555	55,519	∞
	EU 국가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캐나다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우리나라 및 기타 WTO회원국(국가당)	14,400	20,736	29,860	42,998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6.1	23.2	20.3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60	60	30	30	17.5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반덤핑 및 상계관계

대만 재정부는 2013년 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3년 8월 15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년 8월 14일까지 실시했다.

대만 재정부는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燁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으며, 차이나스틸은 브라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합금(탄소)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2016년 2월 22일 동 철강제품 2개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를 개시했다. 대만 경제부는 동건 관련 2016년 4월 21일 국내 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재정부는 2016년 8월 4일 덤핑 행위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만 재정부는 2016년 11월 25일 덤핑 유무 및 덤핑 과세율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만 경제부는 2017년 1월 26일 동 2건의 제품이 대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7년 2월 20일, 재정부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22%~77.3%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브라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탄소강판에 대해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02%~80.50%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다. 기간 만료 이후,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일몰재심을 통해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재정부는 2022년 9월에 5년간(2022년9월14일~2027년9월13일) 반덤핑 관세(△현대철강 5.8%, △포스코 19.99%, △기타 업체 80.5%)를 지속 부과하기로 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

수출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의 표준 관련 업무는 경제부 산하 표준검역국(BSMI)에서 관할한다. 표준검역국에서 지정한 국가표준 영문약자는 CNS(National Standards of the Republic of China)로 우리나라의 KS에 해당하며, 표준검역국은 ISO 9001에 해당하는 CNS 12681를 발행한다. 또한 대만의 전국인증기금회(TAF)에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인증 협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2023년8월부터 동식물방역검역서로 승격)은 2006년 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對대만 수출을 금지한바 있다.

이외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에서 한국산 수입식품에 대해 농약잔류량, 화학 조미료 함유량 등 성분 기준치를 적용하여 검사를 주관하고 있다. 기준량 초과시, 해당 식품에 대해 수입을 일시 중단 시키고 정정 조치를 요구한다. 2024년의 경우, 과수(딸기, 배추, 귤 등) 및 가공식품(양념 소스류)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년 12월 9일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년 7월 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GAP적용 기준(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을 악용하여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기업에게 낙찰 참여를 제한한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2009년 7월 15일 세계국제무역기구(WTO)의 GPA 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발효됐다. 2023년 기준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건 수는 총 4,247건(표결 금액 기준 8,522억 대만달러)으로 2022년 대비 103여 건(표결 금액 2,425억 대만달러) 늘어났다. 이중에서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988건(비중 23.26%)이었으나 표결 금액은 1,495억 대만달러(비중 17.55%)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언어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 별도 구비), △제반비용, △시간소요 등의 부담이 따르는데, 이에 반해 대만 업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 (2023년도 기준)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237	4,487.19	5	2.11	113.10	2.52
구매입찰	1,940	3,000.97	936	48.25	1,352.52	45.07
용역입찰	2,070	1,034.14	47	2.27	30.37	2.94
합계	4,247	8,522.30	988	23.26	1,495.98	17.55

자료: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참고로 2023년 가장 큰 규모(51억 대만달러)의 외국기업 낙찰 건은 대만전력공사의 내열 강철심 알루미늄 송전선 및 그 부속품 구매 건이었으며, 한국 기업(LS Cable & System)이 대만기업과 함께 낙찰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대만은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만 내정부 정경서는 2004년 11월 지식재산권보호 전문경찰 전담반(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정식 설립,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 및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2021년 9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가입 신청을 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6년부터 CPTPP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수정하고 있다.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과 영업기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저작권법(著作權法),「특허법(專利法),「상표법(商標法),「영업기밀법(營業祕密法),「집적회로 및 회로설계 보호법(積體電路及電路布局保護法), 식물품종 및 종묘법(植物品種及種苗法)을 비롯해「CD관리조례(光碟管理條列)」,「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등이 있다.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평무역위원회(公平交易委員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자 19명을 2004년 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년 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智慧財產局)이 대만 업체에 CD-R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년 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외 우리 정부의 프로그램 심의워원회는 2009년 대만 지적재산권 등 기술법에 관한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하는 정부 자문기관인 대만 과학기술법센터(STLC)와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우리 특허청과 대만 지혜재산국은 2003년부터 특허법, 상표법 등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두 기관은 2015년 6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지적재산 데이터 교환·우선권 서류 전자교환(PDX) 업무협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20년 8월에는 미생물기탁상호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대만은 2023년12월5일, 국가안전법에 의거하여 반도체를 비롯한 항공우주, 방위(군수), 농업, 정보보안, 양자기술, 에너지 분야에서 총 32개 항목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영업 비밀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관리 항목은 국가안전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국가과학및기술위원회'에서 '국가핵심관건기술인정규정(國家核心關鍵技術認定辦法)'의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매년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검토한다. 항공우주 분야 기술이 총 10개로 가장 많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도 8가지 기술(▲14나노 이하 공정의 IC제조기술과 관련 핵심 가스·화학품·장비 기술 ▲이기종 통합 패키징 기술 ▲저온 반도체 칩 회로 설계 및 프로세스 ▲밀리리터파 질화갈륨(GaN) 전력 증폭기 단결정 마이크로파 IC를 위한 웨이퍼 설계 기술 ▲고주파 전력 증폭기용 질화갈륨 반도체 제조 기술 ▲고전압 전력소자의 실리콘 카바이드(SiC) 반도체 제조기술 ▲인공지능 컴퓨팅을 위한 고성능 칩 설계기술 ▲고대역폭 밀도의 소형 칩 상호연결회로 설계 기술)을 핵심 기술로 지정하였고 방위 6개, 농업 3개, 정보보안 3개, 양자기술 1개, 에너지 1개도 핵심 기술로 지정하였다. 핵심 기술을 불법 유출·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1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1억 대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도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벌금에 부과한다.

외국인(화교 포함) 투자진출 제한분야

(1) 투자 제한분야

대만은 2003년도에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 및 내수 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8년 2월 8일 개정(2023.12월 현재 동일 적용)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총 96개(중분류 업종 기준, 상세 내용 아래 참조)이며, 10개 업종을 금지, 16개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투자 금지 분야(2018년 2월 8일 개정)

중분류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화학원재료/비료/질소화합물/플라스틱·고무 원료 및 인조섬유 제조업	기초화학원료제조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대우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甲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대우
		CFC, Halons,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대우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군용 촉발신관, 도화제, 화약기폭제 재료	국방부	-
비(卑)금속 제조업	미분류 기타 기초금속제조업	금속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대우

중분류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기계설비 제조·수리업	기타 통용 기계설비 제조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육상 운수업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가능
	택시업	-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대우
라디오·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공중파 라디오 공중파 TV	국가통신 전파위원회 (NCC)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금융 중개업	우편·저축, 환어음	-	교통부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내국인 대우
법률·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스포츠·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투자 제한 분야

중분류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잡곡·특용작물·야채·식용 버섯·기타 농작물 재배업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소·돼지·닭·오리 사육 및 기타 목축업			
임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대우

중분류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화학원재로/비료/질소화합물/플라스틱·고무 원료 및 인조섬유 제조업	기초 화학원료 제조업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컴퓨터·전자제품·광학제품 제조업	-	군사 측정 설비	국방부	-
기타 운수장비 및 그 부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운수공구 및 해당 부품 제조업	군용 항공기구 제조·수리	국방부 경제부	-
기타 제조업	기타 미분류 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대우
전력 및 연료 가스공급업	전력공급업	송전·배전업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수도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대여	교통부	화교 가능
	하천·호수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가능
운수보조서비스업	항공운수보조업	공항 서비스업자 항공 케이터링업자	교통부	1. 화교 가능 2. 다른 조약 또는 협정으로 규정된 자는 예외
통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	-
법률·회계서비스업	지정사 사무서비스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 서비스	내정부	-
라디오·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 TV방송 사업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자료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 경제 구역(예: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내정부(內政部) 지정사(地政司)가 제정한 「토지법(2024년 8월 7일 수정)」 3장과 「외국인의 대만토지 권리취득 작업요점(2019년 3월 21일 수정)」에 의거, 외국인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및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공관, 공익단체 회의장, 묘지, 국내 중대건설·전체 경제 또는 농장 경영에 도움이 되며 중앙기관의 허가를 받은 투자건 등의 목적)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해당 관할 시·현(縣)정부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토지 허가기간 및 사용용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현(縣)정부의 통지 이후 3년 이내 관련 부동산을 대만인에게 매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대만은 외환관리조례에 의거한 '외환 송금 및 교역 사전신고변법(外匯收支或交易申報辦法, 2022년12월26일 개정)'에 따라 개인 및 회사 명의에 의한 해외송금액은 아래와 같은 제한이 따른다.

- 사업체: 1년 누적송금총액 5천만 달러 이하
- 개인(유효기간 1년 이상 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및 단체: 1년 누적송금총액 5백만 달러 이하

단, 송금액이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체: 송금 건당 100만 달러 이상

- 개인(유효기간 1년 이상 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및 단체: 송금건당 50만 달러 이상
- 비거주자(사업체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송금건당 10만 달러 이하
-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선물거래 관련 송금
- 대만 경내 거래이나 대만 경외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송금할 경우
- 그 외 은행측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송금

경쟁정책

대만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많지 않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3단계 발전 정책을 수립하였다. 대만은 해상 풍력의 핵심 자재 항목을 국산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5개 분야의 25개 핵심 항목의 국산화 비율이 60% 이상인 프로젝트만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EU는 2024년7월 26일, 동 정책이 WTO의 수입 상품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WTO측에 제소하였고, 대만 정부는 2024년11월8일 국산화 조건을 삭제하기로 EU와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마무리되었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10개 항목으로 이중 ▲세라믹 타일(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정 알루미늄 호일(중국) ▲수건(중국) ▲포틀랜드시멘트 및 클링커(중국) ▲과산화벤조일(중국) ▲플로트 유리(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오브셋인쇄판(중국) 등 10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8월 21일까지 각각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탄소강판(중국, 브라질,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과 ▲특정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중국, 한국)은 2022년 일몰재심을 거쳤으며, 그 결과 한국 제품은

향후 5년간(2027년 9월 13일까지) 반덤핑 과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8.8.14.까지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SUS300계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한국)은 2019년 일몰재심을 거쳤으며 그 결과, 2024년8월28일까지 반덤핑 과세 부과가 연장되었고, 2024년12월 현재 제2차 일몰 재심조사 중이다. 한편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탄소강 냉연제품(중국) 등 2건은 2019년 10월 9일부터 2024년 10월 8일(5년간)까지 반덤핑 규제 항목에 추가하였으나, 대만은 전반전 경제 이익을 고려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다가 2024년10월9일자로 일몰되었다.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022년 2월 한국-대만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효함으로써 상호 방문객의 편의성이 증진되었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불의의 사고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년 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의 생산액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10년(2014~2024)간 평균 6.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만은 중앙은행, 39개 본토은행, 31개 외국계 은행, 21개 보험사, 기타 농·어업 신용부,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이 있다. 우리의 하나은행도 2021년6월 한국 은행 중 최초로 대만의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22년4월25일 타이베이 지점을 정식 개설하였다.

대만 행정원은 금융업 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6월14일 '금융발전행동방안(金融發展行動方案)'을 통과시켰으며, 동 방안은 은행업, 증권선물업, 보험업, 금융과학기술 등 4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대만내 금융투자기관이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금융행동방안(綠色金融行動方案)'을 추진하고 있다. 동 방안은 現대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제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일환이다. 동 방안은 단계별로 수정을 거쳐 왔으며, ▲1세대(2017-2020년)에는 금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증진, ▲2세대(2020-2022년)에는 투자 영역 확대와 영속적 개념 도입, ▲3세대(2022-현재)에는 금융업과 신재생에너지업의 관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만은 2024년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집권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시아자산관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6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프라이빗뱅킹 서비스 확대, 국내 자산관리업 발전, 외국자산관리사 유치, 주식시장 확대, 보험업 자금의 국내 공공 건설 투자 촉진, 관리·감독 행정의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 녹색 금융 등과 관련한 각종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 정책의 환경 조성을 위해 50개 금융관련 법규(투자 신탁업 펀드 발행 규제, 주식투자 유치, 은행의 고액자산가 유치 업무 개방, 기관투자자와 보험 투자자 유치등)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立及管理辦法, 2001년 9월 4일 제정, 2009년 12월 11일 개정, 2018년 3월 31일

개정, 2022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외국 은행의 대만 지점 설립 구비 조건 중 대만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이 2억 5천만 대만달러(약 100억 원)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2억 5천만 대만달러(약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USD 이상 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 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년 1월 1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며, 음반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음반물 불법 복제 판매 신고 시, 최고 1백만 대만달러(약 4천만 원) 배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한 결과 미국 BSA가 2018년 발표한 2017년 세계 각국의 불법복제율 중 대만의 불법복제율은 34%로 2015년 대비 2% 포인트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9인승 승합차 포함)의 물품세를 35%에서 30%로 인하했고, 2011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쿼터 제한 없이 1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9년 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대만은 2013년7월10일 뉴질랜드와 경제 협력 협정(ANZTEC)을 체결한 후 2018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뉴질랜드산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폐지하였으며, 2025년부터 마지막 남은 우유, 녹용의 관세까지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2024년9월25일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다만 반드시 원산지증명서와 방사능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해 대만정부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대만과 중국(이하 양안)은 양자간 ▲경제, 무역 및 투자협력의 강화,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보장 시스템 확립, ▲경제협력 영역의 확대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2010년 6월 29일 체결하였으며, 2010년 9월 12일부로 정식 발효하였다. 특히 양안은 ECFA를 통해 주요 교역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통한 상호 개방에 합의하였다. 상품의 경우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은 금융 및 非금융서비스업 11개 분야, 대만은 9개 분야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였다. 다만, 2016년 차이잉원 총통 1기 집권 이후 2023년12월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이 중국산 2,509개 품목에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 장벽이라고 발표하였고 2024년 세차례에 걸쳐 대만에 대한 관세 혜택을 중단하였다. 2024년1월1일부터 프로필렌 등 12개 대만산 무기화학물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중단하였고, 2024년6월15일부터 추가로 대만산 윤활유 기초유, 이소프로판올, 플라스틱, 섬유, 구리, 기계장비등 134개 품목 관세 혜택을 중단하였다. 또한, 같은해 9월25일부터 대만산 과일, 야채, 수산품 등 34개 농산품 관세 혜택도 추가로 폐지하였다.

대만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락토파민(Ractopamine,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제)이 함유된 미국産 돼지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2021년12월18일 실시한 국민투표 안건 중 미국産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개방여부 사항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수입 개방을 찬성하는 의견(51.21%)이 개방을 반대하는 의견(48.79%)보다 높았으나, 의결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2021-22년간 수입된 외국산 돼지고기(총 21개 관련 항목 대상으로 3,886건 샘플 조사)에서 락토파민 성분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2023.1월)했다.



라오스

수입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8월에는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일반품목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0%가 되며, 민감품목은 2024년까지 점차 감소해 5%까지 관세가 내려간다. 초민감품목의 A군과 E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B군만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AKFT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EU와 다르게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공동의 대외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ASEAN 각 회원국 자국의 관세양허표에 기초해 각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역시 라오스는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관세율은 다른 ASEAN 회원국의 관세율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4륜)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20%, 특별소비세 31~22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라오스의 일반 수입 관세율은 0~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에 제정,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율이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절차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 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Doing Business Report 2020』에서는 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지표에서 190개 국가 중 154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라오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6일정도 소요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Tax Registration, ②Business License, ③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Truck Waybill, ⑦Import license, ⑧Packing list, ⑨Cargo manifest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1년 9월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갱신이다. 2011년 6개의 수입품목에 대한 국제 거래를 금지했으나, 2021년에는 12개로 제재 품목을 늘렸다. 라오스 무역 금지 품목은 국가의 안전, 보안, 보건, 환경과 국가의 천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최근까지 산업용 위험물질, 무기류, 마약성 향정신성 물질, 유해어법(distructive fishing) 관련 도구 및 기기,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 위조지폐 관련 분야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지난 2021년 9월 13일 발표된 새로운 수입금지 품목은 기존 품목에서 1개가 빠지고 7개가 늘어났다. 제외된 품목은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어법 관련 도구다. 바다가 없는 라오스 특성상 영향이 크지 않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유해어법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치 않아 제외됐다. 신규 추가된 항목은 국제 협약이나 자국민보호, 통신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폐기물(e-Wast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규정 품목, 방사성 광물, 위험 화학물질이 포함된 살충제, 무선통신망 교란 관련 물품, 전자담배가가 신규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으로 해당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동·식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라오스 농업임업부는 외화부족에 따라 농산물 및 일부 축수산물 등 일부 수입품목*에 한해 수입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 배추, 컬리플라워, 양파, 마늘, 토마토, 고추, 감자, 당근, 비트 등의 채소류 및 돼지고기, 소고기 등

독점규제

2004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라오스는 UNCTAD의 지원 하에 「독점규제령」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령」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카르텔의 형성이나 독점, 덤핑, 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규제령」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Trade Competition Commission)과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독점규제와 관련된 모든 체계가 갖추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에서는 라오스가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제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 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역에서는 경쟁저해요소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역에서는 일부 경쟁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달

모든 정부부처, 행정기관, 국영기업 등의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내가격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

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는 2018년 5월 25일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No.38/NA)을 공포하였다. 이 법안은 2018년 6월 9일부터 2011년 12월에 발표된 이전의 법을 대체하였다.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은 상표권 보호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정하는 등 기존 국가의 지식재산권 법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Trademarks)

기존 법은 단어, 문자, 숫자, 상품 포장, 조형요소, 색상조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규 법은 3D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이미지 또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표등록 시, 상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 3자가 상표등록에 반대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상표등록은 기존 법에서는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하였으나, 신규 법은 상표 등록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발명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허 및 발명 등록에 대해 제3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예비 심사가 완료되면 제3자는 지적재산권 부서(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에 제출된 신청서를 출판물을 통해 통보받게 되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대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집적회로 디자인

주요 수정 내용은 없다. 위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예비 심사가 완료되면 제3자는 신청서가 지적재산권 부서(DIP)에

제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60일 이내에 등록에 반대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지적재산권 부서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중재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상고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하므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벌 강화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산하 지적재산국(DIP)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20년 한국 특허청-라오스 지적재산국 간 한국 특허 등록 기업이 라오스 내에서 간편하고 신속한 특허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서비스

교육

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외환

라오스의 「외환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되는 교통비, 보험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하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중앙은행(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화의 기준 환율을 일일 단위로 정하고 기준환율에 대한 시중은행 환율 변동폭을 ±7.0%로 제한을 두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하고 있다. 2023년 라오스 중앙은행 기준 환율이 20,000 kip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BOL은 사설환전소를 폐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 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은 외국투자 49% 지분을 가지고 라오스 국영기업 및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6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라오스는 Lao Telecom, Star Telecom(UNITEL), TPlus, ETL, Best Telecom, Planet 등의 통신회사가 CDMA, GSM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중이며, 이중 Sky Telecom과 Planet 사는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Lao Telecom은 2020년 비엔티안 일부 지역에 5G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산간 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느리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영은행 BCEL의 간편결제 서비스(Onepay) 등을 바탕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 음식 배달부터 소비재 유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E-GetS, Foodpanda 등)이 생겨나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다. 외국 국적의 라오스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다.

투자 유치

개요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개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하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는 부작용 등이 증가하고 천연자원 중심의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자원(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한 바 있다. 한때 중단을 풀기도 했으나 2023년 5월 라오스 기획투자부는 광물 분야의 신규 탐사 허가권 남발을 막고자 신규 발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장 개방 이후 2022년 3월까지 총 4,832개 사업에 약 530억 달러가 투자(라오스 자체투자 포함)됐다. 아세안(ASEAN)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53개국)로부터 투자가 유입되었으며, 특히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대비 약 81.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고속철도 사업 및 여러 개발 사업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압도적인 규모로 진출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은 아세안 단일 시장으로 라오스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동향을 보면 광업과 전력 발전사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농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력발전사업의 경우 라오스 정부가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즉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선투자하여 발전소를 짓고 일정기간(예: 30년) 운영해 수익을 낸 후 라오스 정부에 시설을 무상 헌납하는 형태를 권장하며 관심 투자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최근 라오스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호텔, 음식점, 기념품, 여객 운송 등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라-중 고속철도 완공으로 국경이동이 원활해지며 관광객 유입 외에 물류업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체제 도입 이후 대외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법을 먼저 제정하였으며,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 투자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후 효율적이고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한 투자 관리를 위해 2009년 국내외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진흥법을 개정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된 라오스 투자진흥법은 2016년 투자관리감독 강화, One-Stop 서비스 품질 제고, 투자 특혜 내용 및 구조 조정, 경제 특구 등 양허 사업 관리 등을 위해 개정 완료되었으며, 2017년 4월 19일부터 발효되어 적용 중이다.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절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단일창구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는 기획투자부 산하 투자

진흥국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기획투자부, 상공부, 재무부, 공안부, 노동사회복지부, 외교부 등)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투자환경 및 법규에 대한 정보 제공, 각종 투자신청 구비서류 작성 안내, 사업/취업/거주 비자신청서 접수, 사업등록번호 및 납세자등록번호 확인 제공 등이다.

투자 형태

라오스 투자진흥법 3편 1장에서는 투자 유형을 아래 5가지로 항목으로 규정하며, 투자 종류는 일반 투자(General Investment)와 양허 투자(Concession Investment)로 구분하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오스 국내 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 국내외 투자자간의 합작 투자: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 및 등록하여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외국인 투자자는 총 자본금의 최소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드시 합작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100% 외국 투자자 단독소유기업: 외국인이 단독으로 라오스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외국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도 해당됨.(단,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 정보 수집과 투자기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음.)
- 국영기업과 개인기업 사이의 합작 : 라오스 국영기업과 국내외 개인기업이 공동 소유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세부 권리와 의무 등은 계약서 및 정관에 상세히 명기해야 함
- 민관합동 파트너십(PPP) : 정부 당국과 민간 부문의 JV 계약으로, 신규 건설, 인프라 개선,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적임. PPP 분야, 조건, 절차 등은 JV 계약과 별도로 규정됨

대부분의 투자 사업은 일반 사업(General Business)에 속하며, 라오스 정부는 사업 규제 목록(Controlled Business list)에 속한 것과 아닌 것으로 다시 나누어 관리된다. 양허사업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과 SEZ, 인프라 개발 등 라오스 정부가 지정하는 분야에 속하는 사업으로, 허가 기간은 1회에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오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은 기업등록증, 법인 인감, 세금 등록 세 가지를 받아야 완료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한다. 투자 법인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공장 설립 또는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설립허가 및 준공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공장 및 시설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추가 절차 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외에 공장운영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처리허가서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오스 기업법 상에는 기업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인감과 납세번호증서 없이는 법인 은행계좌 개설, 노동허가 취득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2020년 라오스 정부는 별도 납세번호증서 신청이 없어도 기업등록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 등이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아직 원활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관련 허가를 모두 갖춘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난 후 라오스 중앙은행(the Bank of the Lao PDR)의 통화정책국(Monetary Policy Department)으로부터 투자납입증명(Capital Importation Certificate)을 발급 받아야 한다.

토지사용권

1975년 라오스는 공산혁명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해 왔다. 라오스 정부는 2011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2016년 12월 개정된 투자촉진법은 토지항목을 삭제하여 토지사용권 획득이 어려워졌다. 토지사용권은 기존 토지

임차권과 달리 토지보호, 이용, 용익,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토지관리청(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만 가능하다. 또한 대상토지의 총면적은 8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거주 및 사업영역 그리고 이에 필요한 건물 건축 등 라오스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목적범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매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국가토지관리청은 토지사용권 매입자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을 발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허용기간만 유효하고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사용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투자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된다.

그러나 토지사용관련 규칙은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며 아울러 앞서 말한 과거 정부의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해외투자자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라오스 주요 정치·경제인들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라오스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2020년 토지법 개정으로 콘도미니엄, 아파트, 주거상업단지 등의 집합건물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해당 소유권은 건물 토지사용권 유효기간에 한해 유효하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라오스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건설, 서비스, 물류, 제조, 첨단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지역이 SEZ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남부 사바나켓(Savannaket)주의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은 2002년부터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SEZ로 면세기간 2~10년(제조업 우대 10년, 서비스업 2년), 법인세 8~10%, 개인소득세 5% 등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최대 75년까지 임차(연장도 가능), 30년 이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 약 200개 기업이 Savan-Seno SEZ에 진출해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송금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의 과실송금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 회수(repatriation), 납세증명서(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surrender) 등의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배당금의 해외반출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당금을 해외로 반출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오스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서 외국환을 매입하여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해외송금신청서
② 해당 상업은행의 은행계좌 내역서 또는 명세서
③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자유치증서
④ 납세증명서
⑤ 배당금 배분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안 (해당되는 경우)
⑥ 배당세(배당금의 10%) 원천징수 후, 이를 공제한 차액이 송금가능한 배당금
⑦ 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속 가능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회계처리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회계법」에 따라 계산서 및 회계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시행하여야 하는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소규모기업은 기본회계시스템(현금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갖춘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계산서는 라오어와 킵(Kip)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문서는 최소한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부기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무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조세 적용

라오스 납세 주체는 법인, 개인, 기관 등 세 종류로 구분되며 납부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된다. 직접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일괄세, 환경세, 기타 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고 간접세는 특별소비세와 부가세로 구성된다.

법인세(Profit Tax)는 2020년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 사업체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가 정책에 따라 광산채굴업, 교육업, 의료업 및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담배 생산업, 상장기업 등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다. 담배를 생산, 수입, 유통하는 법인의 경우 담배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법인세가 22% 부과되며, 광산업 기업에는 35%가 부과된다. 세법에 따른 정식 회계장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프리랜서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14조에서 정하는 이윤율에 따라 수익을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누진 법인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법인 설립 없이 수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크게 급여소득세, 임대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은 9가지로 나뉜다. 개인, 법인, 기관은 현금 및 현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이 4억 낍(Kip) 이하로 부가세 시스템에 속하지 않을 경우 회계정산에 근거하지 않고 일괄세를 부여할 수도 있다.

※ 연간 매출액이 5,000낍 이상 4억낍 이하인 경우 제조업, 농업, 기타 가공처리 분야는 1%, 금융업 2%, 서비스업 3%의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연간 매출액이 5,000만낍 이하인 경우 사업 분야에 상관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내외 개인, 법인 및 기관에게 과세된다. 수입 물품 및 서비스 또는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과세되고, 라오스로부터 수출되는 물품 및 서비스는 0%가 적용된다.

소비세는 라오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일부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며 물품 수입 판매 시 적용 받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지적재산권 사용료(royalty)에 과세되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국제중재절차

라오스 법은 계약사업 유형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판결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라오스 내에서 현지인(기업)과 외국인(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이 법정 논쟁으로 발전할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나 정보 접근 측면에서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협의해 두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해결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라오스 법원이 아닌 제3국(예: 싱가포르, 홍콩 등) 사법기관으로 계약서 상에 명기하여 국제적인 중재를 구하기도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할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소재지의 마을이장(나이반)이 조율하며, 협상 불가 시 이후 진행은 법무부 산하 국가경제분쟁중재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른다.

합작사업 혹은 지분 100% 단독투자로 진행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한다.

- 양자간 조정 : 분쟁 발생 시, 일차적으로 양자는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 행정적 조정 : 양자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기획투자부, 또는 기타 해당 부서의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기획투자부의 투자진흥감독위원회(IPSC)에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 기한은 30영업일이다.
- 경제분쟁해결센터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 : 상기의 방법들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앙이나 지방의 경제분쟁해결센터에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소송 :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소송이 있다.

라오스는 뉴욕협약 가입국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중재판정은 라오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 당사자의 국적이 뉴욕협약 가입국일 것

- 외국중재판정의 내용이 안정, 평화, 환경과 관련, 라오스의 헌법 및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지불 의무 당사자가 라오스 국내에 재산, 운영사업, 지분, 은행 예금,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할 것

금융 시장 현황

라오스의 금융 부문은 라오스 국립중앙은행, 재무부, 국영상업은행, 민간은행 및 기타 외국은행 지점, 보험사, 증권거래소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은행업이 금융부문 전체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라오스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 및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은행업에 자본이 편중되어 있는 점 외에도 국가적인 예금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금융 정책의 결정기구인 국립중앙은행의 관리감독 역량이 제한적인 점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채권시장은 소규모의 라오스 국채가 제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증권시장은 2010년 한국 증권거래소의 지분참여로 개설되었으나 2024년 현재 상장기업이 10개 사에 그치는 등 본격적으로 라오스 경제에 기여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정부는 물가 안정 및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등에 있어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환율정책에 있어서는 상업은행 및 환전거래소 등 시장이 환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노무 관리

노동시장 구조

산업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제9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21~2025)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농림업에 치중된 노동인구를 수공예, 기계, 건설, 정보통신등 2차 및 3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 2022년 기준 산업별 GDP 비중은 3차 산업 41.6%, 2차 산업 38.3%, 1차 산업 20.1%이다.

고급인력 수급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흥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해외원조기구 증가로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어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월 1,50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고급인력의 이직률 역시 높다.

최저 임금

하루 8시간, 월 26일 근무기준 최저임금은 250만 낍(약 125달러)으로, 2024년 10월부로 인상되었다. 이는 2023년 7월에 발표한 160만 낍(약 80달러)보다 56% 증가한 금액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라오스 내에서의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라오스의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 3.8%에서 2022년 23.0%, 2023년 31.2%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라오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를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라오스 노동자들이 노동을 위해 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바, 이는 라오스의 심각한 인력 유출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사회보장기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가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해야 하나, 관련 법령에 명기되지 않아 일부 사업장은 사회보장 기금 가입 및 납부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기구(SSO-Social Security Organization)에 등록해야 하며, 가입 후 월 급여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6%)와 근로자(5.5%)가 나누어 납부한다.



말레이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징

경제 · 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 · 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 ·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 · 2차 산업의 기반 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Madani[11] 경제: 국민 권리 증진 (Madani Economy: Empowering the People)' 경제프레임워크」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계획(Malaysia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11) Madani는 Anwar 말레이시아 총리가 본인의 저서(SCRIPT : For a Better Malaysia, 2022년)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연대(Care and Compassion), 존중(Respect), 혁신(Innovation), 번영(Prosperity), 신뢰(Trust)의 말레이어 약어

(1) Madani 경제프레임워크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 7월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Madani 경제: 국민 권리 증진 (Madani Economy: Empowering the People)' 경제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경제프레임워크의 두 핵심 추진 방향은 ① 경제구조 개편을 통한 아시아의 경제선도국 달성(raise the ceiling)과 ②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raise the floor)하는 것이다.

Madani 경제프레임워크의 핵심 추진 방향 주요 내용

Raise the Ceiling 아시아의 경제선도국	Raise the Floor 양질이며 정의로운 모두의 삶
■ 경쟁력 있고 세계적인 투자 유치국 ■ 디지털 및 혁신 주도 산업 ■ 이슬람금융의 글로벌리더 ■ 지역경제 챔피언으로서의 중소기업 ■ 경제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 양질의 일자리와 상당한 수준의 생활수준 ■ 평등 및 포용적 기회 ■ 양질의 교육·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이를 위해 향후 10년 이내에 달성할 중기 목표로 7개의 주요 국가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Madani 경제프레임워크의 중기 주요 국가평가지표

■ 상위 30대 경제국(GDP 기준, 2022년 36위(World Bank)) ■ IMD 세계경쟁력지수 상위 12위(2023년 27위) ■ UN 인적개발 지수 상위 25위(2021년 62위) ■ 노동소득 분배율 45%로 확대(2022년 32.4%)	■ TI 부패 인식 지수 상위 25위(2022년 61위)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하로 감축 (2023년 목표 5%)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까지 확대 (2021년 55.5%)

또한 동 경제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은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Madani 경제프레임워크의 주요 전략

주요 전략	상세 내용
경제 분야 주요 전략	
■ FDI 유치	말레이시아를 상위 FDI 유치국으로 부상시키기 위해 아시아 지역허브로서의 위치 강조, 투자유치활동 강화, 양질의 투자유치 위한 세제혜택 조정, 기반시설 업그레이드 및 인적자본 숙련도 제고, 이슬람금융 혁신국가로서의 지위 재확인
■ 제조업 부문 강화	조기 탈산업화를 되돌리고 제조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NIMP 2030) 발표 및 시행, 국내직접투자(DDI)를 주요 투자유지 성과지표로 포함
■ 국내기업 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을 배출하기 위한, 통상외교 추진 및 시장진출 전략 마련, 국내기업의 역내시장 진출 지원, 혁신 및 벤처 생태계 개선, 국내 인재육성 및 외국인 인재 유치, 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 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Inisiatif Pendapatan Rakyat (People's Income Initiative)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 부미푸트라 기업 지원, 금융접근성 제고
■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기술 도입 강화, 기업들의 디지털 도입 지원, 디지털 신분증 추진, 5G 이중 네트워크 구축
■ 기후회복력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해 국가에너지정책 및 국가에너지전환 로드맵 시행, 국가에너지정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자급자족형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부청사에 태양광 패널 설치, EV, 수소 등 녹색 신성장 분야 추진
■ 농업 부문 강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필수식량의 공급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기술 활용,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토지 사용 최적화
■ 지역 발전	Iskandar Malaysia 특별 금융지역 개발을 위해 지식근로자 및 기업에게 15%의 특별 소득세 혜택 제공, Penang 및 Subang 공항 확대, Johor Bahru의 Bus Rapid Transport, Penang의 LRT, Klang Valley의 MRT3 등으로 교통부문 개선
사회 분야 주요 전략	
■ 의미 있는 임금 수준 달성	최저임금 재검토(GDP의 45% 임금 배분 달성 목표), 소득을 생산성에 연계한 누진적 임금모델 도입, 단계적(tiered) 외국인고용부담금 도입을 추진(수익금은 자동화 프로그램 및 내국인 교육비로 활용
■ 주거 지원	Housing Credit Guarantee Corporation의 생애 최초 주택구매용대출 제도를 강화하여 구매액의 120%까지 대출 허용(대출 건별 최대 30만링깃)
■ 보조금	연소득 10만링깃 이하 모든 성인에게 100링깃 지급, 중간 관리자급이하 공무원 300링깃 보너스 지급, 퇴역 군인 및 연금수령자 200링깃 지급
■ 복지	노동시장의 여성 비율 확대 위한 저렴한 보육원 신설 추진, EPF와 SOCSO 대상범위 확대
■ 평등한 기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장학금 지급 및 기숙학교 배정
■ 교육	"수요 중심" 접근 방식의 산학 협력을 통해 교육 과정 설계, 비공식노동자들을 위한 숙련도 향상 프로그램 추진
■ 지방 인프라 제고	Kelantan 및 Sabah의 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8억링깃 배정, Kelantan, Pahang 등 지역의 홍수 완화책 실시

(2)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 Plan)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 9월에 Madani 경제프레임워크 등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지난 2021년 9월에 발표한 경제발전5개년 계획인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5년)」의 중기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고소득 국가 달성을 목표로 1개의 주요 기폭제(key enabler)와 3개의 중점분야(focus area)를 중심으로 17개 추진 방향(Big Bold)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71개의 주요 정책(main strategy/initiative)을 제시하였다.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 중기검토보고서의 목적 및 체계

		목적 및 17개 추진 방향(Big Bolds)
목적 (Theme)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고소득 국가
주요 기폭제 (Key enabler)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거버넌스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2. 부패 관련 법률
중점 분야 (Focus area)	지속가능성 강화	3. 재정 지속가능성 및 금융시스템 4. 에너지전환 기반 고성장·고가치(HGHV) 산업 5. 맞춤형 보조금
	번영사회 구축	6. MADANI 사회 조성 7. 사회안전망 개혁 8. 국민주택 9. 공공보건의료 강화 10. 국가안보·국방 강화
	고소득경제 달성	11. 기술·디지털 기반 고성장·고가치(HGHV) 산업 12. 고부가가치 고성장·고가치(HGHV) 전기·전자산업 13. 고성장·고가치(HGHV) 농업기반산업 14. 고성장·고가치(HGHV) 희토류산업 15.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역량강화 16. 대중교통망 강화 17. 미래인재 육성

최근 경제동향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 5~6%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8년 이후 글로벌 수요 둔화, 미·중 무역긴장 심화,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이동제한조치 시행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수출 호조 및 이동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내수가 개선되기 시작한 2021년에는 소폭 플러스의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로 8.7%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23년 대외수요의 약화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24. 1~9월에는 가계 소비 증가와 글로벌 기술 업사이클에 따른 수출 회복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2018년 이후 조세제도 개편(물품용역세 → 판매서비스세)에 따른 과세대상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되었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조치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21년 이후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 4%대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외식비 등의 감소로 2%대로 감소하였다. 2024년 디젤 보조금 정책 폐지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

실업률은 2019년까지 3%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경봉쇄, 이동제한조치 시행 등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되어 2020년 중 5%대로 큰 폭 상승하였다. 이후 이동제한조치의 점진적인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 및 견조한 대외수요 등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어 2022년부터 3%대로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현재까지 3.2% ~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

으나 국제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어 대체로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환율 약세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근 거시 경제지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9월
경제성장률(실질, 전년동기대비, %)	4.4	-5.5	3.3	8.7	3.7	5.3
GDP(억 달러, 경상가격)[1]	3,652	3,373	3,730	4,063	3,996	N/A
1인당 GDP(달러)[1]	11,132	10,161	11,109	11.972	11,649	N/A
물가상승률(%)	0.7	-1.2	2.5	3.3	2.5	1.9
실업률(%)	3.3	4.5	4.6	3.9	3.4	3.2
외환보유액(억 달러, 기말)	1,036	1,076	1,169	1,146	1,135	1,176

주: 1) World Bank 발표 기준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World Bank

환율

링깃화는 2018년 초까지 경상수지 흑자 확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이후 유가하락,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약세로 전환하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링깃화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24년 초 미달러화의 강세로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연 중순부터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수출 증대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

(단위: 1달러당 링깃, 기말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11월
4.093	4.013	4.176	4.413	4.592	4.465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까지 정책금리 인상기조를 유지하다가 2019년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하기조로 전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수준(1.75%)으로 인하 후 유지하다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물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22년 중에 0.25%p씩 4차례 상향 조정하여 2.75%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3.00%로 0.25%p 인상한 이후 견조한 성장세 및 물가 안정세 등을 이유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단위: %, 기말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11월
3.00	1.75	1.75	2.75	3.00	3.00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교역동향 및 교역환경

교역동향

(1) 전반적 교역동향

2024년 8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2,120억 달러, 수입은 1,953억 달러로 4,073억 달러의 총 교역액과 16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11월 이후 무역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누계)
수 출	240,300	234,761	299,130	352,093	312,830	212,008
수 입	205,096	190,856	238,216	293,797	265,750	195,362
수 지	35,204	43,905	60,914	58,296	47,069	16,646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대상국은 2024년 8월 기준 싱가포르(15.5%), 미국(12.6%), 중국(12.2%)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10대

수출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팜오일이며, 이들 3대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38.8%를 차지하였다. 한편 2024년 8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대상국은 중국(21.6%), 싱가포르(12.2%), 미국(9.1%)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8대 수입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석유제품이며, 이들 3대 품목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60.6%를 차지하였다.

2024년 8월(누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수출〉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비중)
1	싱가포르	32.8(15.5%)
2	미 국	26.7(12.6%)
3	중 국	25.9(12.2%)
4	일 본	12.0(5.7%)
5	홍 콩	11.8(5.6%)
6	대 만	8.9(4.2%)
7	태 국	8.4(4.0%)
8	베트남	8.2(3.9%)
9	인도네시아	7.9(3.7%)
10	한 국	7.6(3.6%)

〈수입〉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비중)
1	중 국	42.1(21.6%)
2	싱가포르	23.8(12.2%)
3	미 국	17.8(9.1%)
4	대 만	15.4(7.9%)
5	일 본	10.4(5.3%)
6	인도네시아	8.7(4.4%)
7	태 국	8.0(4.1%)
8	한 국	7.9(4.0%)
9	사우디	5.2(2.7%)
10	호 주	5.0(2.6%)

자료: Global Trade Atlas

(2) 한·말레이시아 교역동향

양국 무역규모는 최근 10년간 약 2배 정도 성장했으며, 말레이시아는 2024년 8월 기준 한국의 수출국 12위, 수입국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對말레이시아 수출	8,843 (-1.7)	9,078 (2.7)	10,107 (11.3)	11,473 (13.5)	9,760 (-14.9)	6,924 (13.3)
對말레이시아 수입	9,280 (-9.1)	8,893 (-4.2)	10,456 (17.6)	15,249 (45.8)	15,237 (-0.1)	9,027 (-11.7)
교역수지	-437	185	-349	-3,776	-5,477	-2,103

자료: 관세청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교역 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은 집적회로 반도체, 휘발유, 기타정밀화학원료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집적회로반도체, 나프타 등이 주도하고 있다.

2024년 8월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총계	6,924	-11.7	총계	9,027	-11.7
1	집적회로반도체	1,102	-101	천연가스	1,972	-27.7
2	휘발유	1,075	1,066	집적회로반도체	1,203	-14.5
3	경유	310	310	나프타	963	52.1
4	합성고무	260	259	증유	752	16.5
5	기타정밀화학원료	256	222	반도체제조용장비	376	597.9

자료: 관세청

교역환경

(1) 관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를 부과하나,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2022년 3월에 RCEP이 발효되면서 일부 품목에서 추가적인 특혜 관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2017년에 세부단위를 9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하고 있다. 수입 관세율은 0-60%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다.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해서 인하하고 있다.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각 2007년 6월 1일과 2022년 3월 18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 통관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이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특별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 Packing List
- FTA Certificate of Origin (해당되는 경우)

-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 Packing List (상업 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K1A Value Declaration Form

선적물품이 도착 후나 도착 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검사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한편 수입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선적 물품 도착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산지 규정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한-아세안 FTA 혹은 RCEP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 Code에 따라 FTA / RCEP의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 HS Code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FTA / RCEP 세율을 적용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엔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정정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 사육 · 제조 ·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말레이시아에서 FTA / RCEP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4)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a) 수입금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 건강 등을 이유로 다음의 품목들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RM 50,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위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파랴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b) 수입허가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23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23) 등 관련 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입불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관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 (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뉜다.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수입

면허(Im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품목별로 수입허가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다.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투자통상산업부(MITI)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 (AP)가 있어야 하고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어 있다.

이 밖의 수입시 수량제한으로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가 쌀 지원기관인 BERNAS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5) 디지털 무역장벽

2010년 6월에 제정되어 2013년부터 발효된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은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래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EU의 원칙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10만~50만 말레이시아 링깃의 벌금, 혹은 1~3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표면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검열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부 웹 사이트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데 적용되는 법안은 1998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이며, 동 법의 제정 목적은 통신멀티미디어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통신멀티미디어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규제를 부여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멀티미디어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동 법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2011년 동안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계의 제소가 두드러지게 많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된 결과로 인한 품질 저하,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말레이시아 철강업계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2016년 5월 Malaysia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한국을 포함한 총 42개국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6년 9월 규제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2017년 4월까지 13.9% 관세를 납부한 바 있다.

Megasteel사는 2015년 10월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2~2014년까지 급격한 열연코일에 대해 급격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한바 있다. 2015년 4월 Bahru Stainless사의 제소로 냉연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9월에 무피해 판정으로 종결된바 있다. 2015년 8월 CSC Steel사의 제소로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6년 5월의 확정판결 결과 반덤핑으로 확정되어 201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2024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한국산 상품은 평판압연(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등 2가지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23년 7월 27일부터 2028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를 부과하고 있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 없음). 한국산 평판압연 비합금철(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에 대한 관세의 경우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KG동부제철은 9.98%, 기타 한국기업은 34.94% 부과한다.

2024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영향을 받는 한국 제품은 없다. 강선재와 변형코일 철근(Steel Wire Rods and Deformed Bar in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17년 4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13.90%, 2018년 4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 12.90%, 2019년 4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11.90%이었으나 현재는 종료되었다.[12)]

말레이시아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24년 11월 기준)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기간	부과 관세
냉연압연강 (CRSS: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7219.31.0000 7219.32.0000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20.20.1000 7220.20.9000	반덤핑	2017.05.15.	2023.07.27. ~ 2028.07.26.	현대제철: 0% 현대BNG: 0% 포스코: 4.44% 기타: 7.27%
평판압연 (Flat Rolled Product of	7210.61.1100 7210.61.1200 7210.61.1900 7210.61.9100	반덤핑	2020.03.13.	2020.12.12.~ 2025.12.11	KG동부제철: 9.98% 기타: 34.94%

12)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outputp/pua_20170414_P.U.(A) 1232017.pdf 참조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기간	부과 관세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	7210.61.9200 7210.61.9900 7212.50.2300 7212.50.2490 7212.50.2910 7212.50.2990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인증은 원칙적으로 의무(Mandatory)가 아니다. 단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화재 및 구조청(Fire and Rescue Department of Malaysia),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국가 물 서비스 위원회(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도로교통청(Road Transport Department) 등 국가기관에서 의무 인증을 법제화한 경우만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인증 해당 품목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말레이시아로 수입 및 유통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com.my이다. 임의인증의 경우 표준(Standard)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 인증이 가능하다. 국가기관에서 의무하는 인증의 경우는 신청자가 해당 표준을 따라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가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표준에 대한 정보는 www.msonline.gov.my에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에 할랄 로고 사용의 합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교역품 명시법 2011(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교역품 명시(할랄의 정의)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Order 2011) 및 교역품 명시(할랄 인증 및 표시)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Order 2011)을 포함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한 식품 업계에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지침으로 말레이시아

표준(Malaysian Standard)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특정 요건이 되는 다른 지침과 규정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수입 식품 및 상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의 할랄 인증을 준수하거나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y, FHCB)의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및 상품을 할랄로 표시할 수 없다. JAKIM 이 인정한 해외할랄 인증기관(FHCB)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모든 식품 또는 상품에는 앞서 말한 인증 기관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해외 할랄 인증기관(FHCB)을 통한 상품 인증은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www.halal.gov.my 참조)

정부조달 관련 제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22.11.29)되면서 정부조달 시장이 CPTPP 회원국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CPTPP 회원국의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나,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가 있고, 입찰 가능 하한선이 높은 프로젝트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1972년 일부개정)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만링깃, 5만링깃, 10만링깃, 50만 링깃 각각을 기준으로 재무부에서 규정한 조달계약의 범위에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 (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Statutory Body) 구매도 정부조달 규정에 따른다. 단,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달 금액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없이 1억링깃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령, 건설은 건설부 Contract Service Center 및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 물품과 연구용역 참가자는 재무부 담당부서에 등록을 요한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미푸트라 입찰기업(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격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13)]

지식재산권 보호[14)]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기본으로 하며,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조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발표한 국가지식재산정책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권리행사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을 설립하였으며, 16개의 회기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반면, 6개의 고등법원은 민사, 말레이시아 지식재산 공사 등록관의 판단에 대한

13) https://www.eperolehan.gov.my/en/home참고.

14) 관련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http://www. myipo.gov.my)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소 및 회기 법원의 형사 판단에 대한 항소를 관할하고 있다.

a)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반영한 새로운 상표법이 시행되었으며, 신법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의 경우 구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나, 신법에 따라 심사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관장하는 「Trade Description Act 1972」가 있는데, 동법이 2011년 전면개정되면서, 등록상표를 Trade description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권자는 「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법원에 허위표시 확인 명령(「TDO, Trade Description Order」, 유효기간 1년)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부서(MDTCA)에서는 이러한 확인결과를 기반으로 침해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산업의장

말레이시아에서 산업의장의 보호는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업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1996년 산업의장법」은 등록된 산업의장에 대한 권리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산업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d) 저작권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격, 보호의 범위와 보호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저작권 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며, 보호요건 및 보호기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현지에서 침해품, 모방품을 판매할 때 수반되는 광고는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을 잘 활용하면 상표권 등의 침해 대응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베른협약 가입국이므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현지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말레이시아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어문, 음악, 미술, 영화, 녹음물, 방송 등의 6개 카테고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 역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이다. 또한 동 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징은 강제 집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바, 동 규정은 법을 집행할 특별 수사반이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 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3월 1일 발효된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면책요건 규정, 영화 상영중 캠코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또, 저작권 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여 등록담당기관이 증서를 발행하면,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추정효과(prima facie evidence)가 부여된다.

e)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 지리적 표시

「2000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예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조세 제도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2021년까지는 거주 법인 및 개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법인 및 개인의 국외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의 세율은 24%이며 2023년부터는 과세 년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소득 중 최초 15만 링깃에 대해서는 15%, 이후 60만 링깃 까지는 17%, 60만 링깃 초과분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석유 산업의 경우 석유 채굴 등 상류부문(petroleum upstream)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38%의 석유 소득세(Petroleum Income Tax)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연간 과세 소득이 5,001 링깃 이상일 때 1~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2024년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구간별 과세금액이 2025년 3월 말레이시아 국세청(Hasil)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된다.

한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거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달력연도 기준으로 1년에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유주체(회사,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비시민권자 및 비거주자)의 경우 5년 이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보유기간 6년차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말레이시아는 판매 및 서비스세(SST)를 2018년 9월 1일에 재도입함으로서 이전 제도인 GST(Goods and Service Tax, 일률 6%)를 대체했다. 참고로 GST는 2015년 4월 1일부로 도입이 되었으며(각각 1972년과 1975년에 도입된 SST 제도를 대체) 2018년 6월 1일부로 기존 6%에서 0%로 조정이 되었다. 판매세(Sales Tax)는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된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된 과세 상품이나 과세 상품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단일단계 세금이다. 반면, 서비스세(Service Tax)는 말레이시아 내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나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과세 대상 서비스에 부과된다. 과세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연간 매출이 50만 링깃의 등록 기준에 도달하면 판매세 등록을 해야 하며,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세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세 등록 조건(Registration Threshold) (2024년 11월 기준)

등록기준 (Registration threshold)	과세 서비스 유형 (Type of taxable service)
제한 없음	신용카드/체크카드 서비스 및 세관에서의 물품 반출 서비스(Credit card/charge card and release of good from customs control)
연간 매출 50만 링깃 이상	전문 서비스, 숙박, 나이트클럽, 프라이빗 클럽, 골프 클럽, 베팅 및 게임, 기타 서비스 제공자 및 물류 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accommodation, night-club, private club, golf club, betting and gaming, other service provider and logistic services)
연간 매출 150만 링깃 이상	음식 및 음료(Food and beverages)

판매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5%, 10%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서비스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6%, 8% 또는 특정 과세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율은 Sales Tax (Rates of Tax) Order 2022 and Service Tax (Rate of Tax) Order 2018에 명시되어 있다. 서비스세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대부분의 과세 서비스에 대한 세율이 6%에서 8%로 인상되었지만, 음식 및 음료 서비스, 통신 서비스, 주차 서비스, 물류 서비스의 서비스세 세율은 6%로 유지됐다.

2024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저가치 상품(Low Value Goods, LVG)을 판매하거나 저가치 상품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모든 자에게 10%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이 세금은 저가치 상품의 가격이 RM5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12개월내 육로, 해로 또는 항공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저가치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50만 링깃을 초과하는 경우(Historical Method or Future Method) 판매자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RS (Registered Seller)로 등록해야하며, 모든 LVG 상품에 대해 각 10%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 중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가 간 소득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정하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세금공제 혹은 세금감면을 위해 양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목적은 국내외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자본수출국 납세자가 감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투자동향 및 투자환경

투자동향

(1) 전반적 투자동향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3년 7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전히 자유화한 이후,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예년과 같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승인기준)

(단위: 십억 링깃)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上
투자액	58.0	54.4	56.6	179.6	66.0	188.4	74.6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2024년 상반기 對말레이시아 최대 투자 5개 국가는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 대만으로서 전체 제조업분야 승인된 FDI(링깃) 중 69.5%를 차지하였다.

2024년上 對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

(단위: 십억 링깃, %)

순위	국 가	투자규모	비 중
1	오스트리아	30.1	40.3%
2	싱가포르	16.5	22.1%
3	중국	9.8	13.2%
4	네덜란드	4.0	5.4%
5	대만	2.4	3.2%
6	미국	1.55	2.1%
7	필리핀	1.3	1.8%
8	프랑스	1.3	1.7%
9	모리셔스	9.4	1.3%
10	독일	8.9	1.2%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2) 한·말레이시아 투자동향

1980~2024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금액(신고기준)은 총 78억 달러이며, 최근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2021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한·말레이시아 상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上	누계*
對말 투자	금액	151	259	172	908	657	341	401	7,806
	건수	160	155	129	117	150	166	57	3,105
對韓 투자	금액	22	97	38	407	13	10	6	8,471
	건수	19	17	14	12	12	9	10	96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1980년~2024년 상반기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140,000링깃 이하인 심사관청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집약 산업으로 분류를 하며, 프로젝트 승인 시 향후 몇 년 안에 RM 140,000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제약 사항이 되기도 한다. 또한 총 정규직 노동자의 80%는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약 420여개 정도의 아국 대·중·소기업 지사 및 현지 법인, 교민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http://www.kocham.org.my)이 2009년 11월 이후 설립·운영 중이다.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제조업	고려제강,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한화 Q-Cells, 기아, 롯데케미칼, CJ Bio, OCI, 일진머티리얼, 심텍, SK넥실리스, LG화학 등
도소매업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효성, 현대코퍼레이션, 코웨이, SK매직 등
서비스업	SK, LG CNS 등
유통업	GS 홈쇼핑 등

업종	주요기업
운수업	대한항공, 고려해운, HMM, CJ대한통운, LX판토스, 한솔로지스틱스 등
건설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DL E&C 등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투자환경

(1) 투자환경 일반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4년 세계경쟁력연감에서 말레이시아는 34위로 평가받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국가투자위원회(NCI)를 구성·운영 중에 있는 바, 동 위원회는 재무부와 투자통상산업부의 공동주재 하에 국내외투자에 대한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는 총리 주재 국가투자회의(National Investment Council)을 운영 중이다.

말레이시아에는 주 정부 경제개발 공사(SEDCs), 지역 개발청(RDAs), 항만청 및 시 정부 등 정부 측에서 조성한 산업 공단이 600여 개 존재하며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새로운 공단이 신설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주 정부 개발 공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최근 들어 민간 부문의 산업공단 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영어상용, 우수한 사회 인프라, 석유·가스·팜오일·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슬람권 및 아세안 수출기지로서의 유망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절차의 지연,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 관련 세부 분야별 환경

a) 고용 및 해고

고용 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1955년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하고,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바 ▲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 ▲ 조합의 간부 여부에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 계약은 계약 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어느 일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관행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있어 무단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

행위가 있다 해도 결근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은 최대 연장 근무시간을 월 10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상근무일의 연장근무는 정상 시급기준 1.5배,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3배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과 관련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하루 9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주당 4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요청이 있을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청은 2023년 6월 기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210만 명 수준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400~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14일이내 관련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비자는 최초 1년 발급하여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은 내국인력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우선 고용할 것과 정리 해고시 같은 기능의 노동자라면 외국인을 먼저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2013년 1월 도입되었으며, 2020년 이후 월 1,200 링깃이었던 최저임금이 2022년 5월 1일부터 1,500 링깃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3년 최저임금제 실시와 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식당 등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고급 외국인 기술 인력이 단기 투입되는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비자(Work Permit)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b) 외환관리

1998년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Ringgit)화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링깃화의 해외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외환관리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링깃화의 해외거래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다만 환율제도는 1998년 9월 고정환율제 실시 이후 안정적 경제성장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이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실시 중이다.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를 대외 계좌라고 지칭하는 바, 대외 계좌간의 계좌 이체의 경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NRCCs)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다.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 가능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c) 투자 인센티브[15)]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리 활동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

15)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 홈페이지(www.mida.gov.my) 참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140,000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4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2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MSC 등)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별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개척자자격 대신 ITA(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 선택할 경우, 매년 과세대상 소득의 70% 상한 내에서 초기 5년간 이루어진 자본투자(공장, 기계, 플랜트, 장비 등)의 6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은 과세 연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 해로 계속 이월할 수 있다. 고도기술(High Tech)분야 투자 기업은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S) 또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분야(Strategic Project)의 경우 법정 소득액에 대해 세금이 10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 또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 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바이오경제공사

(Bioeconomy Corporation)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받은 회사의 경우 ▲ IP소득이라면 신규사업 여부에 따라 첫해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비IP소득은 최대 70%까지), ▲ 5년내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 전액 공제, ▲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타 분야로 ▲ 해운 및 운송업에서 해운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로 얻은 소득의 70% 과세면제, ▲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70% 소득세면제(5년간) 또는 5년간의 자본적지출에 대한 60%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MSC Malaysia 지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멀티미디어 개발공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MSC Malaysia에 참여해 ICT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들에 부여하는 것으로, MSC Malaysia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MSC프로그램은 (1)멀티미디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주로 이용할 수 있는지 (2)지식기반 근로자를 실질적인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는지 (3)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지 (4)MSC Malaysia로 지정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지 (5)MSC가 지정한 지역에 법인이 세워지는지 (6)환경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에 해당되는 기업에 MSC status를 부여한다. MSC Malaysia 지위로 지정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10년간 법정소득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개척자격, 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등이다.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 제공 플랫폼인 i-Incentives (https://investmalaysia.mida.gov.my/incentives/)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업종)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 100%가 가능하나 아직도 많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의 경우 말레

이계 현지인 지분(부미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야 하며 물류업 중 육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51% 이상이 돼야 한다.

주요 산업 개관

주요 산업별 성장률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업(호텔, 관광, 도소매업 등)과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유가하락 및 국내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별 수치가 정체를 보여왔다. 2017년 유가회복 및 무역 등 대외지표 개선, 서비스업종 성장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9년은 공공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수출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농업· 광업부문 생산 부진이 가세하여 전반적인 경제활동별 성장이 부진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부분의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회복하여 꾸준히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산업별 성장률 현황

(단위: %)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2.4	-4.0	8.9	7.0	0.9
광업	-0.6	-9.7	0.3	3.4	0.1
제조업	3.8	-2.7	9.5	8.1	0.8
전기업	0.4	-19.3	-5.2	5.0	2.9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요 제조업 산출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자원 등 일차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교훈으로 삼아 외자 도입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펼쳐왔다. 2023년 기준, 외국계 기업이 주를 이루는 주요 제조업의 매출 규모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음료 및 담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제조업 업종별 총 매출액 (Sales Value)

(단위: 10억 링깃)

구분	2021	2022	2023
제조업 전체	1554.7	1,800.9	1,804.0
전기전자 및 광학	483.1	581.5	598.9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432.1	499.2	469.0
금속 및 비금속 제품	149.3	168.0	179.4
운송장비 및 기타 제조 및 수리	107.7	123.3	136.8
목재제품, 가구, 종이 및 인쇄류	76.4	84.9	86.1
섬유 및 의류	21.9	23.6	24.1
음료 및 담배	283.9	320.2	309.5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2023년 전체 산업생산지수(IPI: Industrial Production Index)는 광업, 제조업, 전기 분야에서 모두 소폭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0% 상승했다.

말레이시아 산업생산지수 현황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광업	99.3	90.5	91.8	93.9	94.7
제조업	120.1	116.9	128.1	138.5	139.5
전기	119.2	114.8	118.6	122.9	126.4
산업합계	114.8	110.1	118.3	126.2	127.4

주: 2015년 100을 기준으로 지수 산정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에너지·자원 시장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이나,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요에 상응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정책은 1975년 국가 석유정책(National Petroleum

Policy)을 시작으로 1979년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 1980년 에너지 고갈 대비정책(National Depletion Policy), 1981년 4대 연료 다양화 정책(Four-fuel Diversification Policy), 2006년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2010년 신재생에너지정책 등으로 이어졌다. 2021년 9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는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강조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최초로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20년을 시계로 하는 국가에너지계획(2022-2040)에서 2040년 저탄소국가(Low Carbon nation Aspiration) 달성을 위해 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석탄발전 감축 ② 에너지효율 강화 ③ 전기차 활성화 ④ 대중교통 확대 등 저탄소 정책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2022년 11월 출범한 안와르 이브라임 신정부는 기존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2035년 40%에서 2050년 70%로 상향 조정 ②자급자족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③ 정부 건물에 태양광 설치 확대 ④ 이웃국가로 재생에너지 수출 허용 등 한층 강화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23년 7월에는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을 발표하였다. ①에너지효율, ②재생에너지, ③수소, ④바이오에너지, ⑤그린 모빌리티, ⑥CCUS 등 6대 분야에서 10개의 구체적인 플래그쉽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O&G) 부문은 말레이시아 GDP의 약 20%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며 입증된 석유 매장량이 약 27억 배럴에 달한다.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 및 가스 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가 말레이시아 내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페트로나스는 19개의 신규 자원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약 10억 배럴 이상의 석유 환산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발견된 자원 중 16개는 사라왁주, 나머지 3개는 사바주에 위치한다. 23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석유

주요 수출국은 태국(26.9%), 호주(19.6%),일본(19.3%),브루나이(12.02%)이며, 한국(1.33%)은 10위 수출국이다.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감소하여 하루 약 70만 배럴에 달하던 생산량은 현재 약 35만 배럴 수준으로 줄었다. 2024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주로 사라왁주와 사바주에서 발견되며, 사라왁주에 말레이시아 전체 석유 매장량의 60.9%, 사바주에는 약 18.8%가 존재한다. 사라왁주와 사바주의 매장량은 주로 지역 내 수요를 충족하거나 장기 계약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의 자언 고갈은 주 간 수익 배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 부문에서도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말레이시아는 러시아, 카타르, 호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으로 총 2,675만 톤을 수출하며 전 세계 LNG 거래량의 약 7%를 차지했다. 2024년 현재 말레이시아는 18개의 장기 LNG 판매 계약을 통해 연간 약 1,200만 톤(mtpa)의 LNG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6건의 계약이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만료될 예정이다.

전기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11년 재생에너지법 도입과 이에 따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실시 등을 통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FiT 메커니즘 도입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42994M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10,646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승인되었다. 2018년부터 FiT 제도 대상에서 태양광이 제외된 반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Small hydro)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12월 재생에너지로드맵(Malaysia Renewable Energy Roadmap, MyRER)을 통해 2025년 31%, 2035년 40%의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비중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2년 11월 출범한 신정부는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비중을 2050년 70%까지 대폭 확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2024년 현재, 재생에너지는 말레이시아 총 에너지 용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전력 생산 비중은 단 6%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육성을 우선시하기 위해 태양광 임대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득세 면제(ITE) 혜택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였으며 세계 2위 팜유 생산국으로서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키기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인프라·건설 시장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에 이어 한국의 아시아 내 4대 주요 해외건설시장(전 세계 9위)으로 자리잡았으며, 올해 총 19건의 건설공사(4.08억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주요 건축물(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제2타워,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관, 메르데카118 등)과 기간시설(페낭대교, 말레이시아 남북고속도로 등)을 포함한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안와르(Anwar) 정부는 '마디니 경제(Madani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외치며 아세안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7대 중간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해결하여 제2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 '마다니 경제'는 건설·인프라 정책의 핵심이 되는 '12차 국가개발계획(12MP, '21~'25년)', '국가 에너지전환 로드맵(NETR)', '신산업 마스터플랜(NIMP)'의 정책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3년 9월, 마다니 경제(Madani Economy)를 앞세운 안와르 정부는 '23~'25년간 집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의 가속화 및 지역간 인프라 격차 해소 등 경제개발을 위해 '12차 국가개발계획(12MP)' 예산을 기존(4,000억 링깃,'21.9월)보다 150억링깃 증액한 4,150억링깃으로 통과시켰다. 대규모 인프라개발, 지역통합 및 국가 경쟁력 제고, Value-Chain 강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으로 향후 10년 간 4.0~5.0%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재무부(MOF)에서 발표한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을 맞이하여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25년 건설 시장은 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RT 3호선 및 사라왁-사바 도로 2단계와 같은 주요 건설 프로젝트와 조호르주, 셀랑고르주에서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2024년 예산안에 제시된 주택 가격 안정화 계획에 따라 주택에 대한 민간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용 건축물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은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이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전통금융으로는 일반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개발금융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채권시장, 증권시장 등이 있으며, 이슬람금융은 이슬람은행, 이슬람보험사(Takaful), 이슬람채권(Sukuk)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말레이시아는 디지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2022년 디지털은행 면허를 발급하였다.

2024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26개 일반은행, 17개 이슬람은행, 1개 디지털은행[16], 11개 투자은행, 6개 개발금융기관, 33개 보험회사, 15개 타카풀사 등이 영업 중에 있다. 한국계 금융기관도 일부 진출[17]해 있으나 한국 교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말레이시아 은행 및 보험사 현황 (2024년 11월 기준)

구분	국내	외국계	계
일반은행	8	18	26
이슬람은행	12	4	16
디지털은행[1)]	1	0	1
투자은행	11	0	11
개발금융기관	6	0	6
합 계	38	22	60

16)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2.4월 5개 디지털은행 면허(일반은행 3개, 이슬람은행 2개)를 발급하였으며 면허를 받은 컨소시엄은 2024.4월까지 재무부 및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운영 준비 검토를 받고 영업 개시 가능. Grab이 주도하는 GXBank가 2023.9.1.일 최초로 디지털은행 영업 개시

17)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우리은행 현지 사무소(쿠알라룸푸르)와 역외금융특구인 라부안에 위치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라부안지점이 소재

구분	국내	외국계	계
보험사	9	24	33
타카풀사	10	5	15
재보험사/재타카풀사	2	5	7
합 계	21	34	55

주: 디지털은행 면허를 2022.4월에 발급받은 5개 컨소시엄 중 한 컨소시엄(GXBank)만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운영 준비 검토를 통과하여 영업
자료: BNM

말레이시아는 5년 또는 10년 단위의 금융산업 발전 계획[18]을 수립하고 이른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주식 및 채권시장,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전망, 금융감독 체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금융, 디지털 금융 부문 등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5월,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원·링깃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통화스왑 규모는(5조원, 150원 링깃) 2020년에 체결된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12일까지이며 양국 중앙은행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할랄 제품 시장

이슬람개발부(JAKIM)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이며, JAKIM의 Halal Hub Division에서 실제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이곳에서는 신청절차 처리, 공장실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산업의 허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할랄 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해외 기관 지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지정 기관에서 발행된 할랄 인증서를 인정한다. 2025년 한국 상호인정기관(해외 기관 지정)은 한국할랄인증원(KHA)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가 있다. 모든 육류 및 유제품은 수입할 때 반드시 수입자의 수입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수출자는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18) 가장 퇴근 금융산업 발전 계획은 2022.1월에 발표한 「금융부문 청사진(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6)이며 동 청사진은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부문의 디지털화 증진, 녹색금융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 제시

말레이시아 수의부(DVS), 이슬람개발부(JAKI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육류 및 동물성 제품은 동물법 1953에 따른 수입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할랄시장의 선도국가로서 글로벌 할랄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1970년대부터 할랄산업을 직접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며, 할랄인증체계, 할랄산업단지 등 할랄산업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생태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할랄 산업 확대 마스터플랜인 Halal Industry Master Plan 2023을 2023.3월에 발표하였다. 동 마스터플랜은 할랄 친화적인 정책 및 법률 강화,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 및 서비스의 신규 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 글로벌 수요 충족을 위한 할랄 전문가 확보, 품질 및 통합 인프라 개발 강화, 말레이시아산 할랄 선두주자 배출, 그리고 부미푸트라의 참여 촉진 등 7개 전략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은 기존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흐름을 활용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할랄 제품 수출액을 590억 링깃으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AI, IoT, 빅데이터 등스마트 관리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시작된 국제할랄쇼케이스(MIHAS)는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행사로, 2024년에는 1,400개 기업이 참가해 전년 대비 34% 증가한 43억 링깃의 매출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중동 이슬람국가, ASEAN 국가 등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전 세계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 JAKIM 인증 취득과정이 최소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되어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23년 9월부터 할랄 인증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제출된 신청서 중 96%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할랄 인증 정수기로 진출한 코웨이가 있다. 그리고 신세계푸드와 Mamme-Double Decker사가 협력하여 현지에서 생산 중인 한국 할랄 라면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풀무원, 농심 등도 할랄 라면으로 말레이시아 식품시장에 진출하였다.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023.6월부터 할랄한우 수출도 개시되어 말레이시아 식품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판매가 다변화되고 있다.



몽 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교역 투자 현황

한-몽 교역현황

한-몽이 수교를 맺은 1990년 270만불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규모는 2023년 5.4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1~9월 기준 한국의 대몽골 교역규모는 4억 6,610만 달러로 대몽골 수출액은 4억 3,930만 달러, 대몽골 수입액은 2,680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한·몽골 상품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384	44.8	426	10.8	476	11.7	439	20.5
수 입	25	20.3	38	53.3	63	64.2	27	-41.7
합 계	409	40.1	464	13.4	539	16.2	466	13.6
무역 수지	359	43.5	388	7.9	413	6.4	412	29.4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은 화장품, 승용차, 궐련(cigarette), 화물차, 건설중장비 등이며,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석탄, 몰리브덴 등의 광물, 캐시미어 등 의류제품, 천연섬유원료, 동물성 약제 등이다.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화장품	40,155	26.5	33,761	9.4
승용차	39,038	164.1	33,485	19.6
연초류	40,545	9.7	28,193	-10.6
화물자동차	30,558	31.9	27,682	22.4
건설중장비	20,141	35.4	25,364	48.9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기타금속광물	28,635	55.9	14,483	-41.7
편직제의류	7,141	-2.3	5,611	64.0
천연섬유원료	2,929	-15.8	1,521	-48.1
제트유및등유	423	76.1	831	141.3
동물성한약재	1,196	11.1	830	-7.0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투자현황

한국의 공식적인 대몽골 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백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2006년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몽골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6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몽골 투자 환경 악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가 줄어들어 연 10~20백만 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994~2024.6월 누적액 기준으로 한국의 대몽골 투자 금액은 총 6억 16백만 달러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34.1%, 도소매업 16.5%, 건설업 9.8%, 부동산 및 임대업 9.7%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대몽골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4	3	2	3	2	0
1995	5	3	5	4	5
1996	2	2	1	6	1
1997	5	3	0	4	1
1998	5	1	0	1	0
1999	5	3	4	4	2
2000	13	7	5	15	3
2001	9	5	5	14	3
2002	14	5	6	13	3
2003	11	8	5	19	1
2004	29	18	8	48	3
2005	54	25	14	104	7
2006	53	26	44	119	20
2007	105	55	51	179	44
2008	196	79	165	262	61
2009	115	46	123	204	28
2010	115	45	58	162	27
2011	136	53	60	172	44
2012	136	46	97	186	53
2013	120	32	61	168	49
2014	111	46	43	145	32
2015	113	31	83	134	39
2016	72	16	29	98	12
2017	79	33	21	101	14
2018	85	26	44	124	24
2019	93	45	25	115	16
2020	45	17	31	62	10
2021	38	17	9	48	6
2022	54	14	19	51	19
2023	62	27	83	57	81
2024.6월	46	22	16	45	9
합계	1,929	757	1,120	2,665	6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몽골 경제 및 교역현황

몽골 경제 현황

2017년 IMF체제를 수용하고 2019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던 몽골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2020년 기준 -4.6%까지 경제성장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2022년부터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경제회복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서 2022년 5.0%, 2023년 7.4%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23년 경제성장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산업이 전년대비 약 57%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몽골 최대 광산개발 프로젝트인 오유톨고이 광산이 2차 지하개발을 시작하면서 몽골 광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몽골 연도별 국내총생산

(단위: 억 달러, 조 투그릭,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GDP (억$)	142.0	133.1	152.8	168	203
GDP(조 투그릭)	37.8	37.4	43.5	53.9	70.4
GDP성장률(%)	5.6%	-4.6%	1.6%	5.0	7.4
1인당 GDP($)	4,352	4,061	4,417	5,126	6,008

자료: 몽골 통계청

몽골 교역 현황

몽골 전체 교역액은 2023년 244억 달러로 전년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중 수출액은 21%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은 6% 증가한 92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특히 석탄이 2023년 역대 최고 수출량(6,961만톤, 87.6억달러)을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4년도에는 1~9월 기준 전체 교역액이 약 2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약 12%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석유제품, 차량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몽골 연도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09
수 출	7,576.3	9,247.1	12,540.4	15,186.9	11,782.70
수 입	5,293.9	6,848.6	8,704.4	9,250.2	8,608.30
무역수지	2,282.4	2,398.5	3,836	5,936.6	3,174.40
교역규모	12,870.3	16,095.8	21,244.8	24,437.1	20,390.40

자료: 몽골 관세청

전체적인 교역 구조를 살펴보면, 몽골에 있어서 이웃국가들인 중국 및 러시아가 대외교역에서 절대적인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는 중국에 광물을 수출하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구조이다. 제3이웃 정책 등으로 지역내 국가인 한국, 일본과도 자동차, 식품 등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광물 및 캐시미어 등을 수출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24년 1~9월 기준 수출품 상위 5개 품목은 석탄, 구리 정광, 금, 철광석, 캐시미어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87% 이상 차지, 그 중 4개 품목이 광업 생산품으로, 몽골 경제는 지나친 광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기간 주요 수입품목은 자체 제조업 기반이 없는 특성에 따라 석유제품, 승용차, 화물차, 전화기, 전력 등 에너지 제품과 공산품들이 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주요 교역 품목 (2024.9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입품목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석탄	6,653.1	56.5%	석유제품	1,622.70	18.9%
구리정광	2,264.4	19.2%	승용차	812.0	9.4%
금	670.5	5.7%	화물차	566.1	6.6%
철광석	446.7	3.8%	전화기	184.9	2.1%
캐시미어	252.0	2.1%	전력	143.6	1.7%
원유	248.9	2.1%	의약품	143.6	1.65%
형석 정광	214.8	1.8%	굴착기	98.7	1.6%
전체	11,782.7	100.00%	전체	8,608.30	100.00%

자료: 몽골 관세청

국가별로 살펴보면, 몽골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2024년 1~9월 기준 몽골 전체 수출의 91.6%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석탄, 구리정광 등 광물이다. 2위 수출국은 스위스로 총수출의 4.4%를 차지하며 수출품의 거의 전량이 금이다. 한국은 2024.1~9월 기준 몽골의 5위 수출국으로 총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몰리브덴, 캐시미어 등이다.

몽골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10,565.9	84.3%	12,63421	91.6%	10,793.3	91.6%
2	스위스	1,030.7	8.2%	592.6	4.3%	515.3	4.4%
3	러시아	91.6	0.7%	99.8	0.7%	78.2	0.7%
4	이탈리아	91.6	0.7%	98.9	0.6%	39.7	0.3%
5	한국	277.6	2.2%	146.7	1.1%	39.4	0.3%
합계		12,540.4	100%	13,881,4	100%	11,800	100%

자료: 몽골 관세청

한편,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대중국 수입이 40.1%, 대러시아 수입이 24.6%, 대일본 수입이 10.3%, 대한국 수입이 4.1% 비중으로 각각 나타난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은 화물차, 철강제품, 건설중장비 등이며, 러시아로부터는 주로 석유제품과 전력을 수입한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는 승용차, 화물차, 건설중장비 등과 화장품, 담배 등 소비재가 수입되고 있다.

몽골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3,042.7	35.0%	3,396.7	40.6%	3,452.5	40.1%
2	러시아	2,611.5	30.0%	2,155.7	25.7%	2,119.0	24.6%
3	일본	674.2	7.8%	650.7	7.8%	885.3	10.3%
4	한국	424.6	4.9%	415.1	4.5%	357.1	4.1%
5	이탈리아	266.1	3.1%	89.9	0.5%	74.7	0.6%
합계		8,704.4	100%	8,375.8	100%	8,600	100%

자료: 몽골 관세청

물가 및 환율

몽골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들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잦은 국경 봉쇄로 인한 물류난, 러-우 전쟁에 따른 석유가격 폭등이 물가상승률을 악화시키며 2022년 6월 16%까지 올랐다. 그 후 중국의 국경 정상화,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 공산품 가격 안정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며 2024년 9월 기준 6.7%까지 내려온 상황(정책목표치 : 6%)이다.

투그릭화의 대미달러 환율 또한 2022년 중국의 잦은 국경 봉쇄에 따른 광물 수출량 감소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함에 따라 평가절하되어 2023년 3월 최고치인 3,521.87투그릭을 기록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3년 9월 평균 환율(1달러=1,662투그릭)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대중국 석탄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오유톨고이 광산의 지하광산 투자로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면서 2024.9월 기준 3,380.93투그릭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몽골의 외환보유고는 2022년 26억달러까지 하락했다가 2024년 상반기 기준 약 50억불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몽골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6%까지 인하했던 기준금리를,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3%까지 올렸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점차 하락하고 수출 확대에 따른 환율 안정세에 따라 2024년 들어 기준금리를 3, 5, 9월 1%p씩 3차례 인하하여 2024.9월 기준 10%를 유지 중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19]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등에

19) 몽골 품목별 관세율은 정책 등에 따라 변경가능한 바, 몽골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https://gaali.mn/hscode/en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감자, 배추, 순무, 당근, 양파, 토마토, 오이, 마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최대 30%까지, 유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주류의 경우 국내의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알코올 소비 증가를 막기 위해 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수출품의 경우 거의 대부분 관세율이 0%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시 아래표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상품의 관세율

코드	상품명	세율
4103.9	skins of goats	1piece당 1500투그릭
4301.1	Raw furskins of goats or kids	1piece당 1500투그릭
4401, 4403, 4406, 4407, 4409	난로용 나무, 나무가루, 나무찌꺼기 및 대충 정사각으로 자른 나무	1m3당 150,000TG

특별소비세

특별세법에 따라 술, 담배, 휘발유, 경유, 승용차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보트카 등 알코올 음료의 경우 종류 및 도수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차등하여 부과 중이며,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의 특별세 부과되고 있는데, 운송이 편리한 지역은 특별소비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2025-2026년)

(단위 : 투그릭)

구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소비세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 약품공장, 병원, 동물병원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1,740 1,450 17,400

구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소비세
2	모든 종류의 보드카, 리큐어, 리큐어술: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34도 미만 - 도수가 34도 이상 36도 미만 - 도수가 36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3,900 7,700 10,440 11,500 34,450
	모든 종류의 코냑, 위스키, 롬, 진;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34도 미만 - 도수가 34도 이상 36도 미만 - 도수가 36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9,600 19,200 26,100 28,700 44,00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350
4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870 7,830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350
6	궐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4,180
7	가루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3,130
8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톤당	 0-15,950 0-17,400
9	경유	톤당	0-21,750

수입 승용차는 생산년도와 배기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신차일수록, 배기량이 적을수록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몽골정부는 대기오염 감소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50% 수준으로, 전기차는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 중이다.

수입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구분	실린더 용량(cm^3)	특별세율(만 투그릭)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휘발유 디젤	1500 이하	75	160	335	1,000
	1501-2500	230	320	500	1,170
	2501-3500	305	400	670	1,335
	3501-4500	685.75	800	1,085	1,750
	4501 이상	1,421	2,720	3,915	6,597.5

하이브리드 LPG	상동	휘발유, 디젤의 50%			
전기차	-	37.5	80	167.5	500

수입 금지·제한

○ 몽골은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 연구용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및 유독 화학물질
- 담배 및 주류 관련 광고용 책자
- 가짜 의약품
- 총기류용 핵 자재 등

○ 몽골에서 다음과 같은 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다.
- 주류
- 담배류
- 유류
- 의약품 및 의료기구
- 건축용 화학물질

통관절차

몽골의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몽골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세관에 통관신고를 하게 된다. 통관을 위해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과 함께 세관에 제출한다. 최근 한국에서 몽골로의 수출이 늘고 있는 화장품, 식품 등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세관에서 샘플검사를 진행한다. 식품의 경우 HACCP, ISO 등 국제 식품안전 인증서류도 필요하며, 몽골에 도착했을 때 유통기한이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세관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 세관 과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되면 제출한 금액과 상관없이 인정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관신고서, 패킹리스트 작성 시 화물 내역, 용도, 용량 및 물품원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제품의 코드 번호, 모델명 등만 기재할 경우 세관에서 검토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인정과세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정과세를 피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수입자 수출자 간의 계약서와 은행송금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상기 서류 검토 후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책정되며 세금납부 납부 고지서가 발급된다. 수입자는 동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시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몽골 정부조달의 경우 조달법[20]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며 동 법상 시공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물품은 10억 투그릭 이상, 용역은 3억 투그릭 이상의 입찰에 대해 발주처는 외국당사자의 참여를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기준 금액 미만의 정부조달 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부조달 참여 절차

몽골정부는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몽골 전자조달시스템[21]을 통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몽골 정부조달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가

20)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16760359992351 참조

21) https://www.tender.gov.mn 참조

몽골 외국인관리청에 F-Register 번호를 신청하여 발급[22]받아야 하며, 몽골 전자서명인증서 홈페이지[23]에서 전자서명인증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투자 장벽

투자법

몽골에서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법률은 「투자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자국 및 외국 투자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자가 몽골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당 최소 10만달러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내외국인 합작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분류된다.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지원사항으로는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로부터 일정기간에 대해 세율안정화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5000억 투그릭 투자할 경우 몽골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외국정부 소유법인이 광업, 은행 및 금융, 언론 및 통신 같은 주요 사업 부문에서 몽골 법인 주식의 33% 이상을 보유한 경우, 투자법에 따라 상기 외국정부 소유 법인은 투자 관련 허가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일부 업종의 경우 몽골정부로부터 특별면허를 취득해야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의료, 금융, 건설, 정보통신, 광업, 교육, 에너지, 운송 분야 등으로

22) https://e-mongolia.mn/Foregner/f-register 참조

23) http://www.monpass.mn/ 참조,
전자서명인증서 발급시에 F-Register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 정보 입력이 필요

몽골 정부는 공공의 이익, 국민 보건과 환경보호, 국가안보를 위한 특정분야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활동하려는 자에게 관련 분야의 특별면허 취득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외국인에 대해 야생식품의 수렵 및 재배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나 몽골 투자법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이나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분야별로 유관기관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불투명성이 몽골 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 관련 제한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는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몽골 토지법에 의거하여 사업 목적, 기간, 조건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몽골 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은 최대 5년 이내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이 일반적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나 증자는 어려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은 없다.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한·몽골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몽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몽골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사항이나 공개의무는 없어

재무제표 등 현지 기업 관련 정보를 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관세, 세제 관련 세부규정이 촘촘하지 않아 집행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가 큰 편이다.

기타 제한

몽골에서 회사(법인) 설립시, 회사명은 다른 회사명과 중복되거나 타인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경우 등록받을 수 없어, 이미 몽골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회사명이 몽골 국가등록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회사명으로 쓸 수 없다.

기타 사항

몽골 지식재산권

몽골의 지식재산 관련 법으로는「지식재산법」,「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기술이전법」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법은 지식재산의 소유자가 몽골에서 지식재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등록, 지식재산 대리인 및 중개인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상표권 및 지리표시,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업무는 모두 몽골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몽골 금융시장 현황

몽골 금융산업은 2023년 기준 총GDP의 4.8%에 해당하는 3조 2,584억투그릭(약 9억6,404만USD) 전년대비 27.4% 증가하였다. 증권과 보험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상업은행과 개발은행이 있다. 상업은행 중 Khan 은행, TDB 은행, Golomt 은행, Xac 은행, State은행 등 상위 5개 은행이 총자산 기준으로 몽골 은행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정부는 몽골 정부는 최대주주 지분 분산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여 상업은행의 최대주주 지분 보유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동 시한은 2023년말에서 2025년말로 연장되었다. 은행 외에 2024년 2분기 기준 증권사 600여개, 캐피탈사 550여개, 보험사 340여개사, 신용보증기금 1개 등이 있다.

몽골 금융업 주요 감독 기관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이다. 중앙은행은 몽골 은행 주요 규제기관으로 12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은 상업은행을 제외한 증권업, 캐피탈업, 보험업 등 모든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외국은행의 경우 몽골 은행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몽골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의 신용등급 요건, 모국 국가에서의 지점 설립 및 운영 실적, 몽골에서의 1년 이상의 연락사무소 운영 등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외국은행이 몽골 현지 지점을 개설하여 직접 진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본 자본 또는 IFC, EBRD 등 국제 금융기관이 현지 은행 M&A, 지분보유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

몽골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 제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상기기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위치를 규정하고 수집된 정보의 이용,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 유포하는 경우 벌금 및 징역 등의 처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몽골정부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온라인 정보보안에 대한 법적 환경을 구축하였다. 동 법의 채택으로 사이버 보안 위험평가, 정보보안 감사, 모니터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10년 전 도입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16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전자서명을 제공하며, 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본인환인, 인터넷뱅킹,

보험계약, E-Mongolia(전자정부시스템) 접속 등 600개 이상의 정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기업)도 몽골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전자서명을 취득해야 하므로 입찰 참여시 사전에 전자서명 발급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 및 한국, 일본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가입전인 2001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47%였으나,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9.6%로 낮아졌다 (WTO World Tariff Profiles). 품목별로는 주류 및 담배류 (50.1%), 석유 (35.1%), 커피와 차(26.8%), 운송수단(24.1%) 등에 대해 수입 관세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최근 CPTPP 참여(2019년 1월 14일) 및 EU와의 FTA(2020년 8월 1일) 발효와 함께 RCEP 협정 발효로, 베트남의 관세장벽 제거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 ㅇ 아세안-중국 FTA (AC FTA; Asean-China FTA)
  - 200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90%의 일반품목에 대해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은 2015년까지 20%, 202년까지 0~5% 수준으로 관세 양허, 고민감품목은 201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세 양허 약속

- ㅇ 아세안-한국 FTA (AK FTA; Asean-Korea FTA)
  - 2007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Normal Track(일반품목)의 관세를 2018년까지 100% 철폐하고, Sensitive Track(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로, High Sensitive Track(초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50%로 인하를 약속

ㅇ 아세안-일본 EPA (AJ EPA; Asean-Japan EPA)

- 2008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제 상품 중 62.2%를 2018년까지 철폐하고, 2025년까지 88.6%의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약속

ㅇ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 2010년 발효되었으며,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은 2010년부터 관세 철폐 약속, 아세안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전체 상품 중 93%를 2015년까지 철폐하고, 2018년부터 100% 철폐 약속

ㅇ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 FTA; Asean-Australia / New Zealand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54%를 2016년까지 철폐, 85%를 2018년까지, 90%를 2020년까지 철폐 약속

ㅇ 아세안-인도 FTA (AI FTA; Asean-India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70%를 2018년까지 철폐, 2024년까지 추가 19% 철폐 약속

ㅇ 베트남-일본 EPA (VJ EPA; Vietnam-Japan EPA)

- 200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9%를 발효 후 16년 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칠레 FTA (VC FTA; Vietnam-Chile FTA)

- 2014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7.8%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한국 FTA (VK FTA; Korea-Vietnam FTA)

- 201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4%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EAEU FTA

- 2016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9%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 201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7.9%를 발효 후 16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아세안-홍콩(중국) FTA (AHK FTA:Asean-Hong Kong FTA)

- 201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5%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베트남-EU(유럽연합) FTA (EV FTA:EU-Vietnam FTA)

- 2020년 8월 1일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8.3%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아세안 국가 및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협정으로, 베트남의 경우 2022년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에 대한 관세 철폐 예정

ㅇ 베트남-영국 FTA (UKVFTA:UK-Vietnam FTA)

- 2021년 5월 1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베트남과 영국 간 이미 전체 상품 중 65%가 EVFTA에 따른 관세 철폐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향후 6-9년 간 전체 상품의 99%에 달하는 관세 철폐 약속

ㅇ 베트남-이스라엘 FTA (VIFTA:Vietnam-Israel FTA)

- 2024년 10월 15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의 경우 향후 단계적으로 이스라엘산 상품의 93%에 달하는 관세 철폐 약속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에는 한-아세안 FTA(2007년, AKFTA)와 한-베트남 FTA(2015년, VK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베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 FTA 또는 VK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한국과 베트남 양자간의 FTA인 VKFTA는 AK FTA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베트남은 2012년 수입액 기준 6.1%만큼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87.8%의 품목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었으며.15년 내에 89.9%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모두가 RCEP 협정 가입국으로 2022년 말부터 RCEP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기존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존재로 RCEP의 관세 철폐 효과는 미미한 편으로, 품목 수 기준 3.3% 품목의 수입 관세가 향후 10년 간 추가 철폐될 예정이다. RCEP 발효와 동시에 HS CODE 기준 약 61%의 품목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며, 20.3%의 물품에 대해 점진적 관세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베트남 수출 시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TA 또는 VK FTA, RCEP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시가 필요[24]하며, 수출자는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생산물품이 HS CODE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형식 또한 협정문과 부합하여야 현지에서 낮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3년 7월 베트남과 EODES를 개통하여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행 즉시 상대국 세관으로 전송되어 특혜관세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인쇄 및 전달 필요성과 통관 지체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

한·베트남 FTA 내용

한·베트남 FTA는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으로 나누어진다.

24) 상품의 HS 코드별 수입관세율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을 참조하면 된다.

(1) 상품관련은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 베트남 92.4%로 자유화 수준을 합의하였다.

- 베트남 측은 이미 86.3%를 양허하였고 1.2%는 무관세, 1.9%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2.4%의 자유화율을 달성할 예정
- 우리측은 91.7%를 양허, 1.3%는 즉시, 1%를 5년내, 나머지 0.8%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4.7%의 품목을 개방할 예정

※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열대과일(구아바·망구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 미파쇄) 등 민감 품목은 10년, 천연꿀, 팥, 고구마 전분은 15년 철폐

(2) 서비스·투자 관련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확보
- 우리 금융업계의 협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 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이상의 규범 확보
-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3) 규범·협력 관련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하였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
- 무역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

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한·베 FTA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할 무역구제위원회를 신설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로(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 농림수산분야 :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 규정 및 절차 :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협력
※ 기타 :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50일(긴급시 75일)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수입정책 안내

수입 관세

(1) 베트남의 품목분류표

베트남과 한국은 WCO(세계관세기구) 회원국으로, WCO에서 정하는 6단위 HS 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은 10단위 체계를, 베트남은 8단위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HS2022 개정 이후 베트남은 2022년 6월 8일 재무부 시행규칙 31/2022/TT-BTC로 품목분류표를 개정 발표하였다. 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관세율의 경우 정부 시행령으로써 규정된다.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이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에 따른 관세율이다. 대체로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현재 한국은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자가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수출세율 및 MFN 수입세율은 2023년 5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26/2023/ND-CP 부록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행령 부록으로 제 98류를 두고 있으며, 이는 WCO에서 정하는 세계 공통 HS CODE 체계에 속하는 제 97류까지의 분류 이외에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분류로써,자국 정책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세율 혜택 및 부과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량 생산 및 조립 산업 발전을 위한 우대 프로그램에 따른 수입 부품 세율 혜택 등이 제 98류(제98.49호)로써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여러 국가와의 FTA협정 등에 따른 특혜 관세율은 개별 정부 시행령으로써 규정되고 있으며, 2022년에서 2027년까지의 한-아세안 FTA 세율 2022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119/2022/ND-CP호, 한-베트남 FTA 세율 2022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125/2022/ND-CP호, RCEP 협정에 따른 한국산 물품에 대한 특혜 관세율은 2022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129/2022/ND-CP호의 부록 E호에서 확인 가능하다.[25)]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하는 수출입물품은 한·ASEAN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상호대응세율 적용은 한·ASEAN FTA에 국한되며, 한·베트남 FTA는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FTA는 ①아세안-중국 FTA(AC FTA: Asean-China FTA), ②아세안-한국 FTA(AK FTA: Asean-Korea FTA), ③아세안-일본 EPA(AJ EPA: Asean-Japan EPA), ④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⑤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AANZ FTA: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⑥아세안-인도 FTA(AI FTA: Asean-India FTA), ⑦베트남-일본 EPA(VJ EPA: Vietnam-Japan EPA), ⑧베트남-칠레 FTA, ⑨베트남-한국 FTA(VK FTA: Korea-Vietnam FTA), ⑩베트남-유라시아 경제연합 FTA(Vietnam-EEU FPA), ⑪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⑫아세안-홍콩 FTA(AHK FTA: Asean- Hong Kong FTA), ⑬베트남-EU FTA(EV FTA: EU-Vietnam FTA), ⑭베트남-영국 FTA(UKVFTA:UK-Vietnam FTA), ⑮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⑯베트남-이스라엘 FTA(VIFTA: Vietnam-Israel FTA) 가 있다. 그 외 아세안-캐나다 FTA 및 베트남-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베트남-UAE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조건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에 의해 수출물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그 대상은 원부자재, 소모품, 구성요소, 부분품 등이 된다. 종전에는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 존재하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납부가 유예되었으나, 2016년 9월 1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세납부 유예가 아닌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

25)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 확인은 정식으로 인쇄된 수출입관세 책자(Bieu Thue Xuat Nhap Khau)를 구입하여 확인하거나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되었다. 그러나 관세 면제를 받은 기업체는 추후 자재 정산보고(Báo cáo quyết toán, Liquidation)를 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 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물품 생산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입 종합 인증제도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Doanh nghiệp ưu tiên)

「관세법(Luat Hai Quan 2014)」 제 3장 제 2목 및 「관세법 시행령 Declaration 08/2015/ND-CP」 제 2장에서 우대기업제도(Che do uu tien doi voi doanh nghiep)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우대 기업의 혜택으로 통관 검사 일부 간소화 혜택, 간소한 통관 서비스 제공 등을 두고 있다. 우대기업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72/2015/TT-BTC」 및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07/2019/TT-BTC(일부 개정)」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기업, 베트남 재무부에서의 규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 장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수출입화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기업, 직전 2년간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4천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제조기업 또는 3천 달러 이상의 농수산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연간 수출입신고 건수 2만 건 이상을 보유한 통관대행기업, 전자 통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각종 검역 및 검사 · 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민권의식도 높아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재화의 생산 및 수입, 특정 용역 제공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해 관세와 별도로 추가부과되는 간접소비세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재화의 생산 및 수입, 특정 용역 제공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해 관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및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8년 특별소비세법(Law 27/2008/QH12)」이 적용된 2009년 4월 1일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14년 12월 초 발표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Law 70/2014/QH13)」에 따라 술, 담배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상되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조세관리법 일부개정법률(Law 106/2016/QH13)」 발효돼 수입품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수입가격(CIF 가격)에서 수입자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으로 변경되었으며, 24인승 이하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조정

되었다. 가장 최근 2022년 1월 11일자료 발표된「공공투자, 공-사 협력법, 투자법, 주거법, 조달법, 전기법, 기업법, 특별소비세법 및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의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10-25%에 달하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2027년 2월 28일까지는 1-3% 정도로 조정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과세대상 품목별로 7~150%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

- 담배/시가
- 주류(주종 및 도수에 따라 세율 상이함)
- 24인승 미만 자동차(전기차 여부 및 인승에 따라 세율 상이)
- 배기량 120CC 이상의 이륜 또는 삼륜 모터사이클
- 항공기
- 보트
- 석유
- 90,000 BTU 이하 에어컨
- 게임용 카드
- 제사용품
- 부적

(2) 특별소비세율 과세대상 용역

-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사업
- 마사지, 가라오케 사업
- 카지노, 사행성 전자게임 사업
- 사행성 배팅 사업
- 골프 사업
- 복권 사업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非부과대상을 제외한 베트남에서의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이다. 미가공 또는 단순 1차 가공 농·축·수·임산물, 소금 생산, 관개 및 수로 사업, 정부 승인 기업에 의한 동물 종자 또는 식물 종자 육종 사업, 국유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2008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Law 13/2008/QH12)」을 기반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발표된 개정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일 경우, 해당 세액 포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수입자는 관세를 지불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마감 일은 분기 종료 후 첫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다.

베트남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 적용대상: 수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국제 운송,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면세 재화 및 용역. 단, 다음을 제외한다.
-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이전
- 역외재보험

- 금융용역
- 신탁 및 파생금융용역
- 우편 통신 서비스
-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자원 및 광물, 또는 천연자원 및 광물과 에너지비용의 총 가치가 상품 제조단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및 광물 가공품

(2) 5% 적용대상

- 산업 및 생활용수
- 비료, 비료 생산용 광석, 농약 및 동물용 성장촉진제
-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반려동물의 사료
- 농업 생산을 위한 토역, 농업용 수로·도랑·연못,·호수 등의 준설용역, 경작, 병충해 박멸, 농작물의 예비 가공 및 보존
-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농작물·축산물·수산물
- 1차 가공된 고무 송진·수지, 그물·밧줄 및 그물 생산에 사용되는 직물
- 생식료품, 목재·죽순 및 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임산물
- 설탕, 설탕줄기·사탕수수 등 설탕제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 황마, 골풀, 대나무, 짚, 잎, 코코넛 껍질, 코코넛 열매, 수생식물로 만들어진 제품, 농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수공예품, 1차 가공된 면화, 신문 인쇄용지
- 쟁기, 쇄토기, 파종기, 수확기계, 탈곡기, 살충분무기계 및 펌프 등 농경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의료 장비 및 기구, 의료용 면사 및 위생 밴드, 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 약학제품, 의약품 생산원료
- 모형, 도면, 칠판, 분필, 자, 콤파스 등 교육 및 학습용 기자재, 교육, 연구, 과학 실험용 기자재
- 문화 활동, 전시,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영화제작, 영화의 수입·

배급·상영
- 아동용 장난감과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각종 서적
- 과학기술법 규정에 따른 과학, 기술 용역

(3) 10% 적용대상: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재화 및 용역

다만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 회복과 발전 계획 지원을 위한 금융, 재정적 정책 (43/2022/QH15)」에 따라 일부 물품 및 용역을 제외하고 10% 대상 물품에 대해 8%로 세율 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통신업
- 금융, 은행, 증권 및 보험업
- 부동산 거래
- 금속 및 성형된 금속 제품
- 광산제품 (석탄 제외)
- 코크스 채광업
- 정제유 및 화학물품
- 그 외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 및 용역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 철, 비금속 등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각 품목별 수출세 부과 여부는 2023년 5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Decree No. 26/2023/ND-CP」의 부록 1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시행령은 구리 파이프, 비료, 숯, 주석, 미가공 아연 등 베트남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에 비해 불충분한 품목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높은 수출세율을 부과하였으며, 반대로 생산이 충분한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수출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HS CODE 기준으로 수출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더라도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과 에너지 비용을 합한 가치가 제품 가격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수출세 5%에 해당하던 건축용 석재 등 일부 68류 물품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5일자 개정안「Decree No. 101/2021/ ND-CP」를 통해 점차적으로 수출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2025년 20%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가공 단계가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수출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가공 단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법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Law 04/2007/QH12」).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베트남 국내외에서 법에서 규정한 과세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와 베트남 내에서 과세 소득이 발생한 비거주자 개인으로,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법상 외국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베트남 내 개인소득세 법상 거주자는 1역년 기간 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 내 거주하거나, 입국일 이후 12개월의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거나, 또는 항구적 주거(거주증을 보유한 외국인 포함)를 베트남 내에 가진 경우(거주증에 기재된 주거지를 포함함)는 베트남의 거주자로 인정된다. 단, 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거주해도 베트남 내에 항구적 주거지를 가지고 타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 내에서 거주자로 간주된다. 거주자는 베트남 내외에서 지급된 모든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 월소득 기준

- 500만 동 이하: 5%
- 500만 동 초과~1,000만 동 이하: 10%
- 1,000만 동 초과~1,800만 동 이하: 15%
- 1,800만 동 초과~3,200만 동 이하: 20%
- 3,200만 동 초과~5,200만 동 이하: 25%
- 5,200만 동 초과~8,000만 동 이하: 30%
- 8,000만 동 초과: 35%

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에 따라 다양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거주자가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15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베트남 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 국내 지급 대가에 대해서도 베트남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액물품에 대한 수입제세 면세제도

베트남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규정 (Circular 18/2021/ND-CP)에 따라 수입 건별로 법률 상 특정조건을 모두 충족(과세가격 VND 100만 이하이고, 관세액 VND 10만 이하)하는 특송화물에 관세를 면세한다. 수입 과세가격이 VND 100만(약 USD 43)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세된다.

면세금액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와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통관절차 및 검역, 검사

통관 절차

베트남의 통관행정기관은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관세총국은 직속기관 및 행정부서, 세관 신문 등의 부속기관 및 시, 성급 세관국으로 구성되며, 통관 절차 이행, 수출입화물의 감시 및 감독, 관세 법규에 따른 업무 집행 및 세금의 징수, 밀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3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세관국이 설치되어 있다. 시·성급 세관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하며, 관세총국에 직접 소속되어 세관 절차 관리 및 관세 관련 법령 집행을 보조한다.

시·성급 세관국 산하에는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설치된 193개의 세관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의 세관지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총국의 지휘를 받는다. 세관지국은 규모 및 지역 특징에 따라 세금 징수 관리, 베트남은 201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CS/VCIS)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는 모든 신고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연동하는 ECUS 시스템을 통한 전산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5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공무원들은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처리기한을 지켜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늦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도 대개 신청 후 5 근무일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세관 검사

모든 수입화물은 수입자/수출자/신고대행자가 통관신고서와 통관물품관련 첨부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통관될 재화에 대한 실물검사의 대상이 되며,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지속적으로 성실화물의 비율을 높여 효율적인 세관 검사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말 베트남 관세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성실 화물 66.87%, 우범화물 29.27%, 위험화물 3.35%로 집계하고 있다.

- Green Channel(40%): 서류검사 면제+실물 개장검사 면제
- Yellow Channel(4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면제
- Red Channel(2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실시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 시 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

베트남 내 제조, 수입 및 유통 제품의 라벨링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4일자 시행령 43/2017/ND-CP 및 이를 일부 개정한 2021년 12월 9일자 시행령 111/2021/ND-CP를 따른다.

- 라벨링 기본 요건
  - 라벨 위치: 상품 또는 상업용 용기에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부착되어야 하며,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외부 포장을 열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포함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라벨 크기: 라벨 및 라벨링 글자와 숫자의 크기는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육안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 측정량을 나타내는 문자 및 숫자는 치수법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라벨 색상: 라벨의 문자, 숫자, 그림, 이미지, 기호 등의 색상은 선명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하는 필수 표기사항을 표시하는 문자 및 숫자는 라벨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표기 언어 : 수출용 재화를 제외하고, 베트남 시장 유통 재화의 경우 법적인 필수 표기 사항을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번역이 불가능하거나 번역 시 의미 전달이 불가한 국제적 표기, 식물학적 성분 등은 라틴어 계열의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만일 수입재화에 베트남어로 표기된 필수기재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필수기재정보를 베트남어로 표기한 추가적인 라벨이 본래의 라벨과 함께 부착되어야 하며, 베트남어로 표기된 내용은 본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 혹은 재회의 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 의 상호 및 주소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 제품의 원산지, 원산지 미상 물품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완성 작업이 이뤄진 국가
- 그 밖의 Decree 111/2021/ND-CP Appendix 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필수정보(예. 화학물질의 경우, 수량, 제조일, 사용기한, 성분, 화학물질 식별번호, 경고표시, 예방법, 사용 및 보관 방법 안내문)

그 외에 아래 표기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43/2017/ND-CP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제품 개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라벨이 작성되어야 한다.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안전요건

2018년 5월 15일자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69/2018/ND-CP 부록 3의 7번째 항목으로 보건부의 관리대상으로써 수출입 시 허가증 및 조건을 요구하는 품목으로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살충제 및 살균제,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해당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전 유통 등록이나 유통 번호 신청, 제품 선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수입 허가서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식품과 관련한 국가기술표준의 경우 베트남 보건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 베트남 보건부의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필요 서류 참고

- 식품, 음료 :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제품정보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및 36개월 미만 영유아식품의 경우 제품 등록을 위해 GMP 증명서 필수
- 화장품 : 자유판매증명서, 위임장(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베트남내 유통을 위임한다는 내용) 등 공증 및 인증을 받은 서류와 제조자 정보, 제품 원료 리스트, 안전성 정보, 제조 공정 정보 등을 담은 제품 선언 신청서(Proclamation report) 준비 필요

- 의약품 : 의약품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품질인증서(ex. ISO 9001) 등 서류 준비 필요
- 의료기기 : 의료기기 등급(A-저위험, B/C/D-고위험) 분류 관련 서류, 품질 인증서, 위임장 및 자유판매 증명서, 의료기기 설명서, 기타 화학, 물리, 미생물 기준 및 규정 적합 증명서 등 서류 준비 필요
- 살균제 및 살충제 : 자유판매증명서, 제품 관련 기술 서류, 성분분석표 및 성분별 함량 자료,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라벨링 샘플 등 준비 필요

수입규제품목

기존「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 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는 폐지되고 2017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대외무역법(Law 05/2017/QH14)」 및 2018년 5월 15일 자「대외무역법 시행령 (Decree 69/2018/ND-CP)」가 발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수출입 금지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총리에게 있으며, 관할 부처 장관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한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풍등, 교통수단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 중고 소비재(섬유·의류제품, 신발, 전자제품, 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제품, 도기·유리·금속·플라스틱·고무·수지 및 기타 자재로 된 가정용품)
- 중고 IT제품 (프린터기, 핸드폰, 라디오, 계산기, 음향기기, 케이블, 카

메라, 컴퓨터 등)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출판물, 우편법에 의해 사업·교환·전시·선전이 금지된 우표, 무선장비·무선전파기술 응용장비 중 무선주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주파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 우측 핸들 차량(분해된 상태의 차량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포함되며,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각종 차량과 그 부품 및 오토바이, 트레일러 등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중고 자전거, 오토바이, 모패드,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구급차 및 그 부분품과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중고차량
-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하는 화학물
- CITES 협약 상 별종위기 동물, 식물 및 일부 종(흰코뿔소, 검은코뿔소, 아프리카코끼리)의 표본 및 가공품
-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살충제)
- 폐기물, 스크랩,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과 자재
-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이행 베트남 시행령(Decree 100/2005/ND-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화학물법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08/2008/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2) 조건부 수입허가 품목

동 시행령에는 베트남에서 수출입 금지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입 시 정부 관할 부처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각 관할 부처들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개별 시행 규칙 등을 통해 세부 품목 리스트 및 적용 조건 등에 대해 발표한다.

* 베트남 각 행정부처별 관할 품목 품질관리 대상 규정 시행규칙

- 교통부 : Circular 12/2022/TT-BGTVT

- 산업무역부 : Circular 41/2023/TT-BCT
- 정보통신부 : Circular 02/2024/TT-BTTTT
- 공안부 : Dscision 6266/QD-BCA
- 농업 및 농촌개발부 : Circular 16/2021/TT-BNNPTNT
- 과학기술부 : Circular 01/2009/TT-BKHCN
- 노동보훈사회부 : Circular 01/2021/TT-BLDTBXH
- 건설부: Circular 04/2023/TT-BXD

표준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STAMEQ)에서 발표하는 베트남 표준규격(TCVN) 및 베트남 법률에 따른 기술규정(QCVN) 리스트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베트남은 12618개의 TCVN 및 802개의 QCVN을 규정하고 있다.

TCVN은 물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방법, 라벨링, 포장, 운송이나 보관 등에 대한 표준으로 베트남 TCVN 일부는 국제 기술표준인 ISO, IEC, AMD 등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각 QCVN은 부처별로 발표하는 강제 규정으로, 각 QCVN 별로 대상 품목이 지켜야 하는 절차(예. CR MARK 부착)와 준수가 필요한 국제 기술표준 번호 및 TCVN 번호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환경관련 규제

2022년 1월 1일 베트남의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이 발효될 예정이다. 2014년 환경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정 환경보호법은 환경자원 보호, 환경보호 정책, 환경보호정책 책임 주체, 생산제조기업 환경보호 책임, 환경영향평가(EIA)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용 정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EIA 목록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그룹 Ⅲ·Ⅳ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EIA의 의무에서 배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 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경제구역·산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를 정의하고 EIA 보고서에 따른 규정을 명확화 한다. 또한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생산기업은 TVCN ISO 14001또는 국제표준 ISO 14001의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배터리 및 축전지, 전기 전자제품, 타이어 및 튜브, 윤활유, 자동차 및 오토바이, 포장재를 생산하는 6개 분야의 기업은 EPR 의무 대상이다. EPR대상 기업은 상품 및 포장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부를 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재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생산폐기물 및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베트남 환경부에 등록하고 재활용 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베트남 환경부에 제출 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직접 재활용을 하는 대신 베트남에 환경보호기금 기부를 선택한다면

기업의 상품 생산량 및 포장수량에 따라 기부금이 결정된다.

특히 6개 분야 중 포장재, 충전지 및 배터리, 윤활유, 타이어 및 튜브 제조 및 생산 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EPR 의무 이행 대상으로 환경보호법 시행령 08/2022/ND-CP에서 명시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탄소 시장의 조직과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베트남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기준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받고 베트남 내 탄소시장에서 탄소를 교환, 구매, 판매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베트남의 탄소 절감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정 환경보호법상 베트남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 활동에 관한 규정, 폐자재 및 재활용 목적 폐기물 수입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1) 수입활동 관련 환경보호 규정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 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2) 폐품 및 재활용 폐기물 수입 관련 환경보호 규정

-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용 폐품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 폐품 수입자의 설비조건 및 폐품 수입 전후과정이 요건에 충족,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 기준 충족해야하며,
- 매년 수입 폐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환경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정부조달 및 입찰

베트남은 정부 전자조달 사이트[26]를 통하여 각종 투자·입찰·공공조달 공고(상품, 공사, 컨설팅, EPC, Non-Consulting,), 정부 관보, 각종 법령정보, 조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투자부에서는 입찰신문을 창간하고, 전국입찰네트워크 시스템[27]을 구축하여 대표적인 입찰 정보와 입찰 경과를 공식적으로 안내한다. 기획투자부가 공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며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 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공공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베트남 「입찰법」 기본법은 2013년에 개정된 이후 2023년 6월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입찰법 제22/2023/QH15가 근간이 되고 있다. 입찰활동의 공정경쟁·투명성 보장, 행정 간소화를 통한 시간·비용 절감 및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된 「입찰법」은 총 10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법은 구법에 비해 적용 대상, 입찰 활동 관련 금지 행위, 의료 분야의 입찰, 입찰 취소의 경우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해 입찰 활동 감사, 점검 및 감독에 대한 국가적 관리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국내산업 발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낙찰자, 투자자 선정 시 우대 조치를 받는 대상에 베트남을 우너산지로 하는 상품,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친환경 상품·서비스, 영세기업, 혁신창조 창업기업 등이

26) http://vpcp.chinphu.vn

27) http://thongtindauthau.com.vn

추가로 포함되었다.

입찰참가자격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 참가가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화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베트남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으로 CR 마크, 에너지효율인증, 유·무선통신 관련 인증, ISO 국제화 표준인증, GMP 의약품 인증 등이 있다.

외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공여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입찰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 전자입찰의 경우, 베트남 총리가 전자입찰에 대한 2016~2025 마스터플랜 (결정서 1402/QD-TTg)을 2016년 7월 13일에 승인하였다. 내용에 따른 2025년까지의 목표는 '① 전자조달 시스템상에 입찰 과정 전체 100% 등록 ② 개정 입찰법 범위에 속하는 입찰 중 최소 70%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실행 ③ 연속구매, 집중구매 관련 활동 시스템 상에서 100% 실행' 등 3가지로 정하였다. 이밖에, 2017년 5월 조달 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시공, 물품구매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입찰방식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수 지출 비용이 많은 기업 및 국내산 우대정책이 존재한다. 때문에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즉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이행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 밖에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적용되는 몇 가지 국제 협약에 비준했는데, 2004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국제적 상호 보호를 규정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가입한 것에 이어, 2006년에는 국내에서 등록 또는 출원한 산업재산권(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마드리드 협약(Madrid Protocol)을 비준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2005년 제정(Law 50/2005/QH11)된 이후 고유의 통합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2009년 및 2019년에 두 차례 일부 개정이 되어 시행 중이다.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이 가입한 CPTPP, EVFTA 및 RECP 등 다자간 협약상 의무 준수를 위해 지난 2022. 5. 31. 지식재산권법의 추가 개정안을 전체 출석 인원 477명 중 47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법(Law 07/2022/QH15)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2023. 1. 1. 부터 시행되었다. 위 개정법 시행에 발 맞추어, 베트남 정부는 개정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Decree 17/2023/ND-CP)을 제정하였고, 해당 시행령은 2023. 4. 26. 발효되었다.

개정 지식재산권법은 기존 법령 중 약 100여개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의 대규모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또한 기존의 구 지식재산권법 시행령 (Decree 22/2019/ND-CP)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는 형식의

본문 1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및 인접 저작권 권리의 등록, 갱신 및 무효화 절차를 보다 분명히 규율하고, 온라인 등록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공동 저작자의 범위와 권리 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였다.

공표된 저작물로서 별도의 로열티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침해 예외 사유로서, 신문, 방송, 보도매체에서의 왜곡 없는 인용, 합리적 수준의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재생산 등의 사유를 추가하였다. (합리적 수준이란 최대 1개의 사본으로, 자료 보존을 위한 목적의 합리적 재생산은 최대 3개의 사본으로 각 제한됨)

적법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단체 또는 개인은 타인에게 제공 목적이 없는 한 프로그램 파손, 멸실에 대비하여 백업 카피를 보유할 수 있고, 기계 또는 장비의 통상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이 주 목적이 아닌 임대의 경우 프로그램 대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구제책으로서 형사,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권리자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피침해인의 침해인에 대한 통지 및 이후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베트남 부총리는 지식재산권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및 이를 위한 각 유관 부서 간 협업을 위해 2023. 6. 20. 지식재산권법 시행과 관련한 세부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부총리는 과학기술부(MoST) 장관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정 절차 개선에 대한 지침 준비를 지시하고 특히 전자적 시스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은 2023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베트남 특허청(NoIP)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자료 처리 등과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의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23년 2월 22일 특허청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과 양자회의를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분야 경험과 노하우 공유, 심사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특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장 문서에도 서명했다.

한-베트남 지식재산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2022년에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 최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특허권·상표권·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상표전문가회의를 재개하는 것도 합의했다. 앞으로 양 청 간 상표 분야 제도 개선 사항, 심사 실무의 경험과 요령(노하우) 등의 공유가 가능해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장벽

베트남 개정 투자법(2021년 시행)

2020년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의 투자법(Law No. 67/2014/QH13, 2015년 시행)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베트남의 투자법 개정안은 1) 투자지원 방식에 대한 규정, 2)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가격 및 경매 입찰 규정, 3) 프로젝트의 기계 및 기술에 관한 통제규정, 4) 기업등록 증명서의 취소 지연기간 연장 규정, 5) 투자인센티브 조건 변경 및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14년 재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제정 되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보여지는 개정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투자법 주요 개정내용

□ 주요 내용
① 채권 추심 서비스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② 다수 사업 투자분야 조건부 사업 목록에서 제외 투자 자율성 증대
③ 조건부 사업 투자분야 추가
④ 특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규정 신설
⑤ 프로젝트 실현 보증금 제도 실시
⑥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 대한 규정 수정
⑦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시장접근 조건, 분야 공개 규정화

□ 세부 내용
○ 채권추심 서비스 분야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 이번 투자법 개정을 통해 기존 조건부 투자분야에 있었던 '채권추심 서비스' 분야는 투자 금지분야로 지정되었음
- 동 법률이 발효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는 현행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기업의 추심활동은 인정되나 발효이후에는 활동을 중지하여야 함

○ 조건부 사업 목록 중 15개 사업 제외
- 무역중재 조직의 서비스 활동
-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제조 및 수리
- 무역 감정 서비스
- 프랜차이즈 활동
- 물류, 서비스 사업
- 배송 대행 서비스

- 비즈니스 교육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교육 및 육성 서비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운영 서비스
- 아파트, 콘도 운영관리, 전문 지식 훈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HIV 검사 서비스
- 출산 보조, 정자 보관, 배아 보관 서비스
-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검사 서비스
- 예방접종 서비스
-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치료 서비스
- 성형수술 서비스
- 인공수정 등 임신 관련 서비스

  * 조건부사업이란 일정(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상기 15개 분야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없이 투자 가능(별도의 기본적인 투자자격은 갖추어야 함)

○ 조건부 사업으로 신규 추가된 6개 사업

- 금연서비스, HIV/에이즈 치료, 노인 및 장애인, 어린이 돌봄 서비스
- 정수(생활용) 서비스
- 건축 서비스
- 수입 잡지 발행 서비스
- 어선 등록, 검정 서비스
- 선원 훈련 및 육성 서비스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또한 이번 개정 투자법에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혜택 적용을 결정하였으며, 특별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 및 기간은 현행 법률이 정하는 분야별 최고 인센티브 지원 범위의 (법인세율 기본 10% 적용, 4년간 면제, 9년간 50% 감면) 5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 의미 상 기존 최고 인센티브 혜택에 추가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정부의 정확한 해석 필요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에 관한 추가 규정

-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확장하는 R&D센터, 혁신센터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30조 VND(약 12.5억 USD)이상이며 투자 후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을 투자 집행하는 특별우대 산업 및 분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 정부 총리 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확장하는 R&D센터, 혁신센터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30조 VND(약 12.5억 USD)이상이며 투자 후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을 투자 집행하는 특별우대 산업 및 분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 정부 총리 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프로젝트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 집행 보증을 위한 기금, 은행 보증 필요

정부 토지 할당 및 임차 사용, 토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은행 보증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5가지 경우는 제외 된다.

기금 또는 은행 보증이 불요한 경우

-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에 대한 최종 사용자로 선정된 투자자가 토지 할당비, 임대비용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이미 프로젝트 사용 토지가 있고 프로젝트 투자자로 낙찰 받는 경우
- 정부로부터 할당 또는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며 기 허가된 투자등록 허가서 및 투자증명서 내용대로 투자자본금 납입이 완료되거나 보증기금을 체결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사용에 대한 모든 의무를 완료한 후 투자권한이 양도되는 토지와 그에 부속하는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
- 하이테크 산업단지, 경제특구, 수출제조 구역, 산업단지 건설용 인프라 등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 투자우대 수혜 대상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투자인센티브 수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으나 추후 베트남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수혜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규정에 의거 인센티브 수혜 가능 산업 및 분야 목록, 지역을 공표 및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인센티브 수혜 분야 및 지역

□ 수혜 분야

- 과학기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적 결과로 도출된 첨단 기술 활동, 첨단 기술지원 산업 제품, 연구 개발활동 그와 연관된 생산품 및 기술
- 신규 소재, 신재생 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그 생산, 제품 생산 시 에너지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를 30% 이상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 주요 전자제품, 기계제품, 농업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생산, 선박건조
- 부품소재 지원 산업 혜택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 생산
- 정부기술 관련 제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컨텐츠 생산
- 농업, 임업 및 수산물 재배, 가공, 산림조성 및 보호, 제염, 어업 및 관련 물류, 식물 및 동물 품종에 대한 개발 및 생명 공학제품 생산

•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투자, 도심지역의 공공 여객 운송 개발
• 유아교육,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 건강진단 및 치료, 약물, 의약성분 및 필수의약품 개발, 생물학적 제품, 백신, 약초, 전통 의약품, 희귀 의약품 생산,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명 공학적 연구
• 장애인 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육, 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 문화유적 가치 개발 및 보호
• 노인 및 정신질환 관리 센터, 고엽제 치료 센터에 관한 투자(요양원, 장애인 복지원, 고아원 등)
• 일반인에 대한 신용기금, 소액 금융기관
• 산업 가치사슬 및 클러스터 생성, 참여를 위한 제품 생산, 서비스 활동

□ 수혜 지역
• 사회 경제적 조건 낙후 지역과 매우 낙후된 지역
• 산업단지, 수출가공 구역, 첨단 산업단지, 경제특구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며 투자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6조 VND(약 2.5억 USD)을 집행하고 최초 매출이 발생한 년도로부터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거나 3,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사회 주택건설 프로젝트, 농촌 지역에 투자하며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젝트,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 첨단기술 기업,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 조직,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이 권장되는 분야 항목에 포함된 프로젝트, 첨단 기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술 인큐베이터, 과학 및 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 혁신 스타트업 기업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중소기업 제품 유통 체인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시설,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투자,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른 혁신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분야 투자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진출을 위한 분야별 시장접근 기준 마련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투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가분야 및 시장접근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정부는 세부규정을 추후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조직,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투자지분 조건
- 투자 형식에 관한 조건
- 투자활동의 범위에 관한 조건
- 투자활동 참여 대상 및 투자자의 자격에 관한 조건
- 국제조약, 국회의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조건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 회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이하)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투자방식

○ 직간접 투자 통합형식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 자본출자,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1)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투자법인과 달리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매년 연차 보고서를 익년 1월 말까지 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연속 미제출시 대표사무소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최대 활동기간은 5년이며,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Trade Bureau)이다.

(2)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수출입업무),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된다. 지사는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72/2006/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3)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지난 법령에서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이번 2014년 개정 투자법, 기업법을 통해 수정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 및 자본금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기존 36개월→90일)
  * 1차 소집 시 납입자본의 최소 65%(기존75%) 이상 보유 구성원
  * 2차 소집 시(15일이내)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보통결의 정족수 65%, 특수결의 정족수 75%

- 주식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90일, 동일)
  * 1차 소집 시 의결주식의 51%(기존65%) 이상 보유 주주
  * 2차 소집 시(15일이내) 의결주식의 33%(기존33%) 보유 주주
  * 보통결의 정족수 51%(기존65%), 특수결의 정족수 65%(기존75%)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및 청산 의결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출석 주주의 65% 이상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의결
  * 출석 주주의 51%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사원총회(MC: 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만 그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트너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금약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하는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 1일부로 현지에서 사전에 외국인 판매를 위한 허가를 획득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소유권 제한 등 중대한 변경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2024년 8월 시행)이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및 해외 교민과 외국인(개인 및 단체)의 주택소유 허용이다. 아파트 소유 기한은 건물 등급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해외 교민과 외국인 개인 및 단체의 경우 해외 베트남인은 상속, 증여로 받은 토지에 신축한 주택 및 상업용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외국인은 안보상 제한지역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도시지역의 상가주택 프로젝트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재무부 시행규칙 186/2010/TT-BTC (2010년 11월 18일)」에 따르면, 투자가들에게는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그리고 ② 베트남 내의 투자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게 된다.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투자 활동에 따라 분배되거나 수령한 이익금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당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는 때에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을 종결하여 얻은 이익금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며, 동시에 세금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필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 규제

베트남에서 외환관리는 국가 독점업종으로, 관리기관인 중앙은행이 외국환을 집중 매각·예치하고 있다. 2011년 8월 12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시행규칙(Circular 15/2011/TT-NHNN)」에 따라 베트남에서 신고 없이 반출·반입 가능한 휴대반입 외화 액수는 미화 5,000 달러이다.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입할 시 세관신고가 필요하며, 규정된 금액 또는 가장 최근의 외화 반입 신고액을 초과한 금액을 재반출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금융기관의 외화반출 확인서와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화 반출 승인서를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접투자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베트남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간접투자를 할 경우에도 베트남동 계좌를 개설 후 투자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계좌가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당해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 또는 합법적으로 발생한 외화수입에 한해서만 휴대 반출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2년 11월 15일 베트남 내 기업이 해외 금융기관 등 해외에 설립된 외국 법인및 비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Foreign Loan 또는 Overseas Borrowing) 및 상환하는 것에 관한 외화 관리 규정인

Circular 03/2016/TT-NHNN(이하 “Circular 03”)을 일부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위한 Circular 12/2022/TT-NHNN(이하 “Circular 12”)을 시행하였다. 1년 이상 중장기 대출, 단기대출 중 원금 상환 기한이 1년을 초과한 기간으로 연장된 대출, 댄기 대출 중 첫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계약이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자 및 비용의 산출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나 이자 및 비용의 납부 일정만 변경되는 경우, 중앙은행에서 기 승인된 대출액, 상환액, 이자액, 비용이 차입 외화의 100단위 이내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변경 사항을 통보(notification)하면 된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fe Deposit Account: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은행 대상으로는 정확한 법규가 없었으나 2003년 10월 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804/2003/ QD 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년 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이용 직후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철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내 여러 외국계은행이 여신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미화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 되고 있다.

(4) 선택적 환율제로의 환율제도 변경

2016년 1월 4일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만을 매일 고시하던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원화를 포함한 8개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기준 환율을 매일 제시하는 방식의 선택적 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신규 환율

제도 도입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 변동 요소, 베트남과 무역·투자·대출 관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의 통화 환율 변동 요소, 국제수지 및 정부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베트남 외환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율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중앙은행이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하고,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거래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베트남은 ±3% 이내에서 거래된다.

(5) 외국인투자법인의 외환거래

2019년 9월 이후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법인 등의 외환거래는 시행령 No. 06/2019/TT-NHNN을 따라야한다. 해당 시행령은 해외직접투자법인 및 해외직접투자법인에 투자한 해외·베트남 투자자, 경영협력계약의 당사자,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민관협력사업(PPP)을 직접 수행하는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1개의 인가은행에서 베트남 동화 표시 또는 외화 표시의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s)를 각각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자본금, 배당금, 역외차입금 원금 및 이자거래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출자 혹은 주식의 인수, 증자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1%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상장 또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경우에는 직접투자 계좌를 해지하고 간접투자 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6) 외환거래 규제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의 달러화 탈피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달러 거래 제한 목적의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 내 외환 사용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Circular No. 32/2013/TT-NHNN)을 통해 베트남 지역 내에서 외환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며 이 외에에는 외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 일례로,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 지급, listing, 광고, 견적, 가격 책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계약, 협정에서의 가격 기재를 베트남 동화로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허용된 금융기관(외국계 은행의 지사 포함)의 외화대출

범위는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 목적의 투자용도, 유류제품 수입 중계상의 수입대금 결제, 국회 또는 정부 결정에 따른 해외투자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 18일부터 개인 예금주에 대한 달러화 예금금리를 기존 0.25%에서 0%로 인하하였다.

(7)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년 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년 4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게 외화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8) 외화 의무보유 비율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12개월 이하의 기한 또는 무기한 예금에 대한 의무 보유 비율은 7%였으나 2010년 1월부터 4%로 하향되었다.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외화 예금경우에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보유 비율은 1%이다.

경쟁정책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대표적 결과가 2004년에 제정돼 200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경쟁법(Law 27/2004/ QH11)」이며, 2018년 신 경쟁법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전 법과 비교했을 때 신법은 규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 외국기관, 개인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했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 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한편, 개정된 경쟁법은 국가경쟁위원회(NCC,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가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설립이 지연되어 경쟁법 주무부서는 산업통상부 산하에 설립된 경쟁관리국(VCCA, Vietnam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과 독립 기관인 베트남 경쟁위원회(VCC, Vietnam Competition Council)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2023년 4월 NCC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 구조 등에 대한 베트남 정부 시행령(Decree 03/2023/ND-CP)이 시행되며 NCC가 공식 출범했다. NCC의 주요 업무는 경쟁법 주무부서로서의 경쟁법 관련 업무 전반, 경제력 집중 행위(기업결합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경제력 집중 신고 심사 및 승인, 시장 경쟁 방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사, 소비자 이익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가 관리의 편의성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장벽

비자 발급 및 노동허가 발급 관련 제도 개선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허가증(Work Permit)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지방성 · 시 노동보훈사회국(공단관리사무소에 위임 가능)에서 발급하는 증서이다. 노동허가증이 없거나 노동 허가 면제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에 의해 강제 출국 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지속 근무 및 체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 면제 승인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시행 이후 많은 외국기

업은 지역마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 인접 범위 및 증빙서류의 구체화, 명확화를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2023년 9월 18일 '시행령 70/2023/ND-CP)'를 발표하며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요건이 구체화 (특히, 운영책임자, 관리자) 되었고, '요건 충족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제시하며 외국인 노동 허가 발급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전문가" 인정요건 완화 (대학 전공과 노동 허가 신청 직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② "운영책임자"의 정의 구체화 (운영책임자를 기존의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장'에서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한 분야를 직접 총괄하고 운영하며 본사의 지시를 받는 자'로 확대) ③ "전문가, 기술자, 운영책임자, 관리자"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증빙서류로 학위증 외 졸업증명서와 같은 인증 서류를 포함, 기 발급받았던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 면제 대상 확인서도 근무 경력 증빙으로 인정) 이다.

개정 노동법 제154조와 시행령(152/2020/ND-CP) 제7조는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최소 10영업일 전에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해당 지역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노동 허가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다한 국영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건이나 의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스리랑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수입정책상의 장벽

스리랑카는 1978년 들어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입허가제, 수입쿼터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 오다, 1994년부터는 수입 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선별적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래 스리랑카 국내 생산을 적극 장려 중이며, 2023년 10월 IMF의 권고에 따른 '수입 제한 전면 해지' 공표 이후에도 한편으로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입 관련 무역 조치는 관세, 수입허가, 부과금(additional charges and taxes)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없고 반덤핑, 상계관세는 2020년 12월부터 입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입 제한 품목은 Sri Lanka Department of Imports and Exports Control에서 상시 확인해야 하며, 새로 마련된 반덤핑, 상계관세는 차후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Sri Lanka Department of Commerce 법무팀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4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경제자유도는 글로벌 순위 149위, 평가점수 49.2점으로 전년대비 3.0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0개 국가들 중에서는 34위이다.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하여 보면 네팔(52.1점), 파키스탄(49.5점), 인도(52.9점), 몰디브(47.8점) 등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재정 관리 강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향후 동 지수가 상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장벽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수입 관세율 폭은 0%, 15%, 20%,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0%, 중간재 15%, 완제품은 20% 적용 폭에 해당되는데, 만약 어떤 제품이 종가세율과 특별세율 모두에 해당된다면, 이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CESS(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은 일반적으로 5~45%, PAL(항만세)은 0~10%, VAT(부가가치세)는 18% 비율로 부과되며, SCL(특별상품부담금)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는 별도로 Excise Tax(내국소비세)가 일반적으로 300%가 부과되는데 그 범위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농업 진흥 정책으로 농업 분야의 수입 관세는 비료, 기계류의 경우 면제이며(0%), 산업용 중간재의 경우 관세율은 15~20%이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비필수재에 해당하는 사치품과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에는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가 부과되는데 이때의 CESS 관세율은 50%, 70%, 165% 구간이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25% CESS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는 1976년 협정이 발효된 이래 3차례 상품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했고,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 타결에 합의, 2017년 1월 최종 마무리되었다. APTA 양허품목은 기존 4,270개에서 1만 677개로 늘어나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2019년에 제5라운드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최종 협상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는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T),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항공항만세(PAL),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 등의 다양한 수입부과금이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CIF 가격 대비 100%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VAT), 물품세(Excise)는 수입품과 내수품에 모두 부과되고,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 항공항만세(PAL), 항만처리비(Port Handling Charge), 특별품목세(Special Commodity Levy)는 수입품에 대해 품목 단위세율(unit rate)에 따라 부가된다.

부가가치세는 2002년에 도입되었는데, 스리랑카 현안인 정부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18%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부가가치세 예외 품목 조항도 폐지하였고, 2019년부터 국가재건세는 폐지되었다.

항공항만세(PAL)는 2023년 1월부터, 「Ports and Airports Development Levy Act No. 18 of 2011)의 Section 3을 수정하여 일반 수입품에는 5%, 특별 선정 품목에는 7.5%~10%라는 2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은 자국 수출진흥을 위해서 2004년부터 부과되었는데, 담배, 석유제품, 탄산수, 주류, 맥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약 637개의 품목들과 187개의 HS CODE에 부과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스리랑카는 2016년 1월 통관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을 시행하고 있어, 모든 수출입자들은 단일창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 수출입 과정상의 많은 장벽이 줄어들고, 통관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여지도 감소되고 있다.

수입자는 세무서(Inland Revenue)에 등록하여 납세자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확보해야 하고, 관세신고서(CUSDEC)를 작성하여 인보이스, B/L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통관자료자동시스템(ASYCUDA)을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모든 이행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스리랑카 정부의 발표 따르면 모든 서류가 구비될 경우 화물 통관이 평균 4시간 내로 가능하며, 약 80%의 화물이 당일내로 통관절차가 완료된다고 한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 기업들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컨테이너가 산업단지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하여 생산에 투입시킬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공장까지 곧바로 들여오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의 입회하에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으로 인해 아무리 통관절차가 전자화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에 따른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 규정

스리랑카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어, 스리랑카와의 교역 시에는 해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일반적으로 HS코드 4자리 혹은 6자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대상국에 따라 대략 30~60% 정도를 차지한다. 원산지 판정 시 누적(accumulation) 원칙이 다양한 무역협정에서 허용된다.

다양한 무역협정상의 특혜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각 개별 협정별로 제출해야 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상공부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고, 중국, 인도,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스리랑카는 국가안보, 안전, 환경, 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령, 폭발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난감 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그리고 외설적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된다.

최근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 당해 4월부터 시작된 비필수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 9일 부로 수입 제한이 전면 해지되어 자동차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23년 10월

관보(「Gazette No. 2353/16 of 09 October 2023」)에 공개되어 있으며, 수입 규제 품목 리스트는 수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을 통해 수출 전 확인해야 한다.

스리랑카의 수입허가(license)는 「수입수출통제법(Imports and Exports Control Act No. 1 of 1969)」에 의해 규제되며, 환경, 공공안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고, 일부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양적(quantitative) 혹은 가치(value-based) 기준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없다.

수입허가는 선착순 원칙에 의거, 일주일 단위로 시행되며, 보통 수입하기 1개월 전에 부여된다. 의약품 등 1년 수입허가(block license)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과거 수입실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현지에 투자하는 경우 재수출에 한하여 수입허가가 부여되기도 한다.

구 분	(사전 허가가 필요한) 주요 대상 품목
의약품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Indigenous Medicine, Surgical Sutures
차 량	Special Purpose Vehicle, Hearses, Engines, Body Shells, Cabin, Motor Cycles, Aircraft Parts & Accessories 등
화학품	Petroleum Products & Lubricants, Insecticides & Pesticides Substances, Radio Active Materials, Alcohol & Spirits 등
통신 및 전자기기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 Cellular Phones, Computers, Washing Machines, Remote Controlled Toys, Balloons 등
기타	Tea, Explosives, Timber, Sports Goods, Used Furniture, Plastic Packaging Items, Animals & Animal Products, Sludge Oil 등

자료: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반덤핑 및 상계관세

스리랑카는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가 없었다. 다만 인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덤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8년에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한 입법을 요청하였고,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부터 그 효력을 발효하고 있다 (담당부처: Department of Commerce).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관련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2024년 5월 관보 특보 제2384/35호에 따라 스리랑카 표준원은 수입품목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며 수입업자는 지정된 품목군의 경우 스리랑카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2024년의 수입표준및품질통제규정(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61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 제품은 Category 1~6으로 분류되고, 스리랑카 표준원에서 인증하는 실험실이나 수출국의 표준원에서 발행하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 공장이 스리랑카 표준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국 제조 공장에서 발행한 품질 보증서(Quality Certificate)를 제출하기도 하며 이는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스킨케어 화장품, 샴푸, 오드콜로뉴(향수의 일종)도 추가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스리랑카는 천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연동한 방법으로 환경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환경보호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하며, 동 법은 관련 산업을 A, B, C, D의 4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센스(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선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품목별 장벽

스리랑카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2020년 3월 스리랑카에서도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8주간 국가 전체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거의 모든 산업 활동이 중단되고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서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 절하도 계속되자 2020년 4월 16일부터 비필수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규제 및 외화 송금 제한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제한 범위에 비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제재 범위가 완화되었으며, 현재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앞에서 언급한

2023년 10월 관보(「Gazette No. 2353/16 of 9 October 2023」)에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제한 품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2017년 11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2044/41 of 9 November 2017」)에 공개되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

스리랑카 정부조달 체계는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상품 및 서비스, 용역, 공공투자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는 전체 GDP의 약 19.4%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2003년부터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조달을 경제정책 이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한금액(threshold) 및 상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13개의 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용역(Works), 서비스(services), 물품공급(supplies)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조달되는데, 긴급구매 등 특정상황에서는 예외적인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재무부가 정부조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며,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달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고, 분산된 정부조달 체계 운영을 위해 재무부에서 지명하는 기술평가위원회(TECs), 각료급 조달위원회(PCs)을 운영하고 있다.

분산된 체계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6년에 만들어진 조달가이드라인및매뉴얼(Procurement Guidelines and the Procurement Manual)을 준수해야 된다.

입찰공고(call for tenders)는 반드시 관보에 1회 이상 게재되어야 하며,

현지신문에 요약형태로 공표되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주체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고해야 한다.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특별한 제약은 없다.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및 국영기업도 입찰을 통해 소요물품 및 기자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선진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현지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 입찰 문의방식이 유선이 아닌, 팩스와 이메일로만 제한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조달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금전가치(value for money)'를 최대화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가격 이외에도 효율성, 신뢰성 등의 기술적인 요인, 완성 및 배달까지 소요되는 시간, AS 이용가능성,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게 되어, 조달절차에 있어 약간의 재량(discretion)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지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역량이나 고위관리의 영향력에 의해 낙찰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이 다소 떨어지기도 한다.

2010년에는 전자입찰 시스템(e-procurement)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일반 공고를 올리는 등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다가, 2017년부터는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자정부조달(E-GP)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였다. 2018년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98%에 달하는 페이퍼 방식의 기존 정부조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공식 전자정부조달 사이트[28]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는 19차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조달위원회(National Procurement Commission)를 설립했다.

28) https://www.promise.lk/

지식재산권 보호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국제 지적재산권보호 협약 체약국으로서, 지재권 관련 규정으로는 2022년의 「지재권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mendment) Act No. 8 of 2022)」과 2006년의 「지재권규정(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No. 1 of 2006)」이 있다.

식물다양성(plant varieties) 관련 규정은 TRIPS의 권고대로 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입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식물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고 식물의 물리적 보존을 위한 규정만 제시한다는 점에서 스리랑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가진 한계를 볼 수 있다.

WIPO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실연, 음반조약(WPPT), WIPO저작권조약(WCT), 정부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스리랑카내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8년에 발간된 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국가별 소프트웨어 관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소프트웨어 해적판 비율은 2011년 84%에서 2017년 77%로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 56%, 파키스탄 83%, 방글라데시 84%이고, 한국은 32%, 미국은 15%이다.

투자 장벽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장벽을 두기보다는 「헌법」 157조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Law No. 4 of 1978, 일명 BOI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과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헌법」 157조와 「투자법」에 의거, 투자보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된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있다. 또한 관계법규 및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자보장 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30개국이 있고, 이중과세방지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46개국이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자금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5백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스리랑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조세감면과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청과 상담 후 맞춤형 인센티브 협의도 가능하다. 2021년 4월 정부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방식을 소개하였고, 2025년 1월 투자청은 내외국인 투자에 대한 행정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이면에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등 투자제한조치도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데, 외국기업이 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양도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외국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 단,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지분 50% 이상의 법인이면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구매가 아닌 임대는 가능하며, 2018년부터 층수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가 가능해졌다.

한편 스리랑카의 제조업 최소투자금액은 2024년 스리랑카 투자청 가이드북에 따르면, 비전통재 수출품 생산기업의 경우 5십만 달러이고, 내수시장용 제품생산 또는 판매기업의 경우 5백만 달러이다. 「투자법」 17조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3백만 달러인데, 5백만 달러 이상 투자 금액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CESS, PAL 등의 수입 관세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자청(BOI)과의 투자계약서상 주요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다 보니,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자,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세관의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면서, 계약서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의 수입 시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경쟁정책

스리랑카에는 경쟁 관련 사항을 총괄 규정하는 법규는 없지만 「소비자법(The Consumer Affairs Authority Act No. 9 of 2003)」으로 불공정 경쟁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 경쟁적인 관행에 대하여 경쟁정책, 가격규제, 소비자보호 관련된 사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나 유통망 독점 등에 따른 폐단은 별무하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일정기간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별 목적이기보다는 투자유치 차원의 조치이다.

기타 장벽

현지기업의 외환자금 보유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다보니, 대금지불방식으로서 T/T 방식은 선별적으로 이용되며, 주로 L/C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최근 대세는 T/T 방식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L/C 거래에 따른 행정상의 실무적인 애로도 다소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비교적 우수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투자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노동법에 대한 미숙으로 노무관리가 오히려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리랑카 노동부문의 주요 관심사는 구조조정 관점에서 노동자 해고기준 완화, 정리해고시 보상 수준의 합리적 조정, 노동쟁의 과정 합리화, 노조 구성요건 강화,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율화 법제화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해 해고되더라도 노동법원(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해고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시 동료들 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 및 소송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도 있어 신축적인 노무관리가 쉽지는 않다.

특히 적법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징계사유(예: 비행, 사기, 사규 준수거부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적법절차에 맞춰 징계를 하고 시말서나 경고서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향후 법적 노무이슈에 대비할 수 있다. 해고시에도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 1차경고(Warning) → 2차경고(Show Cause) → 내부조사(Domestic Inquiry) → 최종징계(Final Action)의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

과거 몇몇 한국 업체들의 무책임한 금융 행위로 인해 스리랑카 은행가에서 한국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에 대한 일반 은행들의 대우는 적극적이지 않고, 담보가 없는 금융대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싱가포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경제 개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동,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동남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는 지난 2019년 미·중 무역갈등,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0.7%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경제 봉쇄조치로 실물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에 따라 -5.4%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1년 +9.7%, 2022년 +3.8%, 2023년 +1.1%를 기록하며 경제반등을 이루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2024년 11월 22일 기준 2024년 +3.5%, 2025년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은 187.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으며 수입은 111.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의 수출대상국 7위, 수입대상국 13위이며, 한국은 싱가포르의 수출대상국 6위이자, 수입대상국 5위로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과 총 27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품목 중 아래와 같은 8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8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1	Stout or porter. not exceeding 5.3% vol	S$16.00/ litre of alcohol	S$60.00 / litre of alcohol
22030019	Stout or porter. exceeding 5.3% vol		
22030091	Other beer including ale. not exceeding 5.3% vol		
22030099	Other beer including ale. exceeding 5.3% vo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litre of alcohol	S$88.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2022년 10월 기준)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 4개 품목군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29]

수입부과금

수입 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 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세율은

29) 부과대상이 되는 세부 리스트 및 각 품목별 세율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1994년 4월 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1일 기준 9%의 GST를 부과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는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NTP: Networked Trade Platform)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30)]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기준, 세 번 변경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 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Goods for Import)으로 규정하고 있다.

30) 품목별 FTA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 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품목	관할기관
1	껌(HSA승인 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Singapore Customs
2	총 모양의 라이터	Arms & Explosives Division, General Licensing Division, Police Licensing & Regulatory Department, Singapore Police Force
3	폭죽	Arms & Explosives Division, General Licensing Division, Police Licensing & Regulatory Department, Singapore Police Force
4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예: 가공/비가공/파우더 형태의 코뿔소 뿔)	National Parks Board
5	전기통신장비 (주사 수신기, 군용 통신 장치, 전화 음성 변환 장치, 무선 통신 장치(핸드폰 제외), 무선 통신 전파 방해 장치, 음란 출판물·소프트웨어·비디오테이프·디스크, 반국가적 선전물)	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6	담배 (씹는 담배, 담배 유사품(예: 전자담배) 및 부품, 무연담배, 용해성 담배/니코틴, 인체에 주입해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물질, 코담배, 경구용 담배, 구르카)	Tobacco Regulation Branch, Health Sciences Authority
7	규제약품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2024년 12월 기준)

또한 아래 제품들은 수입규제 품목(Controlled Goods for Import)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Competent Authorities, CA)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	관할기관
1	동물, 조류 등과 그의 부산물 멸종 위기 동식물 관상용 물고기 식물	National Parks Board
2	물고기와 그 외 수산물 과일과 채소류 고기와 고기제품	Singapore Food Agency

	품목	관할기관
3	무기& 폭약 방탄조끼를 포함한 보호용 의복 제품 장난감 총기류, 창, 검 등	Licensing Division Singapore Police Force
4	CD-ROM 과 비디오게임 필름/비디오테이프/레이저 디스크 출판물(신문, 서적, 잡지)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카트리지/카세트/CD 전기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5	약물 조제약품 독극물	Health Sciences Authority
6	위해물	Singapore Customs
7	전리방사선(IR) 기계장치 및 방사선 물질 비전리 방사선 (근적외선) 기반 의료기기	National Environment Agency

자료원: 싱가포르 이민 및 출입국 관리청(2024년 12월 기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Enterprise Singapore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 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33개 품목군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Enterprise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포르 식품청(SFA)[31]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싱가포르 식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및 구제역 청정국가(또는 지역)로 지정된 곳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어서 쇠고기 수입이 현재는 금지되어 있다.

식품청에서 발표한 '싱가포르로 생육, 가공육 및 가공란 수출 가능 국가 리스트(List of countries approved to export raw and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eggs to Singapore)'에 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육류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승인 현황
소고기	미승인
양고기	미승인
돼지고기	통조림 형태의 가공육에 한해 승인
가금류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계란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개구리다리	미승인

자료원: 싱가포르 식품청(2024년 12월 기준)

31)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와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담당한다.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공기, 수질, 소음, 오염 및 위험물질 규제 관련 법률을 1999년 1월 폐기하고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1) 계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향후 5년간 탄소 배출량 1톤당 S$5의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탄소세는 향후 2024년과 2025년에 S$25, 2026년과 2027년에 S$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 후 2030년까지 배출량 톤당 S$50~S$80 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품목별 장벽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을 관리, 규제하고 있다.[32)]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년 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32)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무역정보포탈 사이트(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을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예상 금액 최대 6천 싱가포르 달러)의 경우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견적서 입찰(6천~9만 싱가포르달러)이나 입찰(9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 건은 정부조달 포탈(Gebiz)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도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구분	기준	구매방식
소액구매	≤S$6,000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
Quotations	S$6,000< ≤S$90,000	구매건을 Gebiz에 공지 Gebiz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Tenders	S$90,000	

자료원: Gebiz 홈페이지 (2024년 12월 기준)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년 2월 회원국 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집약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patent)의 경우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을 할 경우 20년간 보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심사가 불합리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상표법」에 의해 IPOS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나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 등과 그 출판물, 음반, 영화, TV 및 라디오 영상물, 케이블 방송물,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출판연도로부터 25년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물은 방송연도로부터 50년간,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은 저자사후 70년간, 음반, 영화는 발매 또는 상영연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2000년 11월 13일 발효된 「등록의장법(Registered Designs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최대 15년간 보호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999년 2월 15일 「IC디자인법(The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IC디자인 개발 후 5년 내에

상업화될 경우 10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15년간 보호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장벽

한·싱가포르 FTA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을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 간행, 초 · 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가능)를 하고 있다.

투자 장벽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된 투자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제10장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 의무부과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1) 제조업

6개 제조업종(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진출에 대해서는 「제조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2) 방송 서비스

싱가포르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신문 등은 외국 기업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싱가포르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개인 소유지분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제도적으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지분소유도 가능), 사실상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유일의 방송사인 Media-Corp사의 지분중 80%는 테마섹이 소유하고 있다.

(3) 법률 서비스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하거나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만 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합작의 경우 단순합작이냐, 공식제휴냐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합작(Joint ventures)의 경우, 은행, 금융, 기업업무 등과 관련된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찰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며, 소송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제휴(Formal alliance)의 경우, 일국 또는 하나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싱가포르 법률과 관련된 법적의견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싱가포르 변호인만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변호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중재(arbitration)인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회장 및 이사회 3분의 2는 싱가포르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 전문가(Land surveyor)이어야 한다. 외국회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현지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건축사여야 하고 유효한 개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개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회 또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에 유효한 개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회계 서비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은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회계사무소와 회계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2/3이상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회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투표권의 2/3이상을 싱가포르 공인회계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 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비재무적 활동 참여 금지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은행업무가 가능한 Wholesale bank, △금융회사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Finance Company, △ Merchant banks로 구분되어 있다.

(7)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GLCs: government-linked companies)에 대해 지분제한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PSA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구분 없이 개인소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PSA와 Singapore Airlines는 5%,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은 15%, 에너지 회사인 Singapore Power, SP Power Grid, SP Services, 그리고 Power Gas는 10%의 개인소유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공히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은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cra.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층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공터 및 토지부 주택(landed property) 매입시에는 법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가기준은 영주권 유무,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Restricted Property)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그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내고 3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세 정책을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 회사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단일 세율로 20%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18%로 인하되었고 2010년부터는 17%로 인하되었다.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1981년 체결된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2019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상호 서명하고, 현재 양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 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현지 금융 조달상의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 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없다.

경쟁정책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 별도의 독과점제한법을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2004년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월에는 정부조직으로 경쟁 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를 설립하여 경쟁정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2018년 4월,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까지 영역을 넓혀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로 개편되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담합, 입찰공모, 시장분리 등 경쟁을 제한, 금지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둘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싱가포르에 단기로 방문하는 여행객은 1년간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12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장기거주를 생각한다면 싱가포르에서 정식으로 면허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싱가포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Basic Theory Test)을 거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대사관에서 한국면허증을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편리하다.

2019년 9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 정보가 담긴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발급 즉시 싱가포르를 포함한 30개국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에서 한글 및 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영문 면허증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2개월 이상 거주 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이다. 현재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 포함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싱가포르의 금융기관들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통화청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으로서 싱가포르 화폐 및 외환의 흐름을 관리한다.

2024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207개의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개의 현지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는 모두 외국은행이다. 외국은행 중 Full Bank는 20개이며, Wholesale Bank는 98개, Merchant Bank 는 22개 등이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인 한국계 은행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 총 5개가 있다.

싱가포르는 이 밖에도 종합금융회사, 보험 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또한 싱가포르 부동산투자신탁(REIRs) 시장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뉴욕 런던 도쿄와 함께 세계 4대 외환거래소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장외 파생 금융상품 거래 센터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발달해 있는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비교적 자금조달 및 외환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금융 서비스

아시아 대표적인 금융 허브답게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릴 정도로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수준은 선진화 되어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가 강하고 금융규제가 많지 않아,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조세 회피처 중 하나라는 국제사회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과 연관된 자금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조세정보 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는 주요 금융정보를, 2019년부터는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등 더 자세한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기로 했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9%까지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하였으며 현재까지 17%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의 늘어나는 사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매년 다르다.

2016년에 법인세의 50%(최대 S$20,000), 2017년에는 법인세의 50%(최대 S$25,000)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2018년에는 40%(최대 S$15,000), 2019년에는 20%(최대 S$10,000), 2020년에는 25%(최대 S$15,000)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한편, 2021년 기준 해당 혜택은 종료되었다.

디지털무역 장벽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국외이전 제한

Credit Bureau Act 제2조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신용보고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Credit Bureau 연합회(Credit Bureau Singapore)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싱가포르 국내 회원사에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분야 정보처리시스템 국내 설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PDPA)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영토 밖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PDPA 가이드라인(Advisory Guidelines on Key Concepts in the PDPA)을 통해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국내 설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의무기록도 원칙적으로 해외 이전이 금지되지만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인 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계속 수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세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7월 모디정부 2기 이후 자립 인도(Atmanihrbar Bharat) 정책 하에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인도의 평균 실행관세율(MFN)은 2023년 기준 17.0%다. 2019년 평균 실행관세율인 17.6%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인도에서 관세는 여전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혜세율(Preferential rate)은 MFN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 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례로 인도는 아세안(ASEAN)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를 적용시키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 19건의 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미국, 영국 FTA 등 21건에 대해서는 협상 중에 있다. 특히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이후 인도의 對한국 평균 실행 관세율이 2009년 9.9%에서 2016년 3.3%로 인하되었고,

2023년 기준 한-인도 CEPA 양허품목(전체품목의 85%) 중 약 71.5%에 대하여 0%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를 부과한다. 2017년 6월 30일까지는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를 부과해왔으나, 7월 1일부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부가관세 및 기타 진입세를 통합부가가치세로 대체하였다.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는 기존에 중앙정부, 주 정부별로 난립해 있던 수 십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Central GST), SGST(State GST), IGST (Integrated 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 간소화한 것이다. 통합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인도로 수입되는 상품은 동일 상품에 해당하는 인도 품목의 세율을 통합부가가치세(IGST)로 적용받아 최종 세율이 결정되게 된다.

전형적인 공산품 기본관세는 20%이며, 사회보장세(SWS) 10%, 통합부가가치세(0%-28%)가 적용되는데, 화장품의 경우, 기본관세(BCD) 20%, 사회보장세(SWS) 10%, 통합부가가치세(IGST) BCD+SWS의 18%가 합해지면, 약 수입금액의 대략 44% 세금이 부과된다.

인도의 관세 항목

구분	관세항목	세율(%)
(A)	상품가격(CIF 루피화 기준, Assessable Value)	-
(B)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20.0
(EC)	사회보장 가산세(Social welfare charge)	10.0
(C)	부가가치세 부과전 총가격(Sub-Total for Calculating IGST) (A+B+SWC)	-
(D)	부가가치세(IGST 'C')	18.0

구분	관세항목	세율(%)
(F)	특정목적세(Compensation Cess 'D')	0
(J)	총관세액(Total Customs Duty)	-

자료: KOTRA, https://news.kotra.or.kr

또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라 품목마다 통합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영세율, 5%, 12%, 18%, 28%의 5개 기본 티어(Tier)가 있으며, 주류와 담배 등의 경우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통합부가가치세의 품목별 적용세율은 점차 수정 및 보완되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2024년 7월, 연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화학, 플라스틱, 통신장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모바일 기기 및 부품, 핵심 광물, 태양 에너지, 의약품 등에 대하여 관세가 인하하여, 주요 산업의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인도의 2024년 관세인상 주요 품목

구분	품목	기본관세(%)	
		기존	변경
화학	질산암모늄	7.5%	10%
플라스틱	PVC 플렉스 배너	10%	25%
통신장비	통신장비용 PCBA	10%	15%

인도의 2024년 관세인하 주요 품목

구분	품목	기본관세(%)	
		기존	변경
스마트폰	스마트폰	20%	15%
	스마트폰 충전기		
	스마트폰 용 조립된 인쇄회로기판		
금속	페로-니켈	2.50%	0%
	철의 스크랩	0%	0%
	정제되지 않은 구리 중 브리스터 동	5%	0%
	구리의 스크랩	2.50%	2.5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CRGO 스틸 제조용	15%	0%

구분	품목	기본관세(%)	
		기존	변경
주요 광물	안티몬,베릴륨,비스무트,코발트,구리,갈륨,게르마늄,하프늄,인듐,리튬,몰리브덴,니오븀,니켈,포타쉬, REE,레늄,스트론튬,탄탈륨,델루륨	-	0%
	흑연,실리콘쿼츠, 이산화규소	-	2.50%
의료기기	엑스선 튜브 (9022.1420, 9022.1490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계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15%	5%/ 7.5%/ 10%
	신틸레이터 등 평면 패널 검출기 (9022.1420,9022.1490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계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암 치료제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오시머티닙, 더발루맙	10%	0%
신재생 에너지 자본재	태양광 전지 혹은 태양광 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과 그 부분품	7.5%	0%

통관절차상의 장벽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이 소요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인도정부는 최근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EO)제도 도입, 2017년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시스템 도입, SWIFT(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도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DPD 시스템은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SWIFT는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의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6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 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20년 4월에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 구축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전면 온라인화를 시행하고, 익명(Faceless), 비대면(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을 2020년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는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의 입항 전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상 및 내륙을 통한 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까지, 항공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당일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한다.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관세당국이 공인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증업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품 및 정보의 안전을 강화, 테러예방, 위험물품 등의 거래를 차단하고, AEO 인증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양자 관세당국간 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인도 관세당국간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상호인정 통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도 수입검사 비율을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추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과 AEO에 대한 MRA를 체결하고 있어 인도 수입검사 비율이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춰져 연간 약 26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에는 자격요건이 가장 간소화되어있는 AEO T1 등급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였는데 2021년 7월7일부터 T2 및 T3까지 온라인 서류제출 및 인증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에 비해 절차적으로 편의성을 갖추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무역협정에서

체약국과 합의하여 양허된 품목에 대하여 정해진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인도는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 무역적자 심화 등이 인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인도는 2020년 2월 연방정부예산안 발표에서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예고하였다. 「Finance Act, 2020 제정을 통해 2020년 4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원산지 관리 조항)를 신설하고, '무역협정에 관한 세관 원산지관리 규정(CAROTAR 2020)'을 고시하여 9월 21일부터 FTA 특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법률에 근거해 수입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 FTA 체결국發 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외 원산지 관련 추가서류를 보유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관련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도 세관이 수출국을 상대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담보 해제 지연과 관련 행정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관세 및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인도 관세청 산하 관세특별조사국(DRI: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중심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한 소급적 관세 추징 및 한-인도 CEPA 활용 불가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DRI는 주로 모바일 및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하여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도록 규정한 HS 협약에 어긋나는 품목분류를 주장하여 관세 추징 시도 및 한-인도 CEPA 활용을 어렵게 하거나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관련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임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이며,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농산물, 화공품, 중고제품, 무기류 등이다. 2024년 11월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563개, 수입금지 118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2017년 7월 1일 통합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산 금의 대인도 수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12.5%의 상계관세를 적용받던 동 품목의 세율이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3%로 적용됨에 따라, 관세 비용 부담이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CEPA 및 FTA를 체결한 국가(기본관세율 0% 적용을 받는 국가)들로부터의 금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2017년 7월 1일에서 8월 3일 기간 동안 3.38억 달러에 이르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한국산 금이 인도에 유입되었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7년 8월 25일자 성명을 통해 인도 DGFT의 허가를 받은 수입상만이 한국산 금, 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인도 DGFT는 2020년 6월 12일 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30일 컬러TV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로 인해 타이어 및 컬러TV를 인도에 수입하기 위해서 DGFT 및 주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에는 일부 에어컨 제품을 비필수재로 간주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인도의 중고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 첸나이항, 콜카타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17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9건을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30건, 2022년 32건으로 신규 조사 개시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전자전기 등 인도의 주력산업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TR)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건수를 포함, 전체 22건으로, 반덤핑 건 19건(부과조치 중 15건, 조사 중 4건), 세이프가드 3건(부과조치 중 1건, 조사중 2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 10건, 철강·금속 2건, 전자전기 2건, 플라스틱·고무 6건, 기계 1건, 기타 1건이 해당된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고려하여 대외무역총국(DGTR)의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등의 부과권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미부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제도 담당기관은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 Standards), 의약품표준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식품안전표준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 등이 있다. BIS는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표준을 정하고 있으며, 강제등록제도의 대상물품은 2024년 10월 기준 736개(시행예정포함)다. 의무인증 품목에는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

스토브, 차량용 액세서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제품, 변압기 등이 포함되어있고, 2022년 이후에는 철강·화학 제품 등이 추가되었다.

CDSCO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등록규제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 화장품의 수입시에도 동 인증이 필요하다. FSSAI는 식품 안전을 위해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제품인증은 BIS를 따르나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2개 이상의 제품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이전에 현지 로펌, 협력 수입상 등과 협의를 통해 어떤 종류의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품목별 규정 신설, 대상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BIS 인증을 위한 공장 실사 진행 불가 및 인증 절차 관련 지연 등의 문제로 인증 관련 조치가 인도 시장 진출의 진입장벽 및 비관세장벽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인도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식품의 포장 및 라벨링은「Food Safty and Standard Regulations,2011」의 적용을 받고, 소매포장된 소비재는 「Leagal Metrology Act, 2009」와 「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Rules, 2011」의 적용을 받는다.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The Environment(Protection) Act, 1986)을 기본으로 수질법(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74), 대기법(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81),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의 개별 환경 법규를 통한 환경관련 규제장치가 발전 및 강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디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10월 2일 내각에서 인도의 파리기후협약을 승인하였고, 현재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도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4년 및 2006년 환경영향평가공고를 기본으로 정부는 지속적

으로 그 내용을 개정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공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SEIAA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예: 광산업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 ~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인도 정부는 인도 수출품 세금환급 제도(RoDTEP: 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Duty Drawbac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인도는 2015년 기존 산업별, 품목별로 운영되던 'Focus Product Scheme',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he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entive Scrip'와 같은 다양한 수출 촉진 제도를 통합하여 수출 인센티브 제도(MEIS: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를 시행하였다. MEIS는 지정된 국가로 정해진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제조세(Exer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 제도는 불공정 경쟁으로 WTO에 제소된 후 패소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도는 RoDTEP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 제도에 따라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투입요소(원자재·부분품·연료·전기 등)에 부과된 간접세(지방세, 광업세, 농산물세, 부가가치세 등)를 환급한다. 2020년 1월부터 운영되어 왔던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앙·주정부세 환급제도(RoSCTL: Rebate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는 RoDTEP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료예정이었으나, 2021년 8월 정부가 섬유제품 수출자에 의해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수출목적 자본재제도(EPCG)는 인도 내 자본재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도 내 제조업자로부터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제조세(excise duty) 면제를 위해 일반 관세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하는 조건인 수출의무조건을 90%에서 75%로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입찰을 희망하는 부처는 인도 정부의 공공조달포털(Central Public Procurement Portal of Government of India, CPPP)에 입찰 건을 게재하며, 그 양이 많지 않은 경우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NIC 사이트도 CPPP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동 협정은 정부조달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입찰자의 경우, PAN/TAN 번호 기입이 필수적이기에, PAN/TAN 번호가 없는 국외 입찰자의 경우 임시번호(TEMPZ9999Z)를 입력하여 참여 가능하다.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를 촉구하고자, 정부 조달 시 현지 기업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개선하였다. 정부는 현지에서 50% 이상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기업을 Class 1, 20-50%는 Class 2, 20% 미만 현지에서 조달

하는 기업은 非현지 공급기업(non-local suppliers)으로 정의하여 Class 1, 2에 한해 정부 조달 프로젝트 시 우선권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非현지 공급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인도 정부의 국제 입찰건에 한해 Class 1, 2 기업과 함께 참여 가능하나, 단독 입찰 참여는 불가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는 WTO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법(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Amendment) Act, 2010), 상표및매매법(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규정(The Designs (Amendment) Rules, 2008), 상품의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카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는 TRIPS 이행을 위하여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함으로써 식품, 의약품 또는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 특허(Product Patents)를 허용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개정 특허법은 2005년 1월 이전에 신청된 의약품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되 보호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권이 부여된 시점에서 이미 동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적정한 수준의 로얄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두어왔다. 하지만 2016년 6월 인도정부는 방송, 사설 경비업, 소매유통분야의 FDI 제한을 전격 완화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19년 7~8월간 정부는 경기 부양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 100% FDI 허용, 단일 브랜드 소매업의 현지조달 규정 완화, 디지털 뉴스 미디어에 49%까지 외국인 자본출자 한도를 확대 등 FDI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며, 이중과세 협정 관련 현재 인도는 7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국별 적용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투자 장벽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었으나, 2017년 들어 FIPB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FDI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방,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개인경비서비스, 유통, 금융서비스 등 11개 산업부분의 외국인투자에 정부 승인을 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는 100% FDI를 허용하고 있다.

2021년 7월 인도는 일부 조건하에 석유 및 가스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100% 허용하고, 투자 제한이 있는 통신부문 중 일부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를 100% 허용하는 등 점차적으로 FDI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과 자사 플랫폼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4월 인도 상공부가 국가 단일화창구 시스템(National Window System, NWS)을 발표하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진행 중이다. 동 시스템은 2021년 9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중인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별로 필요한 허가 등을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될 때까지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8개 중앙 부처와 9개 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14개 부처 및 5개 주가 추가될 예정이다. 인도정부는 이러한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FDI 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산업부문 FDI 자동승인 상한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농업 및 축산업	100	자동
석유 및 천연가스	100	자동
건설(주거단지, 인프라 프로젝트)	100	자동
산업단지 내 투자	100	자동
인공위성	100	정부
통신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Cash&Carry 도매유통	100	자동
E-커머스 (BtoB)	100	자동
철도 인프라 (건설, 운영, 유지보수)	100	자동
방산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단일브랜드 유통업	100	자동
멀티브랜드 유통업	51	정부승인
제약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방송서비스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개인경비서비스	49	정부승인
공항(그린필드)	100	자동
공항(기존 프로젝트)	100	자동
방송컨텐츠	49	정부승인
출판(신문, 뉴스, 정기간행물)	26	정부승인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민간은행	74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보험	74	자동승인
증권인프라사, 연금	49	정부승인
전력거래	49	정부승인
공공은행	20	정부승인

주요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세부 내용

구분	부문	주요 내용
투자 금지	Nidhi Company	기금을 받아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전통 소매 금융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기타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담배	시가, 궐련(cheroot)를 포함한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복권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부동산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카지노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투자 제한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51%까지 정부 승인
	민간보안업체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방송	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정부승인
	방위산업	74%까지 자동승인
	보험	74%까지 자동 승인
	싱글 브랜드 소매유통	–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 로컬소싱 적용 기준 완화 (사업 시작 후 3년간 면제)
	연금	49%까지 정부승인
	의료	– (브라운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 정부 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인쇄매체	100% 정부승인 *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외국 잡지의 신문, 정기 간행물 및 인도 판 출판의 경우 정부 승인 26%
	전력거래	49%까지 정부승인
	제약	– (브라운 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시 정부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증권 인프라사	49%까지 정부승인

구분	부문	주요 내용
	통신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통신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100% 정부승인
	항공운송 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정기 항공운송 서비스, 지역 항공운송 서비스로, 비정기 및 민간항공 부문의 기타 서비스는 100% 자동 승인

자료 : 각 정부 홈페이지 종합

또한 인도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과 수출조건부 인센티브(EOU)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FDI 인센티브는 진출지역의 지방정부로부터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정부는 격년 주기로 지역 투자 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도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구매 조달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도 30% 현지 제품을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나, 2019년 8월 인도 정부는 외국인 자본지분이 51% 이상인 회사는 현지조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지 조달 구매 제도를 완화시켰다.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 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주정부 등 간에 체결

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정보기술부의 경우, 2013년 6월 12일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카드 등 18개 일반전자제품 및 심카드 등 24개 통신기기제품에 대해 정부조달시 자국내 제조 전자제품에 대한 특혜부여지침(Preferencial Market Access)을 고시한 바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송금액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제한)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득(소득-소득세) 범위 내에서 연간 100,000~200,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세(16.99%)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유효 법인세율 약 49.44%로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한 배당세에 대해 한·인도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며,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는 별 제한이 없다.

(2) 본국 및 해외로 부터의 자금 차입 규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자금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ECB)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선, ECB는 자동승인부(Automatic Route)와 승인조건부(Approval Route)로 구분되고 있는데 자동승인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RB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차입자(borrower) 조건	– 법인기업(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 비정부기관 중 소액대출(micro-credit)에 관련된 NGO – 특별경제구역(SEZ)에 있는 기업 – 소액금융기관
대출자(lender) 조건	– 금융기관(은행, 수출신용기관, 수출입은행 등) –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 – 국제자금시장 – 해외 합작사 – 해외 주주: 해외 주주의 경우 아래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5백만 달러미만: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5백만 달러이상: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차입자금이 동 주주 보유 지분금액의 4배가 넘지 않아야 함
금액 및 만기 조건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최대 2억 달러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연간 최대 7억5천만 딜러 – 비정부기관 및 소액금융기관: 연간 천만 딜러 –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의 75%까지, 환노출의 75% 헤지 – 2천만 딜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함 – 2천만 딜러 이상 7억5천만 딜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 5년 이상이어야 함
금리 한도 (all-in-cost ceiling)	– 만기 3년~5년: 3.5% – 만기 5년 이상: 5%
자금사용처 조건	– 자본재 및 기술 수입 – 신규 프로젝트 수행 – 인프라 투자 – 합작 투자 및 자회사 투자 – 소액금융대출관련 ※ 자금 사용 불가 항목 – 금전 대여 또는 자본시장 투자 – 인도회사 인수 자금 – 부동산 투자 – 일반 기업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의 사용 – 기존 루피화 대출 상환
보증조건	– 은행, 비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보증신용장, 선적이행각서, 지급확약서 발행 금지
담보조건	– 담보제공은 차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야 함
중도상환 가능조건	– RBI 승인 없이 5억 달러까지 중도상환 가능
각종 절차 조건	– 해외 차입 전 차입자는 RBI로부터 Loan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함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은행입장)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콜금리기준 하루 변동폭 1~2%, 연간 최고 20~30%까지 오르는 경우 자주 발생) 은행 간 장기 차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은행간 차입을 통해 장기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입장) 기업의 해외차입(ECB)은 목적, 차입기관, 기간, 금리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목적이나 시설자금이라도 인도 루피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대금 결제 자체는 별 어려움 없다. 다만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므로 달러나 유로화를 통해 국제 자금을 결제한다. 선물환 시장 미발달로 스프레드(Spread) 변동폭이 큰 편이다. 수출이나 해외송금 입금되는 경우에는 외화구좌(EEFC)를 가질 수 있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중환율은 없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및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인도 루피 환율 불안이 야기 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과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 이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왔으며, 2011년 4월부터는 내국기업에게는 3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을 적용하였다가, 2019년 9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의 법인세를 22%로 인하, 신규 제조업체의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였다. 반면, 외국기업에게는 4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이 적용되어 해외투자자로부터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서 내국기업에는 순수한 의미의 인도기업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이지만 인도 회사법에 의해 설치된 기업도 포함된다.

외국기업에는 지사 또는 지점(Branch Office: 제조활동 이외의 영업활동 가능),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우리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진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보수집 및 업무연락 이외에는 영업활동이 불가능) 등 세 종류가 있다.

인도정부는 근로자 연금 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을 개정(2008년 11월 1일 시행)하여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작업장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월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월 500달러 전후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근로자 연금의 납부 면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2010년 10월 19일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협정 서명을 완료, 2011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연간 100억여 원(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적립기금(EPF)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영구 출국하거나 EPF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그간 적립한 연급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 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사회주의 전통과 인권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하고 규제적이다. 노동자 보호에 치중된 법제는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최근 출범한 모디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고용 증대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개별 고용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노동조합법(The Trade Unions Act, 1926), 산업분쟁법(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임금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최저임금법(The Minimum Wages Act, 1948), 출산혜택법(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계약노동법(The Contract Labour Act, 1970), 퇴직금지급법(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평등임금법(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 등 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중앙 노동법규들과 별개로 각 주의 노동 관련 법규 또한 함께 고용 문제에 적용된다. 반면 2019년 11월 인도 정부는 복잡했던 44개의 노동 연방법을 'Labour Code on Industrial Relations Bill 2019'로 개편하였다. 또한 2020년 9월 23일 2019년에 통과된 임금법(The Wage Code Bill, 2019)과 더불어 3건의 노동 관련 법이 네 개의 상위 법안으로 통합되었다. 동 개편된 노동법은 임금, 노사관계, 사회보장연금, 근로조건 등 4개 분야로 통합·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사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은 근고자 해고 및 감축 요건을 이전 1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사회보장법(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고 국가 사회 보장위원회(National

Social Security Board)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직업 안전, 보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법(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은 근로 환경에 관련한 다수의 법을 통합하고 수정하였다. 동 개정안은 2021년 4월부터 新법률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 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지사 등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재무부에 의견을 문의하고 재무부는 다시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는데 특히 통신 업종처럼 인도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경쟁정책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Competition(Amendment) Act, 2007, 2009)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의 이행상 충실성 제고

최근 한국-인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확대일로에 있는 바, 1994년 한국방문 인도인은 1만 1,294명, 인도방문 한국인은 5,818명 등 총 1만 7,112명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66,132명, 2021년 44,668명 등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3월 체결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으로 비자(사증)신청 서류의 간소화, 등록외국인에 대한 최단 체류기간의 명문화 등에 힘입어 인적교류의 꾸준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인프라의 부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등의 이유로 인도측의 협정이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체류기간)요건의 엄격화 및 절차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정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을 보고적 신고의 성질로 파악하고, 90일 이상 국내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되, 제출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하여 최초 등록은 절차적 이행만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고 있다. 다만, 이후 비자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이 체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비자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외국인등록갱신과 연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측(외국인등록사무소: FRRO/FRO)은 최초 외국인등록신청

접수시 사업체 소재여부 및 실적 등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는 등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나, 2018년 3월부터 E-FRRO를 시행하여 외국인등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외국인등록시 비자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체류기간을 1년씩만 허가하고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으나, 인도 정부는 최대 5년 체류 규정을 개정하여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하여는 최초 체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우리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투자자)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는 사업선 발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최초 2년간은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매출액이 한화 기준 1억6천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생비자, 연구비자, 사업비자 등을 소지하고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을 불허하고 출국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측은 외국인투자자의 비자연장 요건으로서 획일화된 매출액 기준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지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비자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운전면허 취득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주관기관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주정부 Transport Department(주정부산하의 운송국)이며,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종류로는 ①Motor Cycle ②Invalid Carriage(지체장애자용 차량) ③Light Motor Vehicle(8인승 미만) ④Transport Vehicle(8인승 이상 및 화물운송 차량) 등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객관식, 60점이상)을 거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운전연습학원에서 수강하고(증명서 지참) 기능 및 주행 시험을 합격하여야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를 인도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도정부는 별도 시험 없이 유효한 한국면허증에 대하여 인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주한인도대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인도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영문 번역 운전면허증, 거주지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2016년 11월 초 현재 46개의 외국계은행이 300개 이상 지점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푸네, 하이데라바드, 암다바드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년

4월 첸나이에, 2017년 구르가온과 뭄바이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뉴델리, KEB하나은행은 첸나이, 구르가온, KB국민은행은 구르가온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이 외에 NH농협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구르가온, 뉴델리, 뭄바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경우 구르가온 지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 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지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5년 10월 현재,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험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년 7월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는 완화 조치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11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2015년 8월 49%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2019년 7월 인도 정부는 경기부양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의 100% FDI를 허용하였다.

개선 실적

2008년 9월 미국 리만브러더스사 파산신청 이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과 관련된 반덤핑은 15건이며 3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에 대해서는 긴급 수입물량 제한조치를 시행중이며, 불순물 함량 2ppm을 초과하는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레진, 페로몰리브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인도는 미국에 이어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양국은 2018년 7월 정상 순방 계기로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의 정례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연례적 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 수입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1차 협력회의, 2019년 9월 2차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우리나라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한 이후 양국의 교역액이 2020년 168억 달러, 2021년 237억 달러, 2022년 278억 달러, 2023년 247억 달러 등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양국은 낮은 자유화율,

제한적 양허품목 및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에 대한 개정협상이 2016년 6월 이래 10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도 시장에서 화학, 철강 등 대인도 주력품목의 양허율이 확대된다면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디지털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경간 디지털무역이 급증하고, 각국이 디지털무역규범 정립에 집중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법(PDP: Personal Data Protection) 역시 각국 기업의 다양한 사업행위로부터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도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국경간 정보이전을 제한하는 이른바 데이터 현지화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인도정부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인도의 법률은 헌법, 정보 기술법, IT법(2008년)과 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와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 규칙(2011년) 등이 있다.

IT법에서는 기업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 중인 컴퓨터 리소스의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 이행 및 유지에 소홀하여 발생한 부당한 손실 또는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무 - IT Act 2008 43A.

where a body corporate, possessing, dealing or handling any sensitive personal data or information in a computer resource which it owns, controls or operates, is negligent in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thereby causes wrongful loss or wrongful gain to any person, such body corporate shall be liable to pay damages by ways of compensation to the person so affected.

또한 2017년 이후 인도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모든 시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 constitution 21.

Protection of life and personal liberty.—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his life or personal liberty except according to procedure established by law.

전자통신기술부는 관련 위원회를 2017년 7월 발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2018년 개인정보 보호 법안 초안을 수립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이를 발전시켜 IT 기업들에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을 상정하였다.

동 개인정보보호법(PDPB)에서는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를 정보 주체(Data principal)로, 해당 정보의 취급자는 정보 수탁자(Data fiduciary)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 수탁자가 일정 기준이 충족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개인화 데이터를 인도 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 사항 등을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없이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특징, 속성 또는 그러한 특징의 조합 또는 그러한 조합과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개인정보'의 정의 - PDPB 3.

"Personal data" means data about or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who is directly or indirectly identifiable, having regard to any characteristic, trait, attribute or any other feature of the identity of such natural person, or any combination of such features, or any combination of such features with any other information;

모든 정보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에 위치한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에 개인 정보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저장해야 하고 인도 내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서만 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국경간 정보이전 제한 – PDPB 40.

Restrictions on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1) Every data fiduciary shall ensure the storage, on a server or data centre located in India, of at least one serving copy of personal data to which this Act applies.

(2)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notify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s critical personal data that shall only be processed in a server or data centre located in India.

(3)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1), the Central Government may notify certain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s exempt from the requirement under subsection (1) on the grounds of necessity or strategic interests of the State.

(4) No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3) shall apply to sensitive personal data.

PDPB는 2019.12월 상정된 이래, 국회 공동조사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JPC)가 1년이 넘게 검토하였으며, 2021년 9월 중순 최종 검토를 끝낸 후 공동조사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JPC)가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2021년 10월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비개인 데이터(non-personal data)를 포함하는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면서, 동 법안의 이름을 Data Protection Bil로 수정하는 것 역시 고려 중이다.

또한 E-commerce 또는 OTT 서비스(Over The Top Service)를 통해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IT기업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및 정책의 저촉은 무역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OTT기업의 경우 인도 관련기업들의 단체인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가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을 발표하고 협회 내 감독 기구인 Digital Curated Content Complaint Council(DCCC)를 신규 발족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에 합의한 OTT 서비스 내 동영상이 협회의 콘텐츠 검열 결과 인도를 어떤 형태로든 모욕하거나 인도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 방영 불가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한·인도네시아 경제관계 현황

개관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래, 지난 50여년 동안 양국간 경제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수교 당시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액은 2022년 약 2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양국 경제협력은 2017년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경제·산업·교통·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8년 9월 정상회담에서 2022년까지 교역규모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20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상호 교역순위는 2019년 수준을 유지했고, 2021년 들어 코로나 19 안정에 따라 다시금 반등했다. 2022년에 접어들어 교역규모는 259억 달러까지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213억 달러의 교역을 달성했다.

교역 현황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에 30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0억 달러(수출 88억 달러, 수입 11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전 세계 보호주의 확대로 교역이 둔화되어 164억 달러(수출 76.5억 달러, 수입 88.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16% 감소한 139억 달러

(수출 63.1억 달러, 수입 76.0억 달러), 2021년에는 193억 달러(수출 85.5억 달러, 수입 107.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글로벌 교역세 회복에 따라 양국간 교역액은 259억 달러(수출 102.2억 달러, 수입 157.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전체 수준을 초과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양국간 교역액은 213억 달러(수출 91.1억 달러, 수입 121.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0.1%), 합성수지(6.2%), 반도체(4.8%), 자동차(3.6%)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0.7%), 천연가스(15.9%), 동광(10.7%), 신발(3.9%), TV(2.8%)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3위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며, 반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8위 수출상대국이자 제5위 수입상대국이다.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출	6,603 (△16.1)	8,404 (27.2)	8,833 (5.1)	7,650 (△13.4)	6,313 (△17.5)	8,550 (35.4)	10,216 (19.5)	9,142 (△10.5)
수 입	8,281 (△6.4)	9,571 (15.5)	11,161 (16.7)	8,820 (△21.0)	7,595 (△13.9)	10,725 (41.2)	15,735 (46.7)	12,146 (△22.8)
무역수지	△1,678	△1,167	△2,328	△1,170	△1,282	△2,175	△5,519	△3,004
총교역액	14,884	17,974	19,994	16,470	13,908	19,275	25,950	21,288

자료: 무역협회

투자 현황

1968~2023년 9월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181.7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ASEAN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 제조, IT, 서비스, 금융업이 주종을 이루는 추세이다. 최근 5개년(2019년~ 2023년

9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총 71.6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48.3%), 금융 및 보험업(35.9%), 도매·소매업(4.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4%) 등이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1962~2023년 기준 53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2025년에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의 신규·증액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근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는 2019년까지 5%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07%)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잦아들고 글로벌 교역 활성화에 따라 2021년 2분기 플러스 성장(7.07%)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2022년에 접어들어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활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5.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전년 대비 수출은 감소했지만, 내수 소비 회복으로 5.0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초기 루피아/달러 환율의 급등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으로 1만 4,000 초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2022년 7월 처음으로 1만 5,000을 넘어선 루피아/달러 환율은 현재 1만 5,000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인니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변동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유지하던 기준금리(BI 금리) 3.5%에서 인상을 거듭하여 2023년 12월에는 6.00%까지 상승하였다. 2024년 상반기 루피아/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6월 1만 6,000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4월 6.25%로 금리를 인상하였고, 이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환율은 1만 5,00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20	2021	2022	2023	비고
GDP	명목(억 달러)	10,594	11,863	13,186	13,710	
	1인당(달러)	3,960	4,400	4,850	4,942	
경제성장률(%)		-2.1	3.7	5.3	5.1	
실업률(%)		7.1	6.5	5.9	5.3	
물가상승률(%)		1.7	1.9	5.5	3.7	
중앙은행 기준금리(%)		3.5	3.5	5.25	6.0	
달러당 환율		14,582	14,308	14,850	15,237	연 평균 환율
GDP 대비 재정적자(%)		6.1	4.6	2.4	1.7	

자료: EIU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2020년 11월 노동·환경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을 공포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2021년 2월 45개 정부령과 4개 대통령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일자리 창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2014년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전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유도유노 전대통령 집권 후반부터 보여 온 보호주의적 경향[33]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2019년 10월에 출범한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3)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신광물법」 시행(2014년 1월, 2009년 제정된 「신광물법」의 시행령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07/2012)」이 '14.1.12.부터 전격 시행되어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물 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투자 제한 등이 주요 내용), △광범위한 무역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무역법」(2014년 2월) 및 「신산업법」 제정, △산업기준 인증의무 품목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보호주의 색채가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면서 통상, 천연자원 등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프라 확충, 산업고도화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산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2013~14년에 이어 2018년 3분기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외환확보를 위한 수입억제정책 등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화되었다. 루피아화 환율은 미국 연준의 연이은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국제유가 상승,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 발생,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 등으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약세인 1만 5,000Rp/$를 상회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정부는 2018년 들어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통화정책, 실물외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와 캠페인[34], 전방위적인 수입수요 감축방안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2018년 말부터 환율이 1만 4,000대로 안정되었으며, 2019년에도 루피아화 환율은 1만 3,000후반~1만 4.000초반대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공식 확진자 발생 후 1만 6,000대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일부 부침이 있지만 1만 4,000 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루피아/달러 환율은 2022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에는 1만 5,000선을 돌파한 뒤 2023년에는 그 중반대를 유지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첫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147개 소비재 수입에 부과하던 원천징수 소득세율(소득세법 제22조 : 재화수입 등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연말에 공제)을 인상('18.9.13일 발효)하였다. 통관시점에 관세 외에 추가 현금부담을 유발하고, 환급대상일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행으로 인해 우회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이며, 사치품(210개)은 기존 7.5%에서 10%로, 국산대체 가능 일반소비재(218개)는

34) 수출대금 국내은행 보관에 세제혜택 검토,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세 감면검토, 유력기업인의 대규모 환전 홍보, 경제단체 수출대금 국내유치 서약 등

2.5%에서 10%로, 기타 소비재(719개)는 2.5%에서 7.5%로 인상하는 재무부령 No.110/PMK.010/2018을 발표하였다.

둘째, 정부 관계자가 물건 쪼개기 통관에 따른 탈세만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직접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했으나, 전자상거래 면세범위를 당초 100달러에서 75달러로 축소하였다. 해당 면세 범위는 2020년 1월부로 3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셋째,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는 주요 발전사업이 수입수요를 유발한다고 보고, 금융약정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잠정 중단을 선언(2018년 9월 6일)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 인프라 계획(35GW 신설) 중 약 15.2GW(약 250억 달러)를 차지하는 물량이 당초 2019년 상업운전 개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한다. 화력발전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에 따라 PLN 기존 전력구매 계약건을 제외하고 더 이상 신규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넷째, 2018년 9월 1일자로 광산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와 철도, 선박 등의 교통수단에 BD20(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경유)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9년에 정부의 실험 과정을 거쳐 2020년에 B30(바이오디젤 30%를 혼합한 경유)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B40 관련 실험을 시행했고, 2024년부터 B40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Local Contents 상향 압력을 행사 중이다. 즉, 정부조달에 관한 TKDN규정(대통령령 No.16/2018)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총 금액의 40% 이상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카르타-수라바야 철도와 파팀반항구 개발 투자계획에 대한 재검토, 주요 발전사업에 대한 Local Contents 제고 요청이 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기기(4G스마트폰)의 TKDN에 이어 디지털송수신기(DTV)에 대한 TKDN 도입 초안을 발표(2018년 7월말)하였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분야도 TKDN 규정 새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코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언론

등에서 TKDN을 새로 도입하거나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만큼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4년 출범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조코위 정부의 정책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자원, 광물 기반의 산업고도화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프라보워 정부는 에너지 및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 또한 프라보워 정부가 선거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공약으로 2025년부터 단계별로 추진 예정이다.

투자 환경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다수의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정 개정에 의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다.

유도유노 전정부와 조코위 전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 특히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투구하였으며, 이는 프라보워 정부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다.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aster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onesia 2011~2025 : MP3EI)를 수립, 인도네시아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과거 조코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을 통한 물류(logistics) 개선, 2)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철도 건설, 3) 발전소, 산업단지와 연계된 24개의

복합항만 건설 및 확장, 4)자바 해안 고속도로 개발, 5) 35,000Mw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확충, 6) 통합적인 투자인허가 서비스 구축, 7) 석유 정제시설 건설, 8) 토지 획득 문제 해소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왔다.

투자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No.44/2016」을 발표했다.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알려진 해당 리스트는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145개 업종 중 95개 업종은 투자 개방을 유보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 펌프·압축기 등 50개 업종은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조건으로 개방하였으며, 투자지분, 특별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불포함된 업종은 여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었다.

해당 리스트는 2021년 2월 16일,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10호(「Perpres 10/2021」)에 따라 대폭 수정되었다. 2016년에 개정된 투자제한 목록은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다. 「Perpres 10/2021」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가 증가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0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투자 금지 분야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Tax Holiday (법인세 감면 정책)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을 마련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 17개에서 18개로, 사업분야는 기존 153개에서 169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5,000억 루피아(IDR) 미만의 투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 유치 확대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른 인도네시아 투자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44호, 2016년)	신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호, 2021년)
인센티브	구체적 명시 부족	유무형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제한구분	3개 (투자 금지,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5개 (투자 우선 개방,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기타, 투자금지)
투자금지업종	20개	6개
현지기업 협업 업종	145개	89개
투자지분제한업종	350개	46개
지분한도 초과 규정	지분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명시된 한도 내로 재조정 필요	초과분에 대한 조항 없음
최소투자금액 규정	2018년 투자조정청 제6호 규제 외 최소투자금액에 대해 명시되지 않음	최소 투자금액 100억 루피아 명시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100억 루피아 미만 가능)

더해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조정청(BKPM)을 투자부로 승격 조치하고 투자와 관련한 모든 행정 과정을 Online Single System으로 통합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9년 2월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2012년 3월 협상 개시) 협상 재개가 공식 선언되었고 11월에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2020년 12월 18일 정식 서명,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되어 2023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7억 명을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311억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6.6%가 증가한 456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을 달성했다. 2023년에는 기초금속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503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긍정적 요소

(1)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2004년부터 민선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경제성장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매년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6.5%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5.8%, 2014년에는 5.02%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고 2015년에 4.8%대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5.0%로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7년 5.1%, 2018년 5.2%, 2019년 5.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미중무역 분쟁의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및 내수 침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 및 주요 연구 기관에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2.1%)을 기록했지만 2021년 2분기 플러스 성장(7.07%)으로 반등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 접어들어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5.31%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2023년에는 견고한 내수를 바탕으로 5.05% 성장하였다.

(2) 풍부한 천연자원

인도네시아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가이다.

(3) 젊은 노동인구 풍부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4위의 인구(2억 7,869만 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 게다가 국민의 평균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으로 구성되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10월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면서, 정부 핵심조직인 해양조정부 업무에 투자 기능을 추가하고, 창조경제청을 관광·창의경제부로 승격하는 한편, 외교부의 경제외교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정책 시행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전 정부 차원의 규제 및 행정 간소화, 고용창출을 위한 옴니버스법 제정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조업 이니셔티브(Making Indonesia 4.0)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을 제정하여 투자, 노무, 세무 분야를 포함한 78개의 기존 법률을 일괄 개정 및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분야를 개방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며, 최저 임금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및 특별경제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5) 한류 바람이 가장 크게 불고 있는 시장

인도네시아는 한류 인기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도네시아 주요 OTT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한국산 콘텐츠이다. 더해서, 웹툰 시장과 애니메이션 시장도 한국산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 열풍은 단순 흥미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인들이 현지에 자체적으로 한류 마을을 조성해 한국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한국 KPOP 가수들과 협업한 제품은 조기에 매진되어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부정적 요소

(1) 자원가격 하락 및 환율 불안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의 고성장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자원 가격의 상승이 상당부분을 기여하였으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기침체 인한 글로벌 수요 감서에 따른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도네시아의 경기침체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특성상 루피화의 변동에 따른 환율 불안 요인도 존재한다. 2020년 코로나 19가 확산되며 14,000 루피아대의 환율은 16,000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6월 중순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폭증에 따라 상승세를 기록하던 환율은 폭증세가 잦아들며 안정을 찾았지만, 다시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현재 1만 5,000 중반까지 환율이 상승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대외무역은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2023년의 경우 수출이 11% 감소하였는데, 동기간 국제 석탄 가격과 팜유 가격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루피아가 달러대비 지속적으로 절하되었으며, 이는 수입 물가 상승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함께 15,5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높은 고용조정 부담 및 지속적 인건비 상승

근로계약 해지 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근속기간 및 해지 사유에 따라 중복 가산지급 등 고용에 대한 높은 유/무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의 큰 폭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도적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상승도 문제지만, 경력직 직원 급여 수준의 증가폭이 더욱 더 가파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력직 직원 급여는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한국인 수준의 역량과 업무를 기대하는 경우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법으로 기한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났지만, 근로계약 만료나 해지 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었다.

(3) 높은 물류비용과 낮은 물류 경쟁력

간선도로, 유료/고속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등의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고 장비 낙후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등의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교통 및 물류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이다.

(4)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옴니버스법으로 법인 설립 부분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 설립 이후 해당 업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과정은 아직도 기존과 같이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에도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시행
-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에 의한 고용창출, 수출 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투자 우대 정책

-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 존재
  -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투자 촉진 세제 우대 제도로는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Tax Holiday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Tax Allowance를 시행

(1)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요건)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신규 투자를 하는 법인 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 즉 상류 금속 산업, 석유 정제 산업,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무기 기초 화학 산업, 농업·플랜테이션·산림작물에 기반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제약 원재료 산업, 반도체 및 컴퓨터 제조산업, 보건장비 부품 제조산업, 산업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 차량 제조산업, 로보틱 부품 제조산업, 선박 제조산업, 항공기 제조산업, 기차 제조산업, 발전소 기계 산업, 경제 인프라스트럭쳐, 농업·플랜테이션·펄프 생산 임업 생산물에 기반한 가공산업, 데이터 가공 등 디지털 경제 산업 등 18개
- 최소투자금액 1천억 루피아 이상일 것
- 재무부 장관령 기준에 언급된 부채/자본 비율 준수

○ (혜택) 상업생산 개시연도부터 5~20년간 법인세의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면제

- 투자금액 1천억~5천억 루피아 : 5년간 50%
- 투자금액 5천억~1조 루피아 : 5년간 100%
- 투자금액 1조~5조 루피아 : 7년간 100%
- 투자금액 5조~15조 루피아 : 10년간 100%
- 투자금액 15조~ 30조 루피아 : 15년간 100%
- 투자금액 30조 루피아 이상 : 20년간 100%

○ (절차) OSS 전자인허가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재무부 장관 결정

○ (납세자 의무) 납세자는 면제 결정시부터 상업 생산시까지 투자 실현에 관한 보고서 및 상업 생산 시부터 면제 종료시까지 생산 실현에 관한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2) 투자금액 소득공제(Tax Allowance)

○ (요건) 66개 특정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납세자 또는 77개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납세자

* 특정사업군 : 음식업, 의류 및 섬유, 종이 및 제지, 공업화학원료, 의약업, 고무 및 합성수지업, 철강, 기계장비업, 전자업, 육로이동차량운반구, 조선, 시멘트, 지질탐구, 원유정제, 천연가스정제업 등

○ (혜택) 총 투자금액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 조기 감가(모) 상각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경감
- 다음의 조건하에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투자가 경제 개발지구나 보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1년 연장)
  - 투자지역에서 경제 또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 100억 루피아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연장)
  - 투자 후 4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원자재의 70% 이상을 조달한 경우(1년 연장)
  - 최소 500명이상의 고용을 5년 연속 유지한 경우(1년 연장, 1,000명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5년간 국내 R&D 지출이 총 투자금액 대비 5%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투자 승인일 이전 회계연도의 세후 순소득으로 재투자한 경우 (2년 연장)
  - 보세 구역 밖에서 총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한 경우 (2년 연장)

○ (절차) 투자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투자청장 추천서와 함께 재무부(국세청) 이관(납세번호증, 투자면허, 상세사항) → 10 영업일 이내 국세청 승인 / 거부(결정서 교부)

○ (납세자 의무) 납세자가 투자계획의 80%이상을 실현한 이후 혜택 부여, 2007 정부령에 따른 투자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기 부여받고 있지 않아야 함 (중복 배제)

「신투자법」 주요 내용

○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 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사증 부여
- 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28조)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시행령 발표

조코위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2020년 11월 2일 법률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2021년 2월 1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시행령은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보호, 무역 등의 정부령 45개와 투자사업, 정부조달 등에 대한 대통령령 4개로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옴니버스법 제정 이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를 통해 외국인 투자의 개방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소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를 제정 및 운영해 왔다. 즉, 기존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에서는 투자 활동의 분야를 i) 개방 분야, ii) 투자 제한 분야, iii) 조건부 개방 분야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었고, 이 중 투자 제한 분야와 조건부 개방 분야를 네거티브 목록의 형태로 마련해 왔다.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해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제12조가 개정됐고, 개정된 투자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투자의 금지가 명시돼 있거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개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투자의 요건 및 개방과 제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2021년 2월 2일부로 옴니버스

법의 투자사업 분야에 관한 시행령인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Perpres 10/2021)가 공포됐다. 해당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1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됐고, 같은 날부터 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정 투자법 제12조와 투자분야 시행령 제2조을 통해 ①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②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됐다는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i) 마약 재배 및 유통 산업, ii) 모든 형태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산업, iii)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산업, iv) 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v) 화학무기 제조업, vi)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투자가 금지된 6개 분야로서 기존 법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투자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인 안보 및 보안에 관한 부분은 중앙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서 마찬가지로 투자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는 위에 언급된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투자가 개방됐다. 기존 네거리브 리스트에서 규정하던 투자 제한 분야와 비교하면 투자 제한 분야가 대폭 축소됐는데, 방산, 공항 및 항만 운영, 공공 박물관 등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투자분야 시행령을 통해 개방됐다. 투자분야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투자가 개방된 사업분야는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우선투자분야(Priority Sectors), ②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배정된 사업분야 또는 위 기업들과 협업 조건 개방 분야(Sectors being allocated or in collaboration with cooperatives and SMEs), ③ 특정 조건에 의한 개방 분야(Sectors with certain restrictions/prerequisites), 그리고 ④ 기타 분야가 그것이다.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등에 할당된 분야 또는 협업 조건 개방 분야는 크게 3분야로 나뉜다. i)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분야, ii) 노동 집약적인 특성 또는 문화적 특이성이 있는 사업분야, iii)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사업활동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 미만인 사업분야가 이에 속하며 89개 분야이다. 보건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약품 유통, 일반 의원(클리닉), A등급 의료기기 취급 등이 있다. 산업 분야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이나

액세서리, 석회 산업, 보석 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 분야의 경우 또 다른 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조건에 의한 개방 분야는 46개 분야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분 제한 및 특별 허가와 같은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사업 분야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미 투자가 승인됐거나 국가간 사전 합의에 따라 특별 권리를 취득한 외자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등에 관한 새로운 투자사업 분야를 명시한 시행령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새로운 시행령 상의 규정이 더욱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투자액이 최소 100억 루피아(약 7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특별 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100억 루피아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서는 특정 조건 하 주류(알코올) 분야에 대한 외자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지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3월 2일 주류 분야 투자 개방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선투자분야는 국가 전략 육성 산업 및 프로젝트, 노동 및 자본집약산업, 첨단기술산업, 선도산업, 수출지향산업, 연구개발 산업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야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로는 각종 세제상 혜택(Tax Holiday, Tax Allowance, Incentive Allowance 등)이 있고, 비금전적 인센티브로는 신속한 사업 인허가 지원, 에너지 사용 보장, 고용 편의 등이 명시돼 있다.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될 것이므로, 구체화 하위 규정들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된 일자리 창출법은 2024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향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 개방 분야 세부 내역은 현지 진출한 한국계

법무법인(지평, 세종, 화우 등)과 유관기관(KOTRA,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정리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및 투자 여건

임업분야 수출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2017년말 기준 16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45천ha의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1985년부터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동 법령은 1997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2001년 산림부 장관과 무역부 장관의 공동선언으로 다시 규제가 되었으며, 2012년 무역부는 동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림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림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 산업부 등에서는 자국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림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인도네시아의 목제품 수출 규제 경과

- 1985년부터 원목 수출 전면 금지
- 1989년 저가 제재목 수출 금지 및 고관세 부과(250~4,800$/㎥)
- 1992년 원목 수출 금지 해제, 고율의 수출세 부과(500~4,800$/㎥)로 사실상 금지
- 2001년 원목 수출 금지 재시행(산림부장관, 무역부 장관 공동선언)
- 2006년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 수출 금지
- 2012년 원목수출 금지 법안 제정(무역부)

또한 201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인증제는 2020년 무역부 장관령(No 15/2020, No 45/2020)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영세 목재가공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일부 가구 등 2차 가공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이 이행되고 있으며, 2018년 팜 농장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여 향후 3년간 신규 팜농장을 위한 산림전용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지를 재평가 하고 있으며, 2019년 66백만 ha의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영구개발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기존 인도네시아의 산림활용활동은 지역활용, 환경서비스활용, 목재 및 비목제품의 활용, 목재 및 비목재제품의 수집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산림 이용 시 활동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옴니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산림관리 활동이 1개의 허가로 통합되었다. 옴니버스 법은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투자 가속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는 조건으로 산림

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산림은 정부 규정 (2007년6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는 지역활용허가(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 - IUPK), 환경서비스 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 IUPJL), 목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 IUPHHK), 비목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 IUPHHBK), 목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Kayu - IPHHK), 비목재림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 IPHHBK) 등을 받아야 했다.

옴니버스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바꿨다. 49개 정부 규정 중에 산림자원과 관련된 규정 5개 이상을 바꿨다. 즉 정부규정 2021년5호(위험기반사업허가 이행에 관한 규정), 정부규정 2021년 22호(환경보호관리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3호(산림행정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4호(임업분야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제재 및 세외수입 절차에 관한 규정), 정부 규정 2021년 43호(공간, 산림면적, 허가 및/또는 토지권리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분야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관련 규정: 농업부 장관령 / 「No.42/Permatan/ OT.140/6/2012」)하고 있으며,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 항구 →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 통관 가능 항구: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
- 검사 강화: 종전은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
- 쿼터제: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함.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과 병해충청정지역(PFA : Pest Free Area)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수입통관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CRA 획득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도네시아 주된 수출품인 국산 배 중 충청남도가 PFA를 획득,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충청남도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2019년 1월 갱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딴중 프리옥항을 통한 신선 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 중에 있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에 할랄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 10월에, 화장품 등의 경우는 2026년 10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소기업, 영세기업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식음료의 경우 최대 2년 할랄 인증 의무를 유예하였다. 중견 및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식음료 및 도축서비스에 대해서는 10월 18일부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이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코로나19로 SNI 인증 실사가 어려워지며 신규 인증과 기존 인증 연장 모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간의 FTA인 A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인 AK-FTA(한·아세안 FTA),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일본과 FTA인 IJ-EPA,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인 AI-FTA, 아세안과 뉴질랜드 및 호주와 FTA인 ANZA-FTA 등을 맺고 있다.

당초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발효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인도네시아의 FTA 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나, 여타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다각적 FTA 협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호주와의 CEPA가 체결됐었다. 2019년 11월 한국과의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12월에 정식 서명,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되어 2023년 1월 정식 발효되었다.

한편, ASEAN+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차원의 RCEP 협정은 지속된 협의 끝에 2020년 11월에 체결되어 2022년 1월 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발효되었다. 2022년 11월 기준, 아세안 7개국, 비아세안 5개국에서 발효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2023년 1월 정식 발효되었다.

한·ASEAN FTA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ASEAN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2010년까지 전체 품목의 91.1%에 달하는 4,760개 일반 품목군(HS 6단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일반 품목으로 양허한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세율(HS 8단위 기준 798개 품목)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 민감품목(HS 6단위 308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인하 일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0~5%로 감축되었고, 전체 품목의 3%에 해당하는 초민감 품목(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 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에 따라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조회는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 idn.mofa.go.kr) '인도네시아 관세 및 FTA' 코너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 싱글윈도우 홈페이지(https://intr.insw.go.id/)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ASEAN FTA

2004년 11월 라오스 개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한 후, 2005년 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0%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실시하였다.

중국 및 ASEAN 정상들은 2013년 10월 브루나이 개최 ASEAN+1 정상회의시

중·ASEAN FTA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고, 오랜 협상 끝에 원산지 규정 간소화, 무역원활화 조치, 다자 경제·기술 협력 강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8월부터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일·인도네시아 EP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년 8월 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고, 2008년 7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5년 후에 재검토(Review)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에 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2014년 1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6월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일·인도네시아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품·수산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의 Industry 4.0 정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조산업 개발 센터(New MIDEC) 협력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2014년 2월 7차 협상 이후 중단되었으나 2019년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서 실질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면 한국은 수입

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인도네시아는 각각 93.0%, 97.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되어 2023년 1월 발효되었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대비 완화된 원산지 기준(PSR) 적용, 추진 중인 RCEP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 규범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對 인도네시아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규제 제도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년 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와인 및 과실주 신고가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인도네시아의 관세 정책은 보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6단위에 2단위를 추가한 아세안 HS 분류표(AHTN)를 인도네시아도 2017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5년 주기로 갱신되어 현재는 2022년 4월 갱신된 HS 품목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번호는 관세율 적용뿐 아니라 수출입제한대상 여부 결정 시에도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해당 수출입물품이 품목 분류되는 정확한 HS번호를 파악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CIF가격을 기준으로 WTO 관세

평가협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전산 가격자료를 통하여 실적가격대비 수입신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관세청 내부자료(기존 수입가격을 근거로 책정된 Database),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판매가, 시장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입품의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세관 자체기준(통상 5% ± 차이)에 미달 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세액 추징 시 행정 벌금은 누락 세액의 최대 1,000%까지 부과된다(최소 100%에서 최대 1,000%). 세관의 추징에 따른 불복 시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수입자는 조세법원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 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코코아두, 목재, 팜오일, 광석(피로니켈, 니켈선철 포함) 등으로서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BPOM, SNI, 할랄 인증 3대 인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6년 미국 NTB 보고서에도 3대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기되어 있다. 2019년 11월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BPOM, SNI 등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 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전에 MUI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인증청(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검사 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현재 관련 시스템 정비로 인해 인증 의무화에 대한 유예 기간이 식품 및 음료는 2024년 10월까지, 의약품 및 화장품은 2026년 10월까지 설정되었다.

또한, 2016년 12월 수입승인제도 법령(No.82/M-DAG/PER/12/2016, 2017년 3월 발효)을 발표하였다. 수입승인제도(Persetujuan Impor)는 내수 증진을 목표로 생겨났으며, 사전수입승인대상 품목군은 2019년 말 기준 총 75개가 지정되어 있다. 철강, 합금강 제품,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스탠 제품,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입승인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품목별로 상이하다. 해당 품목은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쿼터 할당제가 존재하고, 수입 실적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동 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023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규정 36호를 발표하며 18개 품목군, HS code 기준 2,428개의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사전수입승인

대상 품목이 증가하였으며, 선적전 검사 혹은 기술적 고려사항(Pertek)을 발급받아야하는 품목 또한 증가하였다. 하지만 컨테이너 통관이 지연되는 통관 이슈가 지속되자 '24.5월 제3차 개정인 2024년 무역부 규정 제 8호를 발표하며 수입규제 일부를 완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선적전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 및 통관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 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 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 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년 2월부터 시행)

2009년 1월 1일부터 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Belawan

항구(메단),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0월 기준 강제인증 품목은 총 238개이다.

한편,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자제품 수입규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 품목을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

*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 수입라이센스 강화: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Dumai), Jayapura (Jayapura), Tarakan (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2024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일몰·중간재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인도네시아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규제는 총 21건으로 세이프가드 11건, 반덤핑 5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4건이며, 폴리프로필렌 중합체에 대한 반덤핑과 일부 직물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조사 중이다.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2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9건(조사중 5건))

품목명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판정	최종판정
석도강판 (Tin Plate)	7210.12.10 7210.12.90	반덤핑	〈최종〉 '14.1. 〈일몰〉 '18.12. 〈일몰2차〉 '23.12	CC 동양 6.2%, 동부제철 7.9%, 신화실업 4.4%, 기타 7.9%
권련지 및 플러그랩 용지 (Cigarette Paper and Plug Wrap Paper)	4813.20.21 4813.20.23 4813.20.31 4813.20.32 4813.90.11 4813.90.19 4813.90.91 4813.90.99	세이프 가드	〈최종〉 '21.11 〈일몰〉 '23.9	. 1년차: IDR 3,923,900/t . 2년차: IDR 3,885,850/t . 3년차: IDR 3,847,800/t
과당 시럽 (Fructose Syrup)	5402.47.00	세이프 가드	〈최종〉 '20.9 〈일몰〉 '23.6	. 1년차: IDR 18% . 2년차: IDR 16% . 3년차: IDR 14%

품목명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판정	최종판정
의복, 악세서리 (Apparel and its accesso-ries)	6101~6111, 6117, 6201~6206, 6209, 6214	세이프가드	〈최종〉 '21.10.21	. 1년차: IDR 63,000/pcs . 2년차: IDR 59,850/pcs . 3년차: IDR 56,858/pcs * 6101.20.7품으로 HS CODE별 상이
폴리스티렌 (Expansible Polystyrene)	3903.11.10	세이프가드	〈최종〉 '21.12.2	. 1년차: IDR 2,452,711/ton . 2년차: IDR 2,428,184/ton . 3년차: IDR 2,403,902/ton

조세 제도

(1) 조세체계

국세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 부동산보유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2) 신고 및 납세방법

월별/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적절한 세금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별 법인세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고 익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하고, 연간 소득세는 결산 최종일로부터 3개월 되는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해야 한다. 지연납부에 대해 월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고정사업장도 포함)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22%가 적용된다. 다만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의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업은 매출액의 0.5%를 최종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 예납해야 한다.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조사 및 환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인의 현금흐름 애로가 빈발하고 있다.

(4)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은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등 국내원천의 모든 소득금액이며 근로소득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토록 되어 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공제(약 3천6백만루피아), 배우자 공제 (3백만 루피아), 기타 인적 공제(최대 3인, 각 3백만 루피아), 의료비 공제,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 공제 등이 있다.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 - 60,000,000	5
60,000,001 - 250,000,000	15
250,000,001 - 500,000,000	25
500,000,000 - 5,000,000,000	30
5,000,000,000 -	35

(5) 거주자 과세 /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에 발생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방문 목적의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은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현지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 과표에 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과세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한다.

(6)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한·인도네시아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용역수수료(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고, 이자·배당·로열티 수취시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각각 10%, 10%, 15%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혜택은 소득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감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CoD)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고정사업장 과세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양국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7)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이다. 인도네시아는 21년 10월 발효된 조세조화법(UU HPP)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종전 10%에서 1% 인상된 11%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2%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인상은 사치품에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비스 시장

항공

최근 한·인도네시아간 협력 관계는 양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경제통상 및 투자, 문화관광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의 문화·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증하고 있는 양국 관광수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19년 기준 네번째로 큰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도 2,000여개 이상으로 양국간의 항공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양국간 설정되어 있는 제한된 공급력 수준은 한국과 ASEAN 10개국 중 많은 국가가 자유화가 되었거나, 자유화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력을 설정하여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양국간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4년 81.5만 명, 2015년 83.3만 명, 2016년 80.4만 명, 2017년 81.6만 명, 2018년 80.5만 명, 2019년 88.6만 명으로 연평균(2014~19년) 1.7%씩 증가하였으며, 2019년 탑승률은 평균 80.2% 수준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국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어, 양국간의 항공수요 증가는 코로나 19 이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항공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의 항공 공급력 증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인도네시아 항공여객 수송실적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급	1,152,950	1,143,707	1,059,372	1,025,914	1,038,478	1,104,472
수송	814,812	833,027	803,395	816,395	805,348	885,526
L/F	70.7%	72.8%	75.8%	79.6%	77.6%	80.2%

자료: 한국공항공사 ('19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6.7% : 33.3%) / 2020년, 2021년 코로나 19로 제외

한·인도네시아 항공화물 수송실적

(단위: 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 → 인도네시아	19,888	17,993	19,949	19,811	20,280	17,350
증감율	7.3%	-9.5%	10.9%	-0.7%	2.4%	-14.4%
인도네시아 → 한국	9,520	8,893	9,914	10,196	10,380	7,381
증감율	14.9%	-6.6%	11.5%	2.8%	1.8%	-28.9%

자료: 한국공항공사 ('19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8.6% : 31.4%) / 2020년, 2021년 코로나 19로 제외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은 1982년 11월 10일 가서명을 거쳐 1988년 11월 10일에 서명되었으며, 1989년 5월 3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또한 1989년 7월 12일 1차 개정 이후 1995년 11월 17일, 2000년 5월 31일, 2005년 4월 15일, 2007년 3월 28일에 이어 2012년 6월 28일 제7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정항공사는 복수제에 따라 한국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도네시아측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P.T. Mandala Airlines, PT. Air Paradise International (Denpasar -Seoul), PT.Metro Batavia, PT.Batik Air Indonesia, PT.Indonesia AirAsia Extra, Lion mentari Airlines, Sriwijaya Air가 지정되어 있고 노선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한·인도네시아 항공 노선구조 현황

구분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한국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인도네시아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공급력은 여객에 대하여 주23회(2013년 하계부터), 기종 무제한(콤비기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운수권의 국적사 배분내역과 관련하여 대한항공(KAL)이 주1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7회를

배분받았으며, 덴파사르 여객과 및 화물 전용편은 주7회의 범위 내에서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을 전제로 운항이 가능하다.

운임은 신고제(인가제→ 신고제, 2000년 5월 AM)이며 Code-sharing 등 상무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국,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를 허용하되 해당항공사는 모든 구간에 운수권 보유가 필요(2000년 5월 AM)하다. 항공안전 및 보안조항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4월 14일~15일 회담에서 신설된 바 있다.

건설 및 부동산

(1) 법령 제도

○ 건설업 면허 제도

외국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R/O,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나 현지법인(PT,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등급)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 구비서류(국내 PQ심사 서류와 유사): 국내외 공사실적, 본사 재무구조,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 면허관할기관: Dept. of Pekerjaan Umum
- 면허시행기관: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LPJK)

○ 건설면허는 G1~G7의 등급 규정 적용

- 〈입찰 참여한도〉 G5~7등급이 대기업으로 분류
- G7등급: 10억 루피아(10.5만 달러) 이상 한도 없음
- G6등급: 10억~250억 루피아(약 263만 달러)
- G5등급: 10억~100억 루피아(약 105만 달러)

상기 건설업 면허 신청시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투자개발 업종으로 신고만 할뿐 특별한 허가요건이 없으며, 대단지 개발 인허가시 신청사의 자금력 등 증빙이 필요하다.

(2) 토지제도와 개발사업

인도네시아는 제도의 미발달로 토지와 관련된 법제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여 상당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토지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1960년에 제 정된 기본농지법 (이하 "기본농지법")이다. 기본농지법은 토지에 대한 권원으로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개간권, 벌목권 등 7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 이외에 관습법상 인정되어 오고 있는 토지가 아직 상당히 있고, 이들 토지는 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의 관습적 권리에 귀속되어 있고, 기본농지법상의 위 7개의 권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등기가 될 수 없다.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대규모 사업부지 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사업부지에 이러한 관습법적 미등기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국가 및 인도네시아 자연인 국민에게만 인정되고, 법인 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법인은 물론이고 순수 내국인투자법인 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만, 사용권만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정되는 토지의 권원은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4가지이고,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인 건축권과 사용권이 중요하다.

건축권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외국인투자 법인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 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농지법상 건축권은 최초 30년까지 인정이 되고, 그 후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권 보유자는 정부에 새로이 건축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및 상속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수도 있다. 담보권은 건축권이 소멸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권은 국가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 위의 수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인도네시아 법인 이외에도 외국인 개인 및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도 보유할 수 있다. 기본농지법은, 사용권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는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법은 모두 70년까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자법을 통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70년까지라고 이해된다. 사용권 역시 건축권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2021년 행정부령인 PP 18/2021에서는 i) 관리권에 관한 사항, ii)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에 관한 사항, iii)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사항, iv) 지상 및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권 및 토지권에 대한 사항, v) 토지등기제도를 다루고 있다.

관리권의 경우, 국가토지 및 관습상 토지 위에 설정될 수 있고, 관리권 위에는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과 같은 토지권이 설정될 수 있다. 관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유기업, 지방공기업, 토지은행 및 중앙정부가 지정한 법인이 되는데, 국가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영역에서는 위와 같은 관리권자와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리권 위에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을 설정받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의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토지제도의 근간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기본법(농지법, UU 5/1960) 및 그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 1996년 제40호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에 관한 행정부령(이하 "PP 40/1996")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는데, 새로운 행정부령 PP 18/2021의 신설과 함께 PP 40/1996은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i) 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WNI), ii)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iii) 거주허가 등 제반 법령에 따른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iv) 인도네시아에 대표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v) 외국 국가의 대표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부, vi)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새로운 2021년 행정부령인 PP 18/2021에 의할 때, 외국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i) 최소 가격, ii) 토지 면적, iii) 아파트 유닛의 수, iv) 거주 주택 공급 정도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다시 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두었는데, 제한적 거주허가(ITAS)나 확정적 거주허가(ITAP)를 보유한 외국인 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지 여부는 향후 장관령의 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소 가격에 관한 사항은 기존 장관령(Permen 13/2016)의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위 장관령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자카르타의 경우 아파트 최소 가격은 50억 루피아 이상, 주택의 최소 가격은 100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에만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하여, 기존 행정부령 및 장관령 규정에 의할 때에는 사용권 위에 건축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법령에 의할 때에는 중고 시장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PP 18/2021에서는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관한 제약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신규"아파트만을 한정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옴니버스법의 입법 취지나 그 실행을 위한 하위 법령의 마련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이 중고 시장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다만, PP 18/2021 제73조에서 구체적인 제약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장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관한 최소 가격, 중고 아파트 취득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되는 장관령의 내용을 주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제도

인도네시아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시행할 때 요구되는 개별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하 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인허가의 종류 나 절차는 해당 지역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인허가는 아래와 같다.

- 위치허가 (Izin Lokasi) :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 부터 농업부 규정에 따른 위 치허가(Izin Lokasi)를 먼저 받아야 한다. 위치허가는 해당 토지가 그 지역의 용도지역에 맞게 이용된다는 증빙으로서 이후 토지 의 양도, 임대 등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 항시 구비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허가(Izin Penggunaan Pemanfaatan Tanah) : 위치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허가는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하 여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이 해당 토지의 목적 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증 명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 주택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해당 지역 행정관청의 지역구획과에 사전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 다. 사전 심의 신청시 사전심의 신청서와 함께 회사 설립서류인 영업허가, 회사등록증, 납세자번호와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구획과에 사전심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역구획과는 사업예정지를 조사하고,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이 해당 지역의 기본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한다. 사전심의는 지역구획과 내의 용도지역, 도로, 건축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다. 사전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지역구획과은 사전심의 승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 환경영향허가 및 교통영향허가: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 를 마치면 본 허가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허가와 교통영향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 및 유지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AMDAL 또는 UKL/UPL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영 향평가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하여 해당 지역 관청의 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허가: 만약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앞서 기술 한 사전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세금완납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한다. 건축할 토지가 타인의 것이면 그 권리 보유자와의 토지이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종교용, 사업용, 시회문화용, 기타 특수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임시주거용 건물로 세분되어 있다. 이후 준공시에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준공허가 후 준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인허가 절차

가) 토지개발권 신청 및 취득

○ 대상토지의 유효여부를 확인

- 토지예약허가(Land Resevation Permit, Surat Pencadangan Tanah (SPT)
- 자카르타의 경우는 Surat Persetujuan Prinsip Pembebasan Lokasi/ Lahan (SP3L)를 지역정부 책임자에게 사전에 받을 필요

○ SP3L 신청시 포함사항: 허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 투자목적-부지개발계획
- 토지취득, 재원조달, 실행,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영향 등에 관련된 사항
- 토지취득 및 사업실행 스케줄

나) 심의, 허가 등

○ 자본투자승인

- SP3L과 동시에 외국투자회사(PMA 회사)의 설립승인 신청
- 승인은 자본투자승인서(Capital Investment Approval Letter, Surat Pemberi tahuan Pesetujuan Presiden(SPPP))의 형태

○ 위치허가 승인

- 대상토지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5,000㎡을 초과할 경우 위치허가(Location Permit, Surat Izin Penunjukan Penggunaan Tanah(SIPPT)를 받을 필요
- 개략디자인, 토지소유 증명서류, 토지 및 건물세(Land & Building Tax) 납세증명, 토지사무소의 추천장, 계획국 기술부의 계획 관련 조언, 회사 등록사항 등을 제출하며 SIPPT는 주지사나 지역책임자가 발급
- 토지사용기간은 위 SIPPT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 부지조사

- 계획국이 부지조사를 하여 대지의 위치, 경계, 모양 등을 확인하여 Survey Site Plan(Peta Situasi Terukur)을 작성

○ 개발계획 승인(Keterangan Rencana Kota or Advis Planning) 신청

-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허가사항, 도로경계 및 도로확장계획 등을 명기
- 승인신청시 포함되는 배치도에는 도로경계, 건축선, 건물의 배치, 부지형태, 고도제한, 구획 및 건폐율, 동선계획 등을 명시

○ 개발계획 승인 취득후 Block Plan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Development Levy(개발세)를 내야 함.

-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약 500,000$이 소요됨.

○ 개발완료후 사용허가(Occupational Permit, Izin Penggunaan Bangunan) 신청

(5) 공공사업의 토지취득 체계

가) 주요 경위

○ 토지수용법 부재로 외국정부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ASEAN 국가의 건설사에 입찰을 주었으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약 5년 이상이 소요

○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년 1월 14일 「공익 위한 건설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Law No.2/2012)」을 발표

- 토지 매입은 정부의 공간활용계획(Spatial Zoning Plan), 국가지역발전계획, 전략적 계획,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작업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토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소유
- 이 법률 10조에서 명시한 공익에 해당 부분은 국방 및 보안, 국도·고속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상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등으로 정의
- 이 법률은 공익위한 '토지매입 조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입과 예산 지출에 근거한다'라고 명시

나) 대통령령 발효

○ 8개월간 진통 끝에 대통령은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대통령령(PR No.71·2012)」 발표

○ 이 대통령령은 토지수용 절차별(계획, 준비, 실행, 종료) 기한과 총 수용기간을 구체화(최대 583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구체방법(현금, 대토, 이주, 지분참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방법 등)을 명시
- 토지수용대상자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토지청(BPN: Badan Petanahan Nasional)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근거해 토지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지급 가능

다) 세부 토지수용 단계

○ (1단계) 계획단계

-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은 공간 활용계획과 발전 우선순위에 관한 토지수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 정부에 제출
- 토지수용계획서에는 개발계획 의도와 목적 등이 포함될 필요

  * 개발계획의 의도와 목적, 공간활용계획과 국가지역발전계획의 일관성, 토지 위치, 토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 토지매입의 예상 소요기간, 건설의 예상 소요기간, 토지 예상가치, 예산 계획

- 토지수용계획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지역사회경제조사, 지역 타당성조사,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토지 예상가치, 환경영향평가 등

○ (2단계) 준비단계

- 주지사는 토지수용 계획서 수령 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토지매입 준비팀(시장·군수, 지역정부 예산 및 자산관리 조직, 토지사용자, 기타 관련기관)을 구성할 필요
- 준비팀은 주지사가 토지수용계획서를 수령 후 적어도 20일 이내로 건설계획을 발표
- 건설계획 발표 후 적어도 30일(근무일) 이내로 당사자들과 토지에 대한 예비정보 자료를 수집
- 준비팀과 관련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토지위치를 위한 공청회를 끝내야 함.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 내 재 공청회를 개최

  * 관련 당사자(Pihak Yang Berhak):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 관습적 토지소유자, 공공토지사용권자, 미이전등기 실소유자, 건물·밭 등의 소유자 등

- 공청회에서 토지위치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주지사는 토지사용허가권을 발급(SP2LP)
- 재 공청회 후, 반대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지사는 평가팀을 구성해 14일(근무일) 이내로 반대의견을 철회 및 수용할 지를 결정할 필요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 토지사용 희망 기관은 토지위치를 재조정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SP2LP를 발급

- 관련 당사자들은 30일(근무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행정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근무일)이내 판결을 완료, 패소 시 판결 이후 14일 이내 대법원에 재소하고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판결

○ (3단계) 토지매입단계

- 토지청(BPN)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 목록·소유주·활용, 토지가치의 측정
- 보상 협상은 토지가치의 평가 후 최장 30일간 진행
- 토지가치의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 후 14일 이내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 수령 후 법원은 3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의 결정 파기를 위해 판결 후 14일 이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30일 이내로 판결해야 함
- 보상의 형식은 현금, 토지 교환, 위치 조정, 지분.참여(국영 공기업부만 가능), 당사자들간 동의 방식이 존재

○ (4단계) 이행단계

- 토지청장은 토지권리 포기 후 최대 7일 이내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본 2부를 작성해 토지사용자에 1부 양도해야 하고, 사본은 토지청에서 보관
-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토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토지청장이 위원장인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결과를 받은 후 토지사용자는 건설 시작 가능
- 「PR 71/2012」 법률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는 이전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와 No.65/2006)」에 의해 12월 31일까지 적용
- 2015년부터는 토지매입은 「PR 71/2012」에 따라야 함.

라) 제도의 평가

○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지 수용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업계는 지적

○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거에 부재하던 토지수용법 제도를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마)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신청서(Building Permit Application) 및 설계도면을 첨부, 건물소재지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신청서 제출에서 허가까지 통상 3개월 소요(건축허가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례금 요구 관행)

○ 절차상 우선 부지계획(Block Pla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상세도면과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건축허가서 취득과 동시에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수행

○ 시공단계에서 관련기관의 단계별 검사를 거쳐 공사가 마무리되면 컨설턴트가 점유허가(OP, Occupancy Permit)를 신청하고 OP를 취득하면 비로소 건물사용이 가능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1단계	Permit of Location		BPN (인도네시아 토지청)
2단계	Permit of Land Use Designation(IPPT)	Building Design(조감도포함)	City Planning Department(DPPK)
3단계	Site Plan - Advice Planning - Block Plan	Building Layout Plan	City Planning Department(SDPPK)
4단계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AMDAL)		BPLHD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5단계	Recommendation from Fire Department		
6단계	Building Permit(IMB)	Architect Drawing	DPPK SDPPK
7단계	Permit of Using Building(IPB)		DPPK

통신서비스

(1) 전체 ICT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 약 440억 달러 규모로 아세안 최대 규모이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ICT분야가 국가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4.4% 수준이다.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역간, 도시-농촌간 편차가 큰 편이다.

인근 국가에 비해 비교적 성장이 늦었던 이유는 국토가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여건 외에도 소비자 구매력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 증대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자 인터넷 사용자와 PC 및 핸드폰 구매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가 20~30대일 정도로 도시 거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및 SNS서비스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어젠다에 의한 통신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연령층과 중산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ICT 산업 시장이지만, 빈부격차와 지리적 한계로 인한 정보접근성과 정보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인도네시아 IT시장은 정부의 IT인프라 지출과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광대역통신망 구축 사업의 진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온라인교육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 통신 서비스 시장

유선 가입자는 2017년 기준 100명당 4.2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선 가입자는 100명당 173.8명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57.3% 수준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의 32.3% 수준이고, 유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1.2명, 무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95.6명 수준이다. 유선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무선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ITU, 2017) 스마트폰 사용자의 꾸준한 증가,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 4G LTE 서비스 개시 등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앱 애니(App Annie)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1인당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5.5시간으로 2021년 3분기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서 트위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트위터와 페이스북 중심의 SNS 서비스 사용자 수가 많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과 그 외 컨텐츠 서비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6년 3G 서비스 개시 이후 2015년 하반기부터 4G LTE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평균 속도 현황

	모바일광대역 (Mobile Broadcast)			고정광대역 (Fixed Broadcast)		
	다운로드	업로드	순위	다운로드	업로드	순위
인도네시아	14.16	9.5	120위	20.60	12.53	115위
세계	31.95	11.32	140개국	74.32	40.83	175개국

자료: Speed-test Global Index(2020.1)

1,800MHz 주파수 재통합, 다수 사업자들의 경쟁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서비스 확산이 예상되나, 수입 스마트폰에의 자국산 부품사용 규제, 로컬 컨텐츠(Local Content) 규제 강화는 서비스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Telkomsel, Indosat, XL Axiata, H3I, Smartfren, Bolt 등의 사업자가 활동 중이며, Telkom, Indosat, XL Axiata 등 빅3 통신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8년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5G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과 함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전략수립에 나섰다. 특히, 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국의 정보화진흥원(NIA), KT, 삼성과 인도네시아 텔콤셀 등이 함께 배드민턴, 여자 농구, 골프 등 경기와 연계한 5G 체험관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광대역통신망 구축이 국가 어젠다로 강력히 추진되면서 개선된 통신환경과 낮아진 이용요금을 기반으로 e-commerce(상거래), e-Health(보건), e-Education(교육), e-Procurement(조달)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8월 2017년~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하여 전자상거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통신 서비스시장은 젊은 중산층 중심의 ICT 기기 활용 확산, 소득 증대에 따른 ICT기기 구매 증가, 통신망 개선 등으로 민간의 새로운 통신 서비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분야이다. 내수시장 확대 및 서비스 인지도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IT역량을 인터넷으로 보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서버 등의 기본적인 IT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인프라 클라우드 시장이 유망하다.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분야별 성장 전망 (2015~2018)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웹 현실화 어플리케이션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총합
2015년	496	128	324	289	1,237
2018년	956	322	597	847	2,722
'15-'18 성장률	92.7%	151.6%	84.3%	193.1%	120%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및 Odin 2015 SMB Cloud Insights

(3) 통신 인프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핵심 백본망 구축을 위해 총 33개 주 440개 시·군지역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통신분야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로서 서부, 중부, 동부 패키지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은 빨라빠 링(Palapa Ring) 구축(서부 빨라빠링 : 1.2조 루피아/중부 빨라빠 링 : 1조 루피아/동부 빨라빠 링 : 5.4조 루피아)이 완료돼, 개관을 공식 선언했으며, 2021년에는 다기능 위성 Satria 프로젝트(66억 루피아)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통신정보부의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에 따라 외곽이나 지체된 지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을 설치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선기지국 건설 추이

지역명	2014년	2019년	증가율(%)	점유율(%)	
				2014	2019
수마트라	7,924	10,281	29.7	29.5%	29.3%
자바	11,642	14,278	26%	43.3%	40.7%
칼리만탄	2,112	2,900	37.3%	7.9%	8.3%
술라웨시	2,863	3,783	32.1%	10.7%	10.8%
발리/누사틍가라	1,605	2,362	47.2%	6.0%	6.7%
말루쿠/파푸아	715	1,458	103.9%	2.7%	4.2%
총합	26,861	35,062	30.5%	100%	10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4) 외국인 투자 규제

2021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2021년 제 10호에 따라 정보통신업 분야(유/무선통신, 인터넷서비스)는 과거 일부 지분 취득 제한이 없어지고 100% 투자 개방되었다. 하지만 추후 인허가 부분에 있어 난관이

예상됨으로 추가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해서, 민간 라디오와 TV 등 업종은 여전히 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외국기업 진출전망 및 장애요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분야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의 경우 저가 중국산 핸드폰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Banking 및 증권거래 시스템, GIS, 사이버시큐리티 부분에서 외국의 솔루션 진출이 유망하다. 셋째, 전자정부 부문의 경우, 정부투명성 요구 증대에 따라 국세, 조달, 관세 등 수요증가 예상되며, 내부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제, 재난관리시스템 등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를 원하는 분야이다. 넷째, 이동통신 분야는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송수신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도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ICT 인력 시장의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교육 수요 및 외국기술자 유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 등 ICT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나 유의사항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사업발굴 및 실현 단계의 애로사항으로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 유통, 브로커들의 과도한 개입, 동일 국가 업체끼리의 경쟁 등이 사업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서, ICT 및 전자정부 추진의지는 강하나, 과도한 요구나 성사단계에서의 갑작스런 취소 등으로 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셋째, 물류 및 통관 낙후성으로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규제, 투명하지 못한 통관과정, 물류의 비효율성 등은 상당한 비용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문화 및 의사소통 한계로 인한 애로사항으로서, IT 및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요구 파악 및 반영이 필수적이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것도 투자/진출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통관 운송

수입통관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심사부서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 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은 관세(BM), 부가가치세(PPN), 사치세(PPnBM), 소비세(Cukai)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가 있다.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과정은 수입신고서(PIB)를 전산으로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통관채널 결정서가 수입자에게 통보되고 동 채널에 따라 세관 심사 없이 반출이 허용되거나 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걸쳐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통관 채널은 수입자, 수입물품 등의 위험도에 따라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고위험(Red) 등 3개의 채널로 분류되며 우대채널과 저위험 채널의 경우에는 세관 심사없이 채널 결정과 동시에 화물반출이 허용되지만 고위험 채널은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반출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통관 이후 2년 이내에 세액 등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후 심사를 통하여 부족세액이 확인될 경우 부족세액의 100% 내지 1000%의 높은 행정 벌금(단순 품목분류 오류의 경우 행정 벌금 면제)이

부과된다. 한편, 세관의 처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보세지역(KB) 제도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을 유예하는 보세지역(보세공장, Kawasan Berika) 제도와 수출용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지역(보세공장, KB)의 경우 내수판매를 전년도 수출액의 5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 활용하며, KITE는 보세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이 주로 활용한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2018년 11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령을 전면 개정하여 보세구역(KB)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보세공장의 유효기간을 철폐하고, 위탁 가공시 원재료의 재반입 기한도 반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 테스트 등을 위한 일시반출도 허용하였다. 특히 자율관리 보세구역(KB Mandiri)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관 직원이 모든 입출고 화물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입출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특징

인도네시아의 노동관계법은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장관령(Peraturan Menteri),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 대통령지시(Instruksi Presiden)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Undang-Undang tentang Ketenagakerjaan): 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

- 노동조합법(Undang-undang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해당
- 노동관계분쟁해결법(Undang-undang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gungan Industral)
- 근로안전법(Undang-undang tentang Keselamatan Kerja)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tional)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보호 및 배치법(Undang-undang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 옴니버스법 노동분야 시행령인 정부령 2021년 제 34호~37호 (Peraturan Pemerintah No. 34~37, Tahun 2021)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6일 근로시 1주 1일, 5일 근로시 1주 2일, 연속으로 12개월 근무 시 최소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1일 3시간, 최대 주 14시간까지만 허용

근로계약서 관련

노사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며 「노동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 직책 및 직무의 종류
○ 급여 액수 및 지급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 발효 시점 및 기간
○ 근로계약 체결 장소 및 일자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서명

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고를 '근로관계단절(pemutusan hubungan kerja, PHK)'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해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한 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에 있어 통지절차가 추가되었고, 근로계약 해지 시 정규직에 지급하는 퇴직보상금 금액이 변경되었다. 더해서 퇴직보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종교상여금

인도네시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상여금(르바란 명절 상여금 / THR, Tungangan Hari Raya)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규계약은 물론 비정규계약을 포함하며,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종교축일 7일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 종교상여금 지급 기준은 12개월 이상 근무한자가 1개월분 급여(기본급+고정수당) 수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퇴직금제도

인도네시아「노동법」상 퇴직금은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기타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의 과다한 퇴직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통해 손해보상금 중 기존 산정 요소 중 하나였던 해고보상금의 15% 범위에서 주택 및 의료비 수당이 제외되었으나 그 이외에는 기존 노동법과 동일하다. 더해서, 기한부 계약의 경우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 기간이 늘어난 만큼, 정규직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uang pesangon): 노동법 제156조 제2항
  · 1년 미만: 1개월 급여
  · 1~2년: 2개월 급여
  · 2~3년: 3개월 급여
  · 3~4년: 4개월 급여
  · 4~5년: 5개월 급여
  · 5~6년: 6개월 급여
  · 6~7년: 7개월 급여
  · 7~8년: 8개월 급여
  · 8년 이상: 9개월 급여
-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노동법 제156조 제3항
  · 3~6년: 2개월 급여
  · 6~9년: 3개월 급여
  · 9~12년: 4개월 급여
  · 12~15년: 5개월 급여
  · 15~18년: 6개월 급여
  · 18~21년: 7개월 급여
  · 21~24년: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노동법 제156조 제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이전비

·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

· 기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사항

노동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 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2011년 제24호)」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근로자사회보험기관인 잠소스뗵(JAMSOSTEK)이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재, 노후, 사망 및 연금보장을 관리하는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egakerjaan)과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이 각각 설치되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이며 2015년 7월 연금보장을 포함하여 전면시행됨으로써 산재·사망·노후·연금·건강보장의 5대 사회보험 체계를 완성하고 근로자로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록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종전에 비해 근로자 및 건강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진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옴니버스법 시행령(정부령 37호)를 통해 실업보험도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제도

현행 「노동법」 제88조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생활에 충족하는 소득 실현을 위해 임금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생계비 및 생산성,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주(provinsi) 및 시·군(kota, kabupaten) 단위에 노·사·정 대표,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조사하고 다음 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주지사에게 통보하면 각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에서의 최저임금수준을 정하여 주지사에게 금액을 추천하며 모든 지역임금의 최종 결정 및 고시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2014년도에 제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2014년도 대통령지시 및 인력이주부장관령에 의해 주최저임금(UMP)은 매년 11월 1일 모든 주가 동시에 발표하며, 시·군 최저임금(UMK)은 늦어도 11월 21일까지 주지사가 결정·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정생계비 계산을 위한 시장가격조사 항목(component)은 음식, 의류, 주택, 교육, 의료비, 교통비, 여가선용 7개 분야에서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지역별 최저임금(UMP, UMK)는 각 지역별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적용하는데, 특히 적정생계비 조사항목에 대하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9월 27일 대통령이 서명한 지방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인 「근로자 복지 향상과 사업지속 계획 내 최저임금결정 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를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관계 장관과 지방정부의 장에게 적정생계비,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권고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저임금은 매년 11월 1일 동시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2013년 제7호)도 입안되어 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어 2015년 10월 23일 임금에 관한 정부령(No 78)이 제정되어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 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으로 통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2021년 옴니버스법 시행령(정부령 36호)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별 및 시/군별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주지사에게 일원화했다.

한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주지사는 최저임금 적용유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예절차는 장관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법 개정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a)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해서 기존에는 면제 대상으로 외국대표기관 외교관, 주주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옴니버스법 시행령(정부령 34호)에서는 이에 더해 긴급 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 및 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기간 연구활동 등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 10호에 대한 시행세칙인 노동부 장관 칙령 2019년 제 228호가 발표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종사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외국인은 18가지의 업종에서 2,000개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직책은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발간한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기준이다.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사업 종류와 직책의 수

업종	외국인 가능 직책 수
(1) 건설	181
(2) 부동산	6
(3) 교육	780
(4) 제조, 가공산업	70
(5) 수처리, 폐수처리, 재활용, 복원 사업	19
(6)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57
(7) 물류 및 창고업	51
(8) 요식업	12
(9) 농림어업	10
(10) 대여, 인력 관련, 여행사, 기타 지원 서비스	3
(11) 금융 및 보험 산업	32
(12)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4
(13) 정보통신	244
(14) 광산업	592
(15) 도매업, 소매무역, 차량 유지보수	46
(16) 전력, 가스, 지열, 공기 냉각	40
(17) 기타 서비스	8
(18) 전문적, 과학, 기술 활동	20

자료 : Asia Briefing(2019.10)

국가표준 인증제도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 처리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통관 시 SNI 강제인증 적용 품목군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23년 12월 기준 306개 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1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SN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기관의 검사관을 자사 부담으로 초청대략 3명을 3일간 파견)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2) 관련기관

○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National Standarization Agency of Indonesia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

ㅇ 기관명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Indonesia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ㅇ 주 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ㅇ 전화번호 :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ㅇ 팩 스 : +(6221) 5747045
ㅇ 이메일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

○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5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며, 또한 각 정부 부처는 품목별로 정부가 권고하는 실험인증 기관 목록을 발표

실험인증기관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 62-21-798-3666 / Fax :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 62-21-5794-4579 / Fax : 62-21-5794-4575

(3) 등록 절차

○ SNI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로 구성

○ (1단계) SNI 인증 신청

-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단, 인허가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각 별도의 신청서 사용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 지정하여 수입상이 SNI 취득 절차 진행

○ (2단계) LSPro의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LSPro에서 확인
- SNI 등록 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 (3단계) 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하고,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 가능

○ (4단계) 패널 최종 검사

- 패널은 의장 1인 그리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테스트 이전 서류 검사 결과에 의거, SNI 발급 여부 결정하는 단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서를 수정해야 함.

○ (5단계)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

(4) 소요 기간 및 비용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실사 비용을 포함해 약 1~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3가지 품목 기준 1,900달러인 반면, 외국 기업은 현장 실사 비용을 포함해 1만~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가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투자 총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되는데,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 손익은 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프리미엄으로 계상되며 미실현 손익으로 인식된다. 환차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 시는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투자계획을 이행하는데 소요될 자금의 인도네시아로의 반입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금계정

2015년 7월 1일부터 루피아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계약과 대금 지급 거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루피아 사용을 원칙으로 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수 통화 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교역통화의 현금계정 설치는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2021년 4월 새로 제정된 위험기반 투자 허가 절차에 관한 투자부 규정 2021년 제 4호(BKPM Regulation No.4 of 2021)에 따라 납입자본금 규정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최소 25억 루피아 이상 납입자본금 한도를 정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100억 루피아로 상향 조정했다. 위 조항은 업종과 상관없이 6월 2일 이후 설립되는 모든 외국인투자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해서 이는 1개 업종 및 1개 위치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비례해 총 투자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서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식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얄티 및 기타 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환전 송금 제한 사항

○ 실수요증빙제 – 환전거래(통화파생상품 포함)의 경우 중앙은행은 2015년 8부터 루피아 통화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목적으로 증빙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25,000 상당액(송금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증빙제"를 실시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 송금목적 – 인도네시아는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US$ 10,000 초과 송금거래 시 자금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계좌종류, 거래당사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거래목적 등, 예: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 ①자본금, ②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속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 차입금 상환, ⑥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 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 회사 청산 후 잔여금, ⑨ 손해 배상금, ⑩ 인수비, ⑪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도는 i) 저작권, ii) 특허권, iii) 산업디자인권, iv) 상표권, v)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보호제도, vi)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제도로 구분된다. 위 각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그에 의하여 각 제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저작권 분야의 경우, 2014년 다시 한번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저작권 분야는 「2014년 제28호 저작권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권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기존 2000년도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특허권 분야는 「2016년 제13호 특허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위 2016년 특허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산업디자인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1호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허제도는 한국의 특허제도와 전반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의 경우와 달리 실용신안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는 i) 특허(Paten)와 ii) 단순특허(Paten Sederhana)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도네시아 특허법 제2조 b호에 규정된 단순특허의 경우, 한국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제도이다. 옴니버스법 제107조를 통하여 특허법 제3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단순특허의 범위가 기존 규정에 비하여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특허 구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의 구현 의무 형태

특허를 받은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특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특허를 받은 프로세스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특허를 받은 방법, 시스템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인도네시아 특허권 존속기간

인도네시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되고 보호된다. 그리고 위 20년의 존속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한국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인도네시아의 단순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되고 보호되며, 일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상 '라이선스(한국법상 실시권과 유사)' 란 독점 및 비독점을 불문하고 특허권자가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특허를 사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36개월 이내에 '특허의 구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가 신청자에게 사용되도록 부여되는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인도네시아 특허법상 '강제 라이선스')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i) 특허권자가 공익에 반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특허를 행사하거나 ii) 여전히 보호 중인 다른 사용자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특허를 개발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강제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로서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내에서 36개월 이내에 취득한 특허를 '구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특허가 강제 라이선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는 권한 없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에 제기되어야 한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Kasasi)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tara)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업법원은 i) 특허 및 특허 관련 권리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 등의 반입 방지, ii) 특허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iii)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재판이 공개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양 당사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판사는 재량으로 심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타인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임대, 양도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와 같은 특허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1,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특허(실용신안)와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침해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잠정결정 이외에도 특허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빠른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침해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위반행위 자료 등은 향후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상표권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기존 2000년도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상표권 분야는 「2016년 제20호 상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위 2016년 상표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집적회로 배치설계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2호 집적회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2000 TENTANG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영업비밀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0호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상표가 본질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다음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 신청이 거부된다.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

1. 다른 당사자의 소유이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이전에 등록을 요청한 상표
2.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잘 알려진 상표
3.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이 아닌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잘 알려진 상표
4.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시
5. 권한있는 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명인의 이름, 사진 또는 법인의 이름 또는 약어를 구성하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6. 관할 기관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국제 기관의 이름 또는 이름 약어, 깃발, 상징 또는 상징을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7. 관할 기관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 서명 또는 인영과 유사한 경우

다음의 7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등록은 불가능하다.

상표등록 불가능 사유

1. 국가 이념, 법규, 종교 윤리, 도덕 또는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2. 등록 신청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다거나 또는 단순히 그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
3. 등록이 신청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 품질, 유형, 크기,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4. 상표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혜택 또는 효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5. 식별력이 없는 경우
6. 공공재산의 일반적인 이름 및/또는 상징인 경우
7. 상표에 기능적인 형태를 포함시키는 경우(옴니버스법 제정으로 신설)

인도네시아 상표권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위 10년이 경과한 경우, 상표권은 다시 10년의 기간으로 그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장을 위해서는 첫 10년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연장신청 비용 이외에 지연가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i)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ii) 위법한 상표 사용과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은 상업법원에 제기된다. 또한, 상표권 침해시, 위법상 상표 사용과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본안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행위 금지 청구권에 기초하여 본안 소송의 제기 이후 또는 그와 동시에 한국의 보전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금지를 구하는 인도네시아 민사소송제도상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법원의 판사에게 i) 적법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중지, ii) 배포의 중지, iii) 거래를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유지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표권의 침해를 입은 상표권자는 충분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tara)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업법원은 i)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거래계에 진입되는 것을 방지, ii) 상표 위반과 관련된 증거 보관 iii) 상표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iv)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동일한 상표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보건 및/또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치사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000,000 루피아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특허의 경우와 달리,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그로 인하여 보건 및/또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치사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다(친고죄, 상표법 제103조).



카자흐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구분(단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만 명)		1,792	1,816	1,863	1,888	1,913	1,977	2,033	-
GDP	총액(억 달러)	1,668	1,793	1,817	1,711	1,971	2,255	2,626	-
	성장률(%)	4.1	4.1	4.5	-2.6	4.0	3.3	5.1	-
	1인당 GDP	9,308	9,873	9,753	9,063	10,303	11,406	12,919	-
인플레이션(%)		7.0	5.3	5.4	7.4	8.4	20.3	9.8	8.6
평균환율(텡게/달러)		326.00	344.71	382.75	413.36	426.04	460.85	456.24	469.11
기준금리(%)		10.25	9.25	9.25	9.00	9.75	16.75	15.75	15.25
무역(억 달러)	교역량	781	948	978	865	1,017	1,355	1,395	1,169
	수출	485	611	581	475	603	846	791	685
	수입	296	336	397	389	414	509	604	484
	무역수지	189	275	184	86	189	337	187	201
총외채(억 달러)		1,675	1,603	1,595	1,640	1,641	1,612	1,636	1,658
외국인 직접투자(억 달러)		210	243	244	172	238	282	236	127
실업률(%)		4.9	4.9	4.8	4.9	4.9	4.9	4.7	-
외환보유고(억 달러) (국가기금)		310 (583)	309 (580)	290 (618)	356 (587)	345 (553)	351 (557)	359 (600)	442 (609)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World Bank, EIU(2024.12월), IMF

(주) 자료 대상기간 : 무역액('24년 10월말), 총외채·외국인직접투자('24년 9월말), 인플레이션·평균환율·기준금리·실업률·외환보유고('24년 12월말)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기 변동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2019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원 개발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제조업 육성 및 산업 다각화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과 석유 생산량 지속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유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 세계 및 국내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2.6% 역성장 하였으나, 2021년 유가 상승 및 세계 경제 활동의 정상화로 4.0% 성장하였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3.3%로 낮아졌지만, 2023년에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견실한 성장을 기반으로 5.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24년 9월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4.5%로 다소 둔화될 전망인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급효과와 석유 생산 정체에 따른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

카자흐스탄 통화인 텡게화의 가치는 주요 교역 파트너인 러시아의 루블화 추이, 원자재 결제통화인 달러화 추이에 따른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 수 년간 통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 경제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4년 2월 텡게화에 대한 20%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나,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5년 8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6년 1월까지 텡게화 가치가 약 50% 추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2016년 9월 이후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통화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텡게 환율이 차츰 안정되었다. 그러나 2018~2019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른 루블화 평가절하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텡게화는 2019년 달러당 평균 382.75텡게까지 가치가 추락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달러당 413.36텡게로 추가 하락했고, 2021년에는 426.04텡게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460.85텡게로 가치가 급락했으나, 2023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수지 흑자 지속과 정부의 통화정책 등으로 456.24 텡게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달러화 강세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텡게화는 여타 신흥국 통화와 마찬가지로 달러화 대비 지속적인 평가절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2024년 12월 텡게화 환율은 달러당 519.74텡게(연평균 469.11텡게)를 기록하였다.

산업발전정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2014년 제1차 산업혁신개발계획, 2015~2019년 제2차 산업혁신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산업다변화에 기반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체결된 제3차 2020~2025년 산업혁신개발계획을 통해 기초산업, 제조업 기술개발 및 디지털화 등으로 국내 산업역량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장기발전 전략 「카자흐스탄 2050」을 통해 교육, 보건 개선,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저유가 기조,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2015~2019년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누를리 졸'(Nurly Zhol, 미래의 길), 5대 제도 개혁, 국가계획 100대 조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년 6월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산업 다변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지방 균형 발전 등 기존 초대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7개의 기본원칙(①이익과 책임의 공정한 배분, ②민간기업의 주도적 역할, ③공정한 경쟁과 고용시장 개방, ④생산력 증대 및 기술적 효율성 증대, ⑤인적자원 개발, ⑥녹색화(Greening) 경제, ⑦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장기적 국가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실행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회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9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은 2023년 대비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5배 하락하고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핀테크 사업 육성, 조세제도의 체계적 최적화,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중소기업 비중을 현재 7%에서 15%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해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원자력 발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10월 6일 실시한 카자흐스탄 원자력 발전소 도입에 관한 국민 투표에서는 70%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원전건설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건설 선도국들의 참여하에 원전건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교역

2010년 1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CU)이 출범했으며, 2012년 1월 단일경제구역(CES) 조성,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어 2015년 1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 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 발전, 비즈니스, 투자 기회 확대, 노동력 공급 등 가입국간 경제 통상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2024년 말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대러제재가 확대·심화되면서 그간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었던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2위로 밀려났다.

한-카자흐스탄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3.2억 달러, 2014년에는 1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 경기 침체로 2015년 7.6억 달러, 2016년 6.4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양국 간 교역량이 다시 반등하였고, 2019년 4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35]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35)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산 원유수입이 급증, 2018년부터 우리 기업의 텡기즈 유전설비 수주에 따른 화학설비용 기계·부품류의 수출에 따른 영향

사태 등 카자흐스탄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30.9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32.1억 달러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카자흐산 원유의 국내 수입 확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65.2억 달러로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4년의 경우 11월 기준 연간 교역액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출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4억 달러 감소한 33.3억 달러에 그쳤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40위 교역국(33.3억 불)은 카자흐스탄이다.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포함), 화장품, 기타 기계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합금철, 우라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카자흐스탄 교역현황

구분 (억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11월 (누계)
교역규모	15.3 (135.7)	21.6 (41.1)	42.2 (95.3)	30.9 (-26.8)	32.1 (3.9)	65.2 (103.1)	55.4 (-15.0)	33.3 (-36.8)
수출	5.3 (46.1)	8.0 (50.9)	26.6 (233.0)	20.0 (-24.8)	7.7 (-61.5)	16.6 (115.2)	19.7 (18.9)	20.8 (14.5)
수입	10.0 (249.9)	13.6 (36)	15.6 (14.6)	10.9 (-30.2)	24.4 (124.0)	48.7 (99.4)	35.7 (-26.7)	12.5 (-64.0)
무역수지	-4.7	-5.6	11.0	9.1	-16.7	-32.1	-16.0	8.3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24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카자흐 누적 투자금액(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은 약 99억 달러(신고금액 104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우리 기업의 대카자흐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롯데제과의 라핫사 인수 및 생산공장 설립, 신한은행과 BNK파이낸스의 카자흐스탄 법인 설립, 한국석유공사의 유전 개발, SK건설 알마티 민자도로 건설, KT&G 담배공장 건설, 기아차 법인 설립 등이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 절차를 걸쳐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카자흐스탄 재무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금액, 적용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4년 형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동일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수입품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뉜다. 수입 관세는 HS 코드별로 다르다.[36] 다만,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되며,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재가공하여 수입 후 2년 이내 타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류, 담배, 휘발유 및 경유,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 등의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 외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기재된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수입 제품의 서류상 기재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입 제품의 고정단위를 기초로 하여 부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이다. 수출관세율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하는 것에 반해, 수입관세율은 관세동맹의 관세위원회에서 정한다.

36) 관세율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홈페이지(영문)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소득위원회(노어) : http://kgd.gov.kz/tnved/ 에서 알아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경 통과 시 수입품의 위험등급 분류 검사가 진행되며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서류 심사만으로 통관될 수 있으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뤄지며, 또는 국경 세관 서류 심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가 이뤄진다. 도착지 수입 통관 시, 세관 신고서는 카자흐스탄에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간이 통관 신고 또는 보세창고 입고 시, 48시간 이내에 세관 신고 접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preliminary declaration)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 및 세금은 세관 신고서 제출 시 또는 제출 전에 납부해야 한다.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하며 통관 신고, 서류 및 상품의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2009년 11월 27일 3국 관세법에 서명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부로 관세동맹을 출범시켰다. 동 관세동맹 출범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통합관세지역 출범: 특별한 보호조치,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국간에 관세 부과 및 경제적 제재가 없다.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는 무관세이며, 어떠한 경제적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간편한 세관 수속이 제공된다.
- 관세 관련 이슈에 관한 통합규정 적용: 역외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관세기관과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 통합세관절차, 품목 분류, 관세가치 평가 및 상품원산지 결정 등에 관한 통합규정이 적용된다.
- 통합관세율 적용
- 통합비관세규정[37] 적용

37) 통합비관세규정에는 수출입금지, 수출입 수량제한, 독점적 수출입권, 허가 기반 수출입절차 등 일련의 규제 수단이 포함된다.

수입부과금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별한 수입부과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없다. 다만, 신고 건당 2만 텡게의 통관수수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세관 보세창고 보관료 등이 부과할 수 있다.

통관 절차상의 규정

전술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과 차량 중 위험관리 시스템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관 검사가 이뤄진다.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통관 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통관 시스템이 전자 통관 신고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관중개인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국내 소비되는 완제품 등 1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통관 시 신고서에 작성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품의 거래를 확인하는 서류(거래용이 아닌 경우 상품을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운송 서류
- 세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
- 내부 시장 보호조치, 금지 및 제한 준수 여부 확인 서류
- 원산지 증명서
- 상품의 분류를 확인하는 서류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 또는 보증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납부 기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 신고된 과세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과세 가격 산출 방식 포함)
- 운송 차량의 국적 및 등록 확인 서류(차량으로 상품 운송 시)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지위 부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 지위는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에 의거 AEO 업체 인정은 2023년 12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다.

AEO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카자흐스탄 관세법 제63조, 총 7개의 조건)

- ○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 ○ 2년 이상 대외 무역 활동 수행
- ○ 관세 및 세금 채무 부재
- ○ 조세 채무 부재
- ○ 법적 기록(체납 및 벌금 등) 부재
- ○ 행정 제재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 ○ 자동화된 물품 회계 시스템 보유(세관 신고된 데이터와 사업 거래 수행 데이터를 비교)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 EAEU 신규 관세법에 따라 AEO에 관한 별도의 법령 조항이 신설되었다. 동 관세법에서는 AEO 공인 취득 조건을 개선하였다. 1종 AEO 공인은 선보증금 1백만 유로를 납입하여야 하며, 1종 자격 취득 후 규정을 준수할 경우 예치금이 연차별로 낮아지며 6년 차에는 15만 유로까지 낮아진다. 상기 조건에 부합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관세당국에 의하여

무작위 세관검사가 실시되며, 동 검사 일환으로 국가기관(세무당국, 검찰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한다.

AEO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인은 관세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AEO 인증서 발급 신청서
-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증 사본
- ○ 관세 및 세금지불 일반보증 확인서류(금액: 1백만 유로, 기간: 1년 이상)

한편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여 한 국가에서의 AEO 공인을 이미 받은 기업은 상대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규정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수입 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제출이 명시된 경우
- 세관 당국이 비관세 대우를 받는 국가로부터의 물품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산지의 기준은 단일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상당히 또는 충분히 처리된 국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가 이뤄진 국가를 상품의 원산지로 한다.

- 상품 처리결과로 상품의 HS코드 4자리 중 한 자리가 변경된 경우(세번 변경 기준)
- 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협정 당사국 내에서 재료 사용과 생산이 수행되는 특정한 누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누적기준)
- 최종상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부가가치 기준)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입품은 물품 가치가 1,5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무역구제조치 대상품목인 경우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는 각 개별 무역 협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외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온라인 원산지증명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

○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 전화 : +7-800-080-8010
  - 홈페이지 : https://atameken.kz

무역구제조치

반덤핑 조치는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 덤핑에 의해 피해를 받는 자의 제소에 따라 당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덤핑행위의 존재 여부,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여부,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판정 후 이를 기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 정상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 부과,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상계관세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다.

EAEU 회원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무역구제조치는 EAEU 차원에서 통합적

으로 운영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배타적 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EAEU 협정이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EEC 내 국내시장보호국(DIMD : Department for Internal Market Defence)가 조사를 담당하며 동일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복수의 무역구제조치의 동시적인 조사 진행과 조치의 병행 적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2017년 1월부터 2024년 6월 기간 동안 총 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와 45건의 반덤핑 조사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반덤핑 절차의 경우 17건의 신규조사, 10건의 잠정재심, 18건의 일몰재심이 개시되었다. 그 중에서 신규조사를 통해 1건의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와 15건의 확정 반덤핑 조치가 부과되었으며, 일몰재심의 경우 모든 건에서 기존 반덤핑 조치가 지속되었다.

2024년 6월 기준 발효 중인 무역구제조치는 총 25건으로 2017년 1월 17건 대비 증가하였다. 주요 대상품목은 금속/철강(그래파이트 전극, 철강관, 강철앵글 등), 화학제품(멜라민, 제초제), 자동차부품(알루미늄휠, 타이어), 가전/전기제품(전기주전자, 전자레인지) 등이다. 조치대상국으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으며 우크라이나 7건, 인도 2건, 조지아/EU/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각 1건 등 순이다.

수출입 규제

수출입 관련 국제협정과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교역물품에 대한 수출입 쿼터 또는 수출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금지 품목은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스포츠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Red

Book에 등록된 동식물, 마약류, 향정신의약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내부적으로 에너지·자원 및 식량 등 일부 수급 불안정 품목이나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수출을 금지하기도 한다.

수입제한 품목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 전쟁·테러·폭력·인종차별 내용이 포함된 자료, 음란물, 토양 및 토양이 포함된 식물, 식물 질병·해충·감염제품 등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라면 3종과 빵 믹스 1종 등 총 4종의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금지제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EAEU 차원의 통일된 금지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2024년 6월 기준 EAEU의 단일목록(Single List)에는 7개의 수입금지품목과 12개의 비자동적(non-automatic) 수입허가대상기타 관행상 제약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주로 국제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카자흐스탄은 EAEU 규율 내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수입금지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2024년에 철강 및 금속(합금강·고철 등), 밀, 가축에 대한 자체적 임시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들 조치는 6개월~1년의 한시적 기간 동안 적용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면허를 보유한 특정 업체에 대하여 수입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

카자흐스탄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적합성 평가, 즉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법률은 불량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 수입업자나 제조업자가 필요한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품 인증을 위한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표

준을 따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은 EAEU의 통합인증제도인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시스템을 통해 인증되고 있다. TRCU 인증은 EA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에서 모두 동일하게 통용된다.

TRCU 인증은 적합성 인증(CoC : Certificate of Conformity) 및 적합성 선언(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으로 나뉜다. CoC는 제품이 기술 규격에 부합하며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이며, DoC는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보증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인증이다. 두 인증 모두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되며, TRCU 인증 제도가 규정하는 제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CoC 또는 DoC 둘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둘 다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제품 종류에 따라 TRCU 인증 외에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화재안전 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민건강의 문제와 직결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TRCU의 기술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별도의 국가 인증인 GOST-K를 받아야 한다. GOST-K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적합성 인증으로 카자흐스탄에서만 유효한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 및 국가 표준에 기반하여 발급된다.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카자흐스탄 필수 인증 대상 제품 통합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대체로 TRCU 인증을 통해 대부분 제품의 인증이 가능하므로,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EAC는 TRCU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식 인증 마크이다.[38] EAC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EAEU 회원국 전역에서 유통될 수 있다. 즉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TRCU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제품이 EAEU 기술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하게 되며, 인증을 받으면 EAC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38)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TRCU인증을 'EAC인증'으로 지칭하여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통상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이다.

TRCU 인증은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타 EAEU 회원국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타당성 검토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HS품목분류자료, 제품설명서, 기존 시험성적서, 기존 기술인증서, 도면(해당시), 기술문서(해당시) 등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에는 러시아어 공증이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지나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히, 의약품 등 품목에 있어서는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이다. 의료기기 등록인증은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TRCU 인증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현지 인증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인증서 발급 기관

카자흐스탄 기술 인증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기업은 다시 역할에 따라 시험소·인증기관과 인증기관으로 구분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기업 :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 및 역학감독위원회의 국가 전문 센터는 국민의 위생 및 역학적 안전을 보장하는 분야에서 인증 업무를 관할한다.

◎ 위생검역소(National Center of Expertise)

- 아스타나(Republican state enterprise "National Center of Expertise" Astana City Branch)

- 주소: 46 Jeltoksan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전화: +7-7172-315-409
- 팩스: +7-7172-315-409
- 이메일: nur-sultan@nce.kz

○ 알마티(Almalty City Branch)
- 주소: 3 Zhibek Zholy str. Almaty, 050026, Kazakhstan
- 전화: +7-727-382-3565 / +7-727-258-85-55
- 홈페이지 : almaty@nce.kz
- 이메일: nce_almaty@mail.ru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민간기업 :

주식회사 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은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표준화, 계측, 제품 및 서비스 인증, 관리 시스템 인증, 시험, 실험실 간 비교 시험, 자동차 기술 검사, 원산지 인증, 보석류 시험 및 품질 인증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험소·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 아스타나 지사(Astana Branch)
- 주소: 28/1 Auezov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홈페이지 : www.naceks.kz
- 전화: +7-7172-695-355(ext 1505/1103)
- 팩스: +7-7172-533-655
- 이메일: naceks@naceks.kz

○ 알마티 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727-303-9191
- 팩스: +7-727-303-9145
-이메일:almaty@naceks.kz, naceksalmfil@mail.ru

◎ Certification Center LLP
- 전화 : +7-7172-25-10-38
- 홈페이지 : www.centercert.kz
- 이메일 : centercert@mail.ru

◎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 전화 : +7-727-274-9392
- 홈페이지 : www.intercert.kz
- 이메일 : intercert@standard.kz / tuganov.s@gs1.kz

◎ KazExpoAudit LLP
- 전화 : +7-727-390-9072(Almaty)
- 홈페이지 : certification.kz
- 이메일 : info@kazexpoaudit.kz

◎ Almaty Certification Bureau LLP
- 전화 : +7-727-224-7553(Almaty)
- 홈페이지 : abc-cert.kz
- 이메일 : info@abc-cert.kz

환경 관련 규제

카자흐스탄은 2021년 7월 환경법을 시행하였다. 동 환경법은 7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오염자 부담원칙'이다. 신규 환경법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 가능 시설을 카테고리 1~4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환경 규제를 받게 된다. 정유소, 300MW 이상 화력발전소, 500톤 이상 석탄설비, 광산업체 등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카테고리 1로 분류되고, 중소규모 석유 및 석탄업체, 자동차 공장 등은 카테고리 2, 금속가공 또는 여타 종류의 제조공장 등은 카테고리 3, 이외에는 카테고리 4에 해당 한다.

2025년부터는 카테고리 1, 즉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에 대해 통합 환경 허가(IEP :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가 적용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적 가용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제도가 도입된다. BAT로 전환한 기업은 탄소배출권 구입의 무가 면제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상위 50대 대기업은 2025년부터 배출권 부담금이 2배, 2028년부터 3년마다 4~8배씩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여타 카테고리 1 기업에 대해서도 배출권 부담금이 2031년부터 2배, 2034년부터 4배 인상된다.

카테고리 2 기업, 즉 기업 활동이 환경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허가(environmental impact permit)를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카테고리 3 기업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내에서 영업 활동 시 기업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 수행, 환경 배출량 기록 유지, 환경 배출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가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5월 Local Contents(국산화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달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개정하였으며, 국산화율을 상품 10%, 서비스 및 건설 5%로 규정함으로서 상품, 서비스 및 노동력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 국산화 비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게 공히 적용되며, 비율측정은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에서 인정하는 specific formula에 의해 계산된다. 즉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입찰 전에 동 국산화 비율을 동 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50%인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 규정되어 정부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최종상품을 생산하며, △현지 노동자 고용률이 85%를 초과할 경우 'National Producer'로 인정되어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참여가 용이치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로 현지에서 유한책임회사(LTD)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12월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을 포함한 관련 법류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정부조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권 연장 불허, 계약파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만,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였으며, 2016년 10월에는 WTO 정부조달위원회(WTO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후 2019년 12월 정부조달위원회 가입을 위한 정부조달시장 양허안 제출을 포함한 가입신청절차를 개시한 바, 정부조달 분야 진출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Local Contents 관련 규제를 지속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 바꿔 말하면 아직은 카자흐스탄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달시장은 WTO회원국 일반에게 대외개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겠다.

지식재산권 보호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992년 특허법, 1993년 상표·상호·원산지표기 관련 법, 1995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이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해 상표권은 관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순간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지리적 표시(GI)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제3자가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2024년 지식재산권 로드맵이 채택되어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 설립, 발명 상업화 교육 등을 통해 지재권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 회원국이며 산업재산권 협약 국제선언(199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91년),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91년),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2010년), 특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 다수의 지재권 분야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법무부는 관세청, 경찰, 법원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법무부 지식재산권위원회(IPRC) 산하 국립지식재산권연구소(NIIP)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NIIP에 등록하여 권한을 획득[39]할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의 경우 과학,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되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에 걸쳐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따라 외국인은 지재권 보호 및 집행, 분쟁해결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거의 유사한 상호 및 CI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39) 카자흐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자우대 원칙에 따라 NIIP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된다.

경우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은 관계로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장벽

카자흐스탄의 경우, 운송서비스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양국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시된다.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의거하여 언론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를 비롯한 건축설계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현지 법인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현지 건설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 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1등급: 100m 이상 건축물, 플랜트(10년 이상 실적)
- 2등급: 책임수준 '중'에 해당하는 주거, 사회공용, 생산-농업분야 건물(3등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적)
- 3등급: 개인주택 및 하도급 공사

투자 장벽

투자진출 규제 분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관련 업종에 대한 법령을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분야인 석유 개발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주변 지역 해상 광구에 대한 외국인지분 참여는 50% 미만까지 허용된다[40]. 육상 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제한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나 석유 관련 정부령에 의하면 석유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적 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참여지분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국적 회사의 지분 비율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다.

특히 2010년 6월 25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립국산화진흥원(National Agency for Local Content Development)을 설립하여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향을 감독하였다. 현재에는 KazIndustry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 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이 석유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약 1%(광권마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를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생산 중인 광산들이 주로 구소련 시기에 탐사된 광산들로서 이들 광산들이 노후되어 매장량이 고갈 추세임에 따라 신규 탐사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신규 광산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광업법 개정, 투자활동 보장 및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한 투자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광업분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 직후 기술과 자금력 부족으로 서방 주요 자원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2000년대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여 상류 부문 사업환경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9년 세법, 2010년 지하

40) 해상 석유생산 및 분배에 관한 계약 관련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자원법 개정을 통해 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를 폐지하고 조광계약을 강제[41]하는 한편, 1990년대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PSA 계약을 재검토하였다. 가스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와 원유 생산시 함께 산출되는 수반가스에 대한 정부의 선취권을 골자로 2012년 1월 가스 및 가스공급법을 도입하였다. 현지 조달률에 대해서는 2009년 local content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어 채굴권 연장, 계약전환, 의무작업량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해외 운영권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초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원유에 대한 수출세[42]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7월부터 톤당 $20의 원유수출세를 다시 부과하고 2012년은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톤, 2015년 $60/톤이었으며, 2016년부터 국제유가와 연동된 산정공식에 따라 세율이 결정[43]되고 있다.[44]

2024년 3월 29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 연료 공급 안정성과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 디젤 등 특정 석유제품의 도로를 통한 수출 금지를 6개월간 연장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연료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주변국으로의 불법 연료 밀수 통제를 위하여 수출통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판매가격 통제도 병행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 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해 2020년 12월 16일부터 외국계 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카자

41) 구소련 독립 직후 카자흐스탄은 텡기즈, 카샤간 유전 등 주요 원유 매장지 개발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생산물을 정부와 투자자가 분배하는 PSA 방식을 도입하여 세금 혜택, 생산 안정화 조항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왔으나 이후 생산물 분배 대신 세금, 로열티 중심의 조광계약 체제로 전환되어 2009년 이후 신규 PSA 계약 중단. 이는 국가 경제력 강화, 자원 국유화 및 현지화 기조 강화, 정부의 통제력과 엄격한 규제 확대 필요성에 기인함(일례로 KazMunayGas는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최소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원 분야 해외투자에 대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42) 원유 톤당 60달러, 경질/중질 석유제품 톤당 169달러, 기타 석유제품(윤활유 등) 차등 세율. 다만, 과학연구용, 항공연료용, 인도적 지원용 석유제품은 수출세 면제임.

43) 배럴당 25달러 이하 : 무세
배럴당 25~105달러 : 시장가격 x 보정계수
배럴당 105달러 초과 : 115~236달러/톤 차등 적용

44) 최근 원유 수출세 동향
2023년 9월 : 82달러/톤, 2023년 12월 : 86달러/톤, 2024년 10월 : 77달러/톤, 2024년 11월 : 76달러/톤

흐스탄에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2008년 2월 현지에 은행설립 예비인가를 취득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7년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2008년 3월 현지 은행인 Bank Center Credit의 지분 30.5%를 인수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여 41.93%(9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자본 확충 요구 및 은행권의 구조조정 움직임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2017년 3월 동 지분 전부를 매각한 후 철수하였다. 한편 2024년 현재 소액금융 부문에 활동중인 BKN파이낸스가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된 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은행업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KN파이낸스는 2024년 6월 12일 은행업 예비인가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중 은행업 승인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산업용 또는 비산업용 건설 목적의 토지와 주거용 건물 부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이 농업용, 조림용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국경지대의 토지,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역시 소유할 수 없다. 또한, 토지 임차권(사용권)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인의 경우 영구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다.[45]

한편 외국인은 영주권자에 한해서 주택 및 기타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재정능력 입증이 요구된다. 상업용 또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45) 2015년 11월 법 개정에 의하여 농업 및 농업 가공업 등 목적을 위한 장기 임차권의 임차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되었다(내국인은 49년까지 가능). 그러나, 동 발표 이후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차기간 연장이 향후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에 따른 우려를 불러일으켜,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2016년 4월부터 주요 지방 도시에서 발생하였고, 정부는 2016년 8월 개정 토지법 시행을 2021년 8월까지 5년간 유예한 후 2021년에 외국인에게 농업용 부지제공(소유, 임대)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해외투자 유치 및 보호

한편, 2013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6년부터는 각종 인허가 취득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Window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및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 투자청인 Kazakh Invest에서 "One-stop Shop"을 운영 중이며, 외교부, 공공행정반부패청, 투자개발부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Protecting Business and Investment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 Kazakh Invest One-stop shop
- 연락처 : +7 7172 620 620
- 홈페이지 : invest.gov.kz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8년 7월 두바이를 모델로 한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를 공식적으로 개설하였고, 2019년 4월에는 AIFC를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투자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 노동법의 유연한 적용,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46] 및 국제증권거래소(AIX)[47]와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거래 통화의 유연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21년 9월 세계거래소 연맹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AIX 증권거래소를 통해 조달된 자본은 79억 달러이며, 2023년에는 3억 690만 달러였다. AIX의 중앙기탁소에 70개 국가에서 1,700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46) AIFC 법원은 법원은 1심 법원, 항소법원, 소액사건(15만 달러 이하) 법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영국법에 기반한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된다. AIFC 법원은 AIFC 참여기관 간의 분쟁, AIFC 내에서 발생한 상업적 분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AIFC 법원을 관할로 지정한 상사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국내법원이므로 최종 판결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직접 집행될 수 있다.

47) AIX는 기존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KASE: Kazakhstan Stock Exchange)와는 별개의 국제증권거래소 개념임. AIX는 영국 보통법 기반의 국제 표준 거래 시스템과 규정 적용,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허용, 조세혜택과 규제완화 등에서 KASE와 차이가 있음.

노동 허가 및 비자 취득

카자흐스탄은 2011년 2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대비 현지인 고용비율을 등급[48]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1년 7월 1일까지는 상위직(1·2 카테고리) 50%, 하위직(3·4 카테고리) 30%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위직 70%, 하위직 90%를 최소 카자흐스탄 현지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체, 정부기관 및 공기업, 자영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카자흐스탄과 노동이주협정[49]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외국기업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아웃소싱 계약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직원도 비율 계산에 포함된다.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해당 외국인 인력 초청(고용)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인력은 해당 허가를 근거로 취업비자를 취득하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 노동법상 고용 시 외국인 인력보다 현지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특정 직업 또는 고급인력 부재 등으로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실제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된다.

최근의 규정에 따르면, 비자의 경우 카자흐스탄 전체에 대해 유효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허가는 근로자가 체류할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한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 근무를 시키는 경우 노동허가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2023년 7월 취업허가 규정 개정에 따라 다수 지역(도시)에서 근무 가능한 취업허가 발급이 가능해

48) 1등급(최고 경영자 및 부사장급), 2등급(부서장급 관리자), 3등급(전문인력), 4등급(숙련기술자)

49) CIS국가중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공동시장 국가중 러시아, 아르메니아
여타 국가중 터키, UAE, 영국, 몽골

졌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들에 할당된 쿼터 내에서만 승인이 가능하며 각 지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시 노동법에 의해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기간은 약 2~3개월 소요되며, 사용자가 지방정부 또는 시청에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가정부 등 제외한 직종)는 매년 노동사회보호부에서 국내 노동인력 수요에 따라 결정하는데, 2021년은 0.31%인 29,300명, 2023년은 0.24%인 22,200명, 2024년은 0.23%인 22,000명이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카자흐스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자국 노동시장 보호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2020년 43,000명으로 발표된 쿼터를 29,000명으로 수정하였고, 2023년에는 22,200명으로 낮춘 바 있다.[50]

노동허가 규정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방당국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현지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노동허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채용대상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

한·카자흐스탄 양국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9월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하여 2016년 4월 8일 발효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 내 이동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최장 3년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비자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2년부터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 노동자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 경로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용허가제(EPS) 지정을 위한 정부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50) 연도별 지역별 노동허가 쿼터 변동 관련 2024년의 경우 알마티, 아스타나, 아티라우는 감소, 잠빌, 심켄트, 아크몰라 등은 증가함.

투자 관련 조세 규제

카자흐스탄의 조세 규제는 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재무부 조세위원회 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된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로 삼아 제정되었으므로 이전 조세법보다 형평성과 단순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집행 측면에서는 세부 규정이 미흡하고 불분명하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여전히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세제는 투자 사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재산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함께 해외투자자에 대한 법령상 투자 인센티브, 특별경제구역(SEZ)[51] 또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를 기존 13%에서 12%로 인하했고, 개인소득세도 최고 20%의 차등세율에서 정액세율인 10%로 인하하였다. 사회보장세도 현재의 5~20%에서 5~13%로 인하하였다.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 구조는 분류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 창출 시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를 하는 체제이다. 모든 거주 개인[52]과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배당·이자·로열티 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2009년 발효된 신규 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인세와 비 채굴산업의 조세를 경감하고 채굴산업의 조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1)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 산업별로 특화된 총 14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주요 산업분야로는 석유화학, 물류운송, 금속가공, IT·혁신기술, 관광 등이 있음. 특별경제구역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구역 내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전체 연간 수입의 특정 비율 이상이 구역에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됨.

52) 개인소득세 관련 거주자 여부 판정은 183일 이상 체류자를 거주자로 봄

카자흐스탄의 현재 주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CIT): 20% (내외국법인 동일)
- 부가가치세(VAT): 12%
- 사회보장세(social tax): 11%
- 개인소득세(PIT): 10% (거주·비거주자 동일)
- 재산세(property tax): 법인의 경우 1.5%, 개인의 경우 0.5%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 (비영리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목적에 따라 차등
- 소비세(excise duties): 품목별 및 구입량에 따라 차등
- 운송세: 엔진 배기량별 차등
- 관세: 평균 10.6% (품목에 따라 다름)

카자흐스탄 특별경제구역(SEZ)의 경우 법인세 100% 감면, 부가가치세 0% 적용, 토지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투자진출의 경우 금융서비스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재산세 및 토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대한 법인 및 납세자 등록 및 일정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투자 규모에 따라서 혜택 부여 기간이 차등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광물 채굴업, 도박 및 주류 등 특정 업종의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처벌법은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법 위반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로 여겨지는 세법 위반행위는 과세표준을 2,000 MCI[53](2025년 기준 1 MCI = 3,932텡게)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

53) MCI(Monthly Calculation Index)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지표로서, 최저임금, 기초연금, 표준생계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행정처분에 관하여 매년 변동하는 다양한 가격 수준을 번거로운 법령 개정 없이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활용됨. 카자흐스탄 정부는 예산법에 의거하여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되는 MCI를 산정하여 공표하며, 산정된 MCI에 의해 사회보장급여 계산, 의무납부금 산정, 벌금 및 제세금 계산 등이 이뤄지고 있음.

고용 관련 납부금

카자흐스탄은 국내 모든 병원에서 공공 의료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진료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54] 의무 건강보험제도(MSHI: Mandatory Social Health Insurance))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사회 의료보험기금(Social Medical Insurance Fund)이 설치되었고, 고용주와 고용인은 매월 고용인 급여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상한선 있음). 2024년 기준 고용인은 월 급여의 2%(최대 17,000텡게), 고용주는 3%(최대 25,500텡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11%의 사회세(social tax)에 더하여 5%의 사회보험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에도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의 고용연금과 관련하여 고용인은 10%(최대 425,000텡게)의 의무연금기여금(OPC: Obligatory Pension Contributions), 고용주는 5%의 고용주 의무연금기여금(ECPC: Employer's Compulsory Pension Contributions)을 납부해야 한다. 이상의 모든 납부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경쟁정책 및 독점규제

카자흐스탄의 경쟁정책을 관할하는 법제도는 2016년 발효된 기업가법(Entrepreneurial Code) 제4장 경제 경쟁(Economic Competition)과 EAEU 협정, 기타 다수의 대통령령이 있다.

경쟁보호 및 발전청(이하 '경쟁청')은 대통령실 직속으로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된 행정청이다. 경쟁청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국영기업의 설립 허가, 신규법령의 경쟁 영향평가, 시장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지되는 반경쟁 관행에는 카르텔 형성, 수직적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적 경쟁 행위를 포함하며, 특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경쟁청의

54) 카자흐스탄 보건부 홈페이지(www.mz.gov.kz)

승인이 요구된다.

EAEU 협정의 경쟁 규정은 반경쟁 행위가 EAEU 역내에서 국경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이 회원국인 EAEU와 중국간 또는 베트남과 체결된 무역협정에는 경쟁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가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지위는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초과인 경우, 혹은 3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다만 후술하는 자연독점 산업의 경우 제외된다.

또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한 분야에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되어 있다. '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국내산 상품임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 마크의 제작,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무늬·그림·인장 등의 제조는 국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18년 제정된 자연독점법(Law on Natural Monopolies)에 따르면 에너지 및 공공서비스, 철도 및 해상 운송, 통신 등 제반 분야[55]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가격통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15개 범주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연독점 분야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은 신규 기업들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행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거나, 경찰 조사 실시, 통관지연, 자료등록에 대한 부당한 제한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5) 자연독점 인정분야 :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가스 및 가스응축물의 파이프라인 운송, 전력 및 열에너지의 송배전, 철도 운영, 항공관제, 항만 및 공항서비스, 지역통신망 서비스, 상하수도 서비스, 우편서비스

디지털 무역 장벽

국경간 디지털 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있어 카자흐스탄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동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 법제라 할 수 있는 EU의 GDPR[56]과 비교하여 여러 상이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권리, 합법성, 기밀성, 권리 평등, 국가 안보의 원칙을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GDPR이 채택한 개인정보 보유 목적에 대한 제한, 보유 데이터의 최소화, 보관기간 제한 등 중요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실제 기업들의 운영 관행을 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개인정보주체에게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과 관련해서도 헌법질서나 공중보건과 같은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이용자 정보 유출에 따른 데이터 보호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방첩,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GDPR의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카자흐스탄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약 1만 5천 유로에 불과하여 충분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법제상의 문제점들은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무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향후 디지털 무역에 있어 EU 등 선진국들과의 제도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56)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2018년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로 디지털 시대에 맞춘 포괄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제공함.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GDPR에 맞춰 입법하는 추세이며, 이는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있어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14년 한-카자흐스탄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 협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은 카자흐스탄공화국에 1회 최대 30일간(총 180일 기간 내 최대 60일) 무사증 체류를 할 수 있다. 단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체류 예정인 경우,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무비자 방문 후 부득이하게 30일 이상 체류 필요시, 카자흐스탄 내무부(이민국)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후 내무부 심사를 거쳐 최대 30일까지 단수 비자(사업)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아닌 일반 방문(관광 포함) 목적으로 30일 이상 체류 필요시, 주한 카자흐스탄공화국 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A. 사증 신청 기본서류

- 여권(예상 비자 만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하며, 최소 2장 이상의 빈 페이지가 있어야 함)
- 여권 사본 1부
- 비자 신청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
- 사진 1매(3.5*4.5, 사진 제출연도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 기타 방문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비자발급 관련 상세 사항은 사전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및 방문 예약 후 진행

B. 사증 발급 소요기간 및 접수·교부 시간

-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소요
- 사증(비자) 접수 시간: 평일 9:30~12:30 /
- 사증(비자) 교부 시간: 평일 16:00~17:00
- 매주 수요일은 휴무, 홈페이지 방문 예약을 통해 사전접수 필수

C. 사증 수수료

- 관광비자 단수 60달러(미), 복수 90달러(미)

- 단수비자(관광·환승비자 외) 80달러(미)
- 복수비자(관광·환승비자 외) 1년 200달러(미), 2년 400달러(미), 3년 600달러(미), 4년 800달러(미), 5년 1,000달러(미)

D. 주한 카자흐스탄공화국 대사관 정보

- 주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53(지번: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48)
- 전화: 02-379-9714, 02-394-9716 (영사과 02-379-8906)
- 전자우편: seoul@mfa.kz

한편, 카자흐스탄에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전면허의 발급과 관련한 조건 및 절차는 단기체류자와 장기체류자로 구분한다.

A. 단기체류자

일시 체류 및 여행객의 경우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함께 공인된 번역본을 소지하면, 카자흐스탄 내에서 운전 및 차량렌트를 할 수 있다.번역 공증은 유효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원본, 수수료 4달러를 지참하여 아스타나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알마티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및'영문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음.

B. 장기체류자

외국인의 경우 카자흐스탄 내무부(이민국)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등록된 경우 운전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고 있어 카자흐스탄 내 교통법규 이해를 확인하는 이론 시험을 통과한 경우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카자흐스탄 면허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내 면허 사용이 의무사항이다.

기타 관행상 제약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고 시장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것이 현지 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통계자료나 법제도에 대한 정보가 일견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급정보의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현지 사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아는데 한계가 있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 협력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위하여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은 현지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카자흐스탄으로의 무역 또는 투자진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 및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29일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약 20년간 협상 끝에 2015년 11월 30일 162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57].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어 세 번째로 WTO에 가입한 사례[58]이다.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 이후 공공조달 분야 시장개방을 위하여 2016년 10월에는 WTO 정부조달위원회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후 2019년 12월 정부조달위원회 가입을 위한 가입신청 절차를

57)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이 늦어진 것은 2009년 6월 카자흐-벨라루스-러시아 3국간 관세동맹(CU) 형태로 가입하겠다는 입장 표명에 따른 협상 중단, 이후 러시아가 관세동맹 형태의 공동가입 포기에 따라 카자흐스탄 가입 협상 재개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과 상품부문(2010년 11월 22일) 및 서비스 부문(2011년 9월 26일)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통상제도, 농업보조금,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접근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지연되었다.

58) 키르기스스탄(1998년 12월 20일 가입, 155번째 회원국), 타지키스탄(2013년 3월 2일, 159번째 회원국), 카자흐스탄(2015년 11월 30일 가입, 162번째 회원국), 우즈베키스탄(1994년 가입신청 및 30년간 가입협상 진행중), 투르크메니스탄(2020년 옵저버 지위 획득)

개시하였고 기존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원국들과 정부조달위원회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59]

한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에는 2010년 1월 관세동맹, 2012년 1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에 이어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5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 EAEU 정식 출범 이후 2015년 1월 아르메니아, 2015년 8월 키르기스스탄이 각각 가입하였다. 2024년 현재 카자흐스탄은 EAEU에 따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2017년 4월 EAEU 5개 회원국은 통합 관세법에 서명하였으며, EAEU 新관세법이 201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주요내용은 기존 회원국간 통용되던 관세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 마련,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전자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WTO의 틀에서 국제적 조건의 최대한 수용 등이다. 2018년에는 전자통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기존의 통관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EAEU의 일원으로서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제3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AEU 차원에서도 카자흐스탄은 EAEU 회원국인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2개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AEU 자체 및 EAEU-베트남 FTA를 제외하면 카자흐스탄이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거나 EAEU 회원국으로서 참여한 무역협정은 그 대상범위가 상품 무역에 한정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2024년 WTO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체결 또는 가입하였으며 발효중인 무역협정은 다음과 같다.

59) WTO 정부조달위원회는 WTO 가입과 별도로 추가 가입이 요구되며, 이 경우 신규가입 희망국은 자국 공공조달시장의 대외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여 기존 가입국들과 조달시장 개방 수준을 협상하여야 함.

- CIS FTA[60] (2012.9.20. 발효)
- EAEU-베트남 FTA (2016.10.5. 발효)
- EAEU-이란 FTA (2019.10.27. 발효)
- EAEU-세르비아 FTA (2021.7.10. 발효)
- 카자흐스탄-세르비아 FTA (2012.1.10. 발효)
-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FTA (1995.11.11. 발효)
-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 FTA (1997.6.26. 발효)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FTA (1998.5.16. 발효)
-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FTA (1998.10.19. 발효)
- 카자흐스탄-조지아 FTA (1999.7.16. 발효)
- 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FTA (2001.12.25. 발효)
- 카자흐스탄-EU EPCA[61] (2020.3.1. 발효)

한편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EAEU 회원국들은 중국과 관세 양허를 포함하지 않는 경제통상협력협정[62]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인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몽골, 파키스탄, 태국, UAE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2016년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FTA 협상 개시를 논의해 오고 있으며 2023년 10월 한-카자흐스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63].

60) Treaty on a FTA between Members of the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2018년 탈퇴)

61) 카자흐스탄-EU-영국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종래 양국간 협정인 Partnership and Agreement(1999)를 대체한 것으로 2015 서명, 2020.3.1. 발효)

62) EAEU-중국 TECA(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전면적인 관세 감축 또는 철폐를 통해 시장 자유화를 실현하는 일반적인 FTA와 달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장벽 완화와 제도 수렴을 추구하며, 체결국간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예: 단일전자서류, 전자인증체계의 상호인정, 위조물품 교역통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2019.10.25. 발효).

63) 한-카자흐스탄 TIPF(Trade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체결국간 무역·투자·산업·에너지·자원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비구속적 합의문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잠재시장과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으로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캄보디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최근 캄보디아 통상환경 및 특징

IMF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2023년 GDP는 309억 달러, 1인당 GDP는 1,844달러이다. 캄보디아의 GDP는 외국의 원조자금,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까지 연 7%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1%를 나타내었다. 코로나 19 방역 성과를 토대로 2021년부터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2021년 3.0%, 2022년 5.2%, 2023년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는 6.0%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달러화 경제 및 외화 유출입에 대한 상대적 자유화로 투자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행정의 불투명성 및 부패,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전성 등은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망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물류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물류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0월 프놈펜-시하누크빌을 잇는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도로가 정식 개통되었으며, 2023년 10월에는 씨엠립 신공항이 개통되었다. 또한 프놈펜 신공항, 시하누크자치항 터미널 등이 건설 중이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는 2022~2030 캄보디아 복합운송 마스터플랜(Intermodal Transport Master Plan)을 통해 캄보디아와 주변국간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물류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캄보디아 투자 진출관련 주요지표

부패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158위/180개국	2023년
기업환경	World Bank	144위/190개국	2020년
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103위/133개국	2024년

캄보디아는 정부정책의 투명성 부족, 법적제도 미흡 등이 투자자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캄보디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202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세계 180개국 중 158위를 기록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으로 행정 처리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관행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처리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행정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다. 법령 측면에서는 다양한 법이 잘 구비된 편이나 세부 시행령 단계로 들어가면 세부지침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법령간 상호 충돌 소지가 발생하고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 미흡은 법령적용의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실무적 오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캄보디아 주요 산업 및 정책

캄보디아의 주요산업은 봉제업(의류. 신발. 가방), 관광, 농업, 건설·부동산 등이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업은 수출·고용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세계 의류·제화 시장에서 10위권 이내의 국가이며, 봉제업은 매년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약 80여 만명을 고용하는 최대 수출 산업이다. 2020년 중 봉제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 EU의 무역특혜제도(EBA: Everything But Arms) 일부 잠정중단(2020.8.12일)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부진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의류업체의 주문 감소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의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봉제업 등 주력 산업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관광업의 경우 코로나19 펜데믹 이전까지는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가 지속되고 앙코르와트, 시아누크빌 등 주요지역에 외국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주요 산업이자 외화획득 수단인 관광업을 부양하기 위해 관광비자 연장, 인터넷 예약제,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최대 항만도시인 시하누크빌에는 도박, 건설 분야에서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으나, 동시에 각종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온라인도박을 중단하였다.

캄보디아의 외국인 방문객수는 2019년 661만 명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31만 명, 2021년에는 17만 명으로 급감하였다가 2022년 228만 명, 2023년 545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2024년 1~8월 중 외국인 방문객수는 429만명으로 2023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시엠립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Visit Siem Reap 2024" 캠페인을 발표하고 아세안-시아누크빌 직항편 확대를 추진하는 등 관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농림어업 국가로서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전체 노동인구의 약 40% 가량이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작물은 쌀, 옥수수, 카사바, 후추, 사탕수수 등이다. 특히 쌀은 캄보디아 대표 수출 작물로 전체 경작지의 70%를 쌀농사에 사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풍부한 농업 자원에도 불구하고 검역, 가공, 물류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문은 2012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까지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부동산가격 하락, 중국의 투자 감소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에 승인된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77억 5천만 달러 규모였으나 2021년 53억 3천만 달러, 2022년 29억 7천만 달러, 2023년 54억 달러로 코로나 19 이후 건설업의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8월 출범한 캄보디아 7대 정부는 2050년까지 고소득국가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최상위 국가전략인 '사각전략'을 '오각전략'으로 확대 개편하고 향후 5년('23년~'28년)에 걸쳐 추진할 '5각 전략(1단계)'을 발표하였다. 오각전략은 ① 인적자원 개발, ② 경제의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③ 민간 및 고용 부분 개발, ④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개발, ⑤ 디지털 경제·사회 개발이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과제는 기존 '사각전략'과 동일하며 다섯 번째 '디지털 경제·사회 개발'은 신설된 과제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오각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개발전략(NSDP, 2024~2028)을 마련 중이다. 2021년 10월에는 신규 투자유치 및 기존 기업의 사업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신투자법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가 선정한 투자우대 18개 분야에 대해서는 최장 9년 동안 세금 우대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투자법이 발효된지 약 2년 후인 2023년 6월 캄보디아 정부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시행령에는 투자 프로젝트 등록에 대한 세부 절차, 투자 인센티브 유형 규정, 적격 투자 프로젝트(QIP)로 등록할 수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적격 투자 프로젝트 세금 및 관세 인센티브 적용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 의하면 2024년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는 55.6로 2023년 대비 0.9점 하락하였다.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것은 부패 등으로 정부 신뢰가 낮고 법원 시스템이 정치적 간섭에 취약하여 비효율적으로 평가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184개국 중 106위로 전년대비(2023년, 110위) 소폭 상승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재산권 보호	41.0▲	정부 지출	78.2▼
경제 자유도	54.7▲	통화 자유	71.5▼
정부 신뢰	18.6▲	무역 자유	70.8▲
노동 자유	47.4▼	투자 자유	50.0 -
재정 건전성	74.7▲	금융 자유	50.0 -
법원 효율성	22.0▼	세금 부담	88.8▲

자료: 헤리티지 재단 2024 Index of Economic Freedom

캄보디아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 Organization) 회원국으로서 2014년 ASYCUDA(관세행정 전산화)를 도입하여 통관일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가 2014년 160국 중 83위에서 2016년 7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여타 국가에 비해 물류 부문 개선이 미흡하여 2023년 순위에서는 115위로 다시 크게 하락하였다.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수입 관세, 특정상품을 위한 특별세, 부가세 등 3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HSC(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세율은 종가세(ad valorem)이며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에 따라 미화표시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농산품은 부가세도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년 11월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으로써 AEC 서명에 따라 2018년 부터는 대부분의 역내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요청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AKFTA의 E-CO를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관세율도 90%의 물품이 0세율로 인하되었다.

캄보디아는 코로나 19의 영향, EU 무역특혜제도(EBA) 부분 철회(2020.8.12.일)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중국과의 FTA(CCFTA)가 발효되었으며, 2022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발효되었다.

캄보디아의 낙후된 행정 등으로 특혜세율 미적용, HS Code 분류 및 해석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관과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주재국 관세청과 협의한 바 있다.

양국 정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월 29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는 등 한국과 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부과금

캄보디아는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Specific Tax)를 부가하는 품목이 있다. 특별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수입하거나 캄보디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요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10%: 일반 음료

- 10%: 윤활유, 브레이크 오일, 엔진오일 원자재
- 20%: 담배, 시가
- 35%: 맥주를 제외한 알코올 음료
- 30%: 맥주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가 2019년 2월 공식적으로 폐쇄되어 기업의 통관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통관화물에 대한 검사는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일괄한다. 이로 인해 40ft 컨테이너의 통관 스캐닝 비용은 32$에서 16$으로, 20ft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에서 10$으로 감소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캄보디아의 다양한 기관들이 수입품목에 따른 인허가 등의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이 강한편이다. 최근에는 보건부, 농림임업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캄보디아 부처별 비관세장벽수 현황

소관부처	2015년	2018년
농림임업수산부	71	110
광물에너지부	39	39
보건부	35	63
산업수공예부	24	46
농림임업수산부 및 보건부	12	12
환경부	11	11
내무부	9	9
상무부	8	8
경제재정부	8	9
농림임업수산부 및 경제재정부	7	7

소관부처	2015년	2018년
캄보디아중앙은행	5	5
국립기상센터	5	5
기타	42	43
계	276	367

자료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 재인용)

과거 수입통관 시 US$ 4,500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 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회사(BIVAC)를 통해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2009년 4월 30일부로 선적전 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산지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AKFTA)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①국가 안전, ②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③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④예술, 역사적 가치의 보호, ⑤천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측핸들 차량,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가방, 중고배터리, 폐타이어, 종교 및 정치 서적, 외설물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출판물, 지식재산권 저촉 상품, 위조물품, 독점권 위반 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담당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수입금지 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경우 한국이나 국제적으로는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도 캄보디아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생타이어를 수입 금지 품목인 폐타이어로 취급하여 수입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농림부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약품, 화장품 등)은 캄보디아 보건부 등록 및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다. 밀수 및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 민감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특별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 유통, 보관 및 소유에 대하여 추가로 통제 및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관련법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2017년 10월 반덤핑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상무부에 덤핑사례가 신고 될 경우 법에 따라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한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제3국의 제품이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캄보디아산으로 변경되어 선진국에 수출된 경우 해당 수입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도 수입 전 사전 등록을 요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모든 무선 통신 기기는 TRC(Telecommunication Regulator of Cambodia)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

수입, 전시, 판매 또는 광고되는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캄보디아표준협회(Industrial Standards of Cambodia)가 부여하는 ISC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고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2017년 10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대책 강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환경부에서도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플라스틱 봉지를 의무적으로 유료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국제 환경보호 기조와 발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들이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목재 및 모래 수출도 금지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개발이 우선시되는 국가로 지난 20년간 많은 산림이 개간되었는데 메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만 20만헥타르의 산림이 일반 농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지속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캄보디아의 쌀생산대비 수출감소로 쌀가격이 폭락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미화 20백만달러를 조성하여 쌀가공업체들의 쌀구매를 독려하였으나 그효과는 미미하였으며, 2017년에는 해당자금을 쌀가공(정미 및 건조) 시설에 저리로 융자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여 각 부처에서 기준에 맞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2020~21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으로 「캄보디아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해외공공조달시장 역량강화 지원」을 실시하였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기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공여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공기업이 매우 제한적인데 대표적인 공기업은 캄보디아 전력공사(Electricite du Cambodia), 시하누크빌 항만공사(Sihanoukville Autonmous Port), 텔레콤 캄보디아(Telecom Cambodia), 농촌개발은행(Rural Development Bank), 프놈펜 항만공사(Phnom Penh Autonomous Port) 등이며 모두 정부조달법 대상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체계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2014년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에 가입하여 캄보디아 대표 농산물인 캄폿 지방(Kampot)의 후추와 두리안, 그리고 바탐방(Battambang)의 쌀 등을 등록하고, 2016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2017년 헤이그 협정(산업 디자인 국제출원)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캄보디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는 미국, 중국, 태국, 일본, 싱가폴, EU, 한국 등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양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WTO가입 및 ASEAN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제도강화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WTO가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유예기간을 2034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우려도 제기된다.

상표법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급 및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유하며 배포권에 대한 위임장이나 계약을 통해서 배타적 배포권자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2015년 3월 국제상표 등록 시스템인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무국을 통한 상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7년 인터넷을 통해 상표 등록이 가능토록 하였다.

저작권법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특허법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수료를 매년 등록기관에 선납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3년 도입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식재산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복제된 것이다.

2014년 불법복제방지 위원회(The Cambodian Counter Counterfeit Committee)가 설립되어 불법복제 단속 및 상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과 복제 제품 몰수 및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는 만연한 편이다.

한편 2019년 한국 특허청은 한국 브랜드 보호를 하여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와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 된 후 해당 특허에 관련 인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을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금지

캄보디아 투자법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캄보디아 투자법에서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명시된 투자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내외국인 모두에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관련분야	비고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금지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금지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금지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금지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금지

자료: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111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캄보디아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국영기업 투자의 경우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담배제조, 영화제작, 쌀 가공, 보석 및 광산가공 등의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관행으로 인해 투자진출과 관련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승인비용(QIP 비용은 $1,750)이외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외국의 면허를 대부분 인정(예로 의사, 회계사 등)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는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US$ 1,350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지사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원천세를 부과, 본사와의 거래내역 보고 등의 까다로운 행정이 있어 법인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진출방법을 비교하여야 한다.

국산화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QIP(적격투자프로젝트) 인정을 받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One- Stop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투자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 기업의 경우 28종류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 2021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인 투자목적 등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기 임차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ELC 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민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2012년 5월 이래 신규 ELC는 잠정 중단되었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년 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더불어 신탁법(2019년 제정)에 의해 외국인은 신탁 관리자 또는 신탁회사와 같은 면허를 소지한 신탁 관리자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토지를 관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신탁은 신탁 구조가 결정되면 성립되는데 우선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수탁자를 임명한다. 모든 허가된 수탁자는 캄보디아 신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과 권한이 있으며, 개인 또는 신탁회사일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 서비스 계약을 공식화하기 위해 수탁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지정된 수탁자와 함께 신탁 증서를 실행해야 한다. 신탁은 신탁규제기관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절차는 신탁등기 소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신탁규제기관으로부터 신탁의 설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탁자는 신탁규제기관의 승인 및 관련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의 경우 신탁 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14호(2019년 제정)에 따라 신탁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업 신탁에 적용되는 수수료로는 신청서 양식 수수료 (KHR 20,000), 행정 수수료 (신탁의 가치에 따라 KHR 40,000~8,000,000), 연간 증명서 수수료 (신탁의 가치에 따라 KHR 300,000~3,000,000)가 있다. 수탁자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탁 규제 기관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전달한다. 이후 신탁 규제 기관은 신탁 등록에 대한 결정 및 승인 서한과 함께 신탁 등록 증명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한다.

신탁이 정식으로 등록된 후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신탁 증서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수정 사항은 신탁 규제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KHR 1,000,000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된다. 신탁은 설립일로부터 최대 100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며, 신탁 증서에는 신탁이 종료되는 조건을 명시

해야 한다. 조건으로는 기간 만료, 신탁 목적 달성, 신탁자들의 자율적 또는 만장일치 결정, 관할 법원의 판결, 신탁 증서에 명시된 기타 상황 등이 있다.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는 신탁 규제 기관에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외국인이고 신탁 자산이 캄보디아 토지일 경우 캄보디아 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금지되므로 해당 토지를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한 새로운 신탁으로 해당 토지를 이전하거나,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이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으로 캄보디아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은 비자 및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캄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노동관련 정책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원스톱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는 상무부, 국세청, 노동직업훈련부, 국가사회보장기금에서 순차적으로 검토된다. 국세청의 신청서 승인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노동직업훈련부 및 국가사회보장기금에서 법인 설립 신고서를 검토하고 수락하며, 노동직업훈련부는 신고 수락을 위해 행정등록 번호를 제공한다.

온라인 등록 절차 완료한 신규 법인은 노동자동화 중앙관리 시스템(LACMS)을 통해 별도의 신청서를 노동직업훈련부 및 국가사회보장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는 상황에 따라 약 20일에서 30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된다.

고용주로 결정되고 최소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 또는 사업장은 실제 개업 전에 노동직업훈련부에 등록해야 하며, 기업 · 사업장 개설 후 국가

사회보장기금에 등록해야 한다.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 · 사업장은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조건, 근로자의 위법 행위 유형 및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 분쟁 해결절차, 건강 및 안전 규칙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ILR)을 수립 및 노동직업훈련부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배포하고 모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한편, 모든 기업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는 노동직업훈련부에서 발급한 고용 장부와 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업무 시작 전 산업안전보건부(DOHS)에서 실시하는 의료검진 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8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 · 사업 내 매장 관리인 선출 조건, 근로자 이동 등 신고 조건, 노동 감사 자진 신청, 평등 및 인권 보장 등의 채용 조건, 하루 최대 8시간 및 주 최대 48시간 · 6일 근무 기준, 초과근로 및 휴무 기준, 수습기간, FDC 및 UDC 등 고용 계약 유형, 노동분쟁, 노동조합, 임금 및 최저임금, 근속수당, 사회보장 및 복리후생 등의 조건을 확인 및 충족해야 한다.

금융부문

캄보디아는 2011년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증권거래소(Cambodian Securities Exchange)를 설립하였다. 2023년 3분기 기준 현재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는 총 11개사로 9개는 메인보드, 2개는 성장보드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최근 CSX는 상장기업 국가육성, 모바일 트레이딩, 외국인의 주식거래, 캄보디아 정부 및 기업 채권 발행 등 자본 확충 및 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중 최초로 캄보디아 국채가 발행되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 대해 기존등급인 B2를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Moody's는 캄보디아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재정 부담이 증대되어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캄보디아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이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외국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에 장벽은 없다. 2023년 6월말 현재 59개의 상업은행, 9개의 특수은행, 4개의 MDIs, 82개의 MFIs, 17개의 리스회사가 각각 등록되어 있다.

캄보디아 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나 2017년 3월부터 MFI의 최대 이자율을 18%로 제한한 바 있다. 은행의 대출에 금액 제한이 없지만 자본금 10% 이상의 거액 여신의 동일인 대한 여신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로 제한된다. 2023년 6월 현재 은행의 여신금리(달러화기준, 가중평균금리)는 9.46%이며,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을 지속 인상시키고 있는데 2016년 3월에는 상업은행 75백만 달러, 특수은행 15백만 달러, MDI 30백만 달러, MFI 1.5백만 달러 등으로 인상하였는데 각 은행들의 경우 10%를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2024년말까지 1.25%의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캄보디아의 뱅킹시스템 자산의 85% 수준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2년말 은행의 자산은 270조 리엘이다. 캄보디아 은행의 부실대출(NPL) 비율은 2021년 1.8%에서 2022년 2.9%로 코로나19에 의한 산업활동 부진 등으로 부실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 및 원금상환유예를 유도하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전북은행 계열의 PPCB, 우리은행 계열의 WB,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금융대출은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인데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여신을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여신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신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여신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여신을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여신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업의 재무상태 보다는 담보 및 인간관계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지원 등으로 금융경제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이다.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인프라 구축 및 교육.보건 환경개선을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채권 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채권 발행 및 거래촉진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한·캄 합작으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캄보디아 자본시장의 기초를 닦은 이래, 우리나라 무상원조로 구축 중이던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이 2019년 10월 개통되었다. 2022년 11월 현재 참여 금융기관이 16개로 늘어나고,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을 제공 중이다.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규모 거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화 구좌 보유가 일반화되어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자국화폐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업은행 등의 대출시 최소 10%는 반드시 자국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쟁정책

캄보디아는 WTO 가입시 경쟁법 도입을 약속한 바 있으며, 2016년 호주정부와 함께 경쟁정책에 대한 법안 초안(Draft Law)을 마련한 이후, 2021년 9월 최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미미하며, 캄보디아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타장벽

최근 캄보디아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다양한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2021년 192 달러, 2022년 194 달러, 2023년 200 달러로, 2024년 204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봉제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정되지만, 실제 타 산업군의 공장인력 인건비 상승률에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개정된 노동법은 임금 지급시기를 월 2회로 조정, 해고보상금을 근속보상금으로 변경, 사회보장기금제도 및 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담고 있어 투자진출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공표되거나 공표

이후에도 여러 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잇따라 공표되는 등 운영 불확실성이 커 진출기업의 운영 리스크가 과중되는 어려움이 있다.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10년 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디아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년 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4년 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를 개정 발간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에는 투자환경, 투자유치제도, 투자 절차, 현지 경영관리 등 투자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된다.

대사관은 2024년 10월 24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와 양국 투자협력을 위한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정례회의는 2024년 5월 훈 마넷 총리의 공식방한 계기 양국 정상간 투자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줕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 개발위원회간 정례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데 따른 첫 회의이다. 동 회의를 통해 과세 환급 절차 개선,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감사 운영을 통한 감사부담 완화, 항공사 과제, 담보물 경매제도 등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동 정례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KOTRA 및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캄보디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수시로 우리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섬유제품 이외 항공운송시 즉시 통관 후 관련서류제출, 신규농

기계 수입시 관세율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진출기업과 신규진출기업의 현장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사관, KOTRA 및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는 캄보디아 경제 및 시장, 캄보디아 투자 잠재성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캄보디아 투자법과 투자 인센티브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캄보디아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2023.05.19)하였다.



키르기스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주요 경제 동향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이후 각종 교역 장벽 철폐 노력 지속, 특정 상품을 특혜 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GSP+ 지위를 활용한 대EU로의 수출 규모 확장 노력, 지역개발 및 국가 디지털화 작업, 2026 국가 발전 프로그램 채택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및 대러 제재 시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러시아 정부의 부분 동원령 발표 이후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인 유입으로 인한 서비스 부문 생산 증가 등을 통해 2023년 GDP 139.9억불 및 경제성장률 6.2%를 달성하였다. 한편, 2024년에는 역대 최고로 GDP 140억불을 초과했고,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도 9%(추정치)를 기록했다.

키르기즈 통계청 자료[64]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총 무역 규모(2024년 1~11월 기준)는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출은 35억 달러로 21.3%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12억 달러로 0.8% 감소했다. 무역구조는 수출 23.6%, 수입 76.4%로 무역수지는 7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35.4%), 러시아(21.9%), 카자흐스탄(8.2%), 영국(7.7%), 우즈베키스탄(5.3%), 튀르키예(2.9%), 한국(2.6%) 등이며, EAEU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30.7%(45억 달러)에 이른다.

64) 키르기즈공화국 대외무역 보고서(2024년 1~11월)
https://www.stat.gov.kg/ru/publications/vneshnyaya-i-vzaimnaya-torgovlya-tovarami-kyrgyzskoj-respubliki/

2024년 1월 1일 기준 1달러당 89.08솜이던 키르기스스탄 솜(som)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1달러당 87.00솜을 기록하며 소폭 감소하였다.

한-키르기스스탄 경제 관계

교역

키르기즈 통계청 자료[65] 2023년 한-키 교역액은 554백만불(수출 550.8백만불, 수입 3.4백만 불)로 기록하였다. 이는 2022년 대비 교역량이 351.6%(수출 351.8%, 수입 319.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경제 협력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양국간 교역의 대부분을 한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 교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24년 1~11월 기준 한-키 교역액은 386백만불(수출 384백만불, 수입 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4% 감소하였다.[66]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및 차량 부품, 화장품, 건설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꿀, 건조·냉동 채소, 전자집적회로 등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대키르기스스탄 승용차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 진출 현황

그간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이 미미하였으나, 2021년 12월 KT 비슈케크 사무소 개소, 2022년 12월 BNK 캐피탈 키르기스스탄 법인 영업 개시, 2023년 6월 티웨이항공 한-키르기즈 직항 정기편 취항, 2023년 8월 BC카드 합작법인 BC Card Kyrgyzstan 설립 등 최근 우리 기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

65) 키르기즈공화국 대외무역 보고서(2023년 1~12월)
https://www.stat.gov.kg/ru/publications/vneshnyaya-i-vzaimnaya-torgovlya-tovarami-kyrgyzskoj-respubliki/

66) 키르기즈공화국 대외무역 보고서(2024년 1~11월)
https://www.stat.gov.kg/ru/publications/vneshnyaya-i-vzaimnaya-torgovlya-tovarami-kyrgyzskoj-respubliki/

관세 및 통관 관련

관세

2015년 8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협약이 키르기스스탄에 발효됨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의 관세 문제는 EAEU 관세 규정(EAEU Customs Code)을 포함한 EAEU의 관련 법규와「관세규정법(Customs Regulation Act)」을 포함한 키르기스스탄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정부 산하 관세청(State Customs Service)이 관세 통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관세특혜

키르기스스탄은 타 국가와 교역 시, 국제협정에 준하여 관세동맹 국가에 특혜관세를 제공한다.

- 키르기스스탄과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을 형성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생산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면세
- 관세동맹의 통합관세특혜시스템 혜택 하에 있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서 생산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관세율 인하

2016년부터 키르기스스탄은 EU로부터 GSP+ 지위를 인정받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생산되는 6,200여 가지의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출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다.

EAEU 가입에 따른 기술규제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 이후 기술 규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해 왔다. 2023년 7월 기준 52개의 기술 규제를 채택하였고, 이 중 47개가 발효된 상태이다. EAEU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을 충족한 재화는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산하 표준화계량센터(Center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CSM)는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립된 기관으로, 표준화, 계량, 인증 제도, 국제 협력 분야에서 관련 기능을 이행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재화표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labeling of goods)」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재화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정보시스템(State Automated Information Labeling System for Goods)을 구축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생산되거나,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입되는 재화, EA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의무적인 표시 대상이다.

상품 및 서비스 정보는 반드시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로 병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어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업무는 2004년 제정, 2021년 개정된 「정부조달법(The Law of the Kyrgiz Republic on Public Procurement) 」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2014년 설치된 재무부 정부조달국(Public Procurement Department)에서 현재 정부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정부조달법」을 통해 정부 조달 관행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맞추고, 전자 정보 기술 도입을 통해 정부 조달 과정 및 예산자원 이용에 따른 부정부패를 제거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조달 절차는 전자 시스템(www.zakupki.gov.kg)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을 포함한 공공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public councils)를 설립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부처간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키르기스스탄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지적재산개혁청이 전담하고 있으며, △산업자산,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비전통적 지적자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67]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이 국내 지적 재산권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파리협약」, 「베른협약」, 「특허협력조약」,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등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68]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 1월 문학 작품, 음악 및 시청각 작품, 미술 작품, 건축 및 조경 작품, 사진 작품, 과학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등과 관련된 저작물의 제작과 사용을 규정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을 제정한 이후, 「상표 및 서비스 상표, 상품 원산지명에 대한 법」, 「특허법」, 「컴퓨터 및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등을 제정하였다.[69] [70]

상표권의 경우 지적재산개혁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권이 부여되며,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개혁청에 등록된 변리사 혹은 기타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71] 상표권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후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출원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통해 10년 더 등록 연장이 가능하다.[72]

발명 특허권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10년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5년 연장이 가능하다.[73] 저작권

67) http://patent.kg/ru/about-us-2/regulation/
68) http://patent.kg/en/sample-page-5-4/sample-page/sample-page-5/
69) http://patent.kg/ru/sample-page-5-4/sample-page-2/
70)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7
71)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8
72)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8
73)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9?cl=ru-ru#5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74]

이 밖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외 이전에 대한 법조항들이 제정되어 있다. 「컴퓨터 및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제20조 '해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에 따르면 저작권자 및 기타 권리자는 지적 재산권 분야 관련 전담 국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시 해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75] 또한 2008년 4월 제정되어 2017년 7월에 개정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 제25조 '개인 정보의 역외 전송'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개인정보 소유자가 개인정보를 키르기즈 역외로 전송할 시 정보를 전송 받는 이가 위치한 국가와 키르기스스탄 간의 국제협약 유무에 따라 수신자는 키르기스스탄이 지정한 적절한 수준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즈 내 개인정보 혹은 키르기즈를 거쳐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왜곡 및 무단 사용을 배제하는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주체의 당사자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가 있을 시, △개인정보 주체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할 시, △개인정보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있을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이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도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인터넷 등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할 시 개인정보 소유자이자 정보 전송자는 정보의 비밀보장을 준수하며 정보 보호가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을 할 의무가 있다.[76]

경쟁정책

키르기스스탄은 반독점규제청이 1994년 4월에 제정된 「반독점 및 경쟁 발전·보호를 위한 규제법」에 따라 반독점 생산자들을 감시 및 규제하고 있었으나,

74)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7

75)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39?cl=ru-ru

76)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2269

2009년까지 개정을 거듭하다 2011년 7월 22일 「경쟁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기 규제법은 효력을 잃어 유효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는 「경쟁법」을 비롯해 2011년 제정된 「자연독점법」, 1998년 제정된 「광고법」등의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이 존재한다.[77]

「경쟁법」은 경쟁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조직적·법적 기반을 정의하며,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방지·제한·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키르기스스탄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성·기능하는 조건을 제공한다.[78] 동 법에 따르면 국내시장 지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지배적 입장 즉, 독점생산자로 규정한다.[79]

그러나,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 조건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시장 여건 하에서 인정되는 자연독점 분야가 존재한다. 「자연독점법」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운송, 천연가스의 운송·유통·저장 및 판매,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유통·판매·수송, 국가에너지시스템 제어 서비스, 중앙집중식 물 공급 및 하수도, 통신 및 우편 일반 사용 서비스, 철도 운송, 비행의 항행 보장, 국내 항공 운송 지상 서비스의 9개 영역을 자연독점 영역으로 정리하고 있다.[80]

키르기스스탄 반독점규제청 및 해당 부속 기관은 △상품 시장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경쟁 발전 및 보호,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의 방지·제한·억제를 위한 조치 실현, △소비자와 자연독점 영역 생산자간 이해의 균형 보장 및 소비자 판매 상품과 가격 규제 조정, △국가 차원의 소비자 권리 보호, △광고 소비자에 대한 국가 보호 구현 등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독과점 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통제한다.[81]

반독점규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연료 및 에너지 공단 제외, 통일된

77)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743?cl=ru-ru,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69

78)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79) 제4절,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80)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81)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2-3번)

국가 반독점 가격 정책 실현, △독점 경제 분야의 비독점화 조치 수립 및 이행, △독점금지법 개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광고 및 가격 형성과 적용 절차 개선에 관한 규제법 초안 수립 참여 등이 있다.[82]

환경 관련 규제

키르기스스탄은 1999년 7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한 뒤, 「대기 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생물권보호지역법」 등 일련의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동 규범들은 환경과 환경 구성 요소들이 공화국의 국가 자산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 중 하나라고 정의[83]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사용,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정책 및 법률 관계를 정의하는 "환경보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환경 안전보장에 관한 일반기술규제법」을 제정하여 환경 안전 보장을 위한 대기, 수자원, 동식물, 토양 등의 보호 및 산업/가정폐기물 처리 및 천연자원 사용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요건을 부과하였다.[84]

2021년 10월 국가기후환경위원회에서 승격된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가 키르기스스탄의 환경 보호, 기후, 환경 안전 보장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기업은 상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 법은 특정 사업이나 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키즈기즈공화국의 환경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기술규제는 위험 범주[85]에 속하는 경제 활동 혹은 기타 활동 시설이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시행 예정 활동 뿐 아니라 제품의 보관, 운송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적용된다. 사업이나 기타 활동 이행 전에 국가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사업 전개 과정 혹은

82)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4번)

83)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84)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85) 이 같은 위험 범주 분류는 "환경영향평가법-부록2"의 내용에 따라 수행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기업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따라 별도로 설정된다.

결과로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거나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진행 혹은 관련 활동이 금지된다.[86]

사람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천연자원의 재생산 및 합리적 사용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품, 가공품, 서비스 등은 생산 또는 수입시 환경 표준화와 환경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상품의 목록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결정한다.[87]

투자

투자자의 경제적 독립성 보장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직속 투자청(National Investment Agency under the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은 투자 분야 국가정책 추진을 전담하며,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투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다수의 법률과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법으로 2003년에 제정된 「투자법」이 있으며, 1997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내국민 대우 조항을 강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보강한 법이다. 동 법률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키르기스스탄 법령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지사 및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88] 또한 협회나 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법률로 특정 조직 및 법적 형태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규모, 구성, 자본 구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키르기즈 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다. [89]

---

86)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87)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제26조 환경 표준화 및 인증

88)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566?cl=ru-ru

89)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190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제한 최소화

키르기스스탄은 관련법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현지인 또는 현지법인과의 합작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 건설, 보건, 군사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한국(2008년)을 포함하여 중국, 터키, 미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영국, 카자흐스탄,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세계 여러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내에는 비슈케크, 마이막, 나른, 카라콜, 레이렉 등 총 5개의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 있으며, 동 구역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세금, 부과금, 관세, 수수료 등의 부분 면제, △세관절차 간소화, △회사 등록 절차 간소화, △해외 노동자의 입출국 제도 간소화, △구역 내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통신, 수도, 전기, 교통 등)로의 접근성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90]

조세제도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가 2024년 2월 개정된 신 세법(Tax Code)을 기초로 세금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이행 및 납세 등의 이행을 통제하는 기관은 국세청(State Tax Services)이다.

신 세법에 따르면, 매출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법인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을 포함하는 종합 세제(General Taz regime)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일세 기반 과세 간소화 시스템(Simplified system of taxation based on the single tax)으로 나뉘며, 이외 자유경제구역, 첨단기술단지(high tech park),

90) http://invest.gov.kg

암호화폐 채굴,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세제가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34개국(2023년 8월 1일 기준)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다.[91]

금융

키르기스스탄의 은행 제도는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대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활동은 2016년에 제정된 「키르기즈 국립은행, 은행 및 은행 업무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국립은행은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으로, 적절한 화폐 및 신용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물가 유지, 화폐 구매력 유지, 은행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립은행은 키르기스스탄 은행 시스템을 감독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최소 자금 보유 등 은행 활동과 관련한 표준 요구사항 수립, 상업은행 간부 및 감사 위원 임명 등과 관련한 의무적 요구사항 수립, 관련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들은 보증금 보호시스템(deposit protection system)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시스템은 「은행보증금 보호법(Bank Deposit Protection Act)」에 의해 규율된다.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상업은행 21개 및 상업은행 지사 305개가 운영되고 있다. 은행 부문의 총 자산 규모는 7708억 솜이며, 이는 2023년 말 기준 6143억 솜보다 25.5% 증가한 규모이다. 여신 포트폴리오 규모는 3008억 솜으로 2023년 말 2578억 솜 보다 16.7% 증가하였고,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소비자금융 대출로 811억 솜(45.3% 증가)이다.[92]

91) https://mineconom.gov.kg/ru/direct/4/sub/146/162

92) https://www.nbkr.kg/index1.jsp?item=1481&lang=RUS

노동

2004년 8월에 제정된 「키르기스스탄 근로 규정(Labor Code)」을 토대로 근로 관계가 규정되며,[93] 키르기스스탄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 협약들은 키르기스스탄 국내법의 일부분으로 키르기스스탄내에서 키르기스공화국에서 직접 적용된다. 키르기스스탄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 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우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동 규정은 키르기스스탄의 국내법, 계약보다 우선한다.

고용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하에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일반 직원은 최대 3개월, 간부 직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수습기간 중 피고용인의 업무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3일 전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일반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고용 계약에 따라 주5일 근무 또는 주6일 근무도 가능하다.

2024년 9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월 2,460솜(약 28불)로 대체로 저렴한 편에 속하나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적 특성상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종료해야 하고, 초과 근로 업무를 시킬 경우 반드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키르기스스탄 이민청(State 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EAEU 가입에 따라 EAEU 당사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국적인들은 노동 허가 없이 키르기스스탄에서 근로를 할 수 있다. 연간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새해 시작 4개월 전에 정부가 결정하고 승인하고 있다.

93) Labor Code of the Kyrgyz Republic, August 4, 2004, No. 106 (with the latest amendments as of June 26, 2018)



타지키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주요 경제 지표 동향

1992~97년 내전 이후, 경제 인프라의 파괴로 인근 중앙아시아 및 여타 CIS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2024년 GDP는 약 137억 달러이며, 2024년에는 8.4%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감소, 국내 주요 소비재 및 곡물 가격 상승, 환율 급등 등의 여파가 타지키스탄 경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GDP(억 달러)		81	82	87	105	111	137
1인당 GDP(달러)		877	834	897	1,054	1,268	1,275.5
GDP 성장률(실질)		7.0	4.5	9.2	8.0	8.3	8.4
물가 상승률(%)		7.8	8.6	8	6.6	3.9	3.6
환율(TJS, 연평균)		9.53	10.32	10.24	11.03	10.84	10.90
인구(백만)		9.3	9.5	9.7	10.1	10.2	10.28
무역 (백만 달러)	교역액	3,922	4,556	6,358	6,870	7,644	7,900
	수출	1,001	1,406	2,149	1,789	1,780	1,700
	수입	2,921	3,150	4,209	5,081	5,864	6,200

* 출처: EIU,IMF,OECD,세계은행,타지키스탄통계청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러시아 및 해외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의 국내 송금(GDP의 약 30% 이상 차지) 및 면화(연 30만톤), 알루미늄(연 30~40만톤) 수출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의 수자원 부국(60% 보유)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다양한 광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다만, 세계 8위의 풍부한 수자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 상·하류국간 물 분쟁 문제 등으로 전체 수자원의 약 5%만 활용 중이며, 이러한 에너지 자립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 금융기관, 국제개발협력 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력발전소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국제 물 문제 논의에 앞장서며 자국의 수자원 홍보를 통한 타국과의 수자원 공동 개발 노력을 전개 중이다.

2014년도 러시아의 경제 위기 및 2024년 러시아 테러 사건 이후, 타직 노동자가 국내로 대거 역유입되면서 일자리 및 내수가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 및 자국 화폐인 소모니(Somoni)의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보낸 송금이 3~4월 기준 약 50% 하락하면서 국내 소비와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바 있다.[94]

한편 외국 투자 유치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5개 자유무역지역(FEZ) 조성하고 2022.3월 ①향후 5년간 주요 산업 인프라 개선 ②인·허가 등 규제 완화 및 공적 서비스 절차 간소화 ③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인하 등을 통해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한-타직 교역 현황

(단위: 만 달러)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역 규모	2,904	4,610	5,153	9,274	11,520	11,000
수출	2,902	4,607	5,149	9,270	11,503	10,400
수입	2	3.4	4.5	4	17	60
무역 수지	2,900	4,603	5,144	9,230	9,200	9,800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94) www.imf.org, 타지키스탄 정부가 제출한 IMF 의향서(Letter of Intent) (2020.4.29.)

양국간 교역액은 2014년 이후 하락하다 2017년 저점을 찍은 후 2018년부터 반등, 2022년에는 최대 교역량 달성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국 교역이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양국간 교역은 대부분 한국의 對타직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 교역불균형은 계속하여 심화되는 상황이다. 교역 증가 요인으로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차량, 중장비 등 품목 수출 증가한데 기인한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타지키스탄은 한국의 101위 수출 대상국이고 133위 수입 대상국이다.

2024년 한국의 對타지키스탄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연초류,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윤활유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기타인쇄물, 집적 반도체 회로 등이다.

2012년 12월 WTO에 159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전 품목 평균 양허 세율은 8.0%(농산물(10.4%), 비농산물(7.6%))이며 11개 서비스 섹터가 (111개 하위 서비스 섹터 포함) 양허되었다. CIS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CIS FTA)에 가입되어 있다. EU에 대한 무관세 수출을 위한 GSP+ 지위 획득에 관한 협상,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검토 등을 고위급 수준에서 진행 중이다.

지사·현지 법인 설립

법인 형태는 법인, 개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대표부/지사 등이 있다. 규정상 법인 등록에 최대 1일(24시간 이내)이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서 설립 소요 시간이 매우 상이하다. 또한, 모든 설립 필요 서류는 반드시 타직어로 준비해야 한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타지키스탄 조세청 사이트[95] 및 조세청 산하 민원 창구 사이트인 '이딘노예 아크노(Single window)'[96] 를 통하여 문의가 가능하나 사이트를 통한 설립이 아닌, 모든 서류 문서는 오피스를 직접

95) 타지키스탄 조세청 공식 사이트 : http://www.andoz.tj

96) 이진노예 아크노 공식 사이트 : http://swcustoms.tj

방문[97]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인은 이딘노예 아크노 외에도 사회보장청, 통계청, 고용이주노동부, 보건부 산하 위생역학청, 지방정부 등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타직어)

- 법인 설립 신청서(타직 법인명 필요/ 가능한 약어)
- 회사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설립자 서명)
- 지사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서명)
- 지사장 임명장
- 법인의 신원보증서/ 위임장 또는 법인 대표 신분증(사본)
- 비자(비즈니스 또는 노동비자)
- 거주등록증(3개월 이상)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법인 위치 확인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조사보고서(감사)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은행통장 사본

※ 자유경제지대(FEZ)에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각 FEZ에서 요구하는 서류 추가 제출

상기 서류를 준비한 후 법인 설립을 위해 설립 자본금 500소모니 이상을 현지 은행에 입금하고, 납입 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 및 유한 책임회사 설립 시 필요 서류

- 여권사본
- 설립 신청서

97) 이진노예 아크노 오피스 주소 : Dushanbe, Shamsi stree, house 5/3

- 1년 기간 비자
- 거주 등록증(3개월 이상)
- 노동 허가증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건설업 인·허가 절차

건설업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현지법인에 대한 정관 사본
- 세무 코드 번호 사본
- 통계청 코드 번호 사본
- 기타 현지법인에 대한 서류 사본
- 건설업 허가 신청서-건설부 양식
- 서식 번호 1.2.3.4-건설부 양식
- 한국 측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사본
- 사무실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장비 보관 창고 계약서
- 두샨베시 명의 건설부 앞 허가(추천)서
- 은행 통장 사본

법인 및 지사 설립시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타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절차가 자주 변경이 되고, 담당 부서/직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토록 하여야 한다.

조세 제도

타지키스탄 정부는 2013년 세법 제정 이후 2019년부터 세계은행 등과 협력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2년 세법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국세

- 법인 소득(이윤)세 18%
  ※ 제조업은 법인소득세 13%,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 20%
- 외국인 개인 소득세 20% (현지인 12%)
- 부가가치세 14%
  ※ 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에 15%, 2025년에 14%, 2030년에 13%로 인하 예정)
- 사회 보장세 (고용주: 20%, 노동자: 2%)
- 천연 자원에 대한 세금 (계약서에 따라 상이)
- 알루미늄에 대한 판매세 3%
- 순수 이익세 15% (법인 소득세 외 순이익의 15%)

지방세

- 차량 보유세 2.5~15% (승용차 기준 7.5%)
  *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 차량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다. 고용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 토지세: 타직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 지역 요인 등을 고려, 매 5년마다 발표 (428,17~1191,40TJS/헥타르)
- 부동산세 3~18% (부동산 면적+지방계수를 곱하여 계산)
  * 두샨베·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등 대도시는 최고율 적용
- 소매 판매세 등

세제혜택

- 소득세 면제

  * 제조분야 신설기업은 창업 이후 1년 이내 투자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면제한다.

    · 20만 달러~50만 달러: 2년 면제

    · 50만 달러~200만 달러: 3년 면제

    · 200만 달러~500만 달러: 4년 면제

    · 500만 달러 이상: 5년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 5개의 자유경제지대(수그드, 판즈, 이쉬코심, 단가라, 쿨롭)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입의무가 면제된다.

    · FEZ 입주 조건으로 최소 1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의 투자비용 필요

    ·자유경제지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회 보장세를 제외하고 다른 세 금은 면제 (특별 면세)

  * 간이과세제도에 따라 연 매출액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기업은 도로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섬유 분야는 1년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통관세, 부동산세 등을 면제
  * 수력발전소 건설 분야 Royalty 및 Bonus에 관한 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제
  * 관광분야는 사업 시작후 5년간 소득세 및 부가세 면제
  * 가금류, 양식 어업, 사료 생산 업체는 6년간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도로세, 부동산세, 토지세 면제
  * 주식·증권 거래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부가세 면제
  * 무상원조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
  * 이노베이션테크 기업은 사회 보장세를 제외하고 다른 세금 면제

관세 제도

일반적으로 종가관세, 종량세 또는 혼합관세가 적용된다. 상품 유형에 따라 0%~20%(0%, 3%, 4%, 5%, 5.5%, 6.5%, 7%, 8%, 9%, 10%, 12%, 13%, 15%, 17%, 18%, 20%)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8.1%이다. CIS FTA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수입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

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 농업 등 기계설비, 의약품, 알루미늄 등의 관세는 면제되며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관세는 50% 감면된다.

통관 절차

통관 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 제품에 대해 특별세 등.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2019년 8월부터 타지키스탄 관세청은 EU의 지원을 받아 인증수출입업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우수업체로 공인한 기업은 인증 수출입업자로 지정을 받으며, 신속 통관, 세관검사 등에 있어 여러 간소화 혜택을 부여받는다.

외환 관리

타지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비교적 외환이 자유로운 편이다. 타지키스탄 외환법은「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비현금 외환을 특별한 제약 없이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No.826, 1999년 9월 3일)」고 명시하고 있으며,「타지키스탄 영토 내 거주자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환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법인대표자·본국으로부터 입금된 외환은 입금인의 필수 자산으로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타지키스탄 영토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내의 외환업무 및 외환과 관련된 모든 지불이행에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No.826. 1999년 9월 3일)고 외환 법에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타지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고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나 방산, 항공산업 등 특정 분야의 사업 경영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한-타직 간 '투자보호협정'(1995년 7월 발효) 및 '이중과세방지협약'(2016년 9월 발효)이 체결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취약한 유통망,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등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對타직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 적용은 미흡한 점에 유의하고,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관료 부패 문제는 정부로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 들어 타직 정부는 관료 부패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투자 관련 사이트]

- 타지키스탄 투자법: http://gki.tj/en/base/investment/
- 타지키스탄 세금위원회: www.andoz.tj
- 타지키스탄 관세청: www.customs.tj
- 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 tpp.tj
- 타지키스탄 재무부(세법 개정안 등): www.minfin.tj
- 자유경제지대: www.fez.tj
- 타지키스탄 경제개발통상부 무역정보 포털(관세율 등): tajtrade.tj
- 비즈니스 포털: b2b.tj
- 타지키스탄 WTO 관련 정보: wto.tj

[입찰 정보]

- 타지키스탄 국유재산 및 투자관리위원회: http://www.gki.tj/en/

[World Bank Group 비지니스 정보]

- http://www.doingbusiness.org/

환경관련 규제

타지키스탄 내무부와 정부 산하 환경보호위원회는 배기가스 배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보호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담당하며, 검사 결과 허용량 초과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민원이 있을 시에만 검사가 이뤄진다.

현지 건설법규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환경 검사 대상이 되는데,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공사는 건축 건설청의 검사 대상이 되고, 그 외의 공사는 민간단체에서 산업안전검사원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산업검사'의 대상이 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규정이 존재하나[98] 실제로는 외국의 후원을 받는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있다.장비 안전규제 표준, 수입, 인증 담당기관으로 타직 표준원(Tajikstandard)이 있다. CIS 국가인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인증 국가표준규격(GOST)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2022년 환경 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 관한 법, 대기 및 수로 오염 물질 한도 초과에 관한 법 및 정착지, 농경지 등을 비롯한 국가 보호구역의 자연보호 훼손과 무단 벌목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금액이 결정되었다. 또한 환경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 보상의 의무와 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해 개인 및 법인의 법적 보상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보호위원회: tajnature.tj
- 건설청: www.ijozat.tj
- 표준원(Tajikstandard): www.standard.tj

98) 2012년 12월 3일자 타지키스탄 정부 규정 No.697

지적재산권

타지키스탄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가입국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 「상표 및 서비스 상표에 대한 법」등을 제정하였다.

디지털무역의 장벽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요건 충족 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도덕의 보호,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지키스탄이 인정하는 국제협약에 따를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도 이전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18조).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콘텐츠 검열

관련 법은 부재하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극단주의 관련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형법 307조 2항). 이를 근거로 타지키스탄 정부는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등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태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율 정책상의 장벽

태국의 관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관세법은 1926년 도입되어 2014년까지 24차례 개정되어오다, 2017년 11월 13일부로 91년만에 신관세법(Customs Act, 2017)이 발효되었다. 신관세법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구관세법에 비해 보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태국의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주·뉴질랜드·일본·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0%, 중간제품은 3%, 완성

제품 등은 7% 또는 1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1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년 10월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이 1,047개, 농산품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치들은 기존 무역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관세율(AHS,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은 낮지 않은 수준으로 2024년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8.34%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식품류의 세율이 높은데, 식품 제품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22.93%이며, 채소류는 19.65%이다.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관세율(AHS,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은 낮지 않은 수준으로 2015년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7.96%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농산물의 세율이 높은데, 채소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20.81%이며 조제식료품, 고기, 과일, 채소, 치즈 등은 30~50%이고 옥수수는 쿼터물량 내에서 20%, 쿼터물량 밖은 70%이다.

공산품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8%이나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최고 80%이며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가정용전기제품(10~30%), 의약품(10%)의 세율이 높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권역 내 무역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축소(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역내 교역 및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NAFTA 및 EU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2024년 11월 현재 15개이다. 이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페루, 칠레, 스리랑카로 7개이다. 나머지는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국가,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홍콩 등 16개국과 8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태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0년 11월 15일 서명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024년에는 스리랑카와 FTA 체결에 서명하였으며 24년 내로 발효 예정이다. 현재 한국과도 2024년 3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개시하여 진행중이다. 그,밖에 태국은 캐나다, EU, UAE, 유럽자유무역연합, 파키스탄, 튀르키예, 부탄 등과 FTA 협상 중이다.

비관세 장벽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내각의 결의에 의거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2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주로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6~226%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Seeds	Exempted	125
	Processed Potatoes	27	125
4	Onion	27	142
5	Onion seeds	Exempted	218
6	Galic	27	57
7	Coconuts and Coconut Flakes	20	54
8	Dried Longan	30	53
9	Coffee Beans	30	90
10	Coffee Products	40	49
11	Tea	30	90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2	Pepper	27	51
13	Maize (Corn)	20	73+additional 180Baht/ton
14	Rice	30	52
15	Soybean	Exempted	80
16	Copra	20	36
17	Soybean oil	20	146
18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9	Coconut Oil	20	52
20	Sugar	65	94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For animal consumption	2	119
	For people consumption and other purpose	10	133
22	Raw Silk	20	226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한편, 태국의 높은 소비세(Excise Taxes)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80%에 고율의 소비세 2%에서 최대 40%, 부가가치세 7% 등이 부과되어(통합세율: 200~300%) 수입차량 가격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바 있는 국산사용 및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2000년 8월 1일 폐기되었다. 반면, 2001년 2월 탁신(Thaksin)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업체 중시 및 무역 역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영기업의 국산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토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19개 분야 144개 품목(2024년 11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보관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TIS sticker)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능 요건, 마킹/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관세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수출업체들이 가공 후 수출할 목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로 투자청에서 발행하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기증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2013년 10월부터는 Gold Card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 태국에는 총 405명의 AEO(수출입업자 207명, 세관 브로커 198명)가 활동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태국은 ASEAN, 한·ASEAN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혜(협정)관세 부여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ASEAN FTA에 적용되는 태국 원산지결정의 일반기준은 완전생산기준(WO)과 HS COD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은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WO)과 실질적 변형기준(ST)인 HS CODE 2, 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된다.

RCEP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의 경우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WO)과 실질적 변형기준(ST)인 HS CODE 2, 4, 6단위 세번변경기준,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RVC), 화학반응(CR)이 적용된다.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으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부과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2024년 11월 현재 한국과 관련된 태국의 반덤핑 조치는 8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는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11.96%-51.53%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2021년 9월 17일 일몰재심 착수 결과, 2022년 9월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반덤핑 세율 부과가 1차례 연장되었다.

강관 및 튜브(Iron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7년 7월 20일부터 5년간 3.49~53.88%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했으며, 2022년 7월 19일 일몰재심 착수 결과, 2023년 7월 20일부터 2028년 7월 19일까지 반덤핑 세율 부과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은 2003년 5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 6월 9일-2026년 6월 8일) 일반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58.85%이다(현대제철 2.81%, 포스코 13.58%).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은 2003년 3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2월18일-2026년2월

17일) 50.99%이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3년 1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2차례 연장을 거듭하여 2024년 1월 9일까지 0~22.55%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해야 하며 2023년 12월 21일 일몰재심에 착수했다. 재심기간 중 부과기간을 연장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

도색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zinc alloys of cold-rolled steel)은 2019년 10월 조사 착수,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4.27-33.62%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세아씨엠 4.27%, 동국제강 7.00%).

석도강판(Tin Plate)은 2020년 4월 7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5년간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67%이다(TCC 스틸 8.71%, 동부제철 0%). 단, 첫 6개월간 부과 유예기간을 둔 것에 이어, 이후 각 6개월씩 세 차례 부과를 유예하였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

크롬 도금강판(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은 2020년 5월 15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3.95%-17.06%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동부제철 3.95%, TCC 스틸 4.73%). 단, 첫 6개월간 부과 유예기간을 둔 것에 이어, 이후 각 6개월씩 세 차례 부과를 유예하였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20년 9월 19일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에 관한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8월 31일 국내 산업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태국이 한국에 대해 적용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반덤핑 조치 사례 (2024년 11월 기준)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Hot-rolled boron steel, in coil and not in coil	China	26/12/12	07/11//23	14.28-19.47%
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 plate and strip	China	10/12/13	03/12/24	8.50-33.32%
	Japan	13/03/03	17/02/26	0-33.32%
	Republic of Korea	13/03/03	17/02/26	50.99%
	Taiwan	13/03/03	17/02/26	0-33.99%
	Indonesia	30/11/22	29/11/27	6.28-51.69%
	Malaysia	30/11/22	29/11/27	15.23-35.25%
Cold-reduced Carbon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China	06/02/14	24/01/25	9.24-20.11%
	Taiwan	06/02/14	24/01/25	4.22-17.47%
	Vietnam	06/02/14	24/01/25	14.35%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China	10/01/13	09/01/25	0-29.50%
	Taiwan	10/01/13	09/01/25	5.35-24.14%
	Republic of Korea	10/01/13	09/01/25	0-22.55%
Cold-rolled steel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or Cold-rolled steel with aluminum and zinc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Vietnam	25/03/17	08/05/28	4.30-60.26%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단, 수출용으로 자유무역지대에 반입하여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27/05/03	08/06/26	33.26%
	Argentina	27/05/03	08/06/26	37.94-53.09%
	China	12/08/11	10/07/28	30.91%
	India	27/05/03	08/06/26	20.02-31.92%
	Indonesia	27/05/03	08/06/26	24.48%
	Japan	27/05/03	08/06/26	0-36.25%
	Kazakhstan	27/05/03	08/06/26	68.11~109.25%
	Malaysia	12/08/11	10/07/28	23.57~42.51%
	Republic of Korea	27/05/03	08/06/26	2.81~58.85%
	Romania	27/05/03	08/06/26	27.95%
	Russia	27/05/03	08/06/26	24.20~35.17%
	Slovakia	27/05/03	08/06/26	51.95%
	South Africa	27/05/03	08/06/26	128.11%
	Taiwan	27/05/03	08/06/26	3.45-25.15%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Ukraine	27/05/03	08/06/26	30.45~67.69%
	Venezuela	27/05/03	08/06/26	78.44%
	Brazil	16/05/17	01/06/28	34.4%
	Iran	16/05/17	01/06/28	7.25~38.27%
	Turkey	16/05/17	01/06/28	6.88~38.23%
	Vietnam	01/12/21	30/11/26	24.38~42.34%
	Egypt	01/12/21	30/11/26	4.74~6.20%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China	17/09/16	16/09/26	145.31%
	Republic of Korea	17/09/16	16/09/26	11.96~51.53%
	Taiwan	17/09/16	16/09/26	2.38~29.04%
	Vietnam	17/09/16	16/09/26	310.74%
Citric acid	China	09/01/04	17/01/25	57.79%
High carbon steel wire rods	China	17/05/14	15/05/25	12.26~36.79%
Inner tire for motorbike	China	30/11/12	29/11/24	30.34~112.51%
Certain iron steel pipe and tube***	China	20/07/17	19/07/28	3.22~66.01%
	Republic of Korea	20/07/17	19/07/28	3.49~53.88%
	Vietnam	13/02/20	12/02/25	6.97~51.61%
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zinc alloys of cold-rolled steel (단, 수출용으로 자유무역지대에 반입하여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China	01/05/21	30/04/26	40.77%
	Republic of Korea	01/05/21	30/04/26	4.27~33.62%
Tin Plate	China	13/11/21	12/11/26	0~17.46%
	Republic of Korea	13/11/21	12/11/26	0~22.67%
	Taiwan	13/11/21	12/11/26	4.28~20.45%
	EU	13/11/21	12/11/26	5.82%
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	China	13/11/21	10/11/26	4.53~24.73%
	Republic of Korea	13/11/21	10/11/26	3.95~17.06%
	EU	13/11/21	10/11/26	18.52%
Biaxially Packaging Film Oriented Polypropylene (BOPP) General Grade	China	10/03/22	09/03/27	0~32.8%
	Indonesia	10/03/22	09/03/27	0~15.32%
	Malaysia	10/03/22	09/03/27	0~32.84%
Hot-dipped galvanized cold-rolled steel sheet in coils and non-rolls	China	07/09/21	06/09/26	3.05~37.54%

품목별 장벽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 10월에 승용차와 다목적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각각 42%와 68%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승용차 최저 2%~최대 40%, 픽업트럭 최저 2%~ 최대 40%의 높은 소비세와 10%의 지방세, 7%의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이는 수입 승용차 및 수입 다목적차와 태국 내 현지조립 자동차간 세금부담이 100% 이상 차이가 나게 하면서 사실상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태국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 생산업체에 부과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하였다가 30%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74개 자동차부품과 21개 자동차부품은 각각 10%와 5%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자동차 현지조립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소형 승용차 생산의 지역중심국가가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이용 승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소세를 조정한 데 이어 2007년 6월 태국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승용차 생산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소세도 다시 인하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부로 기존 배기량에 따른 소비세 부과체계에서 탄소배출량, Gasohol E85 주유 가능여부, 에너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많으며, 에너지 소모가 큰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대비 높은 소비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2017년 9월 16일부터 '신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소비세 산정 기준을 과거 현지생산 차량의 경우 공장도 가격을, 수입차의 경우 CIF 가격을 적용하던 것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변경하였다. 단, 개별소비세국은 권장 소비자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 기준으로 시장소비자가격 또는 수입가격(CIF) 중에서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추가 인하하였다. 태국 산업경제실(OIE)은 2022년 6월 8일 '신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픽업트럭에 대한 현행 소비세율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적용될 세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관세

- 승용차: 완성차 80%, 부품 30%
- 상용차(버스, 트럭, 특수차량): 완성차 40%, 부품 20~30%

○ 소비세

* 대형트럭, 10인승 초과 버스, 특수차량은 소비세 면제

태국 자동차 개별소비세(Exercise tax) 세율 변동 내역

종류	2017년 9월 16일~ (권장소매가 기준)				2022년 6월 8일~ (권장소매가 기준)			
	CO2 배기량 (g/km)	세율			CO2 배기량 (g/km)	세율**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승용차 (10인 이하)	≤ 100	25*	20*	8*/4*	≤ 100	25	20	8/4
	101-150			16/8	101-150			16/8
	151-200	30	25	23/10.5	151-200	30	25	21/10.5
	〉200	35	30	26/13	〉200	35	30	26/13
	〉3,000 cc	40	40	40	〉3,000 cc	40	40	40
PPV/ Double Cab/ Space Cab/ Pick-up	≤ 175	18/8(6)			≤ 175[185]	18[18]/8(6)[6]/[3]		
	≤ 200	20/10(9)/4(3)/2.5(2), 15			≤ 200	20[20]/10(9)[9]/4(3)[5]		
	〉200	25/13(12)/6(5)/4(3), 17			〉200	25[25]/13(12)[12]/6(5)[8]		
	〉3,250 cc	40			〉3,250 cc	40[50]		
에코카 /E85, 81	≤ 100	12*/10*			≤ 100	12*/10*		
	101-120	14			101-120	14		
전기차/BOI		8/2***				8/2***		

* 주 1: 안전성기준(active safety standard)을 충족해야 함.

** 주 2: 2019년 4월 6일부터 No Cab, Space Cab, Double Cab 차량 중 탄소배출 기준이 km당 0.005g 미만인 개별소비세를 ( ) 안의 세율로 인하, 2026년 1월 1일부터 []안의 세율과 기준을 적용

*** 주 3: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BOI 승인 전기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0%) 예정,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 2%의 개별 소비세율이 재적용

**** 주 4: 태국 투자청(BOI) 승인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50% 감면

자료: 태국 재무부 개별소비세국

○ 지방세: 소비세의 10%(소비세 부과차량에 적용)

○ 부가세: 7%(모든 자동차에 적용)

2022년 2월 15일, 태국 정부는 태국 내 전기차(EV)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승인했다. EV3.0 패키지 승인을 받은 전기차 제조업체는 2022년에서 2023년 동안 수입 관세와 소비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2024년에서 2025년 동안 인센티브 정책은 유지하면서 CBU(Completely Built-UP) 차량에 대한 가격을 현지 생산 차량보다 높게 책정하여 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EV 3.0 보조금 패키지 및 세금 인센티브(2022~2025)

<table>
<tr><th></th><th colspan="2">승용차</th><th>픽업트럭</th><th>오토바이</th></tr>
<tr><td>차량 가격</td><td>2백만 바트 미만</td><td>2백만 바트 초과</td><td>2백만 바트 미만</td><td>15만 바트 미만</td></tr>
<tr><td rowspan="2">수입세 인하</td><td>최대 40% 인하</td><td>최대 20% 인하</td><td rowspan="2">수입세 유지</td><td rowspan="2">수입세 유지</td></tr>
<tr><td colspan="2">수입세: 중국0%, 일본20%, 한국40%, 유럽 80%</td></tr>
<tr><td>소비세 인하</td><td colspan="2">8%에서 2%로 인하</td><td>3%에서 0%로 인하</td><td>소비세 1% 유지</td></tr>
<tr><td rowspan="2">보조금</td><td>배터리 용량 30kWh 미만인 BEV의 경우: 70,000바트</td><td rowspan="2">보조금 없음</td><td rowspan="2">태국에서 생산되며 배터리 용량이 30kWh 초과하는 BEV의 경우: 150,000바트</td><td rowspan="2">18,000바트</td></tr>
<tr><td>배터리 용량 30kWh 초과하는 BEV의 경우: 150,000바트</td></tr>
<tr><td>제조업체 조건</td><td colspan="4">판매용 BEV를 수입 결정한 제조업체는 태국에서 BEV를 생산할 의무가 있음
- 2024년 생산 시작 시 수입차 1대당 1대 비율로 적용
- 2025년 생산 시작 시 수입차 1대당 1.5대 비율로 적용</td></tr>
<tr><td>기간</td><td colspan="4">4년, 2022~2025년
- 수입 시 BEV 적용 인센티브(2022~2023)
- 생산 시 BEV 적용 인센티브(2022~2025)</td></tr>
</table>

자료: 태국 소비세국(ED), 태국 투자청

2023년 11월 1일 전기차정책위원회(EV Board)는 2024년에서 2027년 동안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정책 EV3.5를 승인했다. 첫 2년(2024~2025) 동안 완성형 전기차(CBU) 수입에 대해 최대 40% 관세가 인하된다. 또한, 7백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전기차에 대한 소비세율을 8%에서 2%로 인하된다.

그 후, 수입된 완성형 전기차(CBU)에 대해 2026년까지 1:2(수입 전기차 1대, 태국 내 전기차 생산 2대) 비율로 늘리며 2027년까지는 1:3(수입 전기차 1대, 태국 내 전기차 생산 3대) 비율로 증가한다. 또한, 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제 표준에 따른 표준 테스트 및 태국산업표준(TIS)을 충족하며 자동차 및 타이어 테스트 연구 센터(ATTRIC)의 국제 표준에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EV 3.5 보조금 패키지 및 세금 인센티브(2024~2027)

<table>
<tr><th></th><th colspan="2">승용차</th><th>픽업트럭</th><th>오토바이</th></tr>
<tr><td>차량 가격</td><td>2백만 바트 미만</td><td>2~7백만 바트</td><td>2백만 바트 미만</td><td>15만 바트 미만</td></tr>
<tr><td rowspan="2">수입세 인하</td><td>최대 40% 인하</td><td>수입세 유지</td><td rowspan="2">수입세 유지</td><td rowspan="2">수입세 유지</td></tr>
<tr><td colspan="2">수입세: 중국 0%, 일본 20%, 한국 40%, 유럽 80%</td></tr>
<tr><td>소비세 인하</td><td colspan="2">8%에서 2%로 인하</td><td>3%에서 0%로 인하</td><td>소비세 1% 유지</td></tr>
<tr><td rowspan="2">보조금</td><td>배터리 용량 50kWh 미만인 BEV의 경우: 20,000~50,000 바트</td><td rowspan="2">보조금 없음</td><td rowspan="2">태국 내에서 생산되며 배터리 용량이 50kWh 초과하는 BEV: 50,000~100,000 바트</td><td rowspan="2">태국 내에서 생산되며 배터리 용량이 3kWh 초과하는 BEV: 5,000~10,000바트</td></tr>
<tr><td>배터리 용량 50kWh 초과하는 BEV의 경우: 50,000~100,000 바트</td></tr>
<tr><td>제조업체 조건</td><td colspan="4">판매용 BEV를 수입 결정한 제조업체는 태국에서 BEV를 생산할 의무가 있음(EV3.0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체도 EV3.5정책 참여 가능)
-2026년 생산 시작 시 수입차 1대당 2대 비율로 적용
-2027년 생산 시작 시 수입차 1대당 3대 비율로 적용</td></tr>
<tr><td>기간</td><td colspan="4">4년, 2024~2027년
- 수입 시 BEV 적용 인센티브(2024~2025)
- 생산 시 BEV 적용 인센티브(2024~2027)</td></tr>
</table>

자료: 태국 소비세국(ED), 태국 투자청

식품·의약품 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마약, 유해물질,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독성 물질 등의 생산·유통·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일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의 재량이 커서 면허발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19년 이전에는 태국에서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의약품 판매 허가(MA)는 평생 유효했으나 태국은 의약품법(제6호) 「Drug Act (No. 6) B.E. 2562 (2019)」가 통과된 이후 의약품 판매 허가가 7년 동안 유효하고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2023년 5월, 태국 식품의약청은 갱신 신청 제출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장관 규정 「Renewal of Drug MA Licenses BE 2566(2023)」을 발표했다. 의약품 판매 허가를 갱신하려면 보유자는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태국 식품의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신청서는 태국 식품의약청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태국의 식품 소비 및 규제는 1979년 재정된 「식품법(Food Act of B.E. 2522)」에 의거하여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으로, 그리고 일반식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이어 1998년 태국 공중보건부(MOPH)는 공중보건부처령(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194(B.E.2544)」발표를 통해 식품에 대한 라벨부착 의무화를 포함한 라벨 부착규정을 보다 상세히 명기하였다

2002년 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는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제품의 표준을 설정하고,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감독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축산개발국은 해외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한·태 양국 간에 투자협정은 2009년 10월 31일, 상품협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관세철폐(또는 삭감),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상투자 증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상품 관세철폐 계획

태국은 ① 총 5,079개 품목(수입액 기준 83.1%)을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② 128개 품목(수입액 기준 7.9%)을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제2일반 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175개 품목(수입액 기준 5.2%)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④ 민감 품목 중 123개(수입액 기준 3.7%)는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기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2012년까지 83.1%,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공산품 분야별 태국의 주요 양허 현황

- ○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 철폐
- ○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의 경우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 철강분야도 일-태 EPA와 거의 동등 내지 상응한 수준을 확보

한편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스케줄에는 상당수의 품목이 포함되면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의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되면서 현실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와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FTA 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태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24년 3월 한·태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RCEP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 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 디지털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된다면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의 수출 증대와 건설, 시청각, 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 시장 진출기회 창출, 디지털 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공급망, 바이오,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개시이후 2024년에 3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일반적인 통상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의 2.2배 되는 비교적 큰 나라이나, 국토의 80%이상이 사막이며 인구는 약 660만 명(2024년 IMF 통계)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세계 제4위의 가스 매장량(13~50tcm 추정) 및 20~30위권의 석유 잠재력을 바탕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정유·농업 등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8년 9월 채택한 헌법에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이후, 경제구조 다변화와 점진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국영기업 및 시설의 민영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 9월 개정된 신헌법에는 경제/금융 체계에 관한 제7장이 별도로 신설되었으며, 제7장은 △시장경제 체제 강조 및 중소기업 활동 장려(134조) △조세시스템(135조) △재정시스템(136조) △국가예산시스템(137조) △중앙은행 등 금융시스템(138조) △화폐제도(139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2017년에는 시장중심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그 동안 무료로 공급하던 가스·전기·수도 등 유틸리티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개최된 인민이사회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유틸리티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결정(무료 제공량 폐지)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지방 차원의 자급자족 △수입감소 및 수출증대를 위한 신속한 조치 △중소기업 육성 △식량

안보와 사농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2018~2024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채택하였고, 2019년 2월 '2019~2025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국유재산 감축·디지털화·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등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2010년~2021년 2월까지 총 557건의 국영기업 및 국유자산을 민영화하였으며, 2023년~2024년 11월까지 1,028건의 국영기업 및 국유자산 민영화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나,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는 제외되어 민영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경제 국가발전계획」을 통해 에너지·건설·수송·교육·국방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주력산업인 석유가스 분야는 2030년까지 연간 250 bcm(이중 180 bcm 수출목표)의 천연가스와 1.1억 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가스관·카스피해 횡단 가스관(TCP)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원으로부터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가솔린·경유 등 액체연료를 생산하는 생산 시설을 가동 중이거나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2020년 7월 22일 투르크메니스탄의 WTO 옵저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1년 11월 24일 WTO 가입을 선언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간 대외무역규범(MFTR) 준비를 위해 WTO 및 ADB와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WTO 가입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2011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의 비약적 경제발전을 실현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2012년부터 GDP 성장률이 낮아져 그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였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3년과 2024년의 투르크메니스탄 성장률을 각각 6.2% 및 6.5%로 보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각각 6.3%(2023년) 및 6.3%(2024년)로 발표하고 있다. 향후 성장률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상승세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Fitch사는 2024년 8월, 대외순외화자산의 지속 증가(2024년말 GDP의 55.9% 전망), 외환보유의 증가 지속(55개월분 대외지불능력), 재정 흑자(2024년 GDP의 0.2% 전망), 낮은 수준의 정부채무(2026년말 GDP의 2.9% 전망), 세계 제4위 규모의 가스 매장량 등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 신용등급을 그간 'B+(긍정적)' 평가에서 'BB-(안정적)'로 한단계 상향 평가하였다.

재정정책

니야조프 前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가스 및 전력을 무료로 공급하고, 명목상의 가격으로 주택이나 기본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 출범 이후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가스 공급가격을 인상하며, 수출량을 증대하자 재정수지가 개선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에너지 및 자원·물류 등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대회·2018년 아물-하자르(Amul-Hazar) 국제랠리·국제역도대회 개최 등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2017~2020년 기간 중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로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2020년 이후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 이후 대러시아 가스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에 따른 가스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폭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및 중국으로의 가스수출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상승

200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물가는 2010년부터 계속 상승하였으며, 2015년 7.4%, 2016년 3.6%, 2017년 8%, 2019년 5.1%, 2020년 6.1%, 2021년 19.5%, 2022년 11.2%, 2023년 -1.6%, 2024년 6.3%(잠정) 상승하는 등 2023년을 제외하고 물가 상승세[99]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투자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8년 3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고, 그해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여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사업 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노동·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 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강력한 국가통제, 다소 더딘 경제개혁과 제한적인 비자발급, 낮은 제도화 수준과 법·제도 집행 관행 등으로 시장진입 및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은 독과점 시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뷰익 및 빈치, 튀르키예의 폴리멕스 및 르네상스가 이에 속하며, 발전 분야에

99) IMF 통계자료

서는 튀르키예의 로터스, 찰릭에너지, 송배전 사업에서는 벨기에의 에넥스 등이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에너지 플랜트 중심으로 현대엔지니어링/Lx-international(구 LG상사)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은 LG와 삼성, 승용차 시장의 경우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하였으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승용차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014년 6월 우리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과 2015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핵심 국책사업에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2019년 4월 및 2024년 6월 우리 정상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기업들은 에너지자원 플랜트 분야 이외에도 자동차 등 교통, 물·환경, 보건의료, IT, 섬유, 금융 분야 등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을 추진(제1~제6차 한-투 비즈니스 협의회 개최)하였다.

2016년 11월 한·투르크멘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서가 교환되고 발효(2019년 4월 개정의정서 서명)되었다.

에너지 자원 수출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자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에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2023년 천연가스 총 생산량(76.3bcm)의 52%에 이르는 39.5bcm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고,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30.5bcm에 달해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영국 EI 자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30년에는 연간 1.1억 톤의 석유와 250bcm(이 중 180bcm 수출목표)의 천연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구소련 연방 붕괴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99년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의 수출로가 열리면서 가스 생산이 증대되었다. 2008년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42bcm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와 가스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가스 수출이 잠정 중단되었다. 2010년 1월 가스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물량은 종전의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4bcm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스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2016년 1월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을 재개(1.2bcm)하였고, 2024년 6월까지 5년간 연 5.5bcm 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대러시아 천연가스 수출량은 2020년 3.8 bcm, 2021년 10.5 bcm, 2022년 4.7 bcm, 2023년 4.7 bcm을 기록하였다. 2024년 6월말에 가스 가격 이견 등으로 러시아로의 가스 공급계약은 연장없이 종료되었다.

對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가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자, 국영기업인 Turkmengaz는 2006년 4월 중국 CNPC와 2009년부터 30년간 연간 30bcm의 가스공급계약(PSC)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8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연간 공급량을 40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간 공급량을 25bcm 증가한 65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833km(투르크메니스탄 188km, 우즈베키스탄 530km, 카자흐스탄 경유 1,115km)의 A, B, C 병행 가스관으로서, 사만데페 가스전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호르고스 가스 집하장까지 연결되며, 중국 영토에서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West-East II Pipeline"과 연결된다. 2009년 12월 연 15bcm 규모의 A 라인을 준공한데 이어, 2010년 말 연 15bcm 규모의 B 라인이 개통되었으며, 2014년 6월 연 25bcm 규모의 C 라인이 개통됨에 따라 연간 총 55bcm의 對중국 가스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중국을 연결하는 연 25bcm 규모의 D 라인 타지키스탄 구간 건설에 착공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될 경우 對중국 가스관의 총 공급용량은 80bcm (전체 중국 가스 수입 물량의 약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D 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건설이 2019년 말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3년 9월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가스

처리 플랜트를 완공한데 이어, 2014년 5월 연간 30bcm 규모의 제2단계 가스전 개발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중국과의 협상 등으로 인해 갈키니시 2단계 가스전 개발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對중국 천연가스 수출량은 2013년 24.4bcm, 2014년 25.5bcm, 2015년 27.7bcm, 2016년 29.4bcm, 2017년 31.7bcm, 2018년 33.3bcm, 2019년 31.6bcm, 2020년 27.2bcm, 2021년 31.5bcm, 2022년 32.9bcm, 2023년 30.5bcm을 기록하여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다(영국 EI 자료).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가스수출대상국이 됨에 따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의존 경제에서의 탈피와 함께 중국으로의 높은 가스 수출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가스 수출 대상국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시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인도에 공급하기 위한 TAPI(Turkmenistan- Afghanistan-Pakistan-India) 프로젝트(1,814㎞, 33bcm)가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8월, TAPI 가스관 당사국들은 기술·상업적 실현가능성, 주주간 협정, 투자협정 등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gas 공사가 동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리더로 선정되었다. 2015년 12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TAPI 가스관 착공식,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아프간 구간 착공식이 있었다. 그간 Total, Chevron 등의 외국계 기업이 TAPI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표명해 오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육상광구 개발권을 요구한데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 기업들의 참여가 무산된 바 있다.

TAP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자원 인프라, 건설, 교통 등 분야에서 잠재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슬람개발은행(IsDB)과 투르크메니

스탄 구간 내 TAPI 파이낸싱 계약 서명에 합의하였다. 2020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이 사우디 개발기금(SFD)과 TAPI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제공(금액미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시행령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그간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보 문제로 해외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4년 9월에는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TAPI 투르크메니스탄(Serkhetabat)과 아프가니스탄(Herat) 구간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한편,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Trans-Caspian Gas Pipeline, TCP)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럽으로 공급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와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연결하는 카스피해 해저 가스관으로 총 길이 300㎞, 연 용량 30bcm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동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경제 지표

경제 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제성장률 (%)	1.7	-3.7	-2.1	-0.3	5.3	2.0	2.3
GDP (십억달러)	49.3	53.04	52.39	60.93	77.96	77.72	83.88
CPI 상승률 (%)	13.3	4.9	6.9	18.9	11.2	n/a	n/a
상품수출 (십억달러)	11.65	11.1	7.68	10.28	14.67	n/a	n/a
상품수입 (십억달러)	5.32	5.83	5.92	6.24	7.36	n/a	n/a
경상수지 (십억달러)	3.02	1.55	1.54	4.02	5.48	3.66	3.32
소비자 물가 (%)	13.3	5.1	6.1	19.5	11.2	-1.6	6.3

*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IMF(경제성장률·GDP·경상수지·소비자물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위원회(CPI 상승률·상품 수출·수입)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2024.10월 발표)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2024년도 GDP 성장률을 2.3%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ADB는 아시아경제전망보고서(2024.9월 발표)에서 천연가스·석유의 생산 및 수출 증가, 산업 성장 및 정부투자 증가 등으로 2024년도 성장률을 6.5%로 전망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도 공식 성장률을 2022년 6.2%·2023년 6.3%·2024년 1~10월간 6.3%로 발표하여 IMF의 발표치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편 IMF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해 2024년 6.3%·2025년 8.0%·2029년 8.0%로, 경상수지(GDP 대비)는 2024년 4.0%·2025년 2.7%·2029년 △1.4%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2022년도 총교역 규모는 220억 달러이며, 7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투르크메니스탄 통계위원회). 수출액은 146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74억 달러이다. 수출의 대부분은 에너지 부문이며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가스·석유류 제품·전력·비료·직물·카펫 및 농산물(채소) 등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과의 교역현황

(백만불 , ()는 전년대비 증가률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출	361.8 (98.6)	130.9 (△ 63.8)	19.8 (△84.9)	13.1 (△33.5)	69.0 (△462.3)	8.8 (△87.2)	8.5 (△3.3)	16.9 (98.8)
수 입	0.09 (△197.5)	0.05 (△44.5)	0.1 (127.8)	0.01 (△91.5)	0.005 (△51.1)	0.03 (550.7	0.04 (12.6)	0.003 (△92.5)
무역수지	361.7	130.9	19.7	13.1	69.0	8.8	8.5	16.9
총교역액	361.9	131.0	19.9	13.1	69.0	8.8	8.5	16.9

2023년 우리나라의 對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은 16.9백만 달러, 수입은 3천 달러로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對투르크메니스탄 교역은 흑자 편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양국 교역량은 투르크메니스탄 내 플랜트·인프라 사업이 진행시에는 2~4억불의 규모를 나타내며, 플랜트 완공시에는 천만불 내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타 사무기기, 기타 플라스틱 제품 순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제조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産 수제 모직 및 견직 카펫은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투르크 카펫트협회〈Туркменхалы〉승인)가 있어야 하고, 수입 시에는 1㎡ 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내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야채($1/1㎏), 과일($1/1㎏), 주스($0.15/1㎏)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점진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질적인 경제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국 중소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식료품·화학제품·섬유제품 등 다양한 분야(최근에는 담배[100]와 주류[101] 승용차[102])에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관세를 높이고 있다.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 시 표준·인증·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모든 수입소비재는 국가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동차·오토바이·트랙터·특수차량 및 장비는 연식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생산 건설 기자재 우선 구매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

100) 담배는 1팩당 미화 5$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격의 116%

101) 맥주는 1리터당 9마낫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격의 92%, 포도주(20%이하)는 1리터당 39마낫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격의 168%

102) 엔진배기량(1입방 ㎝당 0.3달러)

디지털 무역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017년 7월 1일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되었으며, 동법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분야의 규제와 목표를 정의하고, 이의 수집,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활동의 원칙과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디지털 무역활동 수행 권리에 대한 제한은 '소비자 권리보호', '무역활동', '투르크메니스탄 인터넷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 등 법령에 근거하며, 2020년 7월 '원격 수단에 의한 상품판매 규칙'이 도입되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터넷의 제한은 2014년 12월 14일에 승인된 '투르크메니스탄 내 인터넷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근거하고 있다. 인터넷 특정 제한 사항에 관한 세부 목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웹사이트 및 메신저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에 대한 제한은 상기 법률에 근거하나 실제로는 특정 사이트,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등 서비스 제한이 서면 명령이나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개방형 인터넷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자를 추적하는데 독일(Rohde & Schwarz) 장비와 기술, 영국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17년 2월 1일부터 VPN을 사용하여 차단사이트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단속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인터넷 서비스 품질이 낮음에도 비용(평균속도는 6메가비트/s 기준 280마낫, 약 80달러)이 다소 높은 국가에 속하며, 인터넷 접근성(모바일 포함)은 4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영토와 관련된 지리정보, 개인정보(개인 및 법인),

금융정보, 의료정보의 전송을 제한하는 법률 등[103]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송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의 사용에 대한 제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 보장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정보 자원은 비밀로 분류되며, 이의 수집 및 처리는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수행되고 있다. 의료인의 접근은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법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과 환자만 가능하다.

클라우드 시스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으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도 차단되어 인터넷 사용자는 icloud.com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라 현재 수도의 평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0기가비트이나 향후 100Gbps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현황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중앙은행과 9개의 은행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은행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 (2011. 3. 25.)
- 투르크메니스탄 신용기관 및 은행업에 관한 법률 (2011. 3. 25.)
- 투르크메니스탄 소액금융기관 및 소액금융에 관한 법률 (2011. 5. 21.)
- 투르크메니스탄 신용조합에 관한 법률 (2011. 8. 4.)
-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관계에서의 통화 규제·감독에 관한 법률 (2011. 10. 1.)

103)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 투르크 공무원법, 상업적 비밀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해외로 정보이전에 관해서는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됨.

- 투르크메니스탄의 의무적 개인예금 보장에 관한 법률(2016. 10. 15.)

투르크메니스탄의 대다수 은행은 국영은행 또는 부분적 국영은행이며, 이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한다. 국영은행은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전략적 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 현황

(1)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주소: 32, Garashsyzlyk Ave,Ashgabat, 744000, Tel: (+993 12) 40-65-63, 40-65-95, 웹사이트: http://www.tfeb.gov.tm/)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이다. 동 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무역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경제관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입 업무 및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용이하게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기능 및 목표) 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무역거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국제무역과 관련된 비즈니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입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 결제 처리) 동 은행은 국제 결제·정산을 처리하여 대외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종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전 등 서비스) 동 은행은 국제 무역·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환전에 관여하여 기업이 필요에 따라 통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용장(LC)·보증·수출입 금융 등 무역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여 국제 무역 활동을 지원한다.

(투자 지원)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즉,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기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Turkmenbashi
(주소: 121, Chandybil Ave., Ashgabat, 744000, Tel: (+993 12) 44-41-06, 웹사이트: https://www.tbbank.gov.tm/)

1991년 소련의 붕괴는 국영상업은행인 Turkmenbashi의 역사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 운영되던 Turkmenpromstroybank(투르크멘 건설·산업은행)는 주식투자상업은행 Investbank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은행 중 하나인 Investbank는 자국 통화 및 외화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 및 투자기관 자격으로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면허(등록번호 No.1)를 투르크메니스탄 재경경제부로부터 취득하였다. 동 은행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투자기관 자격으로 영업을 영위하였다. 1999년 1월 Investbank는 제반 산업 및 산업 인프라 자금 조달에 중점을 둔 전문 국영상업은행으로 재조직되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자본기업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2000년 4월 주식투자상업은행 Investbank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Turkmenbash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 은행은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뱅킹·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매금융서비스: 저축계좌, 당좌예금 계좌, 개인 대출 및 기타 소매 중심 금융상품
- 기업금융 서비스: 기업 대출, 무역금융, 외환서비스 및 기타 기업 고객용 맞춤형 서비스

(3)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Turkmenistan
(주소: 79, Gorogly Street, Ashgabat, 744000, Tel: (+993 12) 92-07-04, 44-03-03, 웹사이트: https://www.tnbk.tm/)

동 은행의 주요 업무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에게 신용 한도를 개설하고 은행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뱅킹·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은행 대출: 비영리 법인·개인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 뱅킹 서비스: 자국통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자국통화 및 외화로 비현금/현금 결제, 신용장에 따른 결제, 은행업무 관련 서식 및 서비스, 금리 관련 업무, 은행 카드 업무, 은행 보증

(4)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Dayhanbank
(주소: 465, Bitarap Turkmenistan Ave., Ashgabat, 744000, Tel: (+993 12) 92-02-91, 웹사이트: http://www.dayhanbank.gov.tm/)

공식 명칭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Daikhanbank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Daikhanbank는 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분야 대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초기에 동 은행은 농공단지 자금 조달에 중점을 두었다. 동 은행의 주요 업무는 자금 조달 대상 기관들에게 신용 한도를 개설하여 daikhan(농민) 협회의 농산물 생산자들과 적시에 정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동 은행은 제조업·건설업·교통업·통신업·정보기술업·일반서비스업·소비자 서비스업·보건업·관광서비스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왔다. 휴경지 개발, 농업 생산 발전·확대, 기술 재정비, 축사·농장·소규모 작업장 건설, 가축·가금류·사료·광물질 비료·종자·묘목 등 구매도 동 은행의 주요 업무이다. 동 은행은 건설 분야 정부기관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주거용 건물 건설을 위한 대출도 제공하고 있다. 동 은행은 외환 업무를 위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예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은행은 독일 Commerzbank 및 Deutsche Bank의 대리은행이며, 다음과 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 아시가바트시(市) - 2개 지점
- 아할주(州) - 9개 지점
- 발칸주(州) - 7개 지점
- 다쇼구즈주(州) - 10개 지점
- 레밥주(州) - 16개 지점
- 마리주(州) - 13개 지점

(5)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Halkbank
(주소: 154, Hero of Turkmenistan Atamyrat Niyazov Ave., Ashgabat, 744013, Tel: (+993 12) 22-73-23, 웹사이트: https://www.halkbank.gov.tm/)

동 은행의 명칭은 투르크멘어에서 people's bank로 번역된다. 본점은 아시가바트에 소재하며, Halkbank의 지점 네트워크는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을 아우르며 다양한 예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3년 4월 30일 구소련 투르크멘 공화국 저축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 저축은행으로 전환되었고, 2001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Halkbank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0년 국영상업은행 Halkbank는 공개형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6)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개발은행
(주소: 143, The Hero of Turkmenistan Atamurad Niyazov Ave., Ashgabat, Tel: (+993 12) 21-04-43, 웹사이트: https://www.tdob.gov.tm/)

2011년 9월 9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 제PP-5854호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개발은행이 설립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개발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 안정화 기금을 통해 시행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대표적인 국영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동 은행은 소유권과 무관하게 생산 개발·현대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투르크메니스탄 기업에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과제를 부여 받았다. 동 은행은 개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를 위해 독점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7)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Senagat
(주소: 129, Chandybil Ave., Ashgabat, 744013, Tel: (+993 12) 44-43-04, 웹사이트: http://www.senagatbank.com.tm)

1989년 10월 18일 22명의 발기인에 의해 상업은행 Senagat가 설립되었다. 동 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설립된 최초의 상업은행 중 하나이며, 주요 목적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상업/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가 및 민간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1991년 11월 11일자 창립총회 결의 및 1992년 6월 9일자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령 제3호에 의거 상업은행 Senagat는 주식회사 Senagat로 전환되었다. 동 은행은 공개형 주식회사로서

주식을 발행·상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JSCB Senagat는 공개형 주식회사이며 투르크메니스탄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동 은행은 13개 지점(아시가바트시(市) 2개, 발칸주(州) 세르다르시(市) 및 투르크멘바시시(市) 2개, 다쇼구즈주(州) 구바다그시(市) 1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371,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Senagat 설립 이후 발행된 보통주는 모두 투르크메니스탄 재무·경제부에 등록되었다. 주식을 매수한 주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1년 주주 수는 22명이었으며, 현재 주주 수는 2,000명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Senagat는 다음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폐쇄형 주식회사 Ashgabat Stock Exchange - 지분 55%
- 폐쇄형 주식회사 Turkmen National Oil and Gas Company - 지분 1%
- 폐쇄형 주식회사 Altyn Asyr - 지분 1%
- 폐쇄형 주식회사 Insurance services - 지분 45%

(8) 투르크멘-튀르키예 합작 상업은행
(주소: 111/2, Makhtumkuli Ave., Ashgabat, 744000, Tel: (+993 12) 93-83-47, 웹사이트: https://www.turkmenturkbank.com.tm/)

투르크멘-튀르키예 상업은행은 1992년 5월 2일 투르크메니스탄과 튀르키예가 체결한 정부간 양해각서에 따라 1993년 3월 31일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외국인 투자 합자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당해년도 9월 21일부터 영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는 Agrosenagatbank(현재 국영상업은행 Daikhanbank), 튀르키예 측에서는 Ziraat Bank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투르크메니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발맞춰 투르크멘-튀르키예 상업은행(TTKB)도 빠르게 발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은행 분야 및 경제에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동 은행은 기업 대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이 외화대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개발 목표와 병행하여 민간 분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농업·식품업·제조업 분야에 대출을 제공한 결과,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지난 몇 년 사이 약 6배 증가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TTKB가 자금을 지원한 일부 기업은 현재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수입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대외무역수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TTKB는 ATM, 온라인 지점, POS 단말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에서 7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국제무역, 현지 결제, 무역금융, 웨스턴유니온, 다양한 상품이 포함된 은행 카드 구현 분야 서비스 제공이다.

(9) 주식상업은행 Rysgal
(주소: 23,1946 (Ankara) str.,Ashgabat, 744027, Tel: (+993 12) 96-46-10, 웹사이트: https://www.rysgalbank.com.tm)

동 은행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은행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다음 항목들에 중점을 두며 운영되고 있다.

- 성장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구조 형성
-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대출 포트폴리오의 품질 개선
- 운영 프로세스 관리 구조 개선
- 은행 보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의 체계화
- 제공되는 서비스 및 상품을 더욱 혁신적인 수준으로 개발

금리

투르크메니스탄의 예금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마나트화(TMT))로 제공된다. 예금이자는 은행 및 예금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예금 이자율은 예금 기간, 유형 및 예금 한도에 따라 4~12%로 다양하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7%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연 1% 이자율의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시중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비자 대출을 제공하며 이자율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부 은행은 일반 정기예금 외에도 저축계좌 또는 외화 계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계좌는 일반 정기예금 대비 이자율/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은행 시스템은 최근 몇 년 사이 통화 유동성 관련 문제·투명성 부족·통화 변환 제한 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금의 안정성 및 자금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은행 예금과 관련된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율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은행 예금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고정 환율(1 달러 = 3.5 마낫)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6년 외화 부족 현상에 직면하여 암시장 환율이 형성되었다.

외환 관리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urkmenistan)은 2015년 1월 1일자로 1달러당 자국 통화(마나트화) 환율을 기존의 2.85마낫에서 3.5마낫으로 평가절하하였으며, 동 조치로 인해 마나트화의 가치는 18.6% 하락하였다(현재 중앙은행이 고시한 1달러당 3.5마낫이며, 암시장 환율은 이보다 5~7배 높은 수준이다). 동 평가절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주요 외화 가득원인 가스 수출 수입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무원의 급여, 연금 등을 매년 10% 인상하고 있지만, 2018년~2022년 동안 평균 약 11%의 물가상승률을 보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외환 수입 감소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현지 기업과 개인에 대해 US달러의 매입을 제한(2016년 1월부터 개인 환전 불가)하고 있으며, 아시가바트 신공항·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2018년 아물-하자르(Amul-Hazar) 국제랠리·국제역도대회 개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추가 평가절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대외경제은행(Stat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urkmenistan)을 통해 해외로 외환 송금이 가능하나, 송금 금액 및 횟수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참고로 외환 송금에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청구된다.

송금액(USD)	개인고객 수수료(USD)
300 이하	18
301 ~ 1,000	35
1,001 ~ 5,000	60
5,001 ~ 10,000	100
10,000 이상	송금액의 0.5%, 최소금액 120
외화 환전	금액의 1%, 최대금액 17,391

송금액(USD)	법인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수수료(USD)
500 이하	30.43
501 ~ 1,000	56.52
1,001 ~ 5,000	69.57
5,001 ~ 25,000	78.26
25,001~ 50,000	100
50,000 이상	송금액의 0.17%, 최소금액 130.43, 최대금액 521.74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상용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위해서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사업 발주관청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 초청장 발급 후 신규 발급된 여권으로 공항 입국 시에는 구 여권을 신 여권과 함께 지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므로 신규 여권으로 다시 비자 초청장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 72시간 내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104]

104) 입국일과 출국일, 주말을 제외하고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비자 초청장 발급신청기관을 통해 사전에

체류등록을 한 피초청인이 출국 시에는 출국일로부터 3일 이내 초청기관에서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초청기관에 건당 1,200~2,400마낫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세 제도 및 기타 부담금

국세

1)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 지분이 1%만 포함되어 있어도 외국기업으로 간주)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약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을 부과하며, 2)재산세의 경우에는 1%(연간 과세기준에 따름), 3)법인 소득세는 외국기업의 경우 20%, 내국기업(이 경우 세법상 용어로 '거주법인'으로 표현하며, 지사 및 대표사무소 형태가 아닌 외국인 투자 법인도 포함)은 8%, 4)개인소득세는 간주급여를 포함한 과표의 10%, 5)사회보장세는 소득의 20%(외국인은 면제)가 각각 부과된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비거주외국기업의 경우 법인세 선납제도가 적용되어 분기단위로 신고서 제출 및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前분기 선납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국세 종류 및 세율

국세 종류	세율	납세자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VAT)	15%	법인 및 개인 (VAT 납세자)	물품 판매,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 및 재산권 양도
소비세	소비재별 상이	법인 및 개인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에서 소비재를 수입/생산하는 경우
하층토 사용세	광물별 상이	법인 및 개인	광물 채굴
재산세	1%(연간 과세 기준에 따름)	법인	소유권이 있는 재산 기준

체류등록을 하여야한다. 1회 불이행 시 342달러의 벌금, 2회 위반 시에는 벌금 이외에 5년간 입국에 규제를 가한다.

국세 종류	세율	납세자	과세 대상
법인세	소유 형태에 따라 8%, 20%	법인	이익
사업소득세	2%	개인사업자	총소득
개인소득세	10%	개인	개인 소득

지방세

도시·농촌 지역 개발부담금은 개인의 경우 2마낫/월, 개인사업자는 총소득의 0.3%, 농업 발전기여금은 이익의 3%를 부과(분기납부)하고, 연금은 현지 고용 노동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봉급월액의 10% 내외를 원천징수하며, 투르크메니스탄 행정관청의 주문 제작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기타 지방세로는 광고세(위치에 따라 광고비의 3~5%), 주차장 소유세, 자동차 판매세, 자동차세(차종에 따라 세율은 기본세율의 배수) 등이 있다.

지방세 종류 및 세율

지방세 종류	세율	납세자	과세 대상
광고세	위치에 따라 3~5%	법인 및 개인	상업 광고 배포
도시·농촌 지역 개발부담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0.3%	개인사업자	총소득
	개인의 경우 월간 2 마낫	개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농업 분야 기업의 경우 0.5%	법인	이익
	기타 법인의 경우 1%	법인	이익
주차장 소유세	위치에 따라 ㎡당 0.9~1.5 마낫	법인 및 개인	유료 주차장
자동차 판매세	차종에 따라 상이	법인 및 개인	자동차 판매
자동차세	·이륜자동차: 기본 세율 적용 ·버스: 기본 세율의 3배 적용 ·승용차: 기본 세율의 2배 적용 ·트럭: 기본 세율의 6배 적용	개인	차량 소유
아시가바트 발전기여금	0.5%	법인	이익
농업 발전기여금	3%	법인	이익

기타

에너지 분야의 생산물 분배 계약(PSA)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분담금이 부과되며, 분담금은 해당 공종에 따라 차별된다.

세금 납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금·계산 납부를 위한 통화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투르크메니스탄 자국 통화로 계산·납부한다.

세무대리인을 포함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비거주자 법인의 세금 납부는 외화(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통화)로 할 수 있다.

세금 목적의 모든 외화 거래는 투르크메니스탄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거래일 기준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국 통화로 재계산되며, 공식 환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에 대한 교차환율을 적용한다.

공공요금

그동안 자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되던 가스,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이 2017년 10월 원로이사회(Elders Council)를 통해 전격 유료화 되었다. 2018년 9월 25일 인민이사회에서 그간 유지해 오던 무료 공급량이 폐지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완전 유료화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주요 공공요금표는 아래와 같다.

(천연 가스)

- 기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 : 천연가스 1,000㎥당 20마낫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난민 : 천연가스 1,000㎥당 20마낫

- 상기 이외의 소비자(해외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제외) : 천연가스 1,000㎥당 20마낫
- 해외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 천연가스 1000㎥당 50달러
- 주택 및 기타 필요한 경우 : 액화가스 kg당 20텡케

(전기)

- 주정부 예산 및 동등한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법인 : 3.31마낫/100kWh
- 주정부 소유의 독립법인, 사업에 종사하는 비국유법인, 개인사업자 : 7.22마낫/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난민 : 2.17마낫/100kWh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주재국에 등록된 사무실과 지사를 통해 설립된 법인 : 3.58US달러/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인된 외교 공관, 외국 영사관, 각 주정부 및 정부기구, 국제기구와 이들 기관의 주재국 지사 및 영구 대표부 : 3.31마낫/100kWh
- 기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주재국 국민 : 2.50마낫/100kWh(부가가치세 포함)

(수도, 난방 등)

- 수도 사용은 ㎥당 50텡게/월, 관리비는 ㎡당 1마낫/월, 난방은 ㎡당 50텡게, 하수도세 1인당 40텡게/월

(버스)

- 1회 탑승권 50텡게
- 연금생활자 월 이용권 1마낫
- 초중고생 월 이용권 2마낫

법인, 지사 및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사항

법인형태는 국영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 및 주식회사 등의 형태가 있다.

법인 설립 필요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법인 설립 결정을 위한 발기인총회의사록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서
- 총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신설 법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법정 주소) 등
- 신설 법인의 대표자가 자연인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상명세서
- 법인 설립업무를 대리할 변호사 또는 회사에 대한 위임장
- 등록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대표사무소 설립 필요서류

-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본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대표이사 서명)
- 대표사무소 설립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대표사무소 대표(대표사무소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대표사무소 대표(대표사무소장)에 대한 위임업무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이사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대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대표사무소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지사 설립 필요서류

- 투르크메니스탄 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약서 사본(번역공증)
- 지사 설립 신청서(설립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이사 성명 등)
- 지사 설립 및 지사장 위임 등을 명령/의결하는 이사회의사록(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지사 설립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및 러시아어 각각 2부)
- 지사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지사장에 대한 위임업무범위 및 기한을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이사의 확인, 공증 및 외교부의 영사 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등기부등본(공증 및 외교부 영사 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동)
- 본사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비외감법인의 경우 세무서 발급 표준영문재무제표)
- 본사 주거래은행 추천서(또는 거래확인서) 및 예금잔액확인서(공증 및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조직도 및 인원 현황표
- 본사 보유 면허 사본(ISO 등)

- 본사 등기임원 및 주주 여권사본(상동)
- 본사 주주명부
- 본사 소개서 및 해외투자 또는 진출 실적(건설업의 경우 해건협 발행의 해외건설실적)
- 지사 사무실 임차 예정확인서
-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상기 문서 준비 및 제출시 유의 사항

상기 대표사무소 및 지사 설립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관행상 한국인 투자법인 또는 한국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 등록 시 상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부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에 대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설립 시 매 2년마다 연장 등록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 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임시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1단계)

상기 서류를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업종코드를 부여하는 바, 이후 투자자는 동 번호와 상기 서류들을 재정경제부[105]에 제출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다시 산하기관인 경제위기예방청(Agency on Economic Risks Prevention)으로 이송한다. 경제

위기예방청은 상기 이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고, 이 단계부터 투자자들은 경제위기예방청의 안내를 받거나 전문 법률회사의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경제위기예방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기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투자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국가 보안부, 내무부, 재정경제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통상 2~3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등록이 승인되면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에 3,00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2단계)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다시 통계청으로부터 업종코드를 재확인[106]받아야 하는데, 그 후 투자자는 국세청에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현지화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기 통계청의 업종코드 재확인서, 국세청의 등록 확인서 및 은행의 현지화 거래계좌 개설 증빙 서류를 다시 경제위기예방청에 제출하면 '정식 등록허가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재정경제부에 이송하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를 경제위기예방청으로부터 이송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며, 신청인은 상기 등록허가서와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내무부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규정상 법인 설립,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등록 소요기간은 관련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서류 보완 과정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전문 법률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

---

105) 2017년 10월 5일자로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가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로 통합

106) 재정경제부 및 경제위기예방청에서 관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업종코드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청에서 재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 참고로 2024년 11월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 설립·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사무소로는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코퍼레이션·LX인터내셔널·S&T의 5개 업체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1991년 12월 가입),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1999년 9월 가입), 국제산업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약(2015년), 올림픽 심볼 보호를 위한 나이로비 협약(1999년),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2016년) 등 국제조약과 WIPO, EAPO (Eurasian Patent Office)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접근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 수준과 현실적인 법 집행 관행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허권의 경우 현재 연간 70~80건의 특허 출원이 있고, 이중 90% 정도가 등록되고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연간 약 4,000건의 상표 출원이 있고, 이 중 80% 정도가 등록(공식 출원 및 등록 현황 미공표)되고 있다. 2017년 11월 발명권 보호법이 제정되고 발의되었으며, 12월에는 건축물 특허 등록과 관련해 저작권법 및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정부 조달

2011년 7월 23일 공표된 대통령령에 의거 20,000마낫(약 7,034달러) 이상의 정부 조달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나, 관행상 입찰 공고 시에는 이미 낙찰 대상 기업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품·원자재거래소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원자재거래소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에 따라

1994년 7월 29일 설립되었으며, 생산자를 지원하고 상품·원자재거래소의 활성화 목적으로 2015년 1월 22일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원자재거래소를 통해 4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원자재거래소가 수출입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면섬유·섬유제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튀르키예·중국·러시아·아랍에미리트·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독일·미국·영국·우크라이나·스위스 등이 주요 거래국가이다.

모든 기업·기관·투르크메니스탄 국민 및 외국인은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원자재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거주자의 경우 연간 회원가입비는 10,000마낫(예치금 100,000마낫)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경공업 분야 연간 회원가입비는 5,000달러(예치금 10,000달러), 석유 분야 연간 회원가입비는 10,000달러(예치금 100,000달러)이다.

상품·원자재거래소 회원가입 필요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 주거래은행 정보를 기재한 서류(회사 대표이사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
- 약정서(회사 대표이사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
- 중개인에 대한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회사 대표이사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
- 상품·원자재거래소에 대한 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 사본(공증본)
- 중개인 및 회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중개인 사진(3x4) 1매
- 법인 설립문서 사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물류 현황 및 전망

현재의 물류 시스템은 구소련 시대에 구축된 것으로서 현존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이나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구축되었으며,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수송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물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 다변화 차원에서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확보 및 효율적 무역을 위한 수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만큼, 인접국과의 교통·물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매우 중요한 전략과제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럽-아시아, 중앙아-중동·남아시아 등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중계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통·물류 복합시설 건설, 자국 수송망의 국제수송망과의 연결을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위대한 실크로드의 부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륙의 남-북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간 철도가 완공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도로 운송망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건축 중인 기존의 주요 도로들과 신규 건설 고속도로를 모두 합하면 약 1,700km에 달하며, Ashgabat-Turkmenbashy 고속도로, Turkmenbashy-Garabogaz-카자흐스탄 국경지역 연결 도로, Turkmenabat-Gazojak-Dashoguz 연결 도로, Mary-Serkhetabat 연결 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Ashgabat-Turkmenabat 고속도로(600㎞)는 2021년 10월말에 1단계 Ashgabat-ejen 구간(203km), 2024년 4월에 2단계 Tejen-Mary 구간(109km)까지 완공하였으며, Mary-Turkmenabat 구간(288km)은 건설 중에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를 운항하는 상선단(일반 화물선, 탱커, 페리선 등) 구축, 현대적 항만 인프라 시설(선석, 선박수리소, 해운물류센터 등) 개발을 통해 투르크멘바시市를 카스피해의 주요 국제항구로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투르크멘바시 항만 현대화 사업이 2013년 8월 Erdogan 튀르키예 총리의 방투 계기에 착공되었고 2018년 5월 준공되었다. 전체 면적은 140만 ㎡, 연간 처리량 2,700만 톤으로 여객, 컨테이너, 벌크 화물 페리용 열차 및 폴리프로필렌 터미널, 조선소[107] 및 수리소를 보유하고 있고, 조선 및 선박 수리공장은 1,800m에 이르며, 선박 17척을 동시에 운행 가능하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 수송 시스템 발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의하여 국제 수송 관련 법적 기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며[108], 인근국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11월에는 UN의 지속가능한 수송망 국제 컨퍼런스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11월 제7차 아프간지역경제협력협의회(RECCA Ⅶ)에서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에 'Lapis Lazuli Ruute Agreement' 를 체결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투르크가 발의한 아프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간의 운송 및 교통협력협약(Lapis Lazuli)에 참여하는 국가국제회의(Heavy Caspian: Turkmenistan)를 개최하였다. 2024년 4월에는 제38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의가 아시가바트에서 개최되었다.

통신 인프라

시내 유선 전화의 경우 기본료 1마낫으로 저렴하나, 해외 유선 전화 사용료는

107) 2020년 8월 발칸조선소는 연간 4~6척의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고 보도되었으며, 2023년 9월 한국 선박 건조 기업인 고려조선산업기술㈜과 6,100톤급 화물운반선 2척 공동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 건조 중에 있다.

108)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보장에 있어 수송 및 환승 루트의 역할에 관한 결의'가 2014월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지속가능한 복합 수송망 촉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간 협력에 관한 결의'가 2015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에 관한 결의'가 2017년 12월 채택되었다.

매우 비싼 편이다.[109] 무선 전화의 경우[110], TMC社가 있으며, 국내외 수신 전화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화되면서, 발신, 수신에 관계없이 비용이 청구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인공위성[111]을 발사한 이후 통신비용 및 품질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으며, 일각에서는 인공위성 발사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투르크 인터넷 통신 평균속도는 6메가비트/s이하이며, 월간 요금은 280마낫(공식환율 기준 약 80달러)이고, 2023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약 320만명(모바일 포함)으로 투르크 인구의 인터넷 접근성은 약 45%로 알려져 있다.

현지 기업인 Altyn Asyr(TMC社)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3G 수준의 품질이다. 전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품질에 만족하기 어려우며, 또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통신 위성을 사용한 인터넷망을 이용하기도 하나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통신환경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전 지역의 통신환경을 4G·5G로 업그레이드 하고 카스피해 해저에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케이블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8월 Turkmentelecom은 인터넷의 추적 및 통제(소셜미디어, VPN 사용제한)를 위하여 외국(독일, 영국) 장비를 도입 설치하였으며, 잘 알려진 사이트라 하더라도 투르크에서 당국이 허용하는 사이트를 제외하면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운전면허 및 운행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한국의 국내 및 국제 운전면허를 불인정하고 있다.

109) 한국으로 전화시 분당 최소 5천원 이상, 호텔의 경우 9천원 수준이다.

110) MTS社(러시아)의 서비스가 2017년 10월 돌연 중단되었다.

111) 2015년 4월 최초의 상업용 위성을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2017년 12월 제2기 탐사위성 개발계획(약 3.71억 달러)을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2023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국은 내무부 확인을 통해 양국이 상호 가입되어 있는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이 별도 부재하다는 사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국내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운전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3개월) 및 의료진단서 제출 후, 이론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보험 공사의 대인, 대물 및 자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고의 또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부보험공사에서 전액 손해 보상 및 합의를 책임지므로 가급적 책임보험 외 비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양국간 협정 체결

대한민국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양국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15년 6월 30일자로 발효되었다.

양국 정부 간 항공업무협정이 2008년 11월 6일 서울에서 서명(외교통상부 장관·교통통신부 부총리)되었고, 2009년 1월 5일자로 발효되었다.(2016년 11월 26일에 동 협정 개정의정서가 서명됨)

우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서가 2016년 11월 26일 아시가바트에서 교환됨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2019년 4월 17일 개정의정서 서명, 2020년 2월 6일 발효)되었다.

2019년 5월 17일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었다.

2023년 10월 31일 서명된 무역경제협력협정은 2024년 1월 27일 발효되었다.

동 협정의 발효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활동 증진, 공업·에너지·농업 등의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그간 6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며(제1차: 2010년 6월, 제2차: 2011년 3월, 제3차: 2014년 8월, 제4차: 2015년 1월, 제5차: 2021년 6월, 제6차: 2022년 4월), 양측은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제7차 협상(2024년 11월) 등 문안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수입부과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관세(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6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파키스탄 정부는 섬유, 전자 등 일반 소비재와 산업재를 불문하고 규제 관세를 폭넓게 부과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규제관세를 재정적자 보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세무국(Federal Board of Revenue, FBR)에서 법적규제명령(Statutory Regulatory Order)를 통해 추가 관세 및 규제관세 품목 및 세율이 고시되고 있으며, 2024년 6월 30일자로 85개 품목에 대한 규제관세 명령 SRO 928(I)/2024 및 30개 분야에 대한 추가관세(Addtional Custom Duty) 명령 SRO 929(I)/2024이 발표되었다.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관세를 포함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로는 수입관세(Custom Duty, 0~100%), 규제관세(Regulatory Tax, 2~90%를 추가 부과/관리 대상 품목에 따라 건별 부과),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13%), 추가일반판매세(Additional GST, 3%), 원천세(Withholding Tax,

1~5.5%, 상품수입업자의 경우) 등이 있다.

파키스탄 연방세무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pk)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는바,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관세 변동 품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도
- 일반관세 35%에서 30%로 인하
- 의약품 원료 10%에서 5%로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율 25%까지 인하, 폐기고무 및 타이어 20%에서 10%로 관세 인하

○ 2013년도
- 일반관세 30%에서 25%로 인하
- Gilgit-Baltistan, Balochistan, Malakand Division 내 과일 가공 및 보전 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공장 및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2014년도
- 자동차 엔진성능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 대해 25%~100% 관세 및 기타 세금 감면
-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3%→4%) 인상
- 에너지절약 튜브 20%에서 관세면제, 체내 재흡수가능 생체 심장 받침대 관세면제, 태양 수중펌프 20%에서 관세면제, 수중치료·정수기계 및 장비 20%에서 15%로 관세 인하

○ 2015년도
- 농업용 기계에 대해 당초 5~20% 관세에서 2%로 인하
- 중고 건설용 기계에 대해 당초 30% 관세에서 20%로 인하

- 수입 혹은 대여 항공기, 훈련용 항공기 정비키트, 항공기·훈련용 항공기·시뮬레이터용 예비부품, 정비·수리·관리 회사에서 인증한 수입기계·장비·도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2016년도

- 2016-17 회계연도 내 한시적으로 직물, 가죽, 스포츠 용품, 수술도구, 카펫 등 5개 영역 품목에 있어 무관세를 적용
- 기존 2%, 5% 관세를 병합하여 3% 관세로 통일
- 기존 10%, 15% 관세는 각각 11%, 16%로 상향 조정

○ 2017년도

- 스탬핑 호일(stamping foils)에 대한 관세 면제
- 조립식 모듈 패널(pre-fabricated modular clean rooms panels)에 대해 당초 20% 관세에서 3%로 인하
- 의약품 산업 용도 논우븐 패브릭(non-woven fabric)에 대해 당초 16% 관세에서 5%로 인하
-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sythetic filament yarn of polyesters) 수입에 대해 5% 규제관세(RD) 부과
- 알루미늄 음료수 캔에 대해 당초 11% 관세에서 20%로 인상

○ 2018년도

- 연방세무국(Federal Board of Revenue) 추가 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심카드(SIM Card), 방적사(Cotton Yarn)에 대해 5%, 밀(Wheat) 60% 등 570여개 품목에 규제관세(RD) 부과

○ 2019년도

- 의료용 살균기(3%→0%) 등 18개 의약품 및 질산암모늄(3%→0%) 등 다양한 산업 원자재에 대한 관세(CD) 인하, 타이어(20%→15%) 및 CKD용 휴대폰(250PKR/개→175PKR/개 등)에 대한 규제관세(RD) 인하 등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는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 제도 효율화를 목적으로 2019년 11월 국가관세

정책 5개년 계획(National Tariff Policy 2019~24)을 발표

- 제조 및 수출 기업의 투입비용 절감을 위해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일반 관세 및 규제 관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 2020년도

-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국가관세정책 5개년 계획이 반영되어 원자재, 중간재 등 약 1,600개 품목 관세 인하 시행
- 대표적으로 염화암모늄(3%→0%), 실리콘(3%→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아세트산(16%→3%), 활성탄(11%→3%) 등 관세가 대폭 인하
- 품목 수 HS Code 분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 Finance Act 2020 (www.fbr.gov.pk/Categ/Finance-Acts/620) 에서 확인 가능
- 또한 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말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61개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 및 기기 품목에 대해 모든 관세(일반관세, 규제관세, 추가관세)를 면제해 주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 2021년도

- 수출산업 육성 및 소비재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600여개 중간재에 대한 관세 인하 시행
- 대표적으로 주력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신발, 카펫, 용접 관련 제조기업이 수입하는 관련 품목을 0, 5, 10%로 관세 인하 시행
- 품목 수 HS Code 분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 Finance Act 2021 (www.fbr.gov.pk/Categ/Finance-Acts/620) 에서 확인 가능

○ 2022년도

- 관세 및 추가 관세 조정: 약 400개의 관세 항목에 대한 관세, 추가 관세, 규제 관세가 다양한 산업/제조 부문에 대해 합리화

- 규제 관세(RD) 체계 검토: 여러 품목에 대한 규제 관세가 감소되거나 폐지
- 제약 산업에 대한 관세 면제: 30개 이상의 활성 제약 성분(API)이 관세로부터 면제

○ 2023년도
- 품질 좋은 종자 사용 촉진: 종자 수입에 대한 모든 세금과 관세가 폐지, 묘목 수입에 대한 관세도 폐지
- 섬유 산업 촉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합성 필라멘트 원사에 대한 5% 규제 관세가 폐지
- Pet Scrap에 대한 관세 감소: Pet Scrap에 대한 관세가 20%에서 11%로 감소
- 특정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면제: 커패시터, 접착 테이프, 광산 기계, 쌀밀 기계, 기계 공구 무관세

○ 2024년도
- 현지 생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ACD) 부과
- 철강 및 비합금강 등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규제관세 부과 또는 증가
- 신차·중고차 수입에 대한 규제관세 합리화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4년 10월 기준 5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통계상으로는 90~95%의 수입에 대해 신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밝히고 있으나, 실제 신고가격이 세관당국의 표준가격과 상이할 경우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현대화 및 세관 검사

관세현대화 개편은 높은 수준의 감사와 세관 검사를 통한 단순화, 표준화 그리고 자동 통관 수속 절차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온라인을 이용한 세관처리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위기관리 모델도 적용되었다. 현재는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WEBOC)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납세자와 수납자간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해 과실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 2021년에는 WEBOC를 업그레이드한 수출입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인 Pakistan Single Window(psw.gov.pk)를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인도산·이스라엘산 및 인도·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수입규제(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15)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15)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31개국 56건의 수입규제 조치(철강/금속 13건, 화학 19건, 섬유/의류 7건, 기타 17건)가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의 대한국 수입 규제 현황은 2013년 기준 3건(조사중 0건)으로, 품목별로는 화학 5건, 철강/금속 1건, 기타 2건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파키스탄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세율(%)	비고
2009.8월	Hydrogen Peroxide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벨기에,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태만, 튀르키예	8.52 ~ 84.48	2021.8 2차 일몰재심 관세부가기관 연장 2020.9.2. 기준 5년간 (한국 14.77%)
2016.1월	Coated Duplex Board-Grey Back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14.89 ~ 16.22	2017.7 최종 판정 (한국 14.98%)
2016.11월	Sulphonic Acid	대한민국, 중국,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대만	10.09 ~ 21.59	2018.1 최종 판정 (한국 21.59%)
2016.11월	Polyvinyl Chloride Resin	대한민국, 중국, 태국, 대만	3.44 ~ 20.47	2018.4 최종 판정 (한국 4~14.97%)
2019.12월	Phthalic Anhydride	대한민국, 중국, 대만, 러시아	9.57 ~ 24.61	2021.6 최종판정 (한국 9.57~14.82%)
2020.2월	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	대한민국, 인도	26.59 ~ 59.21	2020.12 최종판정 (한국 21.6.30 이전 26.59% ; 21.7.1 이후 41.59%)
2021.2월	Cold Rolled Coils/Sheets	대한민국, EU, 대만, 베트남	(조사중)	최종판정 (22.2.3) (한국 13.24%, 자동차용 철강은 제외)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PSQCA: 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으로 산업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제도 수립 및 시행, 검사기관 등록, 국제 표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준, 검사, 인증제도 관련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 및 분야에 파키스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등 선진국 기준에 부합해 인증을 받았으면 별도의 기준 충족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 업체가 기존에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혹은 한국 식약처(KFDA) 승인을 획득한 경우 추가적인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파키스탄 인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 홈페이지(http://mail.psqca.com.pk)에서 인증 요구 항목을 확인한 후,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을 직접 접촉해 세부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2024년 10월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식음료, 기계장비, 원자재 등 173가지 품목에 대해 수입 시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파키스탄은 2012년 7월 1일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II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2021년 파키스탄은 EURO-V 기준의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 규제 수준이 상향되었다.

품목별 장벽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년 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4년 10월 기준 5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리스트는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에 공지된 수입 정책 시행령(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 옵저버 국가(2015.2.11.)이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2년 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공공분야 조달 관련 규정과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2023년 현재까지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 수주 사례를 전면 재검토 하여 문제 발견 시 관련 정치인 및 관료에게 징계를 가하는 등 부정부패 요인 척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 사업 관련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정부 간 이견 및 입장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료주의로 인하여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보호

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권기구(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2008년부터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상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고, 2016년부터는 감사대상국에 지정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파키스탄의 특허권 관련 기본법은 Patent & Design Act 1911이며 산업생산부(Ministry of Industries & Production)에서 관리한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6년간이며 연장이 가능하며, 특허 신청은 카라치에 소재하고 있는 특허청(Patent Office)에서 관리한다. 특허 신청 후 기술적으로 거절

사유가 없으면 18개월 이내에 특허권이 발급되며, 기술적인 문제로 거절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상표권 관련 기본법으로는 Trade Mark Ordinance 2001와 시행세칙으로 Revised Trade Marks Rules 2004이 있다. 상무부 소속 Trade Mark Register에서 관리하며 등록 후 존속 기간은 7년으로 갱신 등록 후는 15년간 유효하다. 선 사용주의 및 선 등록주의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상 선 사용주의를 채택한다. 상표(공공 소유 포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섬유류 상표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상표 등록 신청은 카라치에 소재하고 있는 상표 등기소(Trademarks Register)에 하는데, 상표 등록이 접수되면 그 접수 사실이 상표 저널에 게재되며 이의가 있는 자는 2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적립, 과실송금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2004년 관련 제약이 모두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100% 지분소유 및 100% 과실송금이 허용되고 로열티 및 기술비 이전도 가능하다.

과거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과거 유선전화 서비스를 독점하던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13년 9월 IMF 구제금융 수혜를 계기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증대를 위해 금융, 석유, 가스, 발전, 운송관련 국영기업 30여개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8년 출범한 임란칸 정부는 이와 같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IMF는 2019년 재개된 구제금융 조건으로 민영화를 포함해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2024년 초 파키스탄 민영화 위원회는 민영화 파키스탄 국제 항공(PIA) 및

송전회사, 펀잡州 발전소 등을 포함한 27개 국영기업이 우선순위로 지정하였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arms & ammunitions), 고도 폭발물(high explosives), 화폐/조폐(security printing currency/mint), 방사능 물질(radioactive substances), 보안인쇄(Security Printing)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파키스탄은 외국인 민간 투자 촉진 및 보호법(Board of Investment Ordinance 2001) 및 기업법(Company Ordinance 1984), 외환관리법(Foreign Currency Accounts Ordinance 2020)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파키스탄 기업법에 따르면 단독투자(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의 경우 1인 이상의 주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주주가 1인의 경우에도 Single Member Company로 등록이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제한도 철폐돼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약속했던 인센티브 환급(법인세 및 Sales Tax 환급 등)을 지연하여 이행하는 등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키스탄에는 특별히 제한된 투자 진출형태는 없으며 라이선스 계약, 지사

설치, 연락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의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위원회(BOI)의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경우 BOI의 추천을 받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 에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연락 사무소 포함) 설립 시에는 약 2,000~3,000달러의 진행비를 투자위원회에 납부해야하며, 기간은 약 6~8주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파키스탄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동명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SECP로 부터 기업명 사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 정관 및 등기 이사 전원의 여권 사본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CP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법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된 법인 계좌를 국세청(FBR) 에 신고하고 National Tax Number와 General Sales Tax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21년 파키스탄 투자진출 한국 기업은 법인, 지사 및 사무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해 총 20여개이지만 발전 프로젝트 건설업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 롯데콜손, 삼성, 현대·기아 등 소수의 업체가 현지에서 직접투자 또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 건별로 투자 시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와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부문이 WTO 체제 하에서 무역 관련 투자 조치 (TRIM)를 준수하기 위해 삭제 프로그램이 관세 기반 시스템 (TBS)으로 대체되었다. 관세 기반 시스템의 기본 틀에

따르면 적절한 조립시설을 갖춘 조립업체에 한해 CKD 조건으로 수입 허용하되 2004년 6월까지 현지화된 부품/소재는 낮은 관세율로, 현지화되지 않은 부품은 높은 관세율로 수입 허용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하우스 시설 보유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다음의 행정명령이 작성되었다. SRO.656 (I)/2006는 조립업체/OEM이 양허 관세로 CKD를 수입 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SRO.655 (I)/2006는 벤더/부품 제조업체의 양허 수입을 허용하고 마지막으로 SRO.693 (I)/2006는 조립업체가 추가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수입 시 현지화된 자동차 부품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산업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자유구역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9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 EPZ)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는 연방정부 산하의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112]에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중점 육성산업 투자를 위한 기계·플랜트 도입 시에 수입 관세 면제 및 감면, 전기세/가스비용에 대한 판매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파키스탄의 경제특구(EPZ)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 이들 중 주요한 혜택으로 30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 이용, 기계 및 장비의 면세 수입, 국가 수입 규제 및 환전 관리 규정의 적용 제외, 자본 및 이익의 해외 송금 자유, 전기 및 가스 요금을 포함한 입력 상품에 대한 판

112) www.epza.gov.pk

매세 면제가 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면세 차량 사용이 허용되며, 최대 20%까지 국내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 EPZ는 수출 상품에 대해 1%의 추정세를 징수하며 노후 또는 구형 기계는 적용되는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한 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불량품이나 폐기물은 총 가치의 최대 3%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EPZ 단위는 관세 제조업체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별경제구역

파키스탄정부는 2012년 9월 10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법안을 발효시키고,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세제, 인프라, 절차간소화 등)를 제공함으로써, 파키스탄 내에 외국 및 내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였다.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이 최소 50에이커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별 경제구역 개발자와 참여기업에게는 자본재(설비, 기계류 등)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년간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기존의 수출자유지역(EP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Zone)도 특별하게 경제구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인센티브를 중복해서 제공하지는 않으며 신규 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파키스탄 전역에서 승인된 특별경제구역은 총 33곳이며, 펀자브주에 18개, 신드주에 8개,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4개, 발루치스탄주에 2개, 이슬라마바드에 1개씩 특별경제구역이 분포되어 있다.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의 설립

2023년 6월 20일,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의 설립을 승인했다. SIFC는 우선적으로 5개 분야, 즉 국방, 농업, 광물, 정보기술 및 통신, 에너지 부문의 투자 및 민영화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GCC 국가와 기타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다분야 협력을 위한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인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행정 지연이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얻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개인의 사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약이 가해지며, 지역에 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도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한 정부기관에 의해 기 개발되었거나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된 대지를 구입해야 안전하다. 개인의 경우 계약후 제2 또는 제3의 소유주가 새로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지불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파키스탄측이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투자하고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계약관련 분쟁이 생겨 법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1976년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 시 투자에 따른 과실, 재투자 이익 및 기타 각종 이익의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투자업체가 투자 촉진 시 중앙은행에 과실 송금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다만, 실제 송금시 테러자금, 돈세탁 여부확인 등을 거치는 절차가 타국에 비해 까다로우며, 외환부족에 따라 외화 송금에 대해 당국의 거부감이 커 송금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금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3)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단기금융으로는 주로 상업은행에서 대출되며 외자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은 없다. 장기 금융 및 중장기 금융은 투자 금융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 대출 규모의 완화, 자금 도입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 금융 시에는 수출 소요 자금 대부 제도가 있는데, 투자기업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 대부 금액은 신용장 금액 혹은 수출 계약서 금액이 되며 수출 불이행 시는 차입금의 2.5배를 변상해야 한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인하되어 7%로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IMF구제 금융 체제 이행 조건으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지속 인상되었고, 2023년 12월 12일 최종 22%로 인상하여 2024년 1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여 (1998년 5월 핵실험 직후 외환계좌 전면 동결 사례 등)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의 대테러전쟁 참여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의 채무 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일시적으로 대외결제의 어려움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 따라 2008년 9월 외환보유고가 80억 달러까지 하락한바 있고, 2008년 IMF 구제금융으로 77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게 된다.

2013년~2016년 간 신정부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IMF로부터 재차 66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지불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및 6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 여파 등으로 인해 대미 환율은 2018~23년 사이 급격히 상승해 달러당 150루피에 달했던 환율이 2023년 12월 환율이300루피대에 달하고 있다.

2023년에 파키스탄은 외환보유고 부족에 직면하여 다시 IMF에 구제 금융 협정을 요청했고 외환방어를 위해 소비재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2023년 하반기 파키스탄이 IMF와 단기자금협정(SBA)를 체결한 후 외환상황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외환상황이 완전하게 정상화 되고 있지는 않다.

세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기업)간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내외국인 사업자가 공히 부담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20~29%), 일반판매세(18%), 연방소비세(업종에 따라 0~20%로 다양) 등이 있다. 이외에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수익의 2%, 근로자이익배당기금에 수익의 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2013년 까지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35%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후 매년 약 1%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현재 29%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5,000만 파키스탄 루피 이하, 연매출 2.5억 파키스탄 루피 이하, 근로자 250명 이하의 기업을 지칭하며, 법인세율은 21%가 적용된다.

분쟁해결절차 개선

파키스탄은 2011년 7월 19일 분쟁해결에 관한 외국중재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그 효력을 2005년 7월 15일 이후로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파키스탄 내에 발생되는 외국인 관련 각종 분쟁 발생 시에 국재중재법에 따는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투자 분쟁 해결이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파키스탄 사업자의 독점 시도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년 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을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2001년 10월 이전까지는 한·파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우리 정부의 비자 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로 인해 2024년 현재 상호간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안불안, 사회간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정책 집행상의 투명성 결여 등 정부 신뢰성의 문제가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방글라데시 등 여타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파키스탄 금융시장 현황

1989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2024년 상반기 은행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성장하여 51조 6,870억 루피를 기록하였으며, 예금은 11.7% 증가하여 32조 5,380억 루피, 대출(국내·외)은 0.3% 증가한 13조 1,410억 루피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외국계 은행 4개 및 국영은행 5개를 포함한 28개의 상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의 특수은행이 운영중이다. (총 32개)

* Mid-Year Performance Review of the Banking Sector(Jan-June 2024), SBP

파키스탄에 외국 금융기관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요건을 만족하여 파키스탄중앙은행(SBP)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계 은행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100억 루피 이상의 최소요구자본(MCR)을 보유해야하며, 본사 기준 납입자본금 3억 달러 이상, 자기자본율(CAR) 12.5%를 충족할 경우 지점의 개수에 따라 최소요구자본이 30~100억 루피로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파키스탄 중앙은행 홈페이지[1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을 비롯한 자본 시장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은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P)가 담당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2007년부로 자유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100% 소유 및 통제를 허용했으며, 최소 400만달러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이 중 최소 200만 달러는 해외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나머지 200만 달러 상당은 파키스탄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에 제한은 없으며, 투자자본도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113) https://www.sbp.org.pk/BS/RCSP.asp



파푸아뉴기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경제일반

파푸아뉴기니는 금, 구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광물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14년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을 시작하여 전체 경제 및 수출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상하였다. 광물분야(△금, △구리, △니켈, △코발트 등)와 에너지분야(△석유, △액화천연가스, △컨덴세이트 등)의 2022년도 수출액 총합은 약 113억 달러 규모이다[114].

파푸아뉴기니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액화천연가스 분야에서 추진된 제1차 LNG 개발사업은 엑손모빌이 개발주관사로 참여한 190억 미불 규모(개발비용 기준)의 PNG LNG(프로젝트명)이다. 동 사업은 연간 약 800만 톤 이상의 LNG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LNG 수출 선적 1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등 파푸아뉴기니에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115].

무역정책

2002년 Michael Somare 전 총리 정부부터, Peter O'Neill 전 총리 정부를 거쳐, James Marape 현 정부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외무역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경제정책은 농수산임업 및 채굴

114) 출처: Bank of Papua New Guinea Quarterly Economic Bulletin Statistical Tables 2021.4분기
115) PNG LNG 공식 사이트 참조

산업(LNG 및 광물)에 초점을 두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산과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광업, 천연가스 및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자족 수준에 있는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7년 8월 글로벌 통상 역량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국가무역정책(National Trade Polic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비광물분야 특히 농수산임업에서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무역구조를 개혁하고 해당 분야 무역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파푸아뉴기니의 대외수출이 대부분 광물자원 및 LNG에 집중(약 80% 이상)되어 있어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무역관련 인프라 확충, △수출 관련 해외 시장접근 강화, △농수산임업 등 부문별 정책 마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전망[116]

파푸아뉴기니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추산된다.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은 미불 대비 주재국 키나(Kina) 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되어 연말까지 고물가가 유지 또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24.3월 통화정책 성명서(Monetary Policy Statement)를 통해 경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이하 BPNG) 장은 향후 수개월에 걸쳐 고통스러운 정책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BPNG가 '24.2월 실시한 조사 결과, 2024년 1월 발생한 폭력 소요사태의 영향으로 기업신뢰지수(체감경기)가 하락하였고, 이는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였다. 기업이 겪는 도전과제로서 △외환공급 부족, △

116) 출처: Bank of Papua New Guinea 은행장 전망

운송비 상승, △치안 불안 및 △전력공급의 불안전성 등이 포함되었다.

BPNG 은행장은 키나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인상의 영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물가인상률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024년도에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5년에도 높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나, 2026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물가인상 압력의 외부요인으로 △러-우 전쟁 및 △중동 갈등상황 등을 지적하였다.

파푸아뉴기니 상공회의소 소장은 주재국 키나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수입업체들의 수입가격 부담이 상승하는 반면, 수출업체들은 수출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증가하여 호황을 누리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예로, 코코아 제품은 세계시장의 공급부족과 환율효과로 인해 톤당 거의 1,000 키나(PGK)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중이다.

현재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상당하여 적정수준으로 좁혀져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커 통화정책의 효과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서 BPNG 발행 7일물 채권(Fixed Rate Full Allotment(FRFA) 7-Day Central Bank Bill)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업들이 외환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외환 유입액이 증가하여 외환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5.2%(2022)에서 △1.4%(2023)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광물산업의 호조에 따라 △3.0%(2024)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 전망은 △Porgera 광산의 완전 정상화 및 △금·구리·은 등 전반적인 광물 생산량 제고 전망에 기초하였다.

〈에너지 분야〉

ExxonMobil社 등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190억 미불을 투자한 파푸아뉴기니

내 최대 규모 에너지 사업인 제1차 LNG 개발사업(프로젝트명: PNG LNG)은 2022년 기준 860만 톤의 LNG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APEC 보고서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내 에너지 부존량은 천연가스 4,400억 입방미터, 석유 6억 6,000만 배럴, 가스 콘덴세이트 2억 6,200만 배럴이다.

현재 추진 중인 파푸아뉴기니의 차기 대규모 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는 추산 가스 부존량이 6-7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Gulf 주 PRL 15 지역에 위치한 Elk-Antelope 가스전을 개발하는 제2차 LNG 개발사업(프로젝트명: Papua LNG)이며, 당초 2024년경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려움 및 공사 단가 인상 등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물분야〉

2022년 파푸아뉴기니의 광물산업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로서, 3개 광산(Lihir 금광, Ok Tedi 금광 및 Ramu 니켈·코발트 광산)이 파푸아뉴기니 내 전체 광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adang주에 소재한 Ramu 니켈·코발트 광산의 2023년 니켈 채굴량은 33,604톤 (34,302톤(2022)), 코발트 채굴량은 3,072톤(2,987톤(2022))으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세계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주재료인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동 광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

파푸아뉴기니 총 인구의 8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및 관련 산업이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예산의 약 2% 미만(약 7천만 미불)이 농업 분야에 사용되는 등 국가 차원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커피, 코코아, 코프라, 팜유, 설탕, 고무, 고구마 등이며, 커피, 코코아, 팜유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쌀은 파푸아뉴기니의 전통적인 식량은 아니지만 최근 연간 20만 톤 정도를 소비하면서 점차 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쌀 생산은 연 평균 1만 톤 정도로 미미하고, 대부분의 쌀을 호주, 태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30년까지 쌀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Rice Policy 2015-2030을 발표한 바 있다.

파푸아뉴기니 농축산부는 쌀 수입업자별로 연간 최대 수입허용량 또는 쿼터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필리핀으로부터의 쌀 산업 기술 지원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현 정부 국정기조(알로타우 합의2) 및 국가개발계획(MTDP3) 등에서도 농산업 발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파푸아뉴기니 내 쌀 상품화 및 소비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임업〉

파푸아뉴기니는 열대목재 수출국으로서, 연평균 200만 입방미터 규모의 원목을 수출하며, 국토의 약 3,900만 헥타르가 산림지역이고, 이중 1,500만 헥타르에서 양질의 열대수가 성장한다.

2018년 약 9.29억 미불 규모의 원목을 수출하였고 이는 총 수출의 약 8.3%를 차지하였다. 2017년 기준 326만 입방미터 규모의 원목이 수출되었고, 이 중 286만 입방미터 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파푸아뉴기니 산림업 협회에 따르면, 수출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입방미터당 약 900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2년 8월 파푸아뉴기니 국회의 취임연설에서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2025년 내로 원목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 가공 후 수출을 통해, 고용 증진과 부가가치 제고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파푸아뉴기니의 원목 가공 산업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로 미비를 비롯한 열악한 각종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 국내에서 가공되는 원목의 양은 미미

하며,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제재소는 7개에 불과하다. 최근 15년간 설립된 신규 제재소는 전무하다.

또한 조림 분야에서도 정부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조림지와 관련한 토지 권리 문제로 인해 방치된 상황인데, 조림지 면적의 경우, 1990년대는 6.5만 헥타르 규모였으나, 현재는 4만 헥타르 수준으로 감소했다.

산림산업 관련자들은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및 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벌목 및 수출과 관련된 각종 절차와 규제가 중복·혼재되어 있다.

한편, COP26이 2030년까지 산림벌채 완전중단을 목표하는 가운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20년 12월 18일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s)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파푸아뉴기니는 전세계 △육상 면적의 1%, △생물다양성의 5% 및 △열대우림의 13%를 차지하며 산업화 국가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COP26 계기 Wera Mori 환경부 장관은 파푸아뉴기니 벌목산업의 규모를 연간 10억 달러라고 언급하고, 벌목 완전중단의 대가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있는 산업화 국가들이 경제개발 원조대책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열대우림국가연합(CfRN: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여타 회원국들을 위한 보상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117]

〈수산업〉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15%가 파푸아뉴기니 EEZ에서 어획되는 등 수산업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어획된 참치는 제2도시이자 항구도시인 레이(Lae)에서 캔 및 정육(loin)으로 가공되어 주로 유럽지역으로 수출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태평양해양산업구역(PMIZ)을 Madang 지역에 설정하고 수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117) 출처: PNG HAUS BUNG 인터넷판 기사(COP26 leaders back PNG's move to ban logging entirely by 2030 - https://pnghausbung.com/mori-png-adamant-on-stopping-logging-by-2030/?feed_id=4704&_unique_id=61820f3b1e5b6)

또한 파푸아뉴기니 수산업 협회는 2020년 가다랑어(skipjack) 및 황다랑어(yellowfin)의 건착망(Purse Seine) 조업에 대해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자격증을 획득하여 파푸아뉴기니의 참치조업 관련 지속가능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파푸아뉴기니는 참치 조업권 판매에 있어 과거에는 선박조업일수 입어제도(VDS)를 운영하면서 자국에서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들에게 톤 당 200 미불 규모의 조업권 할인혜택(discount)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이를 폐지하고 국내 가공물량 제고를 통한 자국 산업 발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자국 내에서 실제 가공된 물량을 기준으로 톤 당 400 미불 규모를 환급(rebate) 한다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였다.

현재 파푸아뉴기니에서 생산한 참치 통조림은 EU 지역으로 수출 시 EU와 태평양도서국간 체결된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주요 무역협정

〈파푸아뉴기니-호주 양자 경제협력〉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는 향후 10년+ 기간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파푸아뉴기니-호주 포괄적 전략·경제 파트너십(Papua New Guinea-Australia Comprehensive Strategic and Economic Partnership(CSEP))을 2020년에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1987 공동 원칙 선언(1987 Joint Declaration of Principles (JDP)) 및 2013 새로운 파푸아뉴기니-호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선언(2013 Joint Declaration for a New PNG-Australia Partnership)에 가치를 더한 발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 협정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강력한 민주주의, △밀접한 우정 및 지속적 관계, △번영을 위한 경제 파트너십, △안보 및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사회적·인적 개발 및 △인접한

이웃, 글로벌 파트너라는 6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향후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은 동 협정에 기반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중국 양자 경제협력〉

파푸아뉴기니와 중국은 1996년에 무역, 경제, 상업 분야에 협력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양국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에는 경제, 무역, 투자증진 및 보호 관련 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수산협력협정 등이 포함된다.

〈파푸아뉴기니-피지 양자무역협정〉

1996년에 파푸아뉴기니와 피지 간 체결한 무역협정으로서, 양국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무역과 경제발전에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태평양도서국 무역협정(PICTA)〉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이 PICTA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PICTA는 회원국간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 장벽을 점차 제거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에 관세자유화를 시작하여 향후 모든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 지대를 만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멜라네시아선봉그룹 무역협정(MSGTA)〉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및 솔로몬제도가 1993년 최초 체결하였다. 피지는 1998년에 서명하였다. 뉴칼레도니아의 카낙사회주의해방전선(Kanak Socialist National Liberation Front(FLNKS)은 동 무역협정의 정식 옵저버(Permanent Observer)이다. 동 무역협정은 현재 180개 상품의 회원국간 무관세 무역을 규정하고 있다.[118]

118) 출처: 솔로몬제도 외교부 홈페이지 멜라네시아 선봉그룹 관련 정보
(http://www.mfaet.gov.sb/external-trade/free-trade-agreements/regional/msgta.html)

〈APEC〉

파푸아뉴기니는 1993년 APEC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으로서 WTO 규정 범위 내에서 농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ASEAN〉

파푸아뉴기니는 ASEAN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목표로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Cotonou 파트너십〉

Cotonou 파트너십은 정치, 개발 및 무역 분야 협력을 통해 빈곤국 퇴치를 목표로 하는 지구상 가장 큰 개발협력 조직이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도서지역 79개국(파푸아뉴기니 포함) 및 EU 15개국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

파푸아뉴기니가 특혜관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WTO 규정과 불일치함에 따라, EU는 태평양 도서국들과 EP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였다. EU와 파푸아뉴기니는 EPA 협정에 2009년 서명하였으며, 양측은 2011년에 동 협정을 비준하여 무역 및 경제발전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파푸아뉴기니는 EPA 협정에 따라 EU로 부터 참치수출 관련 특별지위를 인정받은 최초 국가가 되었다.

〈WTO〉

파푸아뉴기니는 1996년 6월에 WTO에 가입하여, 법, 규정, 관행, 절차 등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제도의 현대화, 통상 및 무역협상 적극 참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수출입 관세절차 개선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대외무역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수입 정책상의 장벽

수입제도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검역·보건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 실시하고 있다.

무역관세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영세율(Zero Rate) 0%: 대부분의 수입품에 적용

②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15% :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

③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들과 경쟁하는 최종재에 적용

④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40% :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들(과일, 채소, 알콜, 목재 및 일부 사치품)에 적용

이 밖에도 설탕은 종류에 따라 최대 30%, 가정용 전자제품 30%, 그리고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20~4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Excise Tariff(2020 Budget) (Amendment) Act 2019)이 2019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기존 80~120%의 고율 관세가 20~40%로 대폭 인하 되었다.

수입관세 인상

2017년 말경의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예산편성을 계기로 2018년 1월 1일자로 254개 품목에 한하여 수입관세를 인상하였다. 이에 추가로 2019년에 664개 품목(나무 가구류, 쇼핑 봉투 포함)에 수입관세를 인상하였다.

2019년 수입관세로 인한 세수는 약 1.08억 미불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1999년도에 WTO의 권유로 도입된 바 있는 관세감축프로그램(TRP)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는 기존의 수입관세 정책 동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9년 수입관세 인상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고, △자국 제조업의 경쟁우위 제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라고 밝혔다.

관세가 인상된 주요 분야는 이미 자국에서 일정 수준 생산이 가능한 △육류·유제품 및 조리용 기름(팜유) 분야와 자국 생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상대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된 △유류 수입(휘발유·경유) 분야 등이다.

육류 관세 인상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양하나, 냉장육 및 햄 등은 12.5%∽20% 수준이며, 일부 품목은 1킬로당 3.50 PGK(약 1 미불) 수준이다.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2015-2017년도 기간 무관세였으나, 신규 도입 제도로 인해 리터당 0.10 PGK(약 0.03 미불)이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파푸아뉴기니의 유일한 비관세장벽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허가이다. 동법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 소비세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GST)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수출제한 또는 금지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된다.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임산물 - 원목, 목재, 합판 및 박판(veneer) 관련 * 모든 원목 수출은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하며, 최소 수출 가격 준수 의무 대상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은 원목 수출금지 대상이며, 가공후 목재로 수출 가능 * 등나무(rattan tree)는 수출면허 적용 대상	산림부, 외교부
수산물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랍스터(lobster) 등	수산청
파푸아뉴기니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 (PNG Spice Industry Board)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고무	고무산업협회 (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 Indastri Koporesen)
금	국립은행(Bank of PNG)

자료: 파푸아뉴기니 산업통상부

수출면허 또는 인가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악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된다.

수출관세

특정 수출품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관세가 부과된다.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악어가죽(5%), 백단향(sandalwood, 5%)이다.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수입장벽

환경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보호

파푸아뉴기니는 상표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2000) 및 특허 및 산업디자인법(2000)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내의 지적재산사무소가 상표, 특허 및 산업디자인 관련 주무기관이며, 국가문화위원회(The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of PNG)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담당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푸아뉴기니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개인정보 저장·관리는 국내 소재 서버로 한정하거나, 타국 국민 소유 소스코드의 알고리듬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할만한 첨단적 성격의 규정은 파푸아뉴기니 현행 법령제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정책 개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부 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규모가 확대되었고,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확대실시,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자기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정부지분 확보, 특정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등의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투자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내국인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 촉진 2)외국인투자 가능 사업형태 규정 3)외국인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4)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내 자원 활용, 기술축적, 수출증대, 원격지 개발에 기여하고 내국인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촉진한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은 외국인투자가들이 합작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공장에 대한 가중상각, 자본지출에 대한 초년도 가중상각, 수출시장개발비용 이중상각, 수출세 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민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면제, 자국민직원 교육비 이중공제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세율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광업, 석유, 가스 기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회사형태	세율
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48%
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40%
석유기업, Resident, Non-resident	

회사형태	세율
- 진행중인 프로젝트	50%
- 신규 프로젝트	45%
- 인센티브율	30%
가스기업, Resident, Non-resident	30%

회사 설립

파푸아뉴기니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기업등록·규정과에서 시행), 새로운 현지 회사 혹은 외국 회사(overseas branch)를 설립할 수 있고, 신청 양식은 파푸아뉴기니 투자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기업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 절차

외국인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다.

절차	소요기간	비용
1. 현지회사 혹은 외국회사 등록(registration)	1일-3주	PGK 500
2. 등록된 회사에 대한 인증서 발급(certification)	2주-5주	PGK 2,000

자료: 파푸아뉴기니 투자진흥청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1) 현지 회사

파푸아뉴기니 현지 회사를 등록할 경우, 회사명, 주주·대표·사무진 관련 정보 (대표 중 최소 1인은 파푸아뉴기니에 거주하여야 하며, 사무진 임명은 선택 사안임.), 투자 자본, 파푸아뉴기니 현지 주소지, 기업헌장(company constitution) 등을 명시해야한다.

(2) 외국 회사

외국 소재 회사가 파푸아뉴기니에 비거주기업을 설립할 경우, 회사명, 주요 사업 활동 및 장소, 대표의 국적·생년월일·주소,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회사 설립계획서 등본 등을 명시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resident agent)을 임명해야 하는데, 현지의 개인 혹은 회사가 해외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문서 수발 및 제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

최저임금은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온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 임금수준은 비슷한 수준의 여타 개도국에 비해 평균 10%, 구매력 평가 기준 37% 낮은 수준이다. 2024년 4월 기준 최저 임금은 시간당 3.50 PGK(약 1 미불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2014년에 마지막으로 미미하게 변경된 후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법정근무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주당 44시간이며, 일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시급의 2배, 공휴일은 정규급여의 1.5배, 이외 평일과 토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시급 계산은 1년을 52주로 산정하여, 연봉을 1년간 총 근무시간(44×52)으로 나누거나, 주당 총 급여를 44시간으로 나누거나 또는 일당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유급휴가는 연 9일의 법정공휴일 외에 현지인에 대하여는 농촌노동자 연 1주, 도시노동자 연 3주,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는 업종 및 출신 국가에 따라 연 4-7주의 연차휴가가 존재하고, 연 6일까지의 병가가 주어진다.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속 휴가제도는 15년 근속의 경우 6개월 수준으로 주어진다.

외국인 창업 제한 분야

소규모 사업 활동 목록에 있는 사업 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촉진과에서 담당하며 때때로 변경검토를 한다.

해당되는 주요 사업 활동으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이며, 사냥 관련 활동은 전부 해당),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각류, 연체동물 등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⑥케이터링(음식조달서비스), ⑦야생산림물질 도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⑧기타 소규모 사업 활동 등이다.

파푸아뉴기니 부동산 등록과정 및 비용

o	부동산 등록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1	○ 완공전 매매, 토지 관리부 등기 사무소에서의 지방세 검색 및 소유권 검색 ○ 대부분의 지자체 당국이 전산화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산화된 DB도 서면상으로도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 기업 검색 서비스에서도 그 기업이 목록에서 제거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1일	PGK 200
2	○ 서류상에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 서류가 일단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을 찍어준다. ○ 인지세는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 ○ 인지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Stamp Duty Act 1952) – 토지 가치 35,000 PGK 미만: 토지가치의 2% – 토지 가치 35,001 – 70,000 PGK: 토지가치의 3% – 토지 가치 70,001 – 140,000 PGK: 토지가치의 4% – 토지 가치 140,000 PGK 초과: 토지 가치 5%	14일	토지 가치의 5%
3	○ 서류를 접수하여 토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 인지세를 납부 했으면 토지 부처 건물 2층 토지 관리부에 접수를 하면, 토지부에서 허가서를 내어준다. ○ 관리부에서 임대계약일시 임대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다. ○ 직접 사찰은 없으며, 부처장의 이름으로 대표 사인란이 있고 다른 곳엔 대표자의 이름이 오른다.	35일	PGK 300
4	○ 이전 및 소유권 서류를 토지 부처에 등록하기 위해 접수한다. (소유권 등록) ○ 1996년부터, 이 과정이 전산화 되었다. 이는 집약적 소유등록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있으나 정보가 온라인상으로는 접근 할 수 없다.	22일	PGK 200

자료: World Bank, IFC – Doing Business 2016 (Papua New Guinea)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승인업무는 광물, 석유 및 가스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광업·석유부와 여타부분을 담당하는 투자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분야별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1) Department of Energy: 가스
2) Department of Petroleum: 석유
3)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산물
4) Department of Livestock: 축산물
5) National Fisheries Authority: 수산물
6) Department of Forest: 임산물
7) Mineral Resources Authority: 광물

이밖에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Commerce & Industry)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정책 및 외국인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며, 은행계좌 개설 및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미국 달러 등 외국 화폐에 대해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외환부족 사태로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은 신규 외환계좌 개설 및 해외송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1998년 4월 21일 발효)하였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존재하며, 자본이득세는 없다. 천연자원 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사업 전개시 정부차원의 승인을 취득하여도 지역별 지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지체로 인한 사업 포기가 종종 발생한다. 투자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실무 진행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현장조사 등 주의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2020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파푸아뉴기니는 전체 190개국 중 120위를 차지하였다.

기타 투자장벽

파푸아뉴기니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일부 특정 비자가 있는 단기 목적의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주권 소유자 등은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일정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연매출액 1천만 키나 이상, 5년 이상 파푸아뉴기니에서 기업 운영)을 충족하는 주요 대기업 CEO에게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파푸아뉴기니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노동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파푸아뉴기니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이 파푸아뉴기니 국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이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허가 승인을 해 준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파푸아뉴기니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리기업 투자 동향

투자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대파푸아뉴기니 투자는 2022년말 기준 누적(1981~2021) 신규법인은 40개, 투자금액은 약 1.97억 달러, 신고건수는 124건 및 신고금액은 약 2.88억 달러이다.



필리핀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20년 기준 총 1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1만 1,058개 품목의 55%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9%의 품목에 대해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적용 품목(개)				
	2017	2018	2019	2020	
	7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0	1,415	1,415	1,582	1,582	1,581
1	1,630	1,660	1,528	1,531	1,524
3	2,277	2,290	2,256	2,261	2,267
5	704	668	672	666	661
7	1,053	1,050	1,045	1,065	1,067
10	1,550	1,546	1,584	1,565	1,566
15	1,410	1,410	1,372	1,369	1,369
20	245	245	245	245	241
25	4	4	4	4	4
30	577	577	577	577	580
35	33	33	33	33	25
40	130	130	130	130	143
45	8	8	8	8	8
50	18	18	18	18	18
65	4	4	4	4	4
총계	11,058	11,058	11,058	11,058	11,058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적용 비율(%)				
	2017	2018	2019	2020	
	7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0	12.8	12.8	14.31	14.31	14.3
1	14.74	15.01	13.82	13.85	13.78
3	20.59	20.71	20.4	20.45	20.5
5	6.37	6.04	6.08	6.02	5.98
7	9.52	9.5	9.45	9.63	9.65
10	14.02	13.98	14.32	14.15	14.16
15	12.75	12.75	12.41	12.38	12.38
20	2.22	2.22	2.22	2.22	2.18
25	0.04	0.04	0.04	0.04	0.04
30	5.22	5.22	5.22	5.22	5.25
35	0.3	0.3	0.3	0.3	0.23
40	1.18	1.18	1.18	1.18	1.29
45	0.07	0.07	0.07	0.07	0.07
50	0.16	0.16	0.16	0.16	0.16
65	0.04	0.04	0.04	0.04	0.04
총 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index.php?page=mfn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스케줄

필리핀 정부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관세율 단계를 간소화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간소화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평균 관세율은 2020년 하반기 기준 7.75% 이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 부문이 11.63%로 가장 높으며, 화학 4.33%, 기계/장비 7.66% 수준이다.

필리핀의 관세율(Average Nominal Tariffs)

(단위: %)

연도	농업	화학	섬유/제지/목재/가죽	철/비철	기계/장비	평균
2017 7월1일 ~ 12월31일	11.48	4.34	9.36	5.85	7.83	7.79
2018	11.49	4.34	9.36	5.85	7.79	7.78
2019	11.49	4.33	9.36	5.84	7.68	7.74
2020 1월1일 ~ 6월30일	11.49	4.33	9.36	5.84	7.66	7.73
2020 7월1일 ~ 12월31일	11.63	4.33	9.36	5.84	7.66	7.75

자료: 필리핀 관세청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이 관세가 철폐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중에 있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2009년 상반기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2009년 7월 9일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필리핀 정부가 2011년 8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보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필리핀 FTA 공식 발효

한·필리핀 양자간 FTA는 2019년 6월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23년 9월 양국 정상이 서명하였다. 이후 2024년 9월 필리핀 상원과 2024년 11월

대한민국 국회 비준을 거쳐 2024년 12월 31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양허 제외 되었던 자동차(5%), 자동차 부품(3~30%)의 관세가 한·필리핀 FTA를 통해 최대 5년 내에 철폐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수입부과금 등

2006년 2월 1일부터 당뇨병 관련 의약품, 국내외 교통분야 운영을 위한 승객/화물용 선박 등 일부 예외적 분야를 제외하고 수입품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자원, 보석류, 향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부과와 관련, 2010년 3월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수입 증류주에 대한 필리핀의 차별적 관세 적용과 관련 WTO측에 분쟁해결을 요청하였다. 필리핀은 설탕과 같은 필리핀 내 생산원료로 주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류주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1년 8월 WTO는 증류주 특별소비세 부과는 차별적 관세 적용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2012년 12월, 아키노 대통령은 증류주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특별소비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국법 No. 10351」, 일명 “Sin Tax”라 불리는 동 법안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증류주와 담배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모든 증류주에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20페소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증류주, 담배 및 맥주는 2016년부터 매년 4%의 세율이 인상되게 된다. 2015년 1월부터 별도로 물품가격의 20%가 종가세로 부과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세제개혁으로 인해 자동차, 유류, 설탕이 들어간 제품, 담배, 광물 등의 품목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특별소비세 상승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7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상반기 차량 판매량이 51%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5월 2일 필리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재원마련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EO 113)을 통해 원유(Crude Petroleum oil) 및 정제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의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추가부과(10%)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동 인상조치는 6월 25일 종료되었다.

2020년 7월 9일 필리핀 국세청(BIR)은 2020년 1월 1일부로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등에 대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입 시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의 경우 환급될 예정이다. 단,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월 27일 필리핀 보건부-식약청(DOH-FDA)이 Republic Act No.11467호에서 승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Diabetes), 고콜레스테롤(High Cholesterol), 고혈압(Hypertension)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필리핀 보건부(DOH), 국세청(BIR), 재무부(DOF), 식약청(FDA)의 Joint Administrative Order No. 2-2018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제조, 유통, 도매, 소매자는 이하 선서진술서를 사전에 필리핀 보건부로 제출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필리핀 국세청(BI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관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주로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mpanies)이나 필리핀 1,000대 수입업자의 수입물품 및 경제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 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GL의 경우 2017년 8월 필리핀 세관당국에 의해 운영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8년 12월에 재도입되었다. 2020년 9월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YL과 RL 사이에 OL(Orange Lane)을 추가하였으며 OL은 엑스레이 검사와 랜덤 검사의 대상이 된다.

최근 통관 과정에서 필리핀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 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남아와 같은 신흥개도국일수록 통관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사소한 오류(대소문자 기입 오류, 스펠링 오류, 숫자 사이 쉼표 누락 등)를 지적하며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ASEAN 회원국으로서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나, 국가안보, 환경, 공공보건, 질서유지 및 국제조약 및 규범 준수 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 의류, 장난감 총·폭발물, 유독성 폐기물, 중고 자동차부품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통관 현대화 및 관세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에 따라, 불법 낙태 관련 약품·기구·인쇄물, 음란물, 위조 귀금속,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

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 제품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년 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실사착수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 등을 통해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필리핀은 2020년 8월 폴리에틸렌(HDPE, LLDP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개시하였다. 저밀도 플리에틸렌(LLDPE)에 대해서는 2022년 6월에 공식조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권고하였다. 2024년 10월에는 베트남,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보조금 등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 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년 7월 15%로 인상하였고, 2004년에는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12년부터 동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16년 4월 한국정부는 페놀 등 5개 석유화학제품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관세 0%)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필리핀측에도 상호대응세율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동 품목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하였다.

플로트 유리 분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12년 9월 부처명령(Department Order)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투명 플로트 유리(Clear float glass) 및 플로트 색유리(tinted float glass)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를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투명 플로트 유리 수입에 대해서는 3,043.26페소/MT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플로트 색유리에 대해서는 3,687.22/MT의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수준인 30%로 적용하고 있다(승용차: 30%, 화물차: 20~30%, 승합차: 15~20%)

수입차에 대해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 12%와 종가세 4~5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차량 가격 60만 페소 이하 4%, 60만 페소 이상~100만 페소 미만 10%, 100만 페소 이상~400만 페소 20%, 400만 페소 이상 50%) 하이브리드차는 소비세의 50%, 순수전기차와 픽업트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가 면제되며, Freeport Zone에서 사용될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비세 부과가 면제된다.

필리핀 정부는 200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56)」을 발표, 버스·트럭 등의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수입억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특별관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 페소를 부과하려다 취소한 전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EO156)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의 수입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개인소유 차량은 반입이 가능하나 최소 3년간 되파는 것(resold)이 금지된다. 또한 외교단 공용차량과 외교부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차량, 통상산업부(DTI)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차량 중 차량중량(GVW)이 2.5톤~6톤 또는 차량중량 6톤 이상의 트럭(픽업트럭은 제외)과 DTI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6톤~12톤의 버스 및 12톤 이상의 버스는 허용되며, 소방차, 앰뷸런스, 크레인 등의 특수차량도 허용되기도 한다.

한편, 수빅(Subic) 등 경제특구에서의 중고차 수입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2007년 11월 대법원은 수빅 경제특구에서의 수입차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2008년 7월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수빅 경제특구와 카가얀(Cagayan) 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입을 동 지역 내에서의 이용 등 제한적인 여건 하에 허용하였다.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중고차 수입 문제는 해당 지역을 통한 중고차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결국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카가얀(Cagayan)에서의 중고차량 수입이 다시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빅(Subic) 경제특구의 경우 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0년 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2011년 10월 신차 수입관세 및 소비세 등 동 대통령령의 이행규정이 결정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였다.

2008년 11월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0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기존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앰뷸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량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는 최대 5년 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특히, 화물차·승합차·10인 이상 승합차(가솔린)은 현행 5% 관세를 발효 즉시 완전 철폐하고, 준중형 자동차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5%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한다. 아울러, 현재 3 ~ 30%에 이르는 자동차부품 관세도 5년 내에 완전 철폐한다.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필리핀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 (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사탕수수)에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180%, 가금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규제대상이다.

쌀 수입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었던 수입수량제한(qualitative restriction)을 폐지하고, 이를 양허관세제도로 대체하는 쌀 관세화법(RA 11203)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9년 2월14일 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35%, 여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최소접근허용량 내에서는 40%(in-quota tariff),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8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필리핀의 쌀 수입은 과거 2016~17년(80만 톤)대비 점증하여 필리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필리핀 총 쌀 수입량은 약 300만 톤으로 중국(250만 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이후 쌀 수입량은 2020년 260만 톤, 2021년 300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9~21년간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필리핀 쌀 가격은 2018년 40페소 수준에서 지속 하락하여 2020년 9월 기준 일부 지역 쌀 가격은 필리핀 쌀 생산단가 평균(12.72페소)이하인 8페소까지 하락하여 쌀 재배 농가 및 필리핀 상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필리핀 농업부(DA)는 2020년 10월 쌀 수입허가서 발급을 필리핀 쌀 농가들의 수확기를 피해 1월, 5월, 6월, 11월, 및 12월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나 일각에서 이러한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필리핀 상원 경제사위원회의 Imee Marcos 의원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필리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3가지로 ①필리핀 쌀 수확기 90일 이전 수입제한(specific seasonal ban), ②쌀 수입에 필요한 위생·식물위생 수입허가서(SPSIC) 발급 규제, ③수출품목에 대한 테스팅 및 인증/요구절차 등과 관련한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 활용 방안 등을 제언한바 있다. 이와 같이 향후 필리핀의 쌀 수입이 수확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필리핀이 소비/수입하는 쌀 품종이 장립종(long grains)

이며, 대부분 태국 및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필리핀 정부는 2021년 4월 7일 행정명령(EO No.123)을 발령하여 돼지고기(생돈육, 냉장 및 냉동돈육, 도체/이분도체, 어깨부위 등) 수입관세를 쿼터내(in-quota)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5% (현행 30%), 쿼터 초과(out-quota)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15%(현행 40%)로 각각 낮추기로 하였다. 쿼터(54,000톤)내 수입물량의 경우 행정명령 발효후 최초 3개월간은 5%로 낮아지고, 발효후 4개월~12개월까지는 10%, 12개월 이후부터는 30%로 환원된다. 쿼터 초과 수입의 경우 최초 3개월간은 15%로 낮아지고, 이후 4개월~12개월까지는 20%, 12개월 이후에는 40%로 환원되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농축산물 수입의 최소접근허용량(MAV: Minimum Access Volume)을 일원화된 관세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행 제도하에서 돼지고기 수입관세의 경우 MAV 54,000톤까지는 30%, 이를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이원화된 형태인 반면, 닭고기, 칠면조, 감자, 커피콩 등에는 MAV 이내 또는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40%로 일원화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필리핀의 표준 및 인증 정책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hilippines Standard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BPS의 의무인증 대상은 가전, 철강, 플라스틱, 화학, 시멘트·건설자재, 자동차부품 등 9개 분야 총 109개 제품군이다.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DTI), 보건부(DOH), 식약청(FDA) 등 주요부처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 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요건에 미달하는 일부(중국제 다수)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바 있다.

2013년 9월에는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년 9월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출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16년 1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는 필리핀이 스크랩(고철)을 포함한 신규 및 중고 전기·전자기기(EEE)의 전통적인 수입국이자 수출국임을 감안하여 폐전기·전자기기(WEEE) 등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원재료의 유해물질관리(ESM)에 관한 기술 지침과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준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였다.

2019년 9월에는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 수입 시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 등과 같은 유해성분을 제한하는 TBT(무역상 기술장벽 협정) 통보문이 발표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새 필리핀 표준(PS) 품질 및/또는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에 관한 부행정명령(DAO)에 근거하여 건축건설, 전기전자, 화학 및 소비재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PS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 지침이 발표되었다.

2020년 6월에는 필리핀 수입 물품에 대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어 필리핀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목록(PICCS)에 31개의 화학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PMPIN(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한 사용,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규제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되었으며 대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incineration)의 사용은 금지된다. 2002년 대법원은 대기오염방지법이 모든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것을 유해물질 배출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즉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에 의하면 정부소유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회사, 기관, 부처 등과의 물품 공급 계약은 외국인에게 40%만의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입찰되는 모든 입찰정보는 필리핀전자정부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philgeps.gov.p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2018년 11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 리스트(FINL :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 따라 공공사업(국제경쟁입찰 및 일부 인프라 사업은 제외)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필리핀인의 필수 참여 지분율이 기존 75%에서 60%로 축소되었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ion Board)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AAAA, AAA, AA, A, B, C, D, Trade 등 8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유치산업 (BOT, BOO 등)

외국기업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출자 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민자 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설계 · 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필리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업체와 필리핀업체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회원국으로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발효되었다.

필리핀은 가입 초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은 2006년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필리핀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2014년 5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률로는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신품종 보호법(New Plant Varieties Act), 시각매체법(Optical Media Act), 캠코딩 금지법(Anti-Camcording), 기술이전법(Technology Transfer Act) 등이 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2008년 발효된 의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사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또한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하였고 필리핀 법정에서 지식재산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형 무단복제 업체나 배급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69%에 달하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1년에는 70%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상으로 확대 중이나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가 2019년 한 해(1월~12월) 동안 압수수색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총 추정액은 약 221억 3,000만 페소(한화 약 5,193억 원)이며, 압류물 대부분은 고급시계류, 개인용품, 가방, 광매체물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에도 필리핀 지식재산청내 지재권 집행사무소(IPR Enforcement Office)는 현행 업무범위에 전자(electronic) 및 디지털/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광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재권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재권 침해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파기명령 부과 외에도 관련 정부기관에 사업허가권 등과 같은 허가 및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작권 침해자가 소명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60일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도 하였다. 특히, 2024년 11월 26일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2030년까지 필리핀을 창의와 혁신의 글로벌 허브국가(Banque of Ideas)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 발전전략인 'PHIPS 2025-2030'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지식재산을 실질적 투자(a tangible investment)로 인식하고, 글로벌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지식재산 인식 및 교육 강화, △지식재산 평가·사업화 기반 구축, △다각적 협력 강화 및 △첨단기술 촉진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SC), 필리핀 사법 아카데미(PHILJA), 지식재산청(IPOPHIL),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사법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딩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약사의 경우 호혜주의에 따라 활동 허용),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 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제11차 외국인 투자 제한리스트(FINL, 2018.10)에 따르면 기존에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었던 매스미디어 산업이 인터넷 비즈니스(Internet Access Provider)에 한하여 개방되었다.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최대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라디오 통신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투자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40% 지분 투자를 허용한다. 광고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 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광업 및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대형(5천만 달러 이상 투자)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도 40%로 제한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2018년 10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에서 조정사(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면서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한 투자도 완전 개방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필리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2022년 3월 2일 개정된 공공서비스법(RA 11659)은 통신, 운송, 발전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해 기존 40%의 외국인 소유 제한을 철폐했다.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투자법과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에 따르면 납입자본금(paid-in equity)이 20만 달러 이상인 내수기업(Domestic market enterprise)은 외국인이 100% 소유가능(소매업은 250만 달러 이상)하며, 20만 달러 이하일 경우 40%까지 외국인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납입자본금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과기부(DOST)가 인정하는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납입자본금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5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있는 경우 100%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수출기업(Export enterprises)의 경우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며 최소자본 요건은 없다.

기타의 경우 필리핀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의 외국인 직원

워킹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SEC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필리핀에서 조직된 모든 기업 및 파트너쉽에 대한 등록, 라이선스, 규제, 감독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기관이다. SEC에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법(Corporation Code)에 다라 설립된 모든 기업들은 통상산업부(DTI)에 사업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납세자는 납세자식별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은 설립을 위해 지방정부인 바랑가이나 시 등으로부터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정부는 세금, 공과금 등을 조례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외국인 지분 40% 이하 법인 외국인 경영진 취임 제한

필리핀 내국 법인(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 인력이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 기술 인력, 이사회 이사(해당 지분 비율별)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임원, 관리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은 사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사유지 임대 기간은 최초 계약 시 최장 50년이며, 이후 25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국유지의 경우 사기업은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차만 가능하여, 임대조건도 최장 25년 + 25년에 한해 연장 총 50년이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요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간단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등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1997년 조세개혁법(RA No.8424)에 근거하며, 2005년 11월에 시행된 RA No.9337에 의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는 소득세(Income Tax), 원천과세(Wit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 인지세(Stamp Tax) 등이다. 조세는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은 1986년 11월 9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하였다.

소득세는 크게 법인과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Corporation Tax) 부과율은 통상 35%로 2006년 7월부터 적용되다가 2009년 1월부터는 30%로 조정되었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내국인(Resident Citizen), 비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0~35%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 Tax)는 Foreign loan에 대한 이자분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로열티의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세율은 해당국가와 필리핀이 체결한 세제 협정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2006년 1월부터 기존의 10% 세율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21년 4월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 및 투자유치 독려 등을 포함한 CREATE법 (Co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를 제정하여, 법인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변경하고, 신설·확장기업에 대해 4 ~ 7년간의 법인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이를 보완한 CREATE MORE법을 제정하여, 법인세율을 20%로 추가 인하하고, 세제 인센티브 기간도 기존 17년에서 최대 27년까지 연장하였다. 이외에 지방세·부가가치세·특수 비자 신설 등도 포함되었으며, 이는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령(IRR)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경쟁 관련법으로는 필리핀경쟁법(The Philippine Competition Act(R.A. 10667))이 존재한다.

동 법은 필리핀 시장내 사업자들의 ▲반경쟁 담합(가격,생산량, 유통담합 및 부정입찰 등) 및 ▲공정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약탈적 가격책정, 차별 등),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 ·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반경쟁적 인수 · 합병 방지 및 규제(일정규모 이상의 인수 · 합병 시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에 통지 의무 규정(2019.3.1.발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필리핀 조세개혁 동향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는 집권 후 10개항의 사회경제 정책방향(10 Points Socioeconomic Agenda)을 발표하고 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개혁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조세개혁은 균형성장, 빈부격차 완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 등의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재무부는 2017년 9월 1차 종합조세개혁법안(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통과 후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법인세 개편 등이 주요내용인 2차 조세개혁법안 CREATE(Corp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가 하원(HB4157)을 통과하였으며, 상원(SB1357)에서 논의 중이다(2차 조세개혁법안은 기존 CITIRA(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Act)로 불렸으나, CREATE로 변경).

1차 조세개혁 내용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1차 세제개혁법안(TRAIN 1)에서는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면제범위 축소), 유류세, 자동차세, 설탕세 등 소비세율 인상이 주로 포함되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기존 연 1만 페소 이하에도 5%를 부과하였으나, 연소득 25만 페소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25만 페소 이상은 초과액에 따라 20%~35%까지 과세하도록 했다.

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은 부동산가(Net Estate Value)에 따라 0~20% 차등 부과하던 것을 부동산가의 6%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하였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기존 10만 페소 초과 증여분에 대해 2~15%까지 차등 부과하던 것을 25만 페소 초과분에 대해 6%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액이 연 매출의 70%를 넘는 수출중심 기업에 대한 매출은 기존 면세에서 12%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였다. 부가세 면제대상 거래도 축소하여 임대차 거래 면세한도를 기존 월세 1만 페소에서 1만5천 페소로 상향하고, 부가세 면제대상 사업도 연매출 1.5백만 페소에서 1.9백만 페소로 상향하였다.

한편, 소비세를 인상하여 유류의 경우 가솔린은 리터당 4.35 페소에서 7페소로 인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10페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디젤유의 경우 기존 면세에서 리터당 3페소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6페소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100만 페소 자동차 기준으로 60만 페소의 4%에다 60만 페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10~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설탕세를 인상하여 과당음료의 경우 리터당 6페소, Corn syrup은 리터당 12페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담배의 경우 한 갑당 30페소에서 2023년까지 40페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24년 이후에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석탄 등 광물의 경우 톤당 10페소인 석탄 소비세를 2018년 50페소, 2019년 100페소, 2020년 이후 150페소로 인상하도록 개편하였다.

2차 조세개혁

2차 조세개혁법안(CREATE, 기존 CITIRA)은 법인세 완화 및 인센티브 증가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발의될 당시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는 현재 30%인 법인세를 1% 포인트씩 완화해 2029년에 2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2018년 1월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하원을 통과한 2차 조세개혁법안에는 투자관련 조세 인센티브 축소로 대표되는 조세인센티브제도의 합리화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들의 우려도 제기

된바 있다. 2차 세제개혁법안은 기업회복 및 세제혜택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1년 3월 26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존 세제혜택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 인하의 경우 총자산 1억 페소 이상 사업체는 기존 30%에서 25%로 인하하였으며, 총자산 1억 페소 이하 사업체는 과세금액이 5백만 페소 이상일 경우 25%, 과세금액이 5백만 페소 이해인 경우 20%로 인하되었다. 또한 무기한의 세제혜택(ITH : Income Tax Holiday)을 부여하고 있던 기존 세제 인센티브 체제를 개정하여 기업의 소재지, 사업성격 등에 따라 세제혜택 부여기간을 차등 설정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경우 최대 17년(ITH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주요내수기업의 경우 최대 17년(ITH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일반내수기업의 경우 최대 12년(ITH 4~7년 + 5년 특별법인세)의 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 외에도 교외이전 기업이나 분쟁지역 진출기업에게는 소득세 면제기간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관(IPA)들이 부여하는 세제혜택 관련 행정의 관리 감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검토위원회(FIRB: 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기능을 확대하여 10억 페소(약 2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한 논의 및 승인 기능을 부여하였다.

CREATE MORE법

필리핀 정부는 동남아시아 역내에서의 투자 경쟁력 강화와 기존 CREATE법 보완 등을 위해, 2024년 11월 CREATE MORE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기존 법인세 혜택을 포함하여, 지방세·부가가치세·특수비자 신설 등까지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개혁안이다. 우선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추가 인하였으며, 세제 인센티브 부여 기간도 기존 17년에서 최대 27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VAT)에 대해서도, 수출기업의 주요 사업 및 관련 수입품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필리핀 내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수기업의 경우, 필리핀 내에서 구매한 원재료, 중간재, 법률·회계·마케팅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 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방마다 상이한 지방세 적용기간 및 세율을 통일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고급 기술직 및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비자(Special Visa)를 신설하여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추진한다. 다만, 부가세·지방세·특수비자 신설 등에 대해서는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령(IRR)을 통해 세부 시행절차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으며, 특별취업비자(47a2, CWV, SCWV, EO226) 등의 비자도 교민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다. 또한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되는 데 투자금액은 최대 180일까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를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받아야 한다(필리핀 해외 고용청에 의해 승인된 회사로서 필리핀에 일시방문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필리핀인의 해외송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대표 등 AEP 취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필리핀 비즈니스환경 개선 동향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5월 28일 국가 경쟁력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제고를 위해 '비즈니스환경개선 및 효율적 정부 서비스 법'(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 of 2018, RA 11032)에 서명했다.

동 법의 주요 요소는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기관 ARTA(Anti-Red tape Authority) 설립, ▲민원인과의 접촉금지정책(Zero-contact) 도입, ▲행정서류 접수에 대한 고유 번호 부여 및 민원인에 담당 공무원 정보 제공, ▲민원처리기간 축소(성격에 따라 3일~최대 20일), ▲민원 처리기한이 초과된 민원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사업 허가 및 갱신에 대한 신청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스톱 시스템(BOSS: Business One Stop Shop) 도입, ▲사업체의 존재 유무 및 유효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필리핀 비즈니스 데이터 은행

(PBD) 설립(정보통신부 소관), ▲담당 공무원의 상기 법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2차 위반 시 해임 등)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법령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DPA: Data Privacy Act)

필리핀은 2012년 8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RA 10173)을 제정하였으며,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이를 취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 조합을 통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개인과의 계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상의 의무 또는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외 인종(race), 종족정보(ethnic origin), 나이, 결혼여부 등 개인의 민감정보(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를 다루는 것도 동 법에 의해 규율을 받는다. 다만 대중적 관심이 있는 내용이나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예술 및 문학의 목적, 연구 목적 등으로 다뤄지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율이 완화되기도 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행, 시설 보호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e-commerce Act)

필리핀은 2000년 6월 전자상거래법(RA 8792)을 제정하고, 전자적 기술 및 장치를 통한 국내 및 국제간 거래, 계약, 정보교류 등을 촉진하고 있으며, 전자파일, 전자적 자료 및 서류에 대한 전자서명에 접근은 법적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 도입 등 디지털 논의 동향

디지털서비스 부가세 도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4년 10월 2일 디지털 서비스에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공화국법 제12023호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온라인 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미디어·광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내에서 소비된 경우, 필리핀 내에서 수행 또는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외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도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교육기관, 교육부·고등교육위원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 온라인 교육 서비스, 은행 서비스 등은 제외한다. 최근 12개월간 매출이 300만 페소를 초과하거나, 이를 초과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세 등록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미등록기업의 경우, 국세청은 과학기술부와 국가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해당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법은 2024년 11.24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 시행령(IRR)을 마련하고, 5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DTI)에 따르면, 이 법을 통해 향후 5년간 1,050억 페소의 세수가 기대되며, 이 중 5%는 Malikhang Pinoy 프로그램에 투자되어 예술·연예·디자인·미디어 등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 결제 확대 동향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1년 10월 7일 발표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필리핀내 전체 결제건수의 20.1%가 디지털 결제로 집계되어, 2020년內로 디지털 결제 20%를 목표로 설정한 중앙은행의 기존 계획이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BSP는 동 기간 디지털 거래의 특징을 저액(low value)/고빈도 거래(high frequency)로 관찰하고, 특히 개인간의 거래(P2P) 및 개인-상인간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결제 확산을 가속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2020년 ▲민간 상거래 디지털

거래는 지난 2019년 2.50억 건에서 47.8% 증가한 3.69억 건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방식을 통한 필리핀 정부의 공무원 급여 지급(G2P)도 21.1%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은행 허가

2021년 10월 4일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는 총 6개의 은행들에게 디지털은행 사업허가권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향후 필요할 시, 통화이사회(Monetary Board)가 신규 사업 허가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필리핀內 디지털은행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은행은 ①Overseas Filipino Bank(필 국영은행인 Land Bank 계열사) ②Tonik Digital Bank ③UNO Bank ④Union Digital Bank ⑤ Gotyme 및 ⑥Maya Bank로 선정되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디지털은행들도 사업 운영에 있어 기존 은행들과 같은 건전성 조건(prudential requirements)들을 충족해야 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최소 자본금(minimum capitalization)은 10억 페소(약 2천만 달러)에 물리적인 본사 사무소(HQ) 운영은 필수이나, 그 外 지점들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 등은 없으며, 대신 그 역량과 자본들을 새로운 기술 도입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호 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호주 경제현황

호주는 우리나라의 약 7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광업, 농업, 서비스업(관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호주는 GDP기준으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며, 코로나19 사태 발생전까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7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튼튼한 경제 기초를 자랑한다. 1인당 GDP도 6만 7천 달러에 달할 정도로 부유한 국가이다. 호주는 서비스업이 강한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서비스의 GDP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호주의 주요 산업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인데 특히 농업, 광업, 보건, 관광 등이 높다. 실질 총부가가치(GVA) 성장률 기준으로는 정보·통신, 숙박, 행정, 운송, 건설, 광업 순으로 높다.

호주의 산업별 실질 총부가가치(GVA) 비중

(단위: %)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VA 비중	2.3	12.2	5.9	73.0

자료: RBA

2023년 기준 호주정부의 부채는 GDP대비 30.6%로 전년대비 2.8%p 감소하였고 선진국 평균 72.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호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FDI)의 총액(Stock)은 2023년 기준 4조 6,595억 호주달러이다. 호주의 수출은 지속 증가해왔는데 주요 수출품목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교육관련 서비스, 금 순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정제유, 관광서비스, 승용차, 화물차, 통신장비 순이다. 호주의 교역은 2023년 기준 총 1조 2,208억 호주 달러이며 GDP의 약 48%를 차지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기구(APEC) 국가와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73.1%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수입대상국별로는 2023년 기준 중국(19.8%), 미국(11.9%), 일본(5.6%), 한국(5.0%), 싱가포르(4.4%) 등 순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32.5%), 일본(13.4%), 한국(6.5%), 인도(5.2%), 미국(5.0%) 등이 있다.

호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DI Stock) 산업별 비중

(단위: %)

	광업	부동산	금융	제조업	기타
FDI Stock 비중	33.2	11.8	12.6	9.7	15.7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DFAT)

호주는 막대한 에너지자원 및 핵심광물 보유국으로서 철광석, 석탄, 리튬, 니켈, LNG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주요 10대 농산물 생산자이며 호주산 농산물은 안전과 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융 분야에서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금융자산 보유국이며, 교육·관광분야에서 세계 3위의 해외 유학생 유치국이다.

철광석, 석탄, LNG 등 전통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큰 호주의 경기 사이클은 해당 자원의 글로벌 시장 수급 및 가격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이들 자원에 대한 수요 변화에 민감하다. 근래 들어서는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전환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향후 수요 증가 전망 등에 따라 이차전지 광물 중심의 핵심광물 및 희토류 등 신흥자원에 대한 정부 지원, 공공 및 민간 투자, 수요 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그동안 호주 경제를 지탱해온 광업 이외에도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는 자국 농산물의 72%를

수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의 식량 보고이며, 최근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인도, UAE 등과의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3.2% 증가하고, 농산품 수출도 전년대비 17% 증가한 804억 호주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호주는 지속적인 교역 확대 및 호주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 협력 강화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15년간 주요 수출국인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과 연이어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UAE 등 국가들과 최근 FTA를 체결한바 있고, EU, 걸프연합 등 다른 주요국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건설 및 부동산,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 성장은 물론 핀테크, 양자기술, 바이오테크, 우주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세개혁, 기업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주요 산업 환경

자원 및 에너지 산업

호주의 자원 및 에너지 산업은 2023/24 회계연도 기준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고 3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간산업이다.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광석, 천연가스, 우라늄, 유연탄 등 전통 자원은 물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수출 중인 에너지·자원부국이자 순수출국이다. 2023/24년 호주의 자원·에너지 상품 수출액은 약 4,150억 호주달러로 호주 전체 상품 수출액의 2/3 가량을 차지했다.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생산현황

광종	단위	매장량			생산량		
		경제적 자원량 (EDR)	광량(Ore Reserves)	세계순위 및 비중(%)	생산광산 수	생산량	세계순위 및 비중(%)
유연탄	백만 톤	72,875	15,121	4(10%)	93	520	5(6%)
우라늄	천톤 U	1,236	319	1(32%)	2	4.555	4(9%)
철광석	백만 톤	58,286	22,729	1(31%)	41	945	1(35%)
구리	백만 톤	101.50	27.43	2(11%)	36	0.82	8(4%)
아연	백만 톤	64.30	21.12	1(31%)	17	1.24	3(10%)
리튬	천 톤	7,046	4,794	2(26%)	7	75	1(52%)
니켈	백만 톤	24.1	8.6	1(23%)	16	0.16	5(5%)
코발트	천 톤	1,742	614	2(19%)	6	5.8	4(3%)
망간	백만 톤	496	109	4(16%)	3	4.5	3(10%)
희토류	백만 톤	5.70	3.27	6(4%)	2	0.016	3(5%)

자료: Geoscience Australia,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 2023

2023년 기준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93TWh로 전체 발전 비중의 39% 가량을 차지하였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 46%, 풍력 34%, 수력 16%, 바이오 4% 순이다. 지난 10년간 발전설비용량이 풍력은 3배 이상, 태양광은 9배 가까이 증가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해 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해 줄 대규모 및 커뮤니티 배터리저장장치(BESS)와 양수발전(PHES)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0월 기준, 약 320GW 규모의 신규 발전소 및 축전설비 건설사업이 제안(296GW) 및 개발(24GW) 단계에 있다. 현재 호주내 추진중인 전체 신규 발전소 및 축전설비 건설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84GW로 89%를 차지(대규모 BESS 설비용량 107GW 포함)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육상(REZ) 및 해상(OREZ) 신재생에너지 발전구역들을 선정 후 순차적으로 개발 중이고 신규 송배전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한 호주 노동당(ALP) 연방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Renewable Energy Superpower)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가전력시장(NEM)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82%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 청정전력망 구축(Rewiring the Nation), △신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 △친환경·경제적·안전한 에너지, △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 4대 분야에 10년간 약 290억 호주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024년 5월에는 청정에너지 제조업 및 그린수소를 포함한 5대 산업을 우선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Future Made in Australia(FMIA)' 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향후 10년간 약 227억 호주달러 편성하였다.

지난 2023년 6월 제3차 국가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하고 뒤이어 10월에는 호주 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및 가공설비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광물기금(Critical Minerals Facility)을 총 40억 호주달러로 2배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상기 FMIA 정책의 5대 우선 중점 육성산업에 핵심광물 가공을 포함하고 10개 이상의 양자·다자 협력 채널 등을 통해 호주 핵심광물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농업/낙농업

농업은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호주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전체 농업생산의 80%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수출 지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중 하나이며 쇠고기 이외에도 양고기, 밀, 설탕, 낙농품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호주는 2014~15년간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이후 영국, 인도, UAE와 FTA 체결, EU와 FTA 추진, CPTPP, RCEP 등 다자무역협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3-24년 호주의 농·수산·임업물 수출은 726억 호주달러로 전체 호주 수출의 약 14%를 기록하였다. 호주 농·수산·임업물 주요 수출국가로는 아세안(190억 호주달러), 중국(170억 호주달러), 일본(60억 호주달러), 한국(50억 호주달러) 등이 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농산업 규모를 1,000억 호주달러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Delivering Ag 2030"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농산품 공급망 강화,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시설 확충 및 작물 연구 개발 지원, 농산업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제조업

호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 수준으로 당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주요 제조업종이었으나 호주에 생산공장을 둔 3대 자동차 제조업체(홀덴, 도요타, 포드)가 모두 2017년에 호주내 생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호주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 등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광산관련 설비, 식음료, 의약품, 우주관련 장비 등 다변화를 통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근 호주 정부는 미래 호주 제조업 정책(Future Made in Australia)을 수립하고 호주 제조업의 부활 및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약 150억호불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을 통해 국방, 식품가공, 운송, 천연 자원가공, 의료과학, 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제조업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서비스산업

호주는 금융, 관광,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강국이다.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호주 생산, 고용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금융산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호주 최대 규모의 산업이며 호주가 법으로 규정한 연금적립 시스템(Superannuation) 덕분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은행분야는 흔히 'big five'라고 불리는 5대 은행인 Commonwealth Bank, Westpac, National Australia Bank, ANZ, Macquarie Bank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호주 금융산업은 전체 GDP의 약 7.5%(2024년)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원중 하나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GDP의 2.5%(2023년

기준)를 차지하고 연간 방문객이 664만 명에 달하여 전체 호주 고용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산업이며, 2019년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국내 이동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 호주 방문객수는 코로나 이전대비 98%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교육 역시 세계 3위의 해외유학 유입국가이며 2023년 기준으로 유학관련 서비스 수출이 약 364억 호주달러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세계 전체 유학산업의 7%(2023년 기준)를 점유하는 등 호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호주 무역·투자 현황

2023년 기준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3위의 수입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한편 호주는 한국의 9위 수출국, 4위 수입국으로서 5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2023년 한국은 총 177.9억 달러를 수출하고 328.2억 달러를 수입하여 150.3억 달러의 상품교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호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78.9	61.8	97.5	187.5	177.9
수입	206.1	187.1	329.2	449.3	328.2
교역규모	285.0	248.9	416.7	636.8	506.1

자료: 무역협회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103.9억 달러), 자동차(34.7억 달러), 항공기 및 부품(4.4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89.1억달러), 석탄(76.3억 달러), 철광석(54.9억 달러) 등이다.

1968년~2024.6월 우리나라가 호주에 투자한 누적 금액(투자금액 기준)은 총 200.5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

개발 투자가 주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호주내 광산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현재 대호주 투자는 부동산, 금융·보험 등 여러분야로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한편 호주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33.3억 달러(누적투자금액 기준)이다.

최근 한국의 대호주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금 액 (투자금액기준)	1,178	1,495	662	644

자료 : 수출입은행

호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WTO에 따르면 호주는 2023년 기준 평균관세율 2.4%,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2.6%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섬유: 4.2%, 의류: 4.6%, 운송장비: 3.3%)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제품(2.3%), 일반 기계(2.6%), 기타 제조업(1.5%)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년 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 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119]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우리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발효 5년내 철폐(품목수 기준 90.9%에 대해 발효 즉시철폐)하였으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엄격한 식품검역기준)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 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수산임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년 6월 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식품안보위험분석(Biosecurity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하기도 한다. 호주정부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SPS 조치들을 WTO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외국의 수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119) 호주 수입관세 정보는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Schedule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 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호주정부는 달팽이, 두꺼비, 벌, 개미 등을 고위험 병충해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검역하고 있다.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밀폐되지 않은 고기, 씨앗 및 견과류, 생과일 및 채소는 개인적 목적으로도 항공편이나 우편으로 수입하지 못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또한 수입식품의 해당지역내 판매에 관한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별 규정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반덤핑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120].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15건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총 26개 품목(총 16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15건은 반덤핑 조사 8건(7개국), 덤핑관세부과 연장여부 조사 2건(1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4건(6개국), 우회덤핑 조사 1건(1개국)이다.

120)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26건중 19건(전체 대비 73.1%)이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조사가 진행 중인 1건[121],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6개 품목[122]이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가 진행 중인 1건이 철강제품이며,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6개 품목 모두가 철강 제품이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호주 반덤핑 관세 계산은 복합과세(Combination Duty) 방식으로서 통상적으로 계산되는 덤핑 마진(Fixed Amount = 정상가격-신고수출가격)에 덧붙여, 이후 실제수출가격이 신고수출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Variable Amount)만큼 추가하여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덤핑마진을 줄이는 노력 뿐 아니라, 차액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덤핑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출, 수익, 시장점유율 감소 등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임금효과, 고용효과, 산업형성 저해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호주 반덤핑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반덤핑 조사기간이 매우 짧은 점(통상 160일, 재심까지 고려시 280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장상황과 반덤핑 제소 동향을 파악하고 덤핑 마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회계문서 등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장관(산업부 장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시 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수출 제품의 호주 내 수요기업들이 조사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121) 품목별로는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ection)dp 대한 재조사/ 취소조사가 진행중

122)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600mm 이하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600mm)

한다. 이 때 수요기업들이 호주 제품과의 차이점, 호주 수입의 필요성, 산업무(無)피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하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공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최근 호주 정부는 시멘트, 에너지, 철강 등 약 250여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및 시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세이프가드 메카니즘을 도입하였고,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탄소누출[123] 방지를 위한 방안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Chris Bowen 호주 기후변화 에너지 장관은 2023.11월 호주의 기후변화 정책 강화에 따른 시멘트, 철강 등 무역민감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약 70여개 품목들을 중심으로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검토를 발표하였으며, '24.11월 2차 논의서 공개를 통해 탄소가격이 없거나 호주보다 낮은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국가간 탄소가격 차액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조정 제도 도입을 시사하였다.

호주 정부는 현재 시멘트, 클링커, 석회 등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나, 철강 제품 등 우리의 호주 수출량이 많은 일부 품목들도 호주 정부가 지정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무역민감도가 높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고려 품목에 속해 있는 만큼 호주 정부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준, 검사, 인증관련 장벽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123)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역내 기업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역외 국가로 생산활동을 이전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가격경쟁력이 뒤쳐져 역외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대체되는 현상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호주 정부는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장벽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지원하는 제도[124]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관련 장벽

호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 의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연매출 3백만 호주달러 이상 모든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Australian Privacy Principle (APP) Entity)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주정부 기관과 주지역내 보건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원칙(Australia Privacy Principle)을 수립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체결 시에도 금융관련 개인정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국외 설치의 양허를 제외하여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2023년 호주 2위 통신사인 OPTUS社의 해킹사건으로 98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민간의료보험 기업인 Medibank社도 해킹으로 인한 약 390만여명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등 역대 최대수준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발생 계기, 개인정보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 제도를 개정[125]하였다.

---

124) https://www.tradebarriers.gov.au/

125) 호주 정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법 위반시 제재 강화, 개인정보 침해한 단체,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개정법(Privacy Legislation Amendment (Enforcement and Other Measures) Act 2022)를 발의한바 있으며, 동 개정법령은 2022.11월 의회를 통과하여 2022.12.14.일 발효된바 있다.

한편 호주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무역장벽은 높지 않다. 특히 OTT 서비스의 경우 호주 정부는 OTT에 대한 별도 법적정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담,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실상 호주 시장 진출 장벽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호주 정부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이 호주 국내매출의 일정 비율을 국내 제작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진출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투자 장벽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등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3.3억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의 호주 부동산취득, 외국 정부 및 공기업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 호주 재무부 산하의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외국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사전심사[126]를 받아야 한다. 최근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제도를 강화하여 기승인 된 투자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투자 철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가 국익 및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투자를 승인하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비민감 분야 일반자산의 경우 3.3억 호주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지는 15백만 호주달러, 농기업 등은 10%이상의 지분투자시 호주 정부에 통보가 필요하며, 연간 누적기준 7,100만 호주달러 이상 투자 및 25%이상 지분 투자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과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심사대상[127]이나,

126) 한, 중, 일 등 일부 FTA체결국들에 대한 비민감 분야 투자에 대한 심사면제 상한은 14.27억 호주달러이다.

127)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신규 주택은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광업용 부동산, 공항, 항구 등 민감 분야 부동산을 제외한 비민감 분야 자산에 대한 투자는 3.3억 호주달러가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의 FTA 체결을 통해 비민감 분야 일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 14.27억 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되어 있다.

호주는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 상한은 국내선의 경우 100%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Qantas 항공 49%)로 제한되며, 공항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며, 외국인이 여러 공항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지분의 총합이 전체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5% 이하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경우 1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호주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인력난 및 주택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기 위해 2024.5월 외국인투자심사법 일부를 개정하여, 임차를 위해 건설되는 부동산 및 일부 인력난이 심한 지방 지역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임차용으로 건설되는 거주용 부동산 등에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조달 분야

호주는 최근까지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년 1월 1일 미국과의 FTA 발효,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책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목적과 상관없이 구입 가능)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심사 면제상한은 3.3억 호주달러이나 한국, 미국 등 일부 FTA체결국의 국민은 14.27억 호주달러 미만의 투자의 경우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없다.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 여부, 자연재해 대응 등도 고려해야 하고,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진입장벽으로 호주 정부조달 입찰 시 10억호주 달러 미만 규모의 사업에서는 전체 사업규모의 최소 25%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고, 정부 조달사업시 호주 경제 이익을 고려하라는 규정 등이 있어 외국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었던 호주는 한-호주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해왔으며,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에도 가입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의약품 25년)이다. 혁신 특허의 보호기간은 8년인데, 호주 정부는 특허법 효율성, 규제 간소화 등을 위해 일반 특허와 혁신특허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2021년 8월 25일 이후부터 신규 혁신특허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고, 기존 혁신 특허를 일반 특허로 전환하여 주고 있다. 호주의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고된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록된 trade marks가 최초 등록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승인 취소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며 총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 또는 최초 공개된 해로부터 70년간 지속되고, TV나 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일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해외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 국적의 국가와 호주가 같은 저작권 관련 국제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호주내에서도 저작권을 인정[128]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호주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은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2003년에는 음반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환경 분야

최근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연간 10만톤 이상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메카니즘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메카니즘 개정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매년 배출상한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호주 정부는 동제도를 통해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광산 개발 및 가공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을 달성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바, 동 분야 투자검토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호주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및 수입품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바, 관련 제품 수출 검토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128)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문화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nfrastructure.gov.au/media-communications-arts/copyright/copyright-basics



홍 콩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개관

홍콩은 아시아의 대표적 자유무역항으로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상품무역 거래와 금융 · 운송 등 분야에서의 국제 서비스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은 오랜 기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오고 있으며, 중국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왔다. 2023년 기준 홍콩의 무역액은 1조 1,310억 달러로 중국(5조9,358억 달러), 미국(5조1,930억 달러), 독일(3조1,949억 달러), 일본(1조5,030억 달러), 한국(1조2,747억 달러) 등에 이어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홍콩의 무역성과는 영국 식민지시절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정부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지지와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 무역의 특징은 중개무역과 중국 광둥성 지역의 둥관, 심천 등의 공업지역을 활용하는 가공무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842년 난징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유럽과 중국 본토 및 아시아를 연결했던 중개무역 센터로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홍콩정부의 무역,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난징조약 이후 1940년대까지 홍콩은 중국과의 중개무역 거점(Entre port)으로 성장해 왔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 홍콩 정부의 자유무역 정책과 무관세 정책 등은 홍콩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은행 및 무역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 본토는 국제경제와 단절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홍콩은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는 직물산업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의류, 전자제품, 플라스틱 기타 노동집약적 제품들로 다양화되면서 발전하였다. 다만,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자발적 대응에 기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홍콩은 다시 경제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비관세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한국과 대만 등 경쟁 신흥공업국에 비해 기술발전이 뒤처지면서 홍콩제품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자 홍콩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 기업들이 광둥성의 주강삼각주(PRD: Pearl River Delta) 지역으로 가공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기준으로 홍콩의 주강삼각주 지역 투자액은 광동지역 총 FDI의 약 80%인 48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의 중국 이전과 함께 홍콩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창출된 것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 생산은 광둥성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무역,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 분야가 중국내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은 이러한 분야를 전문화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은 1980년 홍콩 GDP의 24%에서 2000년 4.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도 2000년에 87%로 증가하게 되었다. 고용부문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제조업은 23%에서 10%로, 서비스산업은 52%에서 7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 심화되어 2022년 기준 홍콩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0%, 서비스업 비중은 93.5%까지 증가하여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산업 분야별 GDP 비중은 금융·보험(22.4%), 공공행정 및 사회/개인 서비스(21.3%), 무역 · 유통(18.1%), 부동산 · 전문서비스업(8.5%) 순이다.

홍콩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과도하게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존재하나, 홍콩의 서비스업을 상품의 기획-디자인-설계-제조-물류-판매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조활동이라는 일부 기능을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 풍부한 중국에서,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브랜딩, 마케팅, 유통 등 다른 활동들을 여전히 홍콩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홍콩의 기업들이 주로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10~20%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이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유통 등의 단계에서 70~80% 이상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프로세스는 홍콩의 대외무역 추이 실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2023년 홍콩의 상품 수출은 5,356억 달러였는데 이 중 98.4%가 해외상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한 것이며, 전체 상품수출 중 55.5%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수입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홍콩의 2023년 수입액은 5,955억 달러이며 이 중 43.5%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홍콩은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WTO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국가(지역)별 상품수출 규모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홍콩이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콩의 수출입 총괄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2/'23
총 수출	5,114	5,035	6,360	5,810	5,356	-7.8
수입	5,661	5,474	6,805	6,317	5,955	-5.7
(재수출)	5,058	4,974	6,264	5,730	5,272	-8.0
무역액	10,775	10,509	13,165	12,127	11,311	-6.7
수지	-547	-439	-445	-507	-599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의 구체적인 무역방식은 무역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품기획이나 디자인, 제조관리 등의 능력이 없는 소형 회사들은 완성된 해외제품을 중국 본토에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기, 의류, 화장품, 식품 등 특정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회사들이나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무역회사들의 로컬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중국본토 등 생산지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제품을 조달하면서 제품공급회사에 원자재 공급, 신용장 개설 등 자금지원, 품질관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업체들은 제품공급 회사에 목표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을 통해 디자인 또는 부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홍콩에 근거를 둔 회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를 'Offshore Trad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실적은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수출입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정부측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ffshore Trading은 5,926억 달러로 당해년도 홍콩의 총수출액(6,360억 달러)과 그 규모 면에서 비슷하다. 이는 단순 무역상사로서 홍콩회사들이 기능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국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제조 또는 가공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추정된다.

제조업 분야 홍콩의 주요 교역품은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다. 이들 관련 제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제품 또는 부품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다시 광둥성 등 중국 본토 내 지역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중국, 미국, 일본 등 최종 소비시장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2022년 수출액 중에서 전자/전기·통신장비·사무용기기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8%에 이르는바, 홍콩회사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의 가공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입해서 재수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의 비싼 임대료 및 임금 때문에 홍콩에서 부피가 큰 상품의 조립 및 생산 등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는 부피나 중량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주얼리나 금·은 등의 장식용품 등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 대만 등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품목별 비중은 반도체 등 전자기기(47.5%), 전화기 등 통신장비(12.6%), 사무용기기(9.8%) 등 순서로 수출되고 있다.

홍콩의 주요 교역 국가별 수출입 금액 (2023년)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변화	국가	금액	비중	변화
	전체	5,355	100	-7.8	전체	5,955	100	-5.7
1	중국	2,975	55.6	-9.7	중국	2,593	43.5	-2.7
2	미국	349	6.5	-6.9	대만	674	11.3	-10.5
3	인도	214	4.0	-2.7	싱가포르	422	7.1	-17.3
4	대만	178	3.3	-9.9	한국	286	4.8	-22.8
5	베트남	143	2.7	-0.5	일본	284	4.8	-8.8

자료: 홍콩 정부 통계처

홍콩과 한국 간의 교역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무역규모면에서 홍콩은 한국에 있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다음가는 제5대 수출지역으로서 2023년 수출액은 251.9억 달러, 수입금액은 18.4억 달러로 한국의 대홍콩 무역수지 흑자는 233.5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교역품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류, 화장품, 귀금속 등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홍콩 수출입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출	319.1(-30.6)	306.5(-3.9)	374.7(22.2)	276.5(-26.2)	251.9(-8.9)
수 입	17.8(-11.1)	15.4(-13.4)	22.5(45.8)	18.8(-16.4)	18.4(-2.3)
총교역	336.9(-29.8)	321.9(-4.4)	397.2(23.4)	295.3(25.7)	270.3(-8.5)
수 지	301.3	291.1	352.2	257.7	233.5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홍콩은 국제 서비스 무역활동도 활발한 편이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관광객 급감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가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홍콩의 서비스 교역액은 1,78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서비스 수출액은 832억 달러로 홍콩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633억 달러이다. 홍콩의 서비스 무역은 운송, 금융, 관광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2022년 홍콩의 서비스 수출에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40.8%이며, 그 외에 금융 30.0%, 관광 3.8%, 기타 서비스 25.3% 로 나타났다. 2023년 홍콩의 서비스 교역액은 1,78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서비스 수출액은 989억 달러로 홍콩 GDP의 25.9%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액은 797억 달러이다. 2023년 홍콩의 서비스분야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3%에 해당한다.

제한적인 면적과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국가(지역)과 경쟁하면서 국제무역센터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홍콩의 경쟁력은 지리 · 사회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등에 근거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지리적 인접성,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문화적 복합성 및 개방적 태도, 무역업 종사자들의 언어능력(중국어, 광동어, 영어) 등의 지리 · 사회적 발전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홍콩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태생적으로 얻어진 요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홍콩정부가 오랜 시간 개선해 온 효율적 제도들도 다른 경제권과 비교해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홍콩의 무역업체들은 제품의 조달 및 판매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홍콩에는 이러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나 신발, 가방, 주얼리 등의 제품을 자국 내에서 보다 홍콩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강점은 홍콩을 "쇼핑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낮은 법인 소득세(16.5%)를 부과(2018/19 회계연도부터는 법인 및 비법인 사업자 등은 첫 2백만 홍콩 달러 과세 소득에 대해 8.2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하고 해외수익,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홍콩의 지정학적 요인과 영어사용 환경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러한 낮고 간단한 세제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헤드쿼터로서 홍콩을 선택하게 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아시아 각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각국 지사에서 헤드쿼터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홍콩에서의 법인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이니 다른 나라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해외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를 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셋째, 일국양제하에서 독립적 사법부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법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중국 비즈니스의 어려운 점 중 하나로 정부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은 중국사업을 하면서도 안정된 분쟁 해결 · 조정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홍콩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언급한 낮고 간단한 조세제도, 법의 지배는 이러한 홍콩정부의 정책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시장경제가 지탱될 수 없다. 따라서 홍콩정부도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콩은 여러 정부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홍콩정부는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WTO에 'Hong Kong, China'라는 이름으로 중국과는 별도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국제무역은 WTO 규정에 따르고 있다.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선 홍콩은 APEC 회원국으로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장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홍콩 무역의 80%가 넘는 비중이 APEC 회원국과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제 협력체제이다.

중국과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정도 홍콩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이다. 이 협정은 2003년 홍콩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된 이래 2013년까지 총 10차례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어 중국 본토와의 상품,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관세 대상 품목은 CEPA 발효 초기 374개로 시작해 2016년 1,800개로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는 홍콩 내 원산지증명이 되는 모든 품목으로 무관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4년 중국과 홍콩은 CEPA의 체계아래에서 광동성의 153개 서비스업에 대해 홍콩에 시장을 개방하는 부속협정(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gdong)을 체결하였다. 2016년 양측은 이 협정을 중국본토 전역으로 확대하여 CEPA의 서비스 무역협정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중국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Commercial Presence) 153개의 분야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 국내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야에 따라서 외자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중외 합작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동 서비스협정은 2019년 1차 개정협정, 2024년 2차 개정협정을 거치며 적용분야 및 적용지역 확대, 인정요건 완화 등 자유화를 확대하였다.

2017년 중국은 홍콩의 중국반환 20주년에 맞추어 6월 30일 중-홍간 투자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역시 CEPA의 틀 안에서 홍콩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홍콩투자자들의 투자자산 양도 및 과실의 홍콩 송금 등을 허용함으로써 홍콩투자기업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차례로 체결된 중-홍간 CEPA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촉진 및 투자자 보호 분야의 보충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홍콩과 중국간 경제교류의 장애를 과감하게 없애고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면서 나가고 있다. CEPA는 중국이 다른 경제권과 맺은 가장 광범위한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기업들도 홍콩 내 일정기간 이상의 실질적인 기업운영 실적 등 협정 내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CE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CEPA 협정상 홍콩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

-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회사
- 홍콩 내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이력을 보유(건설, 금융 등은 5년 이상) (2차개정시 요건 삭제, '25.3월부터 미적용)
- 홍콩 정부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록
- 홍콩 내 사업장 보유
- 직원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홍콩정부는 중국의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발전 계획에 따라 중국내에서 기대되는 사업기회에 홍콩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 이외에도 마카오와 CEPA(2017)를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지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홍콩은 뉴질랜드(2010), EFTA(2011), 칠레(2012), ASEAN (2017), 조지아

(2018), 호주(2019)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11월 페루와의 FTA에도 서명하였다.

한편, 홍콩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의 가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홍콩은 RCEP이 발효된 2022년 1월에 공식적으로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RCEP 회원국들간 신규 회원국에 대한 가입절차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홍콩의 가입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정책 못지않게 자유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보호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나 디자인 등에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더라도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홍콩지식재산권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홍콩정부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상무경제발전국(商務及經濟發展局)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 및 혁신 담당조직을 변경, 별도의 혁신과기국(創新及科技局)을 신설하고 산하조직인 혁신과기서(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創新科技署)를 통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 분야 지원을 위한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 이름의 기금도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정부는 2024년 9월말까지 ITF 기금을 통해 누적기준 460.4억 HKD를 조성하여 총 76,187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홍콩기업들이 홍콩 내 각급 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R&D 비용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Cash Rebate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홍콩 사이언스파크(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를 샤틴(沙田) 및 타이포(大埔)지역에 설립하여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기 시설 확대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23년 9월에는 홍콩 사이언스파크 선전(Shenzhen)

지사를 개소하여 향후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 내 대표적인 혁신기술 공동개발 기지로 삼는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한편, 홍콩정부와 선전 지방정부가 인재유치,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동개발중인 '허타오 홍콩-선전 과학기술혁신협력지구(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ooperation Zone) 사업'은 2단계로 진행 예정이며, 홍콩측은 2030년까지, 선전측은 203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중 첫 번째 3개 빌딩은 2024년 내 완공하여 2025년 생명공학, AI, 데이터 사이언스 등 업종 위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홍콩의 산업 및 무역발전을 위한 정부 기구 등

우선, 홍콩의 산업 및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는 상무경제발전국(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 CEDB)이다. CEDB는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중앙정부 기구이며 CEDB 산하에 다양한 형태의 하부조직이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Invest Hong Kong은 대내외 투자유치를, 공업무역서(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무역과 산업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CEDB 하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홍콩정부 기구인 경제무역대표부(Economic and Trade Office: ETO)가 있으며 2023년 현재 중국본토에 4개(광저우, 상하이, 청두, 우한), 대만에 1개, 해외에 14개의 ETO(방콕, 베를린, 브뤼셀, 두바이, 제네바, 자카르타,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시드니, 도쿄, 토론토, 워싱턴)를 두고 있다. 한국에는 ETO가 없으며, 동경 ETO가 한국을 관할하고 있다.

홍콩무역발전국(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 HKTDC)은 홍콩의 무역 진흥을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홍콩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전람회 등을 기획하고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각종 협회나 상공회 활동이 활발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홍콩총상회(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HKGCC)와 홍콩중화총상회(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CGCC)를 들 수 있다. 상공회의소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공유 포럼 등은 물론, 연구사업,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HKGCC는 1861년 설립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재계 모임이다. 현재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해외기업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약 4,000개사의 기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홍콩의 Hang Seng Index에 포함된 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이 회원이며, 회원사들이 홍콩근로자의 1/3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GCC는 1900년에 설립된 국내외 화교 사업가들 위주의 상공회로 약 6,000개의 회원(회사, 협회, 개인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홍콩의 Sunhwa Group 회장인 Dr. Jonathan Choi이며, Choi 회장은 한국과 홍콩기업간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모임인 한·홍콩 비즈니스카운슬의 의장직도 맡고 있다.

홍콩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각국 상공회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인도상공회의소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홍콩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홍콩한인상공회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세 등

홍콩의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해 홍콩정부는 수입·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홍콩 내 소비를 위해서 홍콩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주류(와인,

알코올 도수 30도 이하 제외), 탄화수소(석유제품 등) 그리고 메탄올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는 부과된다. 소비세는 판매자들이 먼저 부담하며 가격에 반영되어있다. 홍콩 내에서 제조되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소비세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주요 과세대상품목별세율

1. 탄화수소	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유로 V 디젤연료	HK$ 0/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세율**
중국제조	HK$ 615/kg
수입시가	HK$ 3,288kg
수입담배	HK$ 2,506/1000개비
일반담배제조를목적으로하지않고제조된그외모든담배	HK$ 3,036/kg
3. 주세	**세율**
와인	0%
알코올30%이하주류(맥주등)	0%
알코올30%이상주류(위스키등)	100%(200불 이상 주류는 1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도수 30% 이상 1% 상승마다 28.1HK$/100L 추가 부과**

자료: 홍콩세관

홍콩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초기 차량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를 내야 한다. 홍콩에서는 차량은 물론 부품 또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은 모두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초기등록세는 차량에 명시된 소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매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운송비, 중개수수료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된다.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40~115%의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 친화적 차량에 대해서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 감면혜택이 있다.

홍콩세관은 더 많은 환적 화물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하여, FTA 환적 원활화 제도를 2015년 12월 20일에 출범시켰으며, 이 자발적인 제도를 통해 무역업자들에게 세관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적 물품이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중 FTA, RCEP 및 APTA 협정에 대해 적용되는「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을 발표·시행 중에 있다.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인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홍콩 세관(www.customs.gov.h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허가(라이센싱)

홍콩은 수입·수출품에 대한 라이센싱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이센싱은 주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거나, 주식(主食) 등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품목에 적용된다.

Import and Export Ordinance 및 Reserved Commodities Ordinance, 그리고 산하 법령에 의해 공업무역서(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의 라이센스를 받아 무역 거래를 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 군수품 및 이중용도인 10가지 범주의 전략물자(strategic commodities that are munitions and 10 categories of dual-use items)
- 무선송신장비(radio transmitting equipment)
- 무기, 탄약 및 폭발물(arms, ammunition, and explosives)
- 쌀(rice)
- 비정제 다이아몬드(rough diamond)
- 살충제(pesticides)
- 오존파괴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s)
-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ines)
- 특허 중국산 한약재 및 36가지 중국산 한약재 (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and 36 Chinese herbal medicines)
- 방사성 물질 및 처리 장치(radioactive substances and irradiating appratus)
- 과세물품(dutiable commodities)
- 통제된 화학물질(controlled chemical)
- 광디스크 마스터링 장치 및 복제장치(optical disc mastering and replication equipment)
- 모래(100kg 초과) (sand)
- 식물, 식물해충, 토양(plant, plant pests, and soil)
- 멸종위기 동식물(endanger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 살아있는 동물(live animals)
- 치어(toothfish)
- 폐기물(waste)
- 무농약 유해화학물질(non-pesticide hazardous chemicals)
- 수은 및 수은혼합물(mercury and mercury mixtures)
- 냉동 육류 및 가금류(frozen or chilled meat and poultry)

전략물자 규제

공업무역서는 군수품, 생·화학 무기와 그 전구품, 방사성 물질과 장비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행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되어 사용된 물품들의 최종사용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홍콩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매개체가 되거나 악성 단체들이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무역허브로서의 홍콩 정부는 위와 같은 전략 물품들의 불법적인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며 동시에 합법적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 등 공인시스템

홍콩정부 공업무역서는 홍콩 수출품들의 원산지 인증과 수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원산지 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산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산지인증 서비스는 비특혜원산지 인증(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과 특혜원산지 인증(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으로 구분된다. 비특혜원산지인증은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생산(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CHKO)되었거나, 가공(Certificate of Origin – Processing(COP))되었음을 인증하는 것이다. 한편, 특혜원산지인증은 FTA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특정 FTA에 따른 원산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홍콩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아래의 원산지인증을 발급한다.

- 중홍 CEPA: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PA(CO(CEPA))
- 홍콩-뉴질랜드 FTA: Certificate of Origin – New Zealand(CO(NZ))
- 홍콩-조지아 FTA: Certificate of Origin – Gerogia(CO(Gerogia))
- ASEAN-홍콩 FTA: Certificate of Origin – Form AHK(CO(Form AHK))

한편, 다음 5개 기관들은 공업무역서 외에 원산지인증을 할 수 있는 정부승인인증기관(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Organization: GACO)이다.

a.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b.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c. The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d.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e.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SPS(위생검역)

홍콩정부 식물환경위생서(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FEHD)는 홍콩에서 위생검역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FEHD의 상위부서는 환경생태국(Environment and Ecology Bureau: EEB)으로 2022년 7월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기존의 환경국에서 위생, 식품안전, 농·어업 정책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발족한 부서이다. 한편, 동물 검역과 식물 보호 기능은 어농자연보호서(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AFCD)가 담당하고 있다. 공업무역서(TID)는 상기 부서들과 SPS 이슈에 대해 조정역할을 하며 WTO 문의처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의 SPS 관련 주요 법령은 아래 표와 같다.

SPS 관련 홍콩의 주요 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최근 개정	주요 내용
Food Safety Ordinance(Chapter 612)	2012년 2월	-	식품 수입, 유통업자들의 등록, 거래 기록 의무화 /공중보건을 위한 식품 안전 명령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 132, Part V) 및 부속 입법	1960년 11월	2023년 5월	주요 공중보건 및 시 서비스 조례
Imported Game, Meat, Poultry and Eggs Regulations (Cap 132AK)	1976년 7월	2015년 12월	수입에 대한 건강인증 요구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Cap 132W)	1960년 11월	2021년 7월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 (Cap 132CM)	2014년 8월	-	식품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

법령명	시행일자	최근 개정	주요 내용
Plant (Importation and Pest Control) Ordinance (Cap 207)	1976년 5월	2020년 7월	식물과 토양의 수입 관련 규제
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 (Cap 132AF)	1960년 11월	2021년 7월	특정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된 식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
Food Adulteration (Metallic Contamination) Regulations (Cap 132V)	1983년 5월	2018년 10월	식품에 함유된 중금속 규제
Frozen Confections Regulation (Cap 132BD)	1973년 2월	2008년 7월	수입 냉동과자의 판매 등에 대한 제한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Cap 132BD)	1973년 2월	2008년 7월	식품 방부제 및 항산화제에 대한 규제
Milk Regulation (Cap 132AQ)	1960년 11월	2022년 7월	수입 우유 및 우유함유 음료에 대한 규제
Sweeteners in Food Regulations (Cap 132U)	1970년 1월	2010년 8월	식품 감미료에 대한 규제
Public Health(Animals and Birds) Ordinance (Cap 139)	1936년 1월	2021년 11월	살아있는 동물과 조류의 수입, 이동 통제
Rabies Ordinance (Cap 421)	1994년 7월	2022년 7월	광견병을 통제하기 위한 포유류의 수입, 이동 규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Control of Release) Ordinance (Cap 607)	2011년 3월	2022년 7월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출입 통제

환경관련 규제

홍콩에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협약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홍콩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련의 환경보호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협약이 적용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
- 유해 폐기물
- 해양오염
- 오존층 보호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 유해 화학물
- 수은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하고 홍콩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는 아래와 같다.

- Air Pollution Control Ordinance
- 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
- Water Pollution Control Ordinance
- Dumping at Sea Ordinance
- Noise Control Ordinance
-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
- Mercury Control Ordinance
- Product Eco-responsibility Ordinance
- Motor Vehicle Idling Ordinance

홍콩은 2024년 10월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2단계 정책에서는 식당 내 식사 고객 뿐만 아니라 음식을 포장해 가는 고객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컵 및 뚜껑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하는 등 보다 전면적인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추진 단계	세부 추진 내용
1단계 ('24년 10월 시행)	– 식당 식사 고객에게 크기가 작아 재활용이 어렵거나 충분한 대체재가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빨대, 포크, 칼, 숟가락, 접시 등) 판매 및 제공 금지 – 생필품이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호텔 내 무료 제공되는 세면도구 및 플라스틱 생수 등) 판매 및 제공 금지 –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제공 금지
2단계 ('25년 잠정 시행 예정)	– 전면적 규제 시행으로 음식 포장 고객에게도 플라스틱 컵, 뚜껑, 음식 용기 판매 및 제공 금지 – 식탁보, 비의료용 투명 장갑, 플라스틱 치실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 및 제공 금지

수입규제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덤핑방지, 수출장려, 긴급수입제한 등 수입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민들의 건강을 우려해 일부 식품 품목에 대한 홍콩 정부의 수입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라 일본의 10개 도·현(도쿄, 후쿠시마, 지바, 이라바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나가타, 나가노, 사이타마)으로부터의 수산물(활어, 냉동/냉장.건조 수산물, 소금, 해조류 등)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 쿠키, 케이크, 페이스트리(Pastry) 등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에서 활용되는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에 대한 홍콩 내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부분 경화유는 조리 과정에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부분경화유 사용 자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편리한 등록제도, 엄격한 규제 그리고 창의적인 공공광고를 통해서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홍콩의 지식재산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 상표, 의장등록 등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다양한 전자서비스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증서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ipsearch.ipd.gov.hk)에서 중국어 혹은 영어로 무료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http://iponline.ipd.gov.hk)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서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등록 증명서나 지원서 상의 특정 내용들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항들은 즉시 업데이트되어 기록된다.

홍콩은 중국 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더라도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지식재산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홍콩의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는 지식재산서와 해관을 들 수 있다. 지식재산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수행한다. 해관은 홍콩 공항, 항구, 시내에서 모조품 조사 및 단속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 뿐만 아니라 홍콩 내에서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 해관을 통한 상표권 보호등록은 (1)신고접수, 예비심사 (2)서류등록과 검사자 지정 (3) 진품/가품 비교 자료 시스템 등록 및 단속 순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지식 재산권 유형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표준특허(보호기간 20년), 단기 특허(보호기간 4년, 1회 연장가능)이고, 상표권은 10년(10년 마다 갱신 필요), 디자인권은 5년(최대 4회 연장 가능)이다.

저작권 침해와 위조품 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물품 세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연맹과 다양한 상표/저작권 보유자들의 연맹을 통해서 해당산업 내의 지원과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홍콩의 지식재산서는 중국 본토 측의 대응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3월 발표된 중국 14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적재산권(IP) 거래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상향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계획 중 하나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중국 지식재산권국(CNIPA)은 홍콩 지식재산권서(IPD) 및 광동 및 선전 지역 IP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콩 특허 출원기업에 대한 중국 본토 특허 우선 심사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5월에는 16년 만에 개정된 저작권 조례 개정안이 발효됐다. 동 개정안은 (1)저작권자에 대한 기술적 중립성을 가진 배타적 전달권 부여 및 저작권자의 배타적 전달권 도입에 대응한 침해 형사제재 도입 (2)인터넷 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침해 면책 범위의 수정 및 확대 (3)가입자의 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의 면책 조항 도입 (4)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평가 시의 법적 고려 요소 추가 등 네 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조금

혁신과 기술개발은 경제성장의 주요부분이다. 홍콩정부는 하드웨어적 부분은 물론 소프트웨어 부문도 적극 지원하여 기술개발 분야의 성장을 통한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연구부문에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1999년부터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를 조성하여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12년 7월 ITF의 프로젝트별 지원금 상한액을 2,100만 HKD에서 3,000만 HKD으로 42.9% 증액하고 지원대상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후 2024년 9월말까지 ITF가 지원한 프로젝트는 누적기준

총 76,187개, 금액으로는 460.4억 HKD에 달한다. 기술분야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15.7%), 전자전기(8.4%), 제조기술(8.4%) 등이 지원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24년 9월말까지 5.04억 HKD 가량의 지원금이 412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ITF SERAP는 2012년 4월에 다음과 같이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400만 HKD에서 600만 HKD로 확대
- 벤처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인, 테스팅,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의 연구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 관련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경우 소요비용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으며, 2024년 9월 말까지 총 787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0.8억 HKD가 지원되었다. 이 지원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연구개발 총비용의 30%에서 40%로 확대되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는 R&D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홍콩 내의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R&D센터들이다.

-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 (APAS)
-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 APAS의 연구능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2.11월부터 APAS는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함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의 과학기술 주무부처 간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체이다. 2024년 10월까지 18회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고,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홍콩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조업 기업의 경우 고용인 100명 미만, 비제조업 기업은 고용인 50명 미만이다. 홍콩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약 36.2만개이며(23.12월 기준), 이는 홍콩 소재 사업체의 98.5%,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인구의 44.3%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을 홍콩 경제의 근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자금지원(SME Funding) 정책을 2001년 도입하였다.

홍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프로그램	시장확대기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기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기금 (TSF*)
설립	2001	2012	2018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장려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홍콩기업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강화, ASEAN 및 FTA 서명국과 시장개척 지원	홍콩 비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홍콩에 법인설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홍콩에 등록한 비상장기업	비영리 단체
지원 내용	(지원범위) - 해외 무역 박람회/전시회 및 비즈니스 활동 - 중국본토의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에서 발행되는 무역 관련 출판물에 광고게재 - 해외시장에서 진행되는 전자 플랫폼/미디어를 통한 수출 프로모션 행사 개최 -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기업 협력 웹사이트 구축 (지원금액) - 누계 기준 최대 HK$100만불	(지원범위) - 전시회, 장비 구입 및 직원 고용 등 ① 중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20개의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200만 - 지원상한액: 승인된 총 지출의 50% 또는 HK$100만 - 기간 : 최대 2년 ② ASEAN 및 여타 FTA서명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70개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700만불	(지원금액) - 건별 최대 HK$500만 또는 비용의 90% - 기간 : 3년

* 공업무역지원기금(TSF): 기존 단체지원프로그램(OSP)과 발전지원기금(SDF)이 통합된 기금

이 밖에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및 자문센터(SUCCESS)'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관절차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화물목록, 상업송장, 화물송장, 포장 명세서 등이

있다. 홍콩은 주로 사회 안전이나 국민건강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허가를 요구할 뿐 통상적으로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면허 제도가 없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들 (Service Providers)에게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의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도로운송화물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2010년 5월에 전자 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실시하였다. 화물이 홍콩을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ROCARS는 201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물품세국은 이로 인해 복합 수송화물에 대한 더욱 원활한 통관절차를 가능케 하였다. 특히, Intermodal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ITFS)는 공지, 해지의 복합수송상의 통관수속을 간소화한다. ITFS에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자물쇠와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한 수송차를 통해 운반되는 화물들은 출입지점 중 한 곳에서만 검사를 받는다.

여행자 입국 시 술의 경우는 1인당 1리터, 담배의 경우 19개피를 초과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고, HKD120,0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을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2년 4월에 개시된 홍콩해관의 홍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의 기업들은 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홍콩 내의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준 및 적합성평가

홍콩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정책방향은 WTO TBT 협정에 부합하여 최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홍콩은 독자적인 표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도 없다. 다만 홍콩정부 창신과기서(創新科技署,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ITC) 산하의 홍콩제품표준정보국(Hong Kong Product Standards Infomation Bureau: PSIB), 홍콩인정서비스(Hong Kong Accreditation Service: HKAS)와 표준교정연구소(Standards and Calibration Laboratory: SCL)이 표준 및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PSIB는 APCE 표준적합성평가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SCS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randards Congress: PASC)에서 홍콩을 대표한다. HKAS는 태평양지역인정협력체(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PAC), 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LAC), 국제인정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 및 국제시험소인정협력(Internatio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SCL도 아시아태평양측정표준협력기구(Asia Pacific Metrology Program: APMP)의 정회원이며 미터협약(Meter Convention)에 따른 국제도량형총회(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 CGPM)의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홍콩해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국제법정계량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OIML)의 특파원회원(corresponding member)이고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포럼(Asia Pacific Metrology Forum: APLMF)의 회원이며, 홍콩통신사무관리국(Office of the Communications Authority)은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 검사, 인증 관련 서비스가 주로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예는 아래와 같다.

-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 Calibration & Testing Laboratory / Sun Creation Engineering Ltd.
- The Hong Kong Standards and Testing Center Ltd.
- CMA Industrial Development Foundation Ltd.
- TUV Rheinland Hong Kong Ltd.
- Bureau Veritas Hong Kong Ltd.

홍콩에서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는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나, 아래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소비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에 따라 기술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기준은 의무사항으로서 치수, 라벨링, 포장, 품질수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생산 방법 및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홍콩 정부가 운영중인 기술기준 현황

분야	담당기관	적용 법령
Animal and Plants (importation and quarantine)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The Public Health(Animal and Birds) Ordinance(Cap 139)
		Rabies Ordinance(Cap 421)
		The Plant(Importation and Pest Control) Ordinance(cap 207)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Labour Department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Ordinance(Cap 56)
Build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Buildings Department	The Buildings Ordinance(Cap[123]
Chemicals(control of chemicals related to the manufacture of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substances)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ontrol of Chemical Ordinance(Cap 145)
Consumer Goods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Cap 456)

분야	담당기관	적용 법령
Dangerous Goods	Hong Kong Fire Services Department	Dangerous Good Ordinance(Cap 295)
Electrical Products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Electrical Products(Safety) Regulation (Cap 406G)
Energy Efficiency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Energy Efficiency(Labelling of Products) Ordinance(Cap 598)
Environ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Air Pollution Control Ordinance(Cap 311)
		Dumping At Sea Ordinance(Cap 466)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dinance(Cap 499)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Cap 595)
		Motor Vehicle Idling(Fixed Penalty) Ordinance (Cap 611)
		Noise Control Ordinance(Cap 400)
		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Cap 403)
		Product Eco-responsibility Ordinance(Cap 603)
		Waster Disposal Ordinance(Cap 354)
		Water Pollution Control Ordinance(Cap 358)
Foo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Part V of the Public Heal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Gas Supply and Gas Appliances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Gas Safety Ordinance(Cap 5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y(ICT) Equipment, Audio Visual Equipment and Electrical Equipment(Control of Interference)	Office of Communications Authority	Telecommunications Ordinance(Cap 106B)

분야	담당기관	적용 법령
Lifts and Escalators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Lifts and Escalators Ordinance(Cap 618)
Pesticides(insectcides, fungicide etc)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The Pesticides Ordinance(Cap 133)
Pharmaceutical Products, Medicines, Dangerous Drugs and Medical Devices	Department of Health	Dangerous Drugs Ordinance(Cap 134)
		Antibiotics Ordinance(Cap 137)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Cap 138)
		Chinese Medicine Ordinance(Cap 549)
Radioactive Substances and Irradiating Apparatus	Department of Health(Radiation Health Division)	The Radiation Ordinance(Cap 303)
Road Transport Vehicles	Transport Department	Road Traffic Ordinance(Cap 374)
		Road Traffic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Vehicles) Regulations(Cap 374A)
		Road Traffic (Safety Equipment) Regulations(Cap 374F)
		Specification of Safety Glass Notice(Cap 374H)
		Guidelines for Importation &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
Toys and Children's Products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Toys and Children's Products Safety Ordinance(Cap 424) Toys and Children's Products Safety(Additional Safety Standards or Requirements) Regulation(Cap 424C)
Water Pipes and Fittings	Water Supplies Department	Waterworks Regulation(Cap 102A)

*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itc.gov.hk/en/quality/qsdiv/conformity_assess.html 참조

한편, 홍콩정부 내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검측인증국(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HKCTC)은 시험, 인증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

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조달

1997년에 홍콩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의 조인국이 되었다. 홍콩에서 GPA는 모든 정부부서들의 SDR 130,000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SDR 5,000,000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약 그리고 비정부 공공기관들의 SDR 400,000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SDR 5,000,000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정부 정부조달의 원칙은 공공책임, 가치 있는 지출, 투명성 그리고 개방되고 공정한 경쟁이다. 입찰을 평가할 때 정부는 가격경쟁력 이외에 신뢰성, 요구사항 충족, 질적 우수성, 그리고 필요시에는 애프터서비스 또한 고려한다. 홍콩정부의 이러한 원칙과 고려요소들은 WTO GPA의 국내외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추구와 일치한다.

정부조달은 Stores and Procurement Regulations(SPR)에 의해 관리된다. SPR은 정부나 정부를 대신한 공인이 취득하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나 건축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정부의 정부물류복무서(Government Logistics Department: GLD)는 홍콩정부의 주 조달자임과 동시에 몇몇 비정부기관들의 특정 물품들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건축서비스는 홍콩정부 발전국(Development Bureau: DEVB)의 감독 하에 조달된다. DEVB는 전반적인 지침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서비스/투자

홍콩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 규제제도나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며, 홍콩의 로컬 기업들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나 자본소득의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송금은 자유로우며, 외환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홍콩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지분 보유에 제한이 있는 분야는 방송 분야가 유일하다. Broadcasting Ordinance(Cap 562)에 따라 공중파TV 방송 라이센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홍콩은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로서 로컬기업과 차별화되는 세금 감면혜택은 없다. 그러나 홍콩은 여러 나라들과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홍콩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홍콩의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1996년 처음 제정되었다. 동 법은 2012년 1차 개정, 2019년 2차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다. 1차 개정은 기업들의 직접 마케팅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골자였으며, 2차 개정은 2018년 항공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고객정보의 취급 및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2021년에는 온라인 신상털기(doxx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3차 개정이 이뤄졌다.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과 HKD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의 개정안에 대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시아인터넷연합(Asia Internet Coalition)은 개정안이 회원사들의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사의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미얀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미얀마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179달러('24년 기준, IMF)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이지만 광활한 국토,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다. 경제 구조도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어 양국 간 교류 협력 여건이 좋은 편이다. 단, 실제 교역 규모는 아직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최근에는 미얀마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교류가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4년부터 10여년 동안 10억~14억 달러 수준을 기록해 왔으나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1년에는 8억 1,369만 달러로 10억 달러 미만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10억 1,340만 달러, 2023년에도 12억 3,977만 달러를 기록하여 예전 수준의 교역 규모를 회복하였으나 2024년에는 9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얀마 수출은 2억 4,531만 달러, 수입은 4억 1,896만 달러로 총 교역 규모는 6억 6,427만 달러를 기록하여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對) 미얀마 수출액은 2024년 9월까지 2억 4,531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7% 감소했다. MTI 4단위로 선별한 금액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화장품(4,200만 달러), 승용차(2,746만 달러), 직물제의류(1,476만 달러), 합성수지(1,456만 달러), 편직물(1,413만 달러), 의약품(1,280만 달러) 등이며, 이중 화장품(26.0% ↑), 승용차(88.3% ↑), 합성수지(236.2% ↑), 의약품(23.0% ↑), 전선(533.7%) 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화장품은 미얀마의 경제난과 현지 정부의 수입 규제 속에서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류로 형성된 친한(親韓) 소비층과 케이뷰티(K-Beauty) 트렌드가 시장 점유율 확대에

향후에도 시장진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었으나 2021년부터 강화된 현지 정부 수입 규제의 영향을 받아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 상무부는 외화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2021년 10월부터 신차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발급도 대폭 제한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는 미얀마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소규모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21년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얀마의 수입 제한 등에 따라 미얀마로의 수출액이 감소하여 2021년(7,783만 달러)과 2022년(2억 4,476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2023년에는 흑자(1억 5,26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9월까지 수입 규모는 4억 1,89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총 1억 7,36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주요 수입 품목은 직물제의류, 편직제의류, 신발 등 현지 봉제기업에서 생산한 섬유제품군으로, 2024년 수입액도 3억 7,566만 달러에 이르렀다.단,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21.37%) 했다. MTI 2단위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던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55.4% 감소한 329만 2,000달러가 수입됐다.

한편 이와 같은 무역통계는 현지 교역의 특성과 관행으로 인해 실제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금 회피 또는 역외계좌 거래를 위해 교역품의 가치를 낮춰 보고하는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으며, 수출입 상품을 관세가 낮은 품목으로 바꿔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자원개발, 제조업, 금융, 운수물류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6월까지 총 70억 2,2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누적 법인설립 건수는 491개이다, (수출입은행 신고 기준)

주요 진출 분야는 제조업으로 봉제 기업들이 설립한 공장들이 현지 투자의 주를 이루고 있다. 봉제업은 미얀마 제조업의 중심이며 생산은 대부분 CMP

(Cut- Make-Pack) 임가공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천연가스, 광물자원 개발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Korea-Myanmar Industrial Complex)' 1단계 구간을 착공한 바 있다.

단, 군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소수민족무장단체 등과의 분쟁 격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미얀마 정부의 규제 등 대내외 악재가 집중된 최근에는 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되며 미얀마 진출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수출입은행 집계 신고기준 7억 2,860만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투자액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이보다 80% 감소한 1억 4,547만 달러까지 떨어졌으며, 다음해인 2022년에도 1억 8,170만 달러를 기록해 큰 폭의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023년에는 1,656만 달러로 투자 규모가 급감하였다.

미얀마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2.9%	-0.4%	-18%	2.5%	2.6%	1.0%
소비자물가상승률	8.6%	3.8%	5.1%	18.4%	27.1%	22%
상품수출(백만 달러)	18,117.6	16,937.1	15,145.5	17,403.3	13,644.8	-
상품수입(백만 달러)	18,611.0	17,968.6	14,326.6	16,891.3	15,388.4	-
경상수지(십억 달러)	-1.945	-2.749	-0.201	-2.843	-1.18	-
환율(Ks/USD)	1,522/1	1,407/1	1,393/1	1,942/1	2,100/1	2,100/1

출처 : Country Report, EIU, IMF, 미얀마 통계청(CSO)

관세와 상업세

관세는 평균 5% 내외로 낮은 편이며, 미얀마 관세청이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서 HS 코드로 정리된 품목별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신 관세율표는 2022년에 발표된 바 있다. 관세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부과되며, CIF 가격의 0.5%를

양륙수수료(Landing charge)가 추가된다. 또한 상업세(Commercial Tax)가 수입시점에서 관세와 함께 동시 부과된다. 상업세는 2022년 3월 30일 발효된 연방조세법을 근거로 통상적인 재화 및 용역에 모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5%로 책정된다. 단, 사치품이나 정부가 정한 일부 품목, 기호품 등에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상업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농산물, 의료용품, 임가공 제조업 원재료, 교육, 군사, 외교 관련 상품 등 43개 품목이며, 면세 대상 용역은 생명보험업, 은행업, 소액금융업, 의료업, 교육·문화예술 등 33개 분야이다.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는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얀마와의 상품교역 시 별도의 관세율 면제를 적용받는다. 상품교역 협정은 2007년 6월 1일부 발효됐으며, 미얀마도 동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우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제외한 일반품목의 관세율을 아래 표와 정리된 일정에 따라 2018년까지 점진 폐지했다. 단 미얀마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3개국과 함께 양허안 이행 시기의 연장을 허용받아 다른 회원국보다 다소 늦은 2020년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율 철폐를 완료했다.

일반품목 관세인하 스케줄

Applied MFN Tariff Rate (X)	ASEAN-Korea FTA Preferential Tariff Rate (Not later than 1 January)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 〉 or = 60	60	50	40	30	20	10	0
45 % 〈 X〈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5%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Applied MFN Tariff Rate (X)	ASEAN-Korea FTA Preferential Tariff Rate (Not later than 1 January)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7% 〈 X 〈 10%	7.5	7.5	7.5	7.5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Standstill			0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2024년 1월 1일부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미얀마는 커피, 사탕수수, 치약, 일부 직물과 석유화학 제품 등 총 193개 품목을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도 2024년 1월 1일부터 중 0%에서 5% 사이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일부 수산물, 식물성 유지, 플라스틱류와 기계류 등 160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의 그룹B로 분류했다. 참고로 초민감품목은 목표로 하는 관세율 인하의 정도에 따라 총 5개 그룹(A, B, C, D, E)으로 구분되며, 그룹B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은 목표 시기까지 기존보다 20% 이상 인하되게 된다. 미얀마 상무부는 품목별 관세율 조정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했으며 2024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을 예정대로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민물 어류와 주류(酒類) 등 40개 품목은 '관세양허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얀마 정부가 지정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관세양허 예외품목의 세부 리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s://www.fta.go.kr/)에 등재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문 제5장의 부속서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11월에는 양국 정부가 서비스무역 협정에 서명하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업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동 협정은 서비스의 공급 제한과 공급 주체의 체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완화의 정도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미얀마가 개방한 분야는 항공기 수리 및 관리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인쇄 및

출판, 시청각 서비스(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서비스), 영화관 서비스 및 영화 상영 서비스. 회계, 감사 및 장부정리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국제 여객 운송 (연안 해운 제외), 국제 화물 운송 (연안 해운 제외), 해상 화물 취급 서비스,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해손 및 손해 사정 서비스, 보험계리 서비스, 금융 서비스(외국 은행의 대표 사무소 서비스), 토목 건설 작업 서비스, 통신 서비스(전자메일, 음성메일, 전자 데이터교환(EDI), 텔렉스, 전신,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등 총 17개 업종이다.

서비스무역 협정으로 개방되는 분야와 분야별 제한 완화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s://www.fta.go.kr/)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문 중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1 '서비스 세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미국은 지난 2019년 11월 미얀마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적용 국가로 재지정하며 총 5,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을 다시 부여했다. 미얀마는 미국이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처음 도입한 1974년부터 수혜국에 포함되어있었으나, 군부 정권의 독재 및 민주주의 탄압을 이유로 1989년 4월 혜택이 박탈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도 일반특혜관세제도 유지 여부를 재차 검토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현재까지 검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의 대 미얀마 제재 등으로 인하여 미국으로의 수출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수출입허가제

경제개방 시기의 미얀마 정부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수출입허가제의 점진적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침체되자 외화 유출 방지 및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수출입허가제는 자국 기업이 지정 품목의 교역을 위해 사전에 상무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또는 '수출 라이선스(Export License)'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자국산업의 보호 및 내수용 재화의 안정적 공급이 시행 취지이다.

미얀마 정부는 2013년 3월 1일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입품목 중 166개, 수출품목 중 152개 수출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2015년 8월부터는 수입허가제를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방식의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agative)' 방식으로 변경하고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한 품목 4,405개(이하 HS Code 10자리 기준)를 설정함으로써 제도를 대폭 완화했으며, 2016년 8월에 고무, 섬유, 철강, 구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67개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동년 12월에는 커피, 니켈, 알루미늄, 전철 관련 부품 등 150개의 품목을 추가로 제외시켰다. 2018년 2월에는 축산물, 희귀한 나무, 종자, 쌀, 콩류, 광물, 보석, 비료 등이 포함된 3,345개 품목만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규정했으며, 2020년 7월에 살아있는 동물, 희귀어류 및 축산물, 약초, 광물, 제한 화학물품, 폭발성 제품, 비료, 골동품 등 1,224개 품목만을 남기는 등 적극적인 제도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비상사태 선포로 집권 군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부과하며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자 수입 규제는 다시 대폭 강화됐다. 수입 라이선스 심사는 더욱 엄격해졌으며 상무부가 2022년 5월 2일 발표한 행정명령 제32/2022호에 따라 5,101개 품목이 심사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이에 따라 HS Code 10자리 기준 총 1만 1,167개 품목 중 9,032개가 라이선스 심사 대상이 되며 사실상 전 품목이 수입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단, 농기계, 비료, 의약품, 식용유, 유류 등 자국산업 연관 품목이거나 국민기초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는 수입 라이선스 심사를 면제하거나, 라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쌀, 콩 등 식용 작물이 과다 반출되어 국민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심사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2023년 4월 5일부터 적용된 미얀마 상무부 행정명령 제8/2023호는 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 발급 대상 품목을 'Automatic Licensing'과 'Non-automatic Licensing'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Automatic Licensing' 품목은 정부가 자국 경제와 외환 사정, 국가 안보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품목들로 HS코드 10자리 기준 총 3,075개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상무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Trade Net을 통해 별도 심사 없이 수입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Non-automatic Licensing'은 현지 정부가 비(非)필수 소비재 또는 사치재로 규정한 품목들에게 적용되며, HS코드 10자리 기준 총 8,774개가 이에 해당된다.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 품목은 수입의 시급성, 필요성에 관한 상무부의 건별 검토를 받고 있어 라이선스 발급에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확인되는 소요 기간은 통상 1개월 내외이나, 품목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7월 16일에 상무부는 소식지 제4/2024호에 따르면 전 품목 11737개 중에서 72개만 Automatic Licensing으로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Non-automatic Licensing 으로 사실상 모든 품목이 상무부의 건별 검토를 받은 후에만 수입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다.

무역상 기술장벽

미얀마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 기술 관련 국가표준은 현재까지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표준이나 인증 관련 제한이 적은 편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도 UL, CE 마크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 관련 인증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품목별 적용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품목	FDA Registration	Import Recommen-dation	IHC (Import Health Certificate	COA (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DIAC (Drug Importation Approval Certificate)
화장품	√	√			
식품	√	√	√	√	
의약품	√	√		√	√

또한 미얀마어 라벨링 표기 규정이 2019년 4월 26일부터 9개 품목(food, household appliance, children's facilities, communications equipment, medicine and food supplements, chemicals, consumer products, and professional products)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위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 제품의 사용법, 보관방법 및 조건, 경고 및 부작용, 독성물질 관련 사항이 기술된 미얀마어 라벨을 용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수출입업체 등록 정책

미얀마에서 무역업(수출입)을 영위하려면 법인 정보를 '미얀마 온라인기업 정보 등록시스템(MyCO)'에 등재해야 하며, 추가로 상무부에 수출입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원사가 되어야 한다.

수출입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비 20만 짜트(2023년 5월 미얀마 중앙은행 고시환율 2,100Ks/USD 기준 약 95.2달러)를 상무부에 납부해야 하며, 완납 시 5년간의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추가로 20만 짜트를 납부하고 회원 자격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5년 단위로만 가능하다.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 회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회원 가입비	연회비	비고
현지기업	300,000	80,000	첫 3년치 연회비를 가입 시 일시 납부해야함
외국인투자기업	600,000	600,000	

수출입업체로 등록된 기업에게 부여되는 권한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허가된 범위 내에서 수출입 금지품목 또는 국영기업 독점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수출
- 허가된 범위 내에서, 자체 수출실적(Export earnings) 범위 내 수입 또는 기타 특별히 허가된 범위 내 수입
-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국경무역. 단, 외국기업은 제외
- 비즈니스 여권의 신청
- 비즈니스 교섭을 위한 외국인 초청

무역구제 조치

미얀마의 교역 정책을 규정하는 기본법은 1947년 제정된 수출입법 '(Myanmar Imports and Exports(Temporary) Act)'이며 정책의 소관 부처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이다. 그러나 수출, 수입 중에서도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항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장하기도 한다. 군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2024년 현재는 임시 최고통치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대통령실 대신 이를 담당하고 있다. 상무부는 무역제도 및 관리를 관장하는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 국경무역을 관장하는 국경무역국(Department of Border Trade)으로 구성되며, 농산물 거래를 관장하는 국영 기업 'Myanmar Agricultural Produce Trading'을 산하에 두고 있다. 참고로 중앙행정부처의 국(局)은 Directorate 또는 Department로 표기한다.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수입쿼터 및 반덤핑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수입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입총액 제한 제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상무부가 자국산업 보호나 육성 또는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기업별 연간 수입 가능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적용된다. 실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부 식료품, 플라스틱류 및 철강류에 대한 수입총액 제한이 실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법인 또는 지사가 종합상사와 같은 순수한 목적의 무역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및 반덤핑 관련 법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미얀마 관세청은 통관서류를 제출받아 정확성을 검토하고 수입 규정 위반 여부,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재화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관세 및 상업세를 부과하여 통관 처리를 완료한다.

관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종 품목의 과거 수입 가격, 카탈로그 정보,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하여 상품 가치를 산정하며, 과거 수입기록이 없는 신규 수입품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 추정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때 특정 상품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관세가 과다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입 절차

미얀마는 과거 기업의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는 '어닝 머니(Export Earning)'를 전면 실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수출로 획득한 외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수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호 조치의 일종이었다. 이때 수출실적이 없는 전문 수입상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출실적인 '엑스포트 어닝(Export Earning)'을 매입하여 수입에 사용하게 되며 통상 15% 내외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이를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제도는 미얀마의 대외 교역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지목되어 왔으며 결국 2013년 4월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의 외환 사정이 악화되자 2022년 11월부터 태국과 접경한 먀와디(Myawady) 국경 게이트에서의 교역을 대상으로 다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모든 수입에 적용되고 있다. 수입업자가 대금 결제를 위해 수출업자의 계좌로 들어오는 외화를 구매한 후에 수입이 가능한다. 수출업자도 중앙은행의 2022년

4월 4일 발표한 강제환전 제도에 따라 수출에서 들어오는 외화의 25%를 중앙은행 기준 환율인 2,100짜트(Kyat)로 환전하고 나머지 75%는 OTP(Online Trading Program) 환율(현재 3,500~3,600짜트 수준)로 한달 이내 판매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0월부터 임가공(CMP)의 경우 100%를 OTP 환율로 즉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업종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

미얀마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수출기업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단,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규정한 'AK Form'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달 관련

정부조달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공개 입찰 시에도 발주처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업체에게 정보를 먼저 주어지거나 사실상 낙찰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식적 입찰 공고가 진행되는 등 절차상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관행으로 인해 상당수 참가업체들은 부득이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유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의 입찰 브로커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정책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의 의사결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력 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정부의 조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조달청이 별도로 없으며, 행정부처별 수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달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입찰 정보는 대부분 매체를 통해 공개되나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담당부처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부처별로 등록하여 입찰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미얀마는 TRIPs 협정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는바, 미얀마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은 2015년부터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상표법, 산업디자인법, 저작권법, 특허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로 2019년 1월 30일에 상표법과 산업디자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 3월 11일에 특허법, 2019년 5월 24일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2023년 4월 1일에는 상표법(Trademark Law)이 발효되었다. 같은 해 10월 31일부터는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Law)과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발효된 바 있다. 미얀마 특허법(Patent Law)는 2024년 5월 31일에 발효되었다.

국가행정위원회(SAC)는 2023년 2월 저작권 관련 중앙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저작권 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로 상무부를 지정했다. 현재 미얀마 상무부는 저작권관리사무소를 개설하고 2024년 1월 30일부터 산업디자인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상표등록, 산업디자인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 등도 추가 공지 형태로 업데이트 중이며,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이 순수 무역업을 금지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단, 비료, 농약, 종자 및 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교역에 한해서는 2015년부터 현지인과의 합작(JV)을 전제 조건으로 현지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2016년 7월에는 건축자재 무역업의 문호를 개방하기도 했다.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진출은 향후에도 합작(JV) 조건 등을 전제로 점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방된 품목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대부분이므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미얀마투자법상 외국인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얀마 내에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에서 시험 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 미얀마 내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아래와 같다.

ㅇ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통신·기술·교통 인프라, 도시개발, 자원 개발, 농업, 방송분야
- 미얀마 당국에 의한 양여에 따라 수행되는 투자

- 국경 지역 또는 분쟁 지역에서의 투자
- 국경을 넘어서 수행되는 투자
- 농업 관련 분야 1000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 비농업 관련 분야 100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ㅇ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예상 투자 가치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ㅇ 환경 및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이 큰 사업
- 환경 영향 평가(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수반하는 사업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생물 다양성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
- 연방법에 준거해 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서 100명 이상의 이주민 또는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포함되는 사업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사용 및 접근에 관련해 권리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경우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애 대해 점유자가 점유취득 및 점유·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기타 최소 100명 이상 점유자의 법적권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ㅇ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단,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정부 부처 및 당국의 책임 하에 토지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토지사용권 및 재임대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재임대받는 경우, 투자 규모가 500만 달러 미만이면서 임대기간 5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지분소유 관련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특정 법인의 외국인 지분율이 35%를 초과하면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금지 품목에 대한 외국인의 35% 초과 지분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법인이나 지점,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할 경우 일부 제출 서류를 제외하고 절차가 동일하나, 미얀마투자법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에는 미얀마투자위원회 및 관련 부처의 승인 등이 추가되는 등 제출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진다. 한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미얀마투자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관계로,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등록 및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2년부터 외국계 무역 법인(순수 무역업만을 업으로 하는 법인)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일부 품목무역에 대해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 또한 무역 법인으로 간주돼 신규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역 법인의 경우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지사 및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나, 미얀마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인 고용 의무

투자법 제51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는 반드시 미얀마인을 채용해야 한다.

또한 특별경제구역법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하여 전문직 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가 고용한 직원 중 미얀마 내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2년간 25%, 그 다음 번째 2년간에는 50%, 세 번째 2년간에는 7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외국인 투자유치의 목적 중 하나가 수출의 확대 및 촉진에 있으므로 수출의무 부과 및 이행이 투자 승인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생산품 100%를 수출하는 임가공(CMP)의 경우 투자 승인이 매우 용이하나, 내수용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미얀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출비중은 품목을 불문하고 약 40%이상이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종은 투자진출 자체가 여의치 못하거나 과실송금에 제한을 받는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미얀마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주로 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기존 공장 임차, 산업공단 내 부지임차 후 건축 등이며 한국계 투자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개 양곤 인근의 공단에 입주하고 있다. 내수 판매든 수출용이든 제조업을 영위하기에는 양곤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사가잉, 만달레이 등에도 산업단지가 있으나 외국인이 입주하기에는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

경제중심지인 양곤에 조성된 공업 단지는 쉐삐타, 사우스다공, 흘라잉따야, 밍글라돈 산업단지 등이 있으며 공단 중 양곤 시내에서 약 8마일 떨어진 흘라잉따야 공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양곤 시에서 남쪽으로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띨라와(Thilawa)에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했다. 띨라와 특별경제구역은 수출자유구역에 해당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대 8년간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양곤외곽을 위주의 공단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양곤의 밍글라돈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임대가 여의치않다. 이러한 포화문제 및 임대료 상승의 문제로 인하여, 양곤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있는 바고(BAGO)지역에 한국 LH주택공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기업이 미얀마를 진입하는데 좋은 입지여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도미니엄법은 2016년에 개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 12월에 시행규칙(Condominium Rules)이 발표되었다. 콘도미니엄법 및 콘도미니엄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외국회사 포함)도 연면적 기준으로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콘도미니엄법 시행 전에

완공된 건물의 경우에도, 콘도미니엄법에 따른 콘도미니엄의 요건을 갖춘다면 외국인의 소유가 허용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상의 제한

미얀마의 금융산업은 극히 취약하며 국영은행 및 민간은행이 있으나 과거 높은 인플레와 장기간의 경기침체, 금융 관리 기법 등의 부족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얀마 은행들은 대출을 많이 하지 않으며 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낮고 이자율이 높다(이자율은 대출 최대15%, 예금 최소 7%).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이자율 보다 높은 상황이며, 저축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은행의 파산 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아직까지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다. 2022.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Black List)인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에 등재함에 따라 미국 및 싱가포르 중개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여 해외 송금에 어려움이 있다.

세제상의 제한

미얀마의 조세는 생산, 소비 관련 조세 및 공과금, 소득 및 소유에 따른 세금, 관세, 국가재산 사용에 따른 세금 등 14가지의 세금 및 공과금이 있다.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업세, 관세, 원천세 등이 있다. 새로운 조세 개정안은 매년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서 3월 전에 새로운 조세가 발표된다. 조세 행정은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 Finance)가 관장하며 실무적으로는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Dept.)과 관세국(Customs Dept.)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세제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적용이 다르다.

○ 법인세(Income Tax)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25%,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기존의

40%에서 25%로 변경됐으며,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된다. 미얀마에서 설립된 법인은 전부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는 전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외국 투자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은, 미얀마 국내 소득만이 대상이 된다. 또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당지 세법상 비거주자가 돼, 미얀마 국내 소득이 대상이 된다.

과세 구분과 적용세율

구분	세율
미얀마 회사법(MCL) 또는 특수회사법(SPC, Special 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된 회사	25%
미얀마 투자법(MIL)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사	25%
정부 소유(출자) 법인	25%
외국회사의 지사 등 비거주 외국 법인(기관)	25%
양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20%
자본이익세(Capital F-Gains Tax) -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미얀마 거주) - 비거주자(연간 182일 이하 미얀마 거주)	 10% 10%

자료원: 미얀마 관세청

○ 과세 연도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세무 신고서는 6월말까지 내국 세입국으로 한다.

○ 과세 대상과 범위

- 미얀마 거주자 및 거주법인 : 전 세계 소득이 대상
- 비거주자 및 투자법에 의거한 기업 : 미얀마에서의 국내 소득만 대상

외국 기업의 경우 투자법에 따라서 설립됐기 때문에 국내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다. 단, 세법상의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범위는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에서 취급이 달라 대단히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은 거주 미얀마인, 거주자인 외국인(연간 183일 이상 체제하는 경우)이 외환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외환 소득 전부이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이다. 다만 비거주(연간 183일 이하 체재하는 경우)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소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미얀마에서의 소득 활동에 기초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 거주성

미얀마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란 ①한 과세연도 동안에 미얀마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연속한 기간일 필요 없음)인 개인, ②미얀마 회사법 또는 기타 관련 미얀마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중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주주가 외국인인 회사, ③회사 이외의 조합 중 그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외국인이고 해당 조합 관련 지배·운영·의사결정 절차가 전적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을 말한다. 위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된다. 즉, 외국인 개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182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얀마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의 25%가 과세가 되며, 비거주자(사업가) 또한 미얀마에서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25%(기존 40%)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가 양도세로 부과되나, 비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외화수익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납부방식 및 환급절차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6월 30일까지 소득 신고를 한 후 확정세액과 비교해 이에 대해서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미얀마 소득세는, ①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 ②과소예납의 경우 과소납부액의 10%, ③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이 납부된 세금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초과한다고 확인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초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내국거래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외국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 원천소득세

이자 소득, 로열티,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천과세가 부과된다.

소득 형태	소득을 얻은(받은)자	
	거주자 (미얀마 국민 및 외국인)	비거주자 (미얀마 국민 및 외국인)
이자	0%	15%
배당	0%	0%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해 지불된 로열티	10%	15%
공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을 통하여 미얀마 내에서 물품(상품)의 구매, 하도급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정부 기관, 지방 정부, 정부 출자 회사 또는 주정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2.5%
일반 계약, 협약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을 통하여 미얀마 내에서 물품(상품)의 구매, 하도급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정부와 합작형태로 설립된 회사, 조합, 합작법인, 회사, 개인 조합, 관련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기구 또는 협회, 사회협동조합, 외국 회사, 외국인이 출자한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0%	2.5%

자료원: 미얀마 관세청

○ 관세(Custom Duties)

관세는 관세율표의 과세 표준에 의거해 과세된다. 과세 표준은 CIF가격에

0.5%를 더한 금 액이고, 현재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관세가 붙는다.(아울러 상업세도 부과된다) 단,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수입해, 가공 후 일정 기간에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MIC의 승인을 얻은 것은 관세가 감면된다. (수입 관세의 면세 및 환부 제도)

○ 상업세(Commercial Tax)

상업세는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과세되는 일종의 소비세다. 1990년 3월에 상업세법(The Commercial Tax Law)이 제정한 이후, 2011년에 8월 전면 개정해 모든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14개 서비스 포함)에 대해 평균 5%의 상업세가 부과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상업세는 상업세는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품목에 따라 납부하는 세율이 다르다. 쌀, 야채 등 79개 품목은 면세하고, 술, 담배,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5~120%의 상업세가 부과된다.

- Schedule I(79개 기본 생필품): 국내 생산 시 면제
- Schedule Ⅱ-Ⅴ(미얀마 내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5%
- Schedule Ⅵ(술, 담배, 사치품 등 16개 품목): 5~120%
- Schedule Ⅶ(개인주택 임대, 은행, 외국항공 운송업 등 23개 서비스 품목 제외 나머지 서비스 품목): 5%

상업세 면세 서비스 업종

1	주택 임대(개인만 해당)	16	이사 업
2	주차장	17	톨게이트
3	생명보험	18	동물병원
4	소액대출	19	유료 공용 화장실
5	헬스 케어	20	외국 항공 운송기업
6	교육	21	예술 서비스기업
7	운송업	22	대중교통서비스기업
8	직업소개소	23	정부에게 납부해야하는 라이센스 비용
9	은행	24	증권발행시장 서비스기업
10	통관업	25	국방부의 보안 출판계
11	임대업(책상, 의자, 식기 등)	26	대사관 및 공관

12	도축업	27	국가지원금 서비스 기업
13	장례업	28	정부기관 간 연계 서비스기업
14	아동보육	29	(국가적 필요로)국회로부터 면세승인 기업
15	미얀마 전통 마사지(일반/장인)		

2024년 연방세법(Union Tax Law 2024)에 따르면 서비스업종은 아래와 같이 상업세가 면제된다.

연번	서비스업종
외국인 부문	
1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외국 대사관 또는 이들 대사관의 구성원 및 비외교 대사관 직원에 의해 조달되며, 외교부의 제안과 연방 정부의 승인,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공지를 통해 승인된 서비스
2	국내에서 유엔(UN) 지역 조직이 해당 조직의 명의로 조달하는 서비스
국방 분야	
3	국방부 산하 보안 관련 인쇄 사업의 인쇄 서비스
종교 및 문화 분야	
4	문화 및 예술 서비스
교통통신분야	
5	주차장 임대
6	화물운송 서비스(파이프라인 운송을 제외한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크레인을 이용한 운송)
7	주거 이전 서비스
8	도로 이용 요금 징수 서비스
9	국내 또는 국제 항공편으로 유로 승액을 운송하는 서비스
10	대중 여객 운송서비스
11	정부 운영 우편 서비스
교육 및 정보 분야	
12	교육서비스
13	책, 잡지, 정기간행물 및 신문 출판 서비스
보건분야	
14	화장품을 제외한 보건서비스
15	전통 마사지 서비스; 시각 장애인이 수행하는 마사지 서비스
16	동물 건강 및 관리 서비스
17	공중화장실 이용료 징수 서비스

기획 및 금융 분야	
18	생명보험 서비스
19	소액 금융 서비스
20	자본 시장 서비스
21	은행이 수행하며 중앙은행 승인을 받은 금융서비스
22	세관 서비스
23	Aung Bar Lay 복권 서비스
사회복지, 구호 및 재정착 분야	
24	접대 및 케이터링 장비 임대 서비스
25	장례 서비스
26	아동 돌봄 서비스
산업 및 전력 분야	
27	원자재를 제공하고 완제품을 반환하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28	농업 기계화 서비스
29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 및 배급하는 민간 소규모 전력 서비스
30	배터리 전기 차량 충전 서비스
기타 일반 항목	
31	사업 운영 권리를 위해 국가 기관에 지불하는 라이선스 요금
3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방정부가 공지로 면제한 서비스
33	국내 또는 외국 조직이 국가에 기부한 또는 국가가 제공한 자금으로 조달된서비스
34	정부 부처간 제공되는 서비스

금융기관 진출

미얀마 내 민간 상업은행은 총 19개에 달하나, 과거 대부분의 외환거래는 민간은행의 외환거래 경험 부족, SWIFT코드 부재, 대외공신력 부족 등의 이유로 MICB(Myanmar Investment Commerce Bank), MFTB (Myanmar Foreign Trade Bank) 등 2개의 국책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민간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CB Bank, Kanbawza Bank 등에서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이용 가능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외국은행으로는 2014년 초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은행이 처음으로 외국계 은행 지점 라이선스를 받았다. 미얀마 중앙은

행은 2016년도 2월 8일까지 2차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의 신청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은행 중 신한은행이 지점 개설 라이선스를 받아 2016년도 하반기에 Myanmar Plaza에서 지점을 개설하였다.

2019년 11월 미얀마 정부는 3차 은행시장 개방에 착수하였고, 국내은행업계에서는 국민, 기업, 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2020년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4개 국내은행이 법인 또는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미얀마는 2018년 외국 회사의 보험업 영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얀마는 금융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빠르지 않은 편이다. 2019년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 5개사(영국 Prudential, 홍콩 AIA, 미국 Chubb, 캐나다 Manulife, 일본 Dai-Chi Life 등)에 시장을 개방하였고, 로컴 생명보험사와 합자회사 3개, 로컬 손해보험사와 합자회사 3개 등 총 11개 보험사에 신규로 영업허가를 발급한 바 있다.

다만, 2021.2월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과되고 특히 2022.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Black List)에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에 등재함에 따라 미국 및 싱가포르 등 중개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여 해외 거래에는 어려움이 있고 외국계 은행들의 영업은 많이 축소되어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여 외화 유출과 환율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 통제를 시행함에 따라 외화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고 은행들의 영업에도 지장이 있는 상황이다.

투자 유망 분야 및 진출 전략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현재 여러 가지 투자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중국 및 베트남을 대신할 가장 유력한 투자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5천 4백만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전

략적 지리적 위치, 유리한 자연환경, 한국과의 경제적 보완관계 및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미얀마의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120달러 정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노동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지 봉제업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정도인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으로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에 이른다. 최저 임금과 같은 경우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을 2013년 7월에 발효했으나, 1년 이상 지지부진했다가 지난 2015년 8월에 최초로 최저임금이 1시간당 450짜트, 하루 근무시간(8시간) 3,600짜트로 확정됐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7년 5월에 33% 인상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800짜트로 지정하였다.

단,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집이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인해 잇따라 무산되며 2023년까지 추가적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2023년 10월 특별수당 1,000짜트(Kyat) 법정 최저임금인 일급 4,800짜트(Kyat)에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현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2024년 7월 기본 최저임금에 특별수당으로 1,000짜트(Kyat)가 추가되어 사실상 최저임금은 6,800짜트(Kyat)가 되었다.

프랜차이즈 및 유통·서비스

미얀마는 장기간의 사회주의 경제운영으로 공공부분의 비중이 크다. 미얀마는 장기간에 걸친 버마(Burma)식 사회주의경제 운영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민간부문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연방정부 경제부처의 대부분이 산하에 국영기업을 두고 실물경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진영 국가들이 미얀마의 비민주화 및 인권탄압에 대해 경제제재를 감행함에 따라 2012년까지 사실상 외국인의 신규투자가 중단되어 미얀마는 전 산업에 걸쳐 발전이 지연된다.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점차 외식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었다. 한 동안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미얀마의 시장은 2012년 이후 급격히 개방되고 확대되었다. 경제호황이 지속하여 현지인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외국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미얀마 경제가 개선되면서 미얀마인의 외식 선호도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따라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였으나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18년 5월에 공지를 통해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영위를 허용하였다. 외국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미얀마에서 생산된 상품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얀마의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 허용 상품군 목록

1. 생활필수품 (의류/시계/화장품 포함)
2. 다음과 같은 식료품
   - 농산물(국가의 필요에 따라 금지된 품목 제외)
   - 수산물
   - 축산물
   - 기성 식품류(ready-made foodstuffs)
   - 다양한 종류의 음료
   - 미얀마 생산 주류
3. 가재도구(세라믹, 도기, 유리 및 유리제품 포함)
4. 주방용품
5. 의약품 및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6. 동물 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7. 문구류
8. 가구
9. 스포츠 장비
10. 전기통신 제품(카메라 및 전화기 포함)
11. 전자장비
12. 건축 자재 및 공구
13. 전기장치

14. 산업용 화학물
15. 종자, 농업 자재
16. 농업기계
17. 다양한 종류의 기계 및 부대용품
18.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
19. 오토바이 및 부대용품
20. 자동차 및 다용도 트럭의 예비품
21. 장난감
22. 실내 장식 제품 (꽃 그리고 식물 포함)
23. 기념품 및 수공예품
24. 미술용품, 악기 및 부대용품 (골동품 불포함)

그 밖의 경제환경변화 – 회계연도의 변경

국가관리위원회(SAC)의 회계연도 재변경

지난 2월 1일 정변 이후 미얀마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관리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 이하 SAC)는 2018년에 변경된 미얀마 공식 회계연도(Financial Year, 이하 FY)를 다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 기간을 2022/23 회계연도부터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바뀌게 된다.

앞서 2015년 총선 승리로 2016년 4월부터 집권했던 민족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부는 2017년에 회계연도 변경을 한차례 추진했으며, 혼란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기준을 2018년부터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간 부여하고 이후 2019년부터 전면 적용했다. 회계연도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6개월간의 공백기를 공공부분에서는 '과도기 회계기간'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FY2019(일명 미니 회계기간)'로 통칭했다.

미얀마 공식 회계연도 변경 과정

회계연도(FY)	기간	비고
FY 2017/2018	2017. 4.1 ~ 2018. 3.31.	1974년 ~ 2017년 유지
FY 2018	2018. 4.1 ~ 2018. 9.30.	과도기 회계연도(공공부문)
FY 2018/2019	2018.10.1 ~ 2019. 9.30.	변경된 회계연도(공공부문)
FY 2019	2019. 4.1 ~ 2019. 9.30.	과도기 회계연도(민간부문)
FY 2019/2020	2019.10.1 ~ 2020. 9.30.	변경된 회계연도(민간부문)
FY 2020/2021	2020.10.1 ~ 2021. 9.30.	-
FY 2021	2021.10.1 ~ 2022. 3.31.	(비공식) 임시회계연도 (민간부문 적용시기 불명확)
FY 2022/2023	2023. 4.1 ~ 2024. 3.31.	(공식변경) 민간부문 적용시기 불명확



우즈베키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4

주요 경제 동향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9월 1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The Republic of Uzbekistan)으로 탄생하였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해 있다.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두 배인 447,000km2 이고 인구는 약 3,600만명이다. 또한, 천연가스, 금, 구리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상당하다.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12월 미르지요에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과감한 경제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2017년 외환 자유화, 2018년 조세개혁, 2020년 WTO 가입 재추진 등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과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로부터 처음으로 국가신용등급을 받았으며, 2019년 2월에는 최초로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국제사회도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21년 4월 우즈베키스탄이 유럽연합의 특혜관세제도인 GSP+에 가입됨에 따라 6,200개 품목에 대해 유럽시장에 무관세로수출이 가능하다.

정부 조직 및 기관 개편, 무역절차 개선, 외환 자유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종전 높은 관세 및 소비세 부과를 통한 수입 억제 정책을 탈피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면제 정책, 철도 운송료 인하 등을 통한 무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종전 국제기구의 경제 자문 수용에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등과 협력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기구들과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

구분(단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백만 명)		33.0	34.2	34.9	35.6	36.4
GDP (명목)	총액 (십억 달러)	60.3	60.2	69.6	80.4	90.89
	1인당 GDP (달러)	1,813	1,776	2,014	2,280	2,496
	성장률 (%)	5.8	1.6	5.0	5.7	6.0
인플레이션(%)		15.2	13.8	9.5	11.3	11.4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41,751	36,272	42,169	50,500	62,567
	수출	17,459	15,102	16,662	19,733	24,426
	수입	24,292	21,170	25,507	30,768	38,141
	무역수지	-6,833	-6,051	-8,844	-11,035	-13,715

출처: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관세

우즈베키스탄 관세정책은 우유 등 생필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낮은 세율과 자국 생산 제품 보호를 위한 고관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 구조는 HS의 상품 분류와 유사한 품목 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는 HS CODE 10자리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관세,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12%가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다고 하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통관 시 통관수수료 0.2%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observer 지위) WTO 등을 통한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대통령령에 따라 자주 세부품목에 대한 세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관계 정보 획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종전 관세 부과는 송장(Invoice)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 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해 이를 기준으로 해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7년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대외무역 확대 및 개선을 위하여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하였다. 2017년 9월 4일 채택된 No. PP-3254「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대통령령에 따라 동년 9월 10일부터 수지, 정유,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목재 펄프를 비롯한 17개류 5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변경됐으며 6개류 9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됐다.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대통령령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다.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으나, 2022년에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목도 발생했다. 2023년에는 자동차류 일부, 식품류 36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다.

동 조치는 2017년 9월 5일 시행된「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로 인해 1달러 당 숨화 환율이 종전 4,200숨 수준에서 8,100숨으로 2배가량 상승하면서 숨화로 결제되는 관세 또한 같은 수준으로 급등하며 이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악영향이 예견된 상황에서 물가상승 억제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선정돼 관세가 주로 인하 또는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높은 관세 장벽 등 폐쇄적인 무역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6월 29일 대통령령 PP-3818「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74개류 447개 품목, 10개류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와 소비세를 각각 변경 시행하였다. 전반적으로 관세와 소비세가 인하되었으나 트랙터, 승합차 등은 오히려 관세, 소비세가 인상되었으며 승용차의 경우에도 중고차량을 중심으로 소비세가 인상되었다.

2018년 6월 29일 PP-3818『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대통령령을 제정해 관세, 소비세 및 통관 시스템의 개정을 예고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 74개류 447개 HS Code에 대한 관세와 10개류 68개 HS Code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인하 등 변경되었다.

2023년 8월 15일「WTO 협정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입법의 조화를 위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UP-140가 승인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무역법 일부가 WTO 규범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었다. 2023년 11월까지 WTO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입 시 부과되는 관세율이 통일되었고, 2025년 1월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수입에 대한 통관수수료가 폐지될 예정이다.

2024년 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WTO 협정에 준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내 입법을 규정하는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ZRU-98호에 서명하는 등 국내법을 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다.

통관절차

통관은 모든 필요서류 및 관련정보가 제출되고, 관세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의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 3일 기간의 근무일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입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통관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 포장명세서
- 송장(Invoic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관세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 품질인증서 (OECD 국가의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가 있을 경우 우즈벡 발급 서류 제출 불요)
- 회사등록 코드 사본
- 거래은행 계약 ID 번호
- 필요 시 해당 물품 공급 관련 대통령령, 내각령 등 관계 법령
- 필요 시 관련 정부 부처의 승인(과학기술위원회, 보건부 등)

통관비용의 경우 상품 및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수입품일 때에는 아래와 같은 통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5%~40%)
- 부가가치세(0%또는 12%)
- 소비세(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인 경우)(5%~200%)
- 통관수수료(0.2%)

관세 등 통관비용은 수입업자 또는 관세대리인에 의해 납부되어야 한다. 통관비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책정된다.

- 관세, 소비세, 추가부담금은 수입품의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부가가치세는 수입품의 통관가격, 관세, 소비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 사업체라도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수입이 허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 거래업체를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허용되어 왔다.

또한, 2015년 10월 30일 '지상교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 및 교통수단에 대한 對관세기관 전자문서통보'에 대한 법령이 제정됐다. 그에 따라 수입자나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오는 물품과 교통수단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관세 전문가에게 미리

통지할 경우, 통관 접수는 1일 안에 마감된다. 동 법령은 2015년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외국간 무역관계강화 및 수출입절차가 다소 간편화 되었다.

2018년 6월 29일『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대통령령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 OECD 국가에서 발급한 적합 판정 증명서(conformity certification) 서류를 인정하고 국경세관에서 통관검사와 동시에 동식물 위생 역학 검사 시행 등 통관 시스템 및 제출 서류를 변경, 개선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불법 수입 및 생산·판매, 합법적 유통 보장 등을 위해 2020년 11월 20일, 제 737호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따라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의무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2년 기준 5개(담배, 술, 의약품, 맥주,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품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WTO 협정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입법의 조화를 위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UP-140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특정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면제제도가 폐지, 의무적인 우즈벡어 라벨링 부착이 면제되었다.

수입규제제도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아래의 3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각종 공공질서, 영토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 폭발물
- 독극물
-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전자통신기기
- 국가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질, Red book에 포함된 약용, 식용 야생초 및 관상식물, 희귀 멸종 위기 동물
- 기타 금지 물품
- 드론
- 투자대외무역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희귀 금속으로 제작된 장신구 및 희귀 보석
- EURO-4 기준 이하의 버스와 화물차,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

드론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2021년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농업용 드론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표준청은 2016년 1월 1일부로 가전제품에 대한 신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실시해, 해당 표준 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수입 제품에 대한 금지를 실시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1993년 12월 28일,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 의하면 표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보호와 함께 자원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변수를 반영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영토 내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표준인증청(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표준인증청 인증획득 절차

표준인증청의 인증 획득 시 직접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관련 서류양식 및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www.standart.uz)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ㅇ 인증 절차
  - 인증 신청서, 품목 설명서 제출
  - 실험 프로그램 검정 및 샘플조사, 실험
  - 품질 평가 및 제품 적합 선언
  - 인증서 발급 및 국가 등록

- ㅇ 필요서류 :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제품 라벨 샘플(상품 정보),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 서류(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 문서 사본(있을 경우), 위생증명서 사본(있을 경우)

제약·의료기기 인증, 등록

제약·의료기기에 대한 인증·등록은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청(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등록 비용은 1,000~2,500달러(제품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상이),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요구서류는 아래와 같다.

- ㅇ 요구서류 : 등록신청서, 제품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시험에 관한 정보, 기기 테스트 방법, 국제기준 부합여부에 관한 정보(필요시), 제조업체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위생증명서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가 요구되며 위생증명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검역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 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위생증명서 발급은 2004년 7월 6일 내각에서 승인된 N318 제품 인증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 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같이 접수된 서류 검토
- 제품 검사 계획 수립
- 위생증명서 발급 관련 계약 작성
- 샘플 선택 및 실험실 테스트 수행(세균, 독성, 잔류농약, 파툴린, 니트로사민, 기생충, 방사능 검사 등)
- 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및 발급

ㅇ 제출서류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원산지 증명서(만약 제품에서 동식물 원산지에 대해 나타낸 경우, 식물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판단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

위생증명서는 발급 후 3년 간 동일 제품에 대해 유효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해당제품의 유통기한만큼 유효하다. 부정적 검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이를 신청자에 서면 통보하게 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abeling

2013년 1월부터 소비재 상품의 경우 통관 전 우즈벡어 라벨링 의무화가 되어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우즈벡 무역 개선 조치에 따라 2018월 9월 1일부터 통관 후 유통 전 우즈벡어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개선되었고, 2024년 1월부터 의무적인 우즈벡어 라벨링 부착이 면제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민의 안전,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2021. 7. 1.부터 식품의 소금, 설탕, 지방(fat) 함량에 관한 라벨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2025.01.01.부터는 수입되거나 현지 생산된 식품 모두에 대해서 라벨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일부 제품에 대한 디지털 라벨링 의무화 도입'을 시행령으로 의결하고 2022.04.15 부터 단계적으로 가전제품에 라벨링을 의무화하였다. 의무화 대상 제품의 경우, 1단계(2022.04.15 부터) 청소기, 세탁기, 냉장냉동고, TV, 모니터이며 2단계(2022.08.01 부터) 가스렌지, 오븐, 전자렌지, 다리미, 전기포트, 3단계(2022.11.01 부터) 온수 보일러, 에어컨, 모든 종류의 전등, 소형 가전제품(믹서기, 분쇄기 등)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체는 의무적으로 'Asl Belgisi' 라는 국가 라벨링 모니터링 추적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취급제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러시아 선진기술개발센터가 세운 CRPT TURON 업체가 운영한다. 또한 2022.09.01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디지털 라벨링을 의무화 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수입품에 자국어(우즈베크어)로 라벨을 부착할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일부 상품들의 경우에는 우즈베크어로 라벨링이 표기돼 있지 않을 경우 적합성 인증서 및 위생 역학 보고서 발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특허청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 상표는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될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특허청 지정 규정에 부합되는 양식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법정 심사 후에 상표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 등록 가능 기간은 특허세 고지 문서 수령 후 1달 동안이다. 이후 특허청이 상표 공식 등록에 대해 공보하게 되며, 상표 등록 이후 한 달 안에 상표 증명서가 발행된다. 이 증명서는

상표 등록 신청서 제출날짜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은 소유자의 연장 신청서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서는 유효기간 마지막 해에 작성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10년 연장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 시 소송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으며, 아직까지 주재국의 상표권 보호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민법 제4편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59장(일반규정), 제60장(저작권), 제61장(저작인접권), 제62장(산업재산권), 제63장(새로운 식물종 및 동물종에 대한 권리), 제64장(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비공개정보의 보호), 제65장(민사상 거래, 상품, 업무, 서비스 주체의 개별화수단(회사명, 상표권, 원산지표시) 등 총 7장에 걸쳐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장 제169조(Objects of Property Rights)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재산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제59장 제1031조 지식재산권의 대상(Intellectual property objects)에서는 1) 과학, 문학 및 예술작품, 2) 공연, 방송, 음악, 3) 컴퓨터용 프로그램(매뉴얼, DB), 4)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5) 생산비밀(노하우)를 포함한 비공개정보 6) 회사명, 상표명, 원산지이름 등을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한 법률(https://lex.uz/acts/1023494, 우즈베키스탄어)"에서는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조달 부문의 개방성, 투명성 확보 및 기업간 공정 경쟁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상품/서비스의 정부 및 기업 조달 개혁 조치(대통령령 3166)를 채택하고 이어 2018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프로젝트 관리청(National Project Management Agency)이 수립한 정부조달법(Law No 472)을 승인하였다.

정부조달 구매자는 'budgetary'(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및 'corporate'(정부 지분 50% 이상 공기업)로 분류되며 국가프로젝트관리청이 공공조달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자 조달의 경우 e-shop 및 auction으로 분류되며 공급자는 전자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선정된다. 특별한 조건이 없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구매는 전자 조달로 진행되며 정부 기관 구매의 경우 최저임금의 25배, 공기업 구매의 경우 최저임금의 250배 이하 여야 한다. (단, 연간 최저임금의 2,500배를 상회해서는 안됨)

경쟁입찰은 부처의 경우 최저임금의 6,000배, 공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25,000배 이상의 액수에 해당하며 입찰 제한가(limit)는 10만불이다. 심의위원회(Complaint Commission)가 운영되어 공공조달 민원을 심의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State Committee on Ecolo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계획된 또는 진행되는 활동이 환경 관련 규정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 회사의 계획된 또는 진행되는 활동이 환경,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위험 정도, 천연자원의 환경적 안전과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지상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을 담고 있는 건설계획이나 재건계획은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State Committee on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합작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투자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투자유지 정책은 내용상으로는 일반 국가와 다름이 없으며 투자제한 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며 투자 원리금 송금도 보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며, 투자가의 국적, 소재지 등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에너지, 통신, 항공, 광산업 등 핵심 산업에 정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② 충분한 보호와 보안

③ 국가적 차원의 대우

④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 송금 및 본국 송환의 원칙적 보장. 단, 모든 세금과 부담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공개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⑥ 외국인을 고용할 권리 및 외국인 투자자, 그의 대표자, 고용된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전의 자유

⑦ 재정적 지원, 특별세 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통신 등 사회기반 시설의 제공 기타 관련 법에 따른 추가 조치 등

⑧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⑨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결정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환경 및 질서,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⑩ 2014년 1월 2일 시행된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할 권리가 있고, 복수 비자가 부여된다.

⑪ 현금 USD $5,000,000 이상 투자한 신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설립에 관한 규정, 세금에 대한 규제 및 기타 공적 부담금에 관하여, 관련 규정의 변경에 상관없이 법인설립 당시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인설립 후 10년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⑫ 외국인 투자회사의 생산활동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입된 자산이 회사 자본금의 33%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간 관련 법에 따른 관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 외국 국적자, 무국적자이면서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국가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입한 자산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장관, 국가위원회, 행정 각부, 법 집행기관, 감독위원회에 의한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16년 미르지요예프 신정부 출범 이후 '2017~2021년 우즈베키스탄 향후 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사업 환경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중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 최대 장벽이었던 2017년 9월 외환 단일화 정책을 전격 도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 지분의 최소 30%를 소유해야 하며, 인센티브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의 경우 투자금 400,000불 이상(금융기관 제외), 그 외 일반 기업의 경우 투자금 150,000불 이상(카라칼팍스탄, 호레즘주는 자본금 75,000불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는 경화, 신형 설비로 법인 등록 후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정부는 2018년 8월 '투자환경 종합 개선 방안'을 채택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수권자본금을 4억숨(*2022.9.29. 중앙은행 고시환율(10,999.78숨/달러)기준 약 36,364달러)로 인하하였으며, 또한 종전 30% 지분에서 15%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외국인 법인 형태의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법인 주주로 참여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세제감면(법인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 개선세, 도로 펀드 납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 산업과 특정 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 건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기업 간 계약에 기초해 특별규정(decree)의 형태로 혜택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투자 시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 실제로 협상 여하에 따라 동종 업체 간에도 인센티브 수혜 폭에 차이가 많다.

가)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혜택

- ㅇ 부가가치세/특소세 면제(또는 환급) :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조달한 원부자재
- ㅇ 법인세, 부동산세 감면 : 총매출 중 수출 비중 15%~30% 기업은 30%,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은 50%까지 감면
- ㅇ 관세 면제(환급 개념은 없음. 따라서 일단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은 안됨)
  -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자본 참여기업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산업/기술 자산
  - 투자금액 5,000만 달러 이상 투자 법인이 자사의 생산에 필요해 수입하는 부품, 원부자재
  - 생산 분배 계약(PSA)에 의해 외국 투자자가 프로젝트 서류상에 적시한 범위 내에서 수입한 상품, 노동, 서비스
  - 생산 분배 계약(PS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투자자의 상품
  -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설비, 부품 수입 (투자법인 등록 후 2년 내까지 유효)
- ㅇ 타슈켄트시와 주 이외 지역에서 특정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대상 산업(생산업): 전자, 가죽제품, 섬유, 봉제, 비단, 건자재, 식품, 화학

제품, 제약, 포장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석탄, 산업 및 농업기계, 유리, 미생물 제품, 비고무 완구제품 등

* 관광, 수처리 산업은 제외

- 투자금 300,000불 이상 시 3년간, 3백만 달러 이상 투자 시 5년,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 세제감면(tax holiday)
- 투자물은 경화 또는 최신 현대 설비
- 수혜조건: 외국인 지분 33% 이상, 세금혜택으로 절감한 금액의 50% 이상 재투자, 정부의 지급보증 불요구

나) 원유 및 가스 탐사. 채굴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합작투자 또는 협정에 의한 투자)

ㅇ 투자기업 및 하청 업체들에 탐사 기간 중 일체의 세금 및 비세금성 각종 납부금 면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우즈벡 기업들에게는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ㅇ 채굴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간 소득세 면제

다) 비세제 혜택

ㅇ 기반설비 지원 : 투자금 5천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시 정부가 외부 유틸리티, 공사, 통신망 설비 제공

세계은행에서 실시한 〈2020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69위를 차지하였다. 우즈벡은 투자자 보호 강화, 세금 시스템 간소화 조치를 포함한 대외무역 촉진에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개혁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방 경제 분석 전문기관에서는 우즈벡 사법시스템 미확립과 상업 분쟁 중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사후 계약서 수정 요구, 자산 수용/몰수, 만연한 부정부패 관행 등을 투자위험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사항이다.

조세제도

우즈베키스탄 조세에 관한 주요 원칙은 조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세목에 대한 세율은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통상 매년 12월에 그 다음 해의 세율이 정해진다.

우즈베키스탄 내국 사업자(외국인 투자 포함)에 대한 세제의 경우 표준 세제 또는 간이 세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정 사업을 하는 간이사업자에게는 납세 부담이 최소화된다(간이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는 평균 피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간이사업자에 대한 전체 분류 및 종업원 수에 따른 기준은 내각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자주 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재산세, 토지세, 소비세 등이 있다.

외국업체라도 사업자 번호가 부여되는 경우 원천징수세 또는 직접 과세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 사업체에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을 지급하는 답세자(국내 사업체, 국내 사업장을 통해 사업하는 외국 사업체)에 의해 수행된다. 외국 사업체의 우즈베키스탄 내 원천 수입에 대하여는 이중 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개인 소득세의 취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①우즈베키스탄 영주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②과세연도 내의 특정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을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한 개인은 개인소득세의 취지상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거주자에게는 그 사람의 전 세계적인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국세조세협약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은 조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취득한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우대가 주어진다.

국제조세협약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환급을 받으려면 국가세금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세금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금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세는 1~3분기는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20일까지 전 분기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4분기는 익년 3월 1일까지 신고한다.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23일이다. 연간 매출액 10억 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2022년 현행 기본 법인세율은 15%이며 분야별 법인세율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다.

ㅇ 2024년 현행 법인세율

- 일반법인 : 15%
- 상업은행, 시멘트 제조업, 폴리에틸렌 과립 생산업, 모바일통신사업자, 쇼핑몰 : 20%
- 전자상거래 등록업체 : 7.5%
- 사회서비스, 일부 수출 및 농어업 기업 : 0%

금융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융시장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은행의 자본 증대와 민간 자본 유치, 자산 건전성 등을 통해 바젤(Basel) 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표준에 부합할 것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금융환경 개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 정부 채권 발행 등 증권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환 부문 2017년 8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업 수출 소득의 의무 환전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어 9월 그동안 존재해왔던 이중환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 수준으로 크게 상승시켜 환율을 단일화하였다(달러당 4,210숨→8,100숨).

또한 중앙은행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외화보유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환율 단일화 직전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를 종전 9%에서 14%로 큰 폭으로 인상하기도 했다.(2024년 11월 현재 13.5%)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승(2020년 11.1%, 2021년 9.98%, 2022년 12.3%, 2023년 8.8%)에 따라 높은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준금리는 2020년 초 16%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라 두 차례 인하하여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러-우 사태 이후 22년 3월 17%로 인상되었다가 6월에는 16%, 7월에는 15%, 23년 3월에는 14%로 인하되었다. 기준금리는 24년 7월부터는 13.5%로 운영 중이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지속 및 주요 교역국(러시아, 터키) 환율하락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숨화를 절하하는 중이다.

WTO 가입 추진동향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였고 1998년 대외 무역 정책 등을 설명하는 memorandum에 대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개최, 부처 간 위원회 조직 및 WTO 가입 관련 자료준비, WTO 수준에 맞는 법률 구조 개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7월 17일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에 관하 워킹그룹 첫 미팅이 개최되었고 2005년까지 3번의 미팅이 개최되며 우즈베키스탄 통화, 통관, 관세 규제, 정책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가입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부터 협상과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워킹그룹의 활동 및 가입 협의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우즈벡 정부는 가입 추진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 3월 유엔개발개획(UNDP)의 지원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미국국제개발처(USAID),

유럽연합(EU),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등이 참여하여 WTO가입 관련 실무적 협의를 가졌으며 2018년 5월 14일~16일간 WTO 가입 재개를 위한 워크샵을 미국 국제개발처(USAID)과 세계은행(WB)의 지원으로 개최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국 국빈 방문 시 WTO 가입 재개 의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동 정상회담 계기 양국간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한국과 우즈벡 양국은 WTO 가입협력을 위한 양국간 공동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는 한-우즈벡 정상회의의 성과('17.11)이후 우즈벡 WTO가입을 위한 지원 사업('18년~)의 일환이다. 주요활동은 △자문위 구성 및 △우즈벡 WTO가입 촉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제5차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타슈켄트에서 WTO 가입지원 세미나, 제4차 한-우즈벡 공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우즈벡의 WTO 가입 추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등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3월 총 47개국이 참여한 제6차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됐고, 동년 11월에 제7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시장접근 양허안 양자협상을 요청한 33개국 중 우리나라(24년 5월), 미국(24년 11월) 등 포함 13개국과 협상을 타결하였다. 우리와는 우리 관심품목(676개, 수출비중 70%)에 대해 '22.6월~'22.5월 8차례 협상진행 후, '24.5.24일 타결 및 6.14일 의정서 서명을 완료하였다. (서비스 협상은 면제).

2024 외국의 통상환경

- 아시아·대양주 -

◈ 인 쇄 | 2024년 12월

◈ 발 행 | 2024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나모기획 (044-998-6998)